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공 백

I. 서 론

1. 연구목적

21세기는 정보화, 통신수단의 발전 등으로 세계가 단일 생활권화 되는 지구촌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세계경제의 강력한 영향권 하에 놓여 있으며 지역문화 역시 외부세계의 영향을 민감히 수용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 청소년의 생활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사회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 생활여건, 청소년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별 사회에 대한 전지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시간적 간격만이 있을 뿐 어느 정도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N의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청소년행동 프로그램'은 세계청소년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N이 선정한 10개 우선과제의 영역은 ① 교육, ② 고용, ③ 기아와 빈곤, ④ 건강, ⑤ 환경, ⑥ 약물남용, ⑦ 청소년 비행, ⑧ 여가활동, ⑨ 여자청소년, ⑩ 청소년의 사회 및 정책참여 등이다. UN의 우선과제 선정은 대체로 제3세계 국가의 사회적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하며, 높은 취학률로 청소년 실업의 비중 또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의 파트타임 취업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흡연 등 약물사용의 증가, 가출, 폭력, 원조교제 등의 청소년 비행과 더불어 컴퓨터 중독, 사이버 일탈 등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쟁적 교육구조에 의해 청소년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강력한 상태이며 소비 향락적 상업시설이 청소년 여가생활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의 청소년관은 미성

숙인으로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권리와 책임을 지닌 사회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우선과제는 억압적 교육구조와 소비향락적 상업시설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와 청소년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청소년을 권리와 책임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제 분야에서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세계의 국가들은 사회변화와 청소년 요구에 부응하여 어떠한 청소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주요 선진국들은 청소년 권리와 참여, 청소년의 문화·교류활동, 청소년 고용과 직업훈련,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법제 등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청소년단체와 시설, 프로그램과 지도자 등 정책적 매개수단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동향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2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은 유럽국가의 청소년정책동향에 대한 것이며 제2권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이 대상이다 각 국 혹은 해당지역의 청소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 첫 째, 각 국(혹은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목적 및 방향
- 둘 째, 청소년관련 법제
- 셋 째, 청소년 행정체계 및 청소년 재정 현황,

넷째, 청소년정책의 주요 현안

다섯째, 주요 추진사업

여섯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부여

일곱째, 청소년정책동향 및 평가

제1권 유럽의 청소년정책동향에서는 먼저 제2장을 통해 유럽전체 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정책동향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유럽전체 청소년정책을 위에 제시된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유럽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사례를 각 국가별 수집 자료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유럽국가의 청소년정책동향을 일련의 <표>로 제시하였다.

유럽전체의 청소년정책동향에 대해서는 유럽협의회 교육문화국(European Commission D.G. for Education and Culture)이 수행한 연구인 ‘유럽청소년의 상황과 유럽의 청소년정책’¹⁾의 내용을 기초 자료로 본 연구 틀에 맞추어 발췌, 번역, 편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가별 사례연구는 주로 국가별로 수집된 문서나 인터넷 자료를 번역,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핀란드의 사례는 참여 연구진의 핀란드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집필된 것임을 밝혀 둔다.

제2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의 청소년정책을 위에 제시된 연구내용에 따라 고찰하였다. 제2장은 미국, 제3장은 일본, 제4장은 중국, 제5장은 홍콩을 다루고 있다. 본 권은 국내와 국외 연구진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당초 한국청소년개발원 주도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

1) IARD(2001), Study on the State of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in Europe, Vol 1 (<http://europa.eu.int/comm/education/youth/studies/iard/summaries-en.pdf>) 본 연구는 유럽협의회 교육문화국의 주도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유럽 15개국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제1권은 각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총괄적으로 요약한 보고서이다

협의회의 협동연구로 기획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회원국의 사정 상 최종적으로 중국, 홍콩만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국내 전문가가 담당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은 조아미가, 일본은 박병식이 담당하였으며 중국은 중국청소년연구중심의 鞠靑(Ju Quig)이 보내온 자료를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함병수가 보완, 집필하였다. 홍콩은 홍콩 침례대학교 아동발달센터 Anna Hui가 보내온 영문원고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각 국가에 대한 연구내용은 위에 제시된 순서를 골자로 하되 연구진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의 한계 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각 국가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한편으로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회원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둘째, 각국 연구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이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Youth) 소속 청소년연구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료수집 및 집필이 이루어졌다. 중국 청소년연구중심, 홍콩 침례대학교 아동발달센터가 참여하여 해당국의 청소년정책을 보고하였다.

셋째, 현지 방문 및 면접조사이다. 핀란드의 경우 참여 연구진의 핀란드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면접자료가 기초가 되었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이다. 각 국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틀이 설정되었으며 각 국가의 청소년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II. 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 정책

1. 교육과 훈련
2. 청소년과 노동시장
3. 행복, 건강, 가치
4. 조직적 정치적 참여

공 백

II. 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 정책²⁾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즉, 생물학적·지적인 성인과 사회적 성인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50년전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자기가 태어난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들을 갖게 될 때 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5세 정도가 되면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되어도 학교에 계속 다니며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결혼 혹은 동거하는 연령이 지난 20년간 아주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첫 아기를 갖는 연령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청소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관습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청소년(young people)”을 15-24세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책에서의 청소년 개념은 국가적·역사적 전통들의 산물이다. 청소년 업무와 정책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아동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24세 이상의 연령까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청소년 정책과 아동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

국가적 청소년 정책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유럽의 나라들이 정책을 역동적인 개념으로 혹은 정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국가적 전통과 상관관계가 있다. 국가적 청소년 정책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청소년 부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북구) 정적인 청소년 정책 개념이 지배적이다.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나라들 혹은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2) 이 부분은 IARD(2001), Study on the state of Young People and Youthpolicy in Europe의 part1을 발췌 번역한 것임

의 주된 수정이 시행된 나라들에서는 (지중해 나라들, 덴마크 등) 청소년 정책 개념은 보다 동적인 것이며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의 최근 변화에 보다 강조를 둔다.

1. 교육과 훈련

교육은 많은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 정체성의 중심 부분이다. 모든 유럽의 국가들에서 15-19세 청소년의 대부분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다. 청소년인 것과 학생인 것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학교의 사회적 중요성은 증가해왔다 특히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가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인적 자원의 역할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다. 모든 산업화된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학교교육과 훈련계획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학교계획을 실행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의무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최소의 자격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동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는 교육에 대한 생각들, 참여, 기회 및 효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교육이 젊은 사람들에게 직업적 기술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지식을 수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국가들에서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 혹은 학습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학교를 떠나는 최소 연령은 14세에서 16세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16세까지이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기간이 길수록 교육 기회균등은 더 높아진다. 사실 의무교육기간이 긴 국가일수록 인구 중 학생 비율이 높다. 졸업비율은 국가별로 꽤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70%에서 거의 100%까지 이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비슷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를 민주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기회는 국가별로 광범위하게 차이가 난다. 그와 같은 차이는 교육제도와 국가교육제도의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학교 구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는 있지만, 학교제도의 표준화, 계층화, 직업적 특성과 고등교육의 확장이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오랜 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직업과 삶에 있어서의 기대를 높여 놓았지만, 그러한 기대가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서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남부 유럽에서는). 따라서 개인들은 새로운 시기(후기 사춘기, post-adolescence)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는 '기다리는 시기'로써 성인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고 성인의 책임을 맞을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

사실, 유럽의 인구 동향을 보면 전체 노동 인구에 비해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감소 되었으며, 미래에는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지워지는 경제적·복지적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젊은이들의 교육적 질을 극대화하고,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른 요소들도 - 고용자, 경제 구조, 노동시장 법률, 급여 계획, 직업 조직, 노조 - 교육과 직업적 운명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성인으로의 이동 전반)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다.

- 학업중도탈락을 억제하고,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학교 졸업장을 획득

득하는 것을 막는 태도나 행동들의 억제

-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습득 장려
- 교육/훈련의 결과와 직업 시장 기회와의 보다 안정적인 연계 강화

교육정책은 청소년정책의 한 요소이지만, 다른 정책들(예를 들면, 주택, 노동시장, 가족, 그리고 청소년에게 국한되지 않은 다른 영역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정책을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견해와 문제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행로에서 실패하고 잠재적으로 사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정책이 “문제로서의 청소년” 접근을 취한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의 경우, 청소년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자원”이다. 양자의 경우 모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의 실업 위험이 이전보다 매우 높으며, 대개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다는 점에서, 학업중도탈락을 억제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높은 중도 탈락율을 저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주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는 “재기회 second-chance” 학교, 보다 좋은 취업상담서비스, 평생학습프로그램, 재정적 지원, 보충교육,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자격의 공식적 인정 (작업경험이나 외국어 기술 혹은 컴퓨터 숙달 등), 또래 교육 등이 있다. 교육기회를 넓혀서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흥미나 희망에 맞는 교육/훈련기회를 최소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기관들을 다양화하고 “유연화”하는 것이 기술습득을 장려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다른 중요한 목적은 일부의 국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하급 교육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제거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교육과정 혁신, 교사의 선발과 연수, 교수 기법과 스타일의 현대화, 정보공학의 소개, 전반적인 “혁신” 등)은 모든 유럽국가들에서 여러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전략이다. 지역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계층화가 거의 없는 학교 시스템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되는 학교 시스템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평등하다. 노동시장에의 접근과 국가의 생산력의 질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질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실행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질적 향상은 반드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간의 강한 연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이것은, 공부와 직업의 전환을 촉진시키거나 심지어는 그 경계를 지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다. 인생의 두 영역-공부와 직업-의 경계를 혼미하게 만든다. 현재 교육/훈련과 일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아주 적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도제 프로그램이나 광범위한 파트타임 고용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20-35% 정도이며, 그 밖에 국가에서는 10% 정도이다.

물론 이 모든 전략은 교육의 직업적 요소들이 노동시장의 필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과업의 지역적·부문적 수준 확산; 고용자들, 노동조직들, 그리고 다른 조직들을 교육계획에 개입시킴; 훈련계획의 매력과 효과적 통합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프로파일들을 계속적으로 재 정의하고 새롭게 하는 것.

2. 청소년과 노동시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 아니면 직업유동성이 높고 취업기회가 많은 나라에서 사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 핵심적 단계를 나타낸다. 물론,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직장으로부터의 수입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아니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젊은이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보상해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지난 20년 동안 유럽의 대부분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사실, 유럽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취업률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증가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25-64세 성인에 비해 15-24세 청소년의 취업률은 월등히 낮고, 실업률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적인 연구에 의하면, 젊은 세대의 첫 번째 직장을 찾는 기간이 나이 많은 세대의 기간보다 길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장기 실업률(즉, 12개월 이상의 실업)을 조사해 보았을 때는 개선되고 있다. 장기실업은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에게서 아주 더 많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실업이 더 자주 반복된다. 이러한 빈번한 실업은 직장 생활 초기의 청소년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교육과 성별은 유럽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실업의 위험과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활동률과 취업률이 높았다. 실업률이 낮고 실업기간도 짧다. 지중해 국가들(특히 이탈리아)은 그러한 경향성에 대해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며, 특히 처음 직업을 찾는 경우에 그렇다. 학력은 첫 번째 직장을 찾는 속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여자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어렵고, 실업이 되기 쉽다.

지난 20년 동안 불규칙적인 계약(기간계약, 임시계약, 파트타임, 수습, 체인점 등)을 통한 유럽 청소년들의 고용비율이 증가해 왔다. 1950-80년에 취업한 사람에 비해 요즘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은” 혹은 “회색” 직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 경제”에 사람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론, 불완전 고용의 세대간 격차는 취업 보호의 정도가 높은 국가들(중앙유럽과 지중해 국가들)일수록 더 높다 “검은” 혹은 “회색” 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인에 대한 취업 보호가 강한 국가일수록, 청소년

들은 비공식 경제의 직업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보호가 없는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이 평생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아닐 지는 불분명하다. 최근의 몇가지 분석들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 불완전 계약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할 확률은 높은 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고, 여성에게는 높다.

오늘날도 과거처럼, 취업초기 젊은이들은 유경험자 성인들보다 수입이 적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수입은 증가한다. 문제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성인 수입에 대한 청소년수입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위에 언급한 실업률 증가와 이를 보상하지 못하는 복지 시스템에 의해 악화되었다. 어떤 유럽 국가들에서는 첫 번째 직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한 실업 급부금이 삭감되거나 받을 자격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어쨌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의 사회적 보호는 성인이나 노인들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적다.

실업률의 증가, 국가로부터의 복지혜택의 감소, 직장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의 상대적 감소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20대 후반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이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은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젊은이들의 취업 전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의 장애물들은 국가의 전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젊은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청소년 취업률을 높일 의도의 첫 번째 정책군들은 청소년들의 노동 비용을 줄이는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세 가지 주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한 취업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최저

임금 밑으로 임금을 삭감

-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도제 계약
 - 벨기에, 프랑스의 직업훈련 계약(work training contract)
 - 영국의 새 직원 계획 (new worker scheme)
- ② 고용자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을 삭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직업훈련계약)
- ③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임금에 대한 재정 지원 (포르투갈)

이러한 정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도제 계약에 대해서 최저 임금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대책들과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는 대책들이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위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후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업경험과 교육기관에서의 직업 훈련을 번갈아하는 도제계약(독일의 이중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이다.

많은 유럽의 정부들은 청소년 실업에 대해서 엄격한 고용보호가 미치는 부정적인, 경직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비정형적인(atypical) 계약을 도입하여 왔다. 비정형적인 계약이 젊은이들이 첫 직장을 빨리 잡을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장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로 이어질지 불안정한 노동관계에 빠지게 할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비정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의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에 따라 아주 다르다. 이탈리아는 임시직에서 영구직으로의 전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스페인이 가장 낮다. 전환비율이 낮으면, 세대간 불평등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성인 대부분의 직업적 지위는 정년보장이 되는 한편, 젊은이들은 장기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보호받지 못한 고용관계에 매이게 된다. 공평한 해결책은 전체 인구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일 것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급자 측면”의 대책을 시행하려는 노력 속에 지난 20년 동안 젊은이들이 실업 보조를 받을 자격을 점점 더 제한해 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젊은이들에 대한 취업 압력이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업보조의 삭감은 보통 직업소개, 직업상담, 가이던스, 직업훈련에 기초한 적극적인 노동정책들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이 청소년을 겨냥해서 사회적 보호의 제한과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결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히 성공적이다.

자기-고용을 지원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또 다른 흥미 있는 대책이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창업기술을 개발하는 훈련과정과 창업자금 대여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이들이 자기-고용을 하는 것을 돕는 흥미로운 대책들이 스웨덴과 이탈리아에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효과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 시장에서의 청소년들의 위치에 있어서의 유럽 국가들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공통 목표들 중에서 유럽 청소년들의 고용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직업경험과 특수한 기관에서 직업교육이 번갈아 이루어지는 훈련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이를 가장 쉽게 할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3-6개월 정도). 이것은 젊은이들이 교육과정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을 피하고 국가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고용성은 직장을 발견하는 데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실 젊은이가 고용될 기회는 또한 노동시장 규정에 달려 있다. 이에 청소년 집단의 실업 수준을 낮추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두 번째 공통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

오는 사람들의 급여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들의 위치에 대한 세 번째 목표는 성별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젊은 세대에서의 성별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사라졌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아직도 성별 간 차이가 크며, 성별에 따른 직업 구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실업률은 남성들에 비해서 높으며(이것은 주로 중앙유럽과 지중해 국가들이 그렇다), 비정형적인 직장, 즉 파트타임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다(이것은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주로 그렇다). 더군다나 젊은 여성들은 전문직 직종과 자기-고용에는 남성들에 비해 적게 종사하고 있다. 직업의 세계에서 성별 불평등은 종종 문화적 편견, 가사 분담에 있어서의 성별간 차이, 모성보호에 대한 복지부족, 어린아이들과 불구 노인들을 돌보는 서비스 부족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노동 시장에서 성별간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행복, 건강, 가치

젊은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각 국가에서의 노동시장, 가족, 사회적 전환의 상대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수입처이고, 그 다음이 가족과 복지혜택이다. 둘째로,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수입처이고, 그 다음이 복지혜택과 가족이다. 셋째로,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수입처이고, 그 다음이 노동시장과 복지혜택이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사회적 전환이 가장 낮다 핀란드에서는 이 세 가지 수입처가 거의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가

족 중심과 노동시장 중심 국가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19세와 20-24세 젊은이들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극심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가족 중심 국가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동거와 혼외 출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여러 곳에서 가족 형성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북 유럽의 청교도 국가들에서는 집을 떠나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겨지지만, 반드시 결혼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파트너와 동거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출산이 결혼과 별개이다. 남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결혼 후에야 아이를 가지며, 결혼을 해야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젊은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이다. 프랑스를 포함하는 중앙 유럽에서는 동거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집을 떠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청소년들의 일반적 건강은 좋으며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통사고, 다른 사고들, 폭력, 자살, 폭행 등 특수 원인으로 죽을 확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수명은 스웨덴이 가장 높고, 포르투갈이 가장 낮다. 이러한 특수 원인에 의한 사망은 청소년들의 경험부족과 위험스러운 행동 때문이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성 청소년들보다 자살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 이러한 위험스런 행동의 한 요인으로서의 음주는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 높다. 이들 국가에서는 남자나 여자 청소년 모두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에서는 남자 청소년들만 음주율이 높다. 그러나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나 프랑스와 같은 카톨릭이나 그리스정교 국가들에서는 음주가 청소년 문화로 덜 여겨지는 것 같다. 1990년대에 많은 국가들에서 청소년의 흡연 인구는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특히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높다.

많은 보고서들은 많은 문제들이 남자와 여자 청소년에게 다르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국가로부터의 낙태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정보가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낙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성교육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피임 기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낙태는 영국, 덴마크, 핀란드와 같이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가족 중심적이 아닌 국가들에서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족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국가들로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 오직 한 국가만이 경제적인 지원 면에서 가장 가족 중심적인 국가이고, 이들 중 두 개 국가가 비교적 덜 가족 중심적인 국가들에 속한다. 직업은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시되고, 핀란드와 서독에서 가장 덜 중시된다. 친구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국가에서 가장 중시된다(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비록 어떤 나라들에서는 근년에 인종차별주의가 증가하여 왔지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점점 더 관용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인종차별주의는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높은 편이고,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에서 가장 덜 행복하다.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경제적인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들”보다는 삶의 질과 관계있는 “후기 물질주의적 가치들-post-materialist values”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청소년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 중 많은 청소년들은 아직도 주로 물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것 같다. 따라서

성교육 뿐 아니라, 음주, 흡연,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혹은 캠페인을 포함하는 교육, 자각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그리고 예방 방책들이 요구된다. 상담의 제공은 자살하기 쉬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정복하는 것 또한 성장하는 통과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서비스들은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과감한 그리고 흥분되는 활동들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건강을 해치거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덜 주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인 것 같다. 남자 청소년들에게 모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많은 교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교육을 덜 받은 남자 청소년들을 위해 여행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과 결합될 수 있다. 유스 서비스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대안적 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집을 떠나는 것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각 국가마다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 대해서 유럽 전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사회로의 통합 기회를 모든 젊은이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댈 수 없거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될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가정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심해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육, 훈련 그리고 경력은 전통적으로 남자 위주로 만들어져 왔고, 남자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맞는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여성들 또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됨에 따라 직장 경력을 원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출산을 연기하거나 어쩌면 영원히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한번 교육-훈련-직장경력 사다리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슈를 부각시켜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다리를 떠났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하고 젊은이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고용 경력(employment careers)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길어진 교육경력과 여러 종류의 직장들과 가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과 함께 보육정책들, 육아휴가 정책들을 생각해 내야 한다. 유연한 고용과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것에 관계된 정책 속에 이러한 차원이 내제되어 있다.

4. 조직적 정치적 참여

공식 단체에의 참여는 민주적 시민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핵심 활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랜 그리고 강한 청소년 단체의 전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 지중해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는 적지만 증가하고 있다.
- 나머지 서유럽에서는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구성원인 청소년의 비율은 높지만 증가하고 있지 않다.
- 심지어 벨기에, 덴마크,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은 줄어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단체의 형태는 스포츠 활동들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스포츠 참여율이 가장 높은 반면, 벨기에와 지중해 국가들에서는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스포츠 조직에 속해 있다. 종교 관련 회합에의 참여도 국가마다 다르다. 청소년의 18%가 그러한 회합의 구성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치는 벨기에에 비해 8배이다

지중해 북쪽 국가들에서의 회원수의 정체 혹은 감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건들을 변화시켰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청소년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지난 수십 년 간 감소해 왔다. 젊은이들은 이제 조직에 얽매이기를 싫어한다. 또 다른 결과는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던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사업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청소년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청소년 문화와 관심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유연성을 지녀야만 하며, 단기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모든 서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전국적, 지역적, 지방적 청소년 위원회가 정치적 참여와 청소년 영향력의 주요 근원이다. 청소년위원회는, 그것이 청소년조직들의 사적인 보호 조직이든 공적인 청소년 기구와 국가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국가의 청소년위원회이든, 정치가들, 정부관리들, 청소년들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의 전통적인 통로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부여하기 위한 기구라는 전통적인 관점은 여러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일부만을 대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인구를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대표하고 있지 않다. 셋째, 구성원의 동기 혹은 조직에의 참여 동기에 변화가 있어 왔다. 구성원이 되는 대신 청소년들은 조직의 이용자가 되었고, 이들 이용자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 이념적 관심보다는 실용적 관심과 소비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청소년 조직이나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청소년들은 아니며, 청소년구성원들의 관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 청소년 연합, 청소년 조직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들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비판은, 지중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참여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것은 청소년 위원회 모델의 대안은 아니고, 청소년 의회, 연수, 청소년들에 관한 정보와 청소년들로부터의 정보 등 실험적인 차원에서 보충적인 모델들이 나왔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이 자원 조직들과 연합들에의 참여가 저조한 남부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참여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실험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조직 참여율을 높이고, 전통적인 대의제 청소년 조직과 연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지방 시위원회 혹은 지역적 청소년의회들을 조직한 반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코틀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국가적 청소년 의회를 설립하였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청소년의회들이 청소년들의 일반 선거결과이며, 어떤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회들이 제한된 의사결정권과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국가들은 청소년과 정부 담당자들과의 여러 협력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나 청소년조직의 대표들이 공무원 혹은 정치가와 만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나누는 협의체 혹은 연구집회를 마련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는 국가적 청소년 자문집단들을 만들었으며,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자료, 질적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원으로서, 유럽, 국가, 지역, 지방 선거에의 투표자로서, 청소년의회나 지역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의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선택된 국가들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젊은이들, 특히 처음 투표를 하는 젊은이들은 성인들보다 선거 참여율이 높으며, 국가의회나 지방의회에서의 젊은이의 비율이 너무 낮다. 비교 자료에 의하면, 정치조직이나 노조에서의 인구구성을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젊은이의 비율이 아주 작다 심지어는 아주 일부 젊은이들만이 친구들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한다. 정치적 참여의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좌-우 정치적 노선의 연결선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1/4이 넘는 젊은이들이 좌-우 정치 척도 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정치 참여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기구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뢰수준에 반영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지중해 국가들뿐 아니라 핀란드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신뢰수준은 비교적 낮다(30-35%). 국회는 몇몇 중앙유럽 국가들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다. 어쨌든, 국회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코 믿을 만한 기구가 아니다.

투표, 당이나 청소년조직의 구성원,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대표참여 등에서의 정치적 참여의 한계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지중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 유럽 국가들의 주요 청소년 문제이다.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를 하는 청소년 수의 감소는 대의제 민주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여겨져 이러한 동향을 막아보려는 많은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들에 있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주요한 정책이 되었으며, 많은 프로그램들이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 사례들로는, 핀란드의 원거리 민주주의 사업,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포럼과 청소년 국회, 포르투갈의 청소년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 시행할만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은 일반적으로 근접성원리에 의해 좌우된다. 국가나 유럽 정치보다는 지방에서의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논쟁과 참여를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지역적 관심과 청소년의 지역 문제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은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실험들을 지원하는 것이

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프로그램들과 사업들로부터의 경험들을 전파하고,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연결망을 만들고, 지역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Ⅲ. 유럽의 청소년정책 동향

Ⅲ

1. 청소년정책의 목적 및 방향
2. 청소년관련 법제
3. 청소년 행정체계
4. 청소년 정책의 주요 현안
5. 청소년정책 동향 및 평가
6. 유럽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
7. 유럽의 청소년정책모형

공 백

III. 유럽의 청소년정책 동향

1. 청소년정책의 목적 및 방향

1) 청소년 정책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청소년 정책과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 정책

국제법과 국제 통계 자료에는 청소년(youth)이 아주 잘 정의되어 있고 연령도 15세에서 24세 사이로 되어 있지만, 국가 청소년 정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정책의 역사가 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 정책을 젊은이(young people)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경우 젊은이란 일부 또는 모든 부류의 아동이 포함되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24세를 지난 연령층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어떤 유럽 국가들에서는 젊은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정책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 아동 정책(child policy)과 청소년 정책이 구분된다. 보통 이런 국가들의 아동은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성년자로 정의되며, 청소년은 10대와 젊은 성인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서로 중복되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것을 통합하여 청소년 정책 문제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전에 실시된 유럽 연합(EU)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조사의 자료를 기초로 보면, 문제의 국가들은 국가 청소년 정책의 주 대상 집단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청소년 정책이 출생 후부터 25/30세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핀란드).
- 청소년 정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25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청소년 정책이 11/13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
- 청소년 정책이 중등 교육 끝에서부터 25세나 30세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이러한 분류는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한 전문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부적인 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분류에서는 각 국가 내에서 사회 부문마다 청소년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류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청소년의 개념이 국가적, 역사적 전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³⁾

청소년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 즉 아동을 제외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과 포괄적인 개념 때문에 유럽 전체의 청소년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 개념에 맞는 전통을 지닌 국가들의 청소년 정책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청소년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과

3) 유럽에서 국가마다 청소년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자극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즉, 독일어 Jugendlichen(청소년)의 문자적인 의미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며 이것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반면에,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미국어의 adolescence(사춘기)와 teenagers(십대)라는 개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Stafseng, 2000a).

청소년 정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포괄적인 개념의 청소년 정책에서는 이 연령층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청소년 관련 법률이 특별히 제정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하는 경우이다. 일부 국가들이 청소년 특별법으로 청소년을 위한 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 때문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청소년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국가들에서는 종종 청소년 특별법에 비할 만한 규정을 아동과 관련된 법률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를 하려면 그런 법규를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을 젊은이(포괄적인 청소년 개념)로 정의하는 것과 사춘기(좁은 의미의 개념)로 정의하는 것의 이러한 차이는 유럽에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검토할 때 특히 의미가 있다. 즉, 청소년을 인력 자원으로 보는 접근 방식과 청소년을 문제아로 보는 접근 방식이다.

청소년을 주로 미성년자(법적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그 결과 성인으로보다는 아동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에서는 십중팔구 젊은이를 잠재적인 문제로, 위협에 처한 존재로, 그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반면에 더 좁은 관점, 즉 비교적 성인으로 보는 관점을 기초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을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상관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도 있다.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은 청소년을 문제아로 보는 이미지가 가장 명확한 나라이다. 한편, 청소년 정책이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2) 청소년 정책 대 청소년 사업

국가별 보고서를 기준으로 국가별 청소년 정책을 비교하는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policy)이라는 단어의 개념 차이이다. 분명히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들은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 즉 동적인 개념의 정책과 정적인 개념의 정책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국가적인 청소년 사업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 즉, 청소년 사업이 어떻게 조직되는가, 청소년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나라의 청소년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목표는 어떻게 달성이 되는가? 등을 중요시한다. 이런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정책을 전혀 구분하지 않으며, 주요 청소년 사업 단체를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본다. 이것은 정적인 개념의 정책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이다. 즉,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사업 상황과 동일하다.

이와 반대로 다른 보고서들은 변화 과정, 추세, 청소년 사업의 발전 과정, 그리고 청소년 정책 담당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 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청소년 사업을 과거의 청소년 정책의 결과로 보며, 정책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따라 주요 청소년 지도자가 반드시 청소년 정책의 주역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이해하는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국가의 전통과 상관관계가 있다.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의 전통이 길고 청소년층이 넓은 국가들인 주로 북유럽 대륙의 국가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정적인 청소년 정책 개념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조정이 된 청소년 정책이 비교적 늦게 도입이 된 국가들과 청소년 정책의 대규모 개정이 진행 중인 국가들-지중해 국가들, 영국, 덴마크-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개념이 비교적 동적이며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관련 조항에서 발견되는 최근의 변화와 정책 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부각된다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청소년 정책의 개념은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정책을 서로 비교하는 것의 주된 장애물이다. 보고서 작성 지침에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 영향을 주는 요소의 역할, 정책, 추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동적인 개념의 정책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해서 연구자들의 정적인 청소년정책 개념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청소년지도자들을 청소년정책자로 보는 시각을 막을 수는 없었다.

(3) 청소년 부문의 개념

서유럽의 청소년 정책에서 구별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요소들 중의 하나는 청소년 사업의 부문화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사업, 청소년 정책, 청소년 입법이 잘 정의되고 잘 구조화된 하나의 청소년 부문 안에 단일화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런 식의 독립적인 청소년 부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정책이 전통적인 부문들, 즉 사회 부문, 교육 부문, 문화 부문, 보건 부문 등에 분산되어 있다.

청소년 부문이 잘 발달한 국가들은 청소년부 장관 또는 청소년 문제를 특별히 담당하는 내각 부서, 즉 청소년 문제와 특정한 청소년 관련 법률을 주관하는 내각 부서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관련 법률은 여러 내각 부서, 공공 기관, 정부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청소년 관련 규정은 보다 일반적인 입법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모든 서유럽 국가들의 상태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의 중간 어딘가에 해당된다. 실제로 있어서, 모든 청소년 문제가 단일 청소년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반면에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통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을 청소년 부문이 있는 그룹과 청소년 부문이 없는 그룹으로 뚜렷하게 분류할 수 없다. 오히려 서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부문이 잘 발달한 국가들에서 독립적인 청소년 부문의 일부 요소들

만 존재하는 국가들로 연결되는 연속체 상의 어딘가에 해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 요인들, 즉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입법을 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 나오는 유럽의 국가들을 잠정적으로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 상당한 규모의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는 국가들: 청소년 정책이 주로 잘 정의되고 지배적인 청소년 부문의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들(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독일,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 소규모의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는 국가들: 청소년 정책이 부분적으로는 특수화된 청소년 부문과 연결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교육, 고용, 도시 계획 등과 같은 많은 수의 기존의 부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들(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 특별한 청소년 부문이 없는 국가들: 청소년 정책이 완전히 분산되어 기존의 부문들에 스며들어 있고 구심점이 없는 국가들(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해당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이 분류는 청소년 정책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이 독립적인 사회 부문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가만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분류는 사회사업의 수준이나 규모, 또는 청소년 관련 법규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국가별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부문이 잘 발달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정책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 부문에 의해 변색이 되고 제한을 받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부문의 일부로 정의되는 정치적, 행정적인

영역이 청소년 정책으로 간주되고, (교육, 훈련, 주택 공급, 보건 등을 포함하는) 그 외의 청소년 관련 문제들은 청소년 정책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에서도 상당한 정도까지 그러하다.⁴⁾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 부문이 잘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넓은 의미의 청소년 정책 개념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의 생활 조건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정책의 맥락에서 기존의 잘 알려진 사회 문제들을 파악하는 방식의, 여러 부문이 관련된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나온 국가별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정책이라는 개념에 장기적인 사회 현대화, 즉 기존의 사회 부문들을 탈피하는 현대화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정한 집단의 생활 조건과 그러한 집단과 관련된 공공 법규를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인식한다. 청소년 정책이 장기간 동안 잘 정의된 개념으로 존재해 온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현대화 과정에서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국가들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렇다.

2) 청소년 정책의 목표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발전사를 적은 몇몇 국가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두개의 상반되면서도 동전의 양면 같은 이미지가 유럽 각 국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원으로로서의 청소년과 문제거리로서의 청소년이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이미지에 따르면, 젊은이는 이상화된 미래를 대표한다. 즉, 젊은이는 현세대가 다음세대로 이전하고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며, 따라서 발전을 위해 최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사회적 자원인 것

4) 이러한 경향은 독일이나 독일의 국가별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다. 그러나 동시에 젊은이는 말썽거리, 위험요인, 상처받기 쉬운 시기로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어적인 수단이 고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두개의 이미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각각 중요성을 띤다.

동시에 떠오르면서도 상반된 이러한 이미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유럽전체의 청소년 정책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 이미지가 청소년 정책문서에 같이 병행되고 있다. 물론 시대와 국가에 따라 어느 것이 강조되고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지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의 이미지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사회개혁의 시대에 우세한 반면, 문젯거리로서의 청소년의 이미지는 경제위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강조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나 미디어에서 위험한, 일탈한, 범죄적인 혹은 폭력적인 등의 표현으로 청소년을 다루고 있다.

문젯거리보다는 자원으로서의 젊은이로서의 청소년의 대체적인 이미지(페러다임)는 정상적으로는 현 청소년 정책문안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이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 그러하다. 그렇지만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이러한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덴마크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서는 젊은이는 미래의 사회적 자원일 뿐 아니라 젊다는 것 그 자체가 자원이라고 기술한다. 스웨덴 정부는 젊은이의 신의, 창조성, 비판적 사고방식 등은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정부는 젊은이들로 대표되는 자원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미래의 자원으로서의 젊은이의 이미지가 갖는 주요 개념으로서 권능을 들고 있다. 이 권능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에 의해 진작된다. 핀란드에서는 이 권능이라는 개념이 쓰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미래의 건

설할 권리와 그에 필요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같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자원이자 힘이라는 점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정책 문안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젊은이들이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과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선도적인 그들의 역할은 지원되어야 한다(이탈리아). 젊은이는 완전한 시민이며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대리인이다(포르투갈).

비록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젊은이의 이미지가 위에 언급한 국가들의 청소년 정책서류에서 가장 현저하지만, 약간 강도는 덜해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적인 자원으로 간주될 때, 청소년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이러한 자원의 발전, 성장, 증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개발은 각국의 청소년 정책의 공통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다사다난한 젊음(덴마크), 활동적이고 실험적인 젊음(핀란드), 젊은이들의 욕구존중(벨기에), 사회적 개인적 기술의 지원(독일), 젊은이의 힘과 기회의 개발(네덜란드), 자력개발의 책임(노르웨이) 등이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젊은이의 발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개념들이다 또 다른 이해개념으로서 자치, 자립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이다.

그 모든 다양한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사회적 개인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각 국가별 보고서에서 보건의대,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이슬란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주된 청소년 정책의 목표임이 명백하다.

문젯거리로서 혹은 잠재적인 문젯거리로서의 젊은이의 이미지는 세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사회적 통합의 문제, 참여의 문제, 문화적 사회적 이탈 및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다.

성년 초기의 젊은이들을 사회적 제도 안에 통합시키는 것⁵⁾이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주요 목표이다. 독일의 경우 성장의 과정에서 사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포르투갈의 경우 젊은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융합을 진작시키는 것을, 그리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이탈리아는 새로운 세대의 사회귀속을 확보하는 것을, 프랑스는 직업적인 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청소년 정책개념을 대체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본다. 즉, 노동시장이나 주택시장에서 자신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일반적인 성인의 사회적 역할의 달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의 사회적 통합은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문젯거리 청소년(혹은 잠재적인 문젯거리 청소년)은 좀더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의 목표의 대상인데, 사회적 문제나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이탈의 방지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주요 개념이다. 방지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가난, 퇴학, 사회적 배타, 에이즈 같은 건강문제, 차별, 마약, 폭력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젯거리로서의 젊은이라는 개념의 특별한 변형형태는 젊은이들의 투표나 공개토론, 협동생활에의 비 참여율이다. 이번 연구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바로 이 문제를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개념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참여와 영향력 행사(핀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적극적인 공헌(덴마크),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참여(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들 자신의 삶에의 영향력 행사(노르웨이), 참여주의(스페인), 사

- 5)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합은 참여하는 것과 문화적 사회적인 기준에 순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별 보고서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좁은 의미로, 즉 성인으로서 노동 시장이나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고 가족 관계에서 성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 참여라는 개념은 시민으로서 공개 토론이나 선거나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것, 즉 정치적인 참여라는 의미가 강하다

회가 조직되는 방법의 영향력 행사와 그 행동의 일부가 되는 것(아일랜드) 등이 있다.

대부분의 정치적 목표와 주요 개념들이 자원과 문젯거리라는 상반되는 두개의 이미지 범주에 포함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개념들은 이러한 분류의 논외에 두어야 한다. 즉, 평등과 권리가 그것이다.

평등과 단결이 일반적인 주요 개념으로서 노르웨이와 스페인 문건에서 발견되는데 반해,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정책문서에서는 세대간의 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세대간 계약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계약은 그 나라의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젊은이의 권리는 그리스(총체적인 청소년의 권리), 아일랜드(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권리), 핀란드(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권리), 네덜란드(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각하기 위해 정보를 얻을 권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국가 목표와 주요 개념들은 어느 정도는 단지 다양한 국가전통과 청소년 정책내의 근본적인 우선 순위의 다양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의 구체적인 현 사회 문제들과 젊은이들의 실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젊은이 층의 실업률이 높은 나라들은 젊은이들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배제로 인해 가난이나, 퇴보, 이탈성의 형태로 빠지는 것을 막는 데 우선 순위를 두기 쉽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정치적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참여 정신을 선호한다. 더구나, 이러한 목표와 주요 개념들은 정책문안이 채택될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채색된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 간의 차이점이란 것은 반드시 청소년 정책목표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유사한 지 다른 지를 반영할 뿐이다

그럼에도, 정책목표와 주요 개념들 사이에는 청소년 정책의 다른 중

요한 특징과 관련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청소년 개념과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의 상호관련성을 지적하는 신호들이 있다. 정책문안에 있는 젊은이의 의미가 청소년, 즉 아이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나라들은 젊은이들을 상처받기 쉬운 집단, 따라서 잠재적 위험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좁은 의미의 성인 단계에 들어서는 청소년으로 이해하는 나라들은 젊은이를 인적·사회적 자원으로, 제대로 된 성장환경만 보장받으면 스스로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 여길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을 세 가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하나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국가들이다. 이들은 자원과 발달과정으로서의 젊은이를 강조하며 사회가 그들을 지원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주된 청소년 문제를 정치적 체제에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참여의 진작이 청소년 정책의 주된 목표이다.

다음은 지중해연안 국가들-이 경우에는 프랑스를 포함하여-과 영국, 아일랜드이다. 이들은 긴 청소년 시기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기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과도기에 접하게 될 위험 등을 청소년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이들 국가에서는 잠재적인 문젯거리로서의 젊은이의 이미지가 우세하며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젊은이들을 성인으로서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두 부류와는 달리,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이 두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참여와 보호의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청소년 정책의 주요 대상

청소년 정책의 주된 목표 집단을 제시한 국가별 보고서는 소수지만, 이 주제에 관한 한 가지 명백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특별히 인적·사

회적 자원으로서의 젊은이를 강조하는 국가들은 정책대상을 넓게, 전체 세대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에서 그러한데, 청소년 정책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의 정책문건에서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정책에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전통이 있다. 일반적인 체제가 실패한다고 해도 특정그룹에 대한 조치는 고려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공적인 행위가 직접 특정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정대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에 반대하는 논의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스웨덴).

자원으로서의 청소년과 문제거리로서의 청소년의 혼합된 의미로 보는 나라에서는 주요대상은 총체적 젊은이와 불리한 상황에 처한 구체적인 청소년집단 양자이다. 예컨대, 아일랜드의 두 가지 주요 정책목표를 보면, 첫째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젊은이들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이다. 이는 전통적인 주요 청소년문제 대책세력들에 의해 제공된다. 둘째는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층이나 소수 젊은이 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요즘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집단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청소년대상의 서비스와 특정 대상을 정한 서비스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아일랜드의 많은 청소년문제 기구들은 일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우선 순위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원칙적으로는 청소년 정책은 0세부터 25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 위험에 처한 집단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정책은 보호적 청소년 정책으로 불린다 이는 젊은이들이 좀더 쉽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특히 나이 어린 층과 불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의 상황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청소년 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치적 우선 순위는 늘 특정 목표 집단과 실업자, 젊은 이민자, 젊은 여자, 위험에 처한 젊은이(예컨대, 부랑자, 마약중독자, 소년범죄자 등)등과 같은 특별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의 발전·통합과 연결된다. 그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의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하면 목표대상은 교육체제내의 청소년 뿐 아니라 실업자, 소녀 및 젊은 여자, 젊은 농부, 대도시의 불우한 청소년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젊은이들(소년 범죄자, 중퇴자, 집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 거리부랑아), 소수자(젊은 난민, 취업이민자)등을 포함하고 있다.

잠재적 문젯거리로서의 젊은이 개념을 분명하게 우선시 하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주요 대상 집단이 불우한 청소년이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은 주로 사회적으로 배제될 운명이거나 그런 위험에 처한 이들, 즉 가정불화가 있는 청소년, 학교성적이 불량한 청소년, 가난한 마을의 젊은이,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청소년관련 법제

1) 청소년관련 국가법률

모든 서유럽 국가들의 법률에는 청소년 정책의 핵심 분야, 즉 교육, 사회 복지와 보호, 직업 교육, 취업, 범죄와 비행, 보건,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 참여 증진 등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을 미성년자와 성인들과 관련된 좀더 일반적인 규정 안에 포함시킨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관련 규정을 청소년 특별법, 즉 청

소년 복지, 청소년 감독, 청소년 보호, 청소년 지원, 청소년 사업, 청소년 후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함께 모아 두는가 하면, 어떤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관련 규정을 부문별 입법(사회 관련 법률, 보건 관련 법률, 교육 관련 법률, 문화 관련 법률 등)에 포함시킨다.

어떤 국가에 특별한 청소년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이 정치적인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특정한 역사적인 전통, 행정 절차, 그리고 공공 기관의 구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청소년 관련 법률은 독립적인 독특한 청소년 부문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여러가지 지표 중의 하나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소년 전담 내각 부서나 청소년 문제를 특별히 담당하는 내각 부서가 없는 국가들이나 청소년 정책이 매우 분산되어 있고 조정이 되지 않고 이질적인 국가들에는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아동과 성인 모두와 관련된 좀더 일반적인 법률에서 찾아야 한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는 청소년 전담 내각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유럽의 법률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청소년 지원 법률. 일부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사업, 청소년 후원, 또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입법에서는 법률에 따른 것이거나 자율적인-청소년 사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다룬다. 이런 유형의 법률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외 교육과 문화, 여가 시간,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 청소년 단체와 조직체들에 대한 공공 자금 조달도 이런 종류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이

런 법률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사이의 관계도 규정한다. 핀란드 청소년 사업법, 아이슬란드 청소년 활동법, 오스트리아 지역의 청소년 후원법, 벨기에의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의 청소년 지원 법령, (아직 제정되지 않은) 아일랜드의 청소년 사업 법안, 그리고 그리스의 청소년을 위한 법률안 등이 이런 종류의 청소년 법의 예이다.

-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률. 이런 유형의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사이의 한계를 정의한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법률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복지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들이 사춘기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과 필요할 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네덜란드의 청소년 보호법, 오스트리아의 청소년 복지법, 룩셈부르크의 국가 청소년 서비스 법, 벨기에의 청소년 보호법 등이 이런 종류의 법률의 예이다.

-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률. 이런 유형의 법률에는 가족 영역 밖에서의 생활, 즉 노동 시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오스트리아 지역별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 법에서는 공공장소에 머무는 것, 레스토랑, 호텔, 호스텔, 야영장에서의 숙박, 공공 극장이나 영화관 방문, 공개 무도회나 기타 문화 이벤트, 도박 참여,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청소년을 위협하게 만드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구매하는 것, 자동차 무료 편승 등을 다룬다.

리히텐슈타인 청소년 법령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청소년 관련법이 결합되어 있으며 청소년 사업,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내용이 하나의 법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령의 책임에 따라, 독일 청소년 서비스 정책은 개인적인 발달과 사회적인 발달의 증진, 차별 대우 철폐, 부모의 지원과 충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된 가족 모두의 긍정적인 생활 조건을 보존하거나 만들어 주

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 두 가지 종류의 법률은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청소년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후원에 관한 법(Log nr. 24/1970, 1970)과 복지에 관한 법(Log nr. 20/1992, 1992, 노르웨이의 아동 복지법)은 일반적인 청소년이 아니라 대다수의 연령 이하인 아동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청소년 관련 법률의 연령제한과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 자유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 아이슬란드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참여, 경제 등과 같은 문제에서 부모로부터 독립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유럽의 청소년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독립적인 가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Living Conditions of Youth in Europe의 보고 내용 참조).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연령수준의 이러한 차이는 아마 청소년과 관련된 후원, 보호, 복지법의 연령제한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동시에 그런 현실이 법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제한과 사회적 성인자격을 얻는 연령수준 사이에는 놀라운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

2) 국제법

국가 법률에서 국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별 보고서 작성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부 보고서에서만 국제관례 및 국제 사회의 다른 법적 도구들을 언급한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만 국가 법률에서 국제 연합 아동 인권 협약(1989년 11월 20일자 UN 협약, 1989)을 비준하고 이행한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들이 아마 이 UN 협약을 비준했을 것이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아동 인권 협약은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 협약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주요 참조 문헌인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에서는 청소년 인권에 관한 15가지 주요 협약 -대부분 국제 노동 회의에서 채택한 것임-을 강조하는데, 그 중 일부는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의 절반만이 비준했다(Angel, 1995: 1099ff). 각 협약이 비준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비준을 하지 않은 결과를 검토해 보면 재미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인권 관련법률

본 연구의 지침에는 국가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법적인 권리나 기본 인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단, 스페인의 보고서에서는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스페인 헌법을 언급한다.

청소년에 대한 일부 국가 법률의 서문에서 그와 비슷한 기본 인권 선언을 볼 수 있다.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회의 책임감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발달에 대해 지원을 받고 적절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SGB VIII, 1998. paragraph 1 of article 1). 비슷하게, 핀란드 청소년 사업법은 목표가 청소년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시민 활동에 맞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이 법령은 청소년 사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세대, 성별, 종교 간의 평등, 관용, 그리고 풍부한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Un 510, 1995: section 1)

청소년과 관련된 특정한 법령에서 것처럼 의도와 목적을 선언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나 고작해야 제한된 의미만 있는 것이지

만, 일부 국가들이 법조문에 청소년 정책의 포괄적인 목적을 어떻게 명시하여 포함시키는지 알 수 있다.

3. 청소년 행정체계

1) 유럽국가의 청소년행정 유형

(1) 청소년행정 분류기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관련된 국가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각 주가 자체 행정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연방 국가이며, 각 주 내에서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업무 분담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① 주 정부, 중앙 정부 차원

- 명확한 청소년 정책을 관할하도록 지정된 청소년 담당 내각 부서가 있는가?
- 청소년 정책이 주로 한 내각 부서에 할당되어 있으며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이 임명되어 있는가?
- 청소년 정책은 몇몇 내각 부서에서 함께 처리하는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 청소년 정책을 여러 내각 부서 사이에서 조정하는가?
- 청소년 정책을 여러 내각 부서 사이에서 조정하지 않는가?

② 주 정부, 행정적 차원

- 청소년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하나 이상의 전문 담당관이 있는가?
- 청소년 관련 법률이 실행되고 있는가?
- 보다 낮은 수준에서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기구, 청소년 기관 등을 감독하고 있는가?
- 청소년 사업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가?
- 청소년 분야의 활동가들에 대한 조정과 자문이 행해지고 있는가?
-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담당관이 전혀 없는가?

(2) 유럽국가의 청소년행정 유형

이러한 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나오는 18개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전문화된 청소년 부서와 청소년 담당관(또는 그와 유사한 행정 기구)이 있는 국가. 이 그룹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프랑스가 포함된다.⁶⁾
- 청소년 정책이 한 내각 부서에 맡겨지고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담당관이 처리하는 국가. 이 그룹은 스웨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로 구성된다.

6)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전담 장관이 있지만 그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어 완벽하게 조정이 된 청소년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부서에는 개입 있는 전문 영역이 있으며 그 영역에서 체계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실행 즉, 레크리에이션은 *Ministe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가 담당하고 통합은 *Ministere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e*에서 담당하고, 학교 교련 문제는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에서 담당한다

- 청소년 정책을 여러 내각 부서들이 함께 조정하지만 청소년 담당관 (또는 그와 비슷한 기관)이 없는 국가. 이것이 덴마크의 경우이다.
- 청소년 담당관이 없고 청소년 정책을 여러 내각 부서들이 함께 조정하지 않는 국가. 이 상황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영국에 적용된다.

2) 청소년정책의 결정 및 조정

(1) 청소년 정책의 국가적인 조정

국가마다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은 국가의 구성, 행정부 체제, 정부와 행정부의 업무 분담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와 독립적인 비 연방 정부의 정책 조정 과정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국가적인 입법 선례의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 기관의 여러 레벨 사이의 관계에 가려지게 된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몇 가지 주요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이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보다는 청소년 부문이 잘 발달된 국가 내에서 좀더 체계적인 형태의 협력이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① 독립적인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거나 제한된 형태로만 조정한다.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정책 조정에 대한 결론이 매우 짧고 명확하다. 즉, 다양한 청소년 관련 부문들 사이의 국가 차원의 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덴마크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부와 부서간 위원회가 여러 부문

사이에서 가볍게 조정을 한다. 하지만 국가적, 지역적 공공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들 사이에서 청소년 관련 규정이나 청소년 정책을 수직 형태로 조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덴마크 청소년 협의회들의 비정부 청소년 단체들이 조정 능력을 가질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 산하 단체는 정치가들, 그리고 중앙 행정부와 잘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 협의회들의 회원 단체들은 지방 정치인과 지방 자치 단체의 청소년 담당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체계와 협의회들의 조직적 재정적 능력 덕분에 덴마크 청소년 협의회는 지방 정부와 국가 기관 사이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직 형태로 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상황도 비슷하다. 수평 조정과 수직 조정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젊은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 조정 수준이 낮은 국가의 또 하나의 예는 아일랜드이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 및 훈련 부문에만 정책 결정 요소들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전통이 존재한다. 아일랜드에서는 몇 년 동안 청소년 정책의 초점을 교육과 훈련에 철저하게 맞추었으며, 이 영역 내에는 정교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체계가 존재한다. 작년에 정부는 법령을 기초로 이러한 체계를 공식화하려는 청소년 사업 법안을 상정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보건부, 교육부, 법무부의 책임(소년 재판, 아동 보호, 무단 결석, 무주택 청소년)이 서로 중복되고 이를 국무 장관이 조정하는데,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수평 조정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영역이 형성된다. 그 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가난, 건강, 알코올과 습관성 물질 사용, 실직 등과 같은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임시 부서간 위원회가 젊은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주요 청소년 부문이 존재하는 국가들

청소년 전담 내각 부서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내각 부서가 청소년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수준의 수평적인 조정과 국가, 지역, 지방 기관들 사이의 전체적인 수직 조정에도 적용된다.⁷⁾

룩셈부르크처럼 청소년 부문이 잘 정의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청소년 정책 조정이 여러 청소년 정책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명확한 책임과 체계화된 업무 분담을 기초로 통합된 체제에 집중된다. 내각 부서들 사이에서 청소년 문제를 조정하는 일은 없지만, 정부의 청소년 부서가 젊은이들과 관련된 모든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을 쥐게 된다.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 사이의 조정은 상급 청소년 협의회라고 하는 정부의 청소년 협의회에 위임된다. 이 청소년 협의회는 내각 부서 대표자, 룩셈부르크 청소년 총회(즉, 국가 청소년 협의회)의 대표자, 그리고 그 외의 청소년 단체들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 상급 청소년 협의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하며 청소년부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각 부서들을 통해서도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스페인에서는 국가 청소년 정책 조정이 내각 부서간 청소년 위원회에 위임된다. 하지만 상당히 독특하게도 또 하나의 조정 수단이 있는데, 바로 스페인 청소년계획(Youth Plan)이다. 청소년계획은 중앙 정부가 시작한 국가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며, 지역, 지방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다. 청소년계획은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이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일상적인 정책의 척도가 되는 기준 골격이며, 주로 정치적인 희망이 그대로 반영된다. 중앙 정부, 지역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7) 스페인은 이 규칙의 예외이다. 스페인에서는 내각 청소년 및 아동 위원회가 정부의 여러 내각 부서와 부처 사이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공공 정책을 조정한다.

(2) 청소년 정책의 수직적 조정 및 정책조정수단

국가별 보고서들은 정부와 행정부의 여러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다양한 행정부 기관과 조정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부의 여러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권력 관계가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좀더 흥미진진할 것이다. 분명히 청소년 정책을 분산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에서 이상적이며, 여러 보고서에서는 지원(subsidiarity)의 원칙, 지방 정부의 자율성,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별 보고서에는 중앙 정부, 지역 정부, 지방 정부 등의 업무 분담과 이러한 업무 분담이나 조정에서 사용되는 정책조정 메커니즘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⁸⁾

청소년 정책을 분산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방에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국가들은 중앙 집권식 정부와 행정부가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던 반면, 어떤 국가들은 지방과 지역별로 행정력과 행정 기능을 분산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가별 보고서만으로는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의 분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추출해 낼 수 없다. 각 보고서는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청소년 보호나 청소년 후원과 같은 문제에서 입법과 법 집행은 Federal Regions의 임무이고, 연방 청소년부는 모든 법안과 정치적인 조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을 담당한다. 연방 정부들에서 나온 다른 보고서들에서는 이처럼 적법성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예로, 아일랜드 보고서는 정부가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에

8) 독일 보고서는 예외이다. 독일 보고서에서는 자금과 입법이라는 정부의 두 레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정책조정수단이 있음을 언급한다.

게 진정한 의사 결정과 권한을 되돌려주는데 전념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 개발은 아직도 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 정책 처리 과정에 대한 이런 종류의 연구 자료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구할 수 없다. 최소한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보고서에는 청소년 정책의 조정에서 중앙 집중의 정도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잘 정의된 청소년 부문과 중앙 집중화된 청소년 정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 형태의 국가들에는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지만,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체계가 잘 발달해 있고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내각 부서가 존재하고 담당관 또는 그와 비슷한 기관 형태로 중앙 집중식 청소년 사업 관리가 잘 발달해 있는 비 연방 국가의 경우, 상하식 청소년 정책 처리 과정이 존재하며 지방 정부에 청소년 정책을 위임하는 부문은 취약하다.

적어도 포르투갈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포르투갈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은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반면, 지방 자치 단체는 청소년 정책 내에서 극히 제한된 권한만 지니고 있다.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의 청소년 서비스가 잘 발달해 있지 않은 그리스에서도 이 동일한 상관관계를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며, 사실 지역이나 지방의 청소년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다.

3) 의회 위원회의 역할

국회 내의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상임 위원회에 대한 질문과 정당이 청소년에 대한 특별 의회 대변인을 임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다루는 국가별 보고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자료(European Steering Committee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CDEJ), 1998)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 특별 위원회가 있는 것은 스페인 상원 밖에 없다고 한다. 어떤 의회는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것이 룩셈부르크(스포츠 및 청소년 협의회)와 독일(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협의회)의 경우이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청소년 정책 임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리스 의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부 의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문제를 특정 분과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것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의 경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는 청소년 문제를 특정한 한 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소년 문제들을 여러 상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4. 청소년 정책의 주요 현안

1) 청소년의 정책참여

(1) 기존 정치 제도에 참여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유럽 국가들의 젊은 성인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선거 연령은 18세나 19세이므로 청소년의 대부분은 투표권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중에서 기존의 정치 과정에 젊은 성인들이 참여하는 것, 즉 정당원으로, 또는 유럽의 총선, 지역 선거, 지역 선거의 투표자로, 또는 정당의 후보자로, 또는 의회, 지방 시 위원회 등과 같은 의원 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보고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청소년, 특히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더 든 그룹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투표율 분석에서는 처음 투표하는 사람의 경우 총선 참여율이 총 투표율에 비해 2-10 퍼센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나 정치 참여에 관심이 없다(영국)고 언급하며, 덴마크에서 나온 수치 자료에서는 당선된 지방 의원과 시 의원 중에서 26세 미만은 1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자, 정당원, 의원 입후보자, 의원 단체 구성원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존의 방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국가별 리포터들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성인들처럼 기존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협의회, 청소년 의회 등과 같이 청소년 세력을 위하여 남겨둔,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별하고 제한된 채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2) 청소년 협의회

모든 국가별 보고서에서 전국 규모의 청소년 협의회와 지방 수준의 청소년 협의회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의 주된 근원으로 강조되었다.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산하 기구이든 공공 청소년 기관과 주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주립 청소년 협의회이든 간에, 청소년 협의회는 정치인, 정부 기관, 청소년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통로이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른 방식의 청소년 참여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협의회 모델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실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청소년 의회, 워크숍과 위원회 제도, 청소년에 대한 정보와 청소년들이 제공하는 정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운동 등과 같이 청소년의 영향력을 보완하는 모델로서 도입이 되고 있다(우선

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이런 추세를 설명하지 않지만, 청소년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내버려두는 기존의 모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첫번째로, 청소년 협의회는 청소년들 중에서 소수만을 대표한다. Study of the Youth Conditions in Europe의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스포츠 단체들을 제외하면 15-24세 연령층이 구성하는 단체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10-20%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40%에서 50%이다.

두번째로, 청소년 협의회는 청소년 인구를 사회적인 면에서 균형 잡히게 대표할 수 없다. 청소년 조직과 단체들의 회원과 참여자들의 사회적 프로필을 보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단체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문의 여지없이 알 수 있다.

세번째로, 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들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이념이나 조직체의 민주적인 구조에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제공되는 서비스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조직과 단체의 회원(member)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되며, 이러한 사용자들 중의 많은 수는 활동에 대한 이념적인 관심보다는 자원 단체에 대한 실리적인 관심과 소비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네번째로,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협의회는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청소년인 것은 아니다. 청소년 단체의 조직 체계에서 활동적인 청소년 지도자들이 젊은 사람이 아닌 경우는 매우 흔하다. 하지만 청소년 회원들의 관심을 잘 알고 있는 성인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3) 청소년 의회

본 연구의 18개 국가 중에서 11개국에서 청소년 협의회와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과 같은 국가들은 전국 규모의 청소년 의회를 설립한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지방 청소년 협의회나 지역별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였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런 종류의 청소년 의회 단체들이 청소년 내에서 실시한 총선에서 구성되었으며 제한된 것이나마 의사결정권과 자체 예산권(독일, 덴마크)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의회 단체를 어떻게 선출하였는지, 역량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등을 명시하지 않는다.

(4) 워크숍과 위원회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청소년과 정부 기관 사이의 대체 협력 방식을 연구하여 전국 규모의 특별 협력 단체, 즉 워크숍을 만들었다. 이러한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의 대표자들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National Youth Debate라는 청소년 토론회가 매년 반복 개최된다. 이 청소년 토론회 중에 10-18세 그룹에 속하는 100-200명의 젊은이들이 정치인이나 정책 수립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의제에는 교육, 안전, 개발도상국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아동이나 젊은이들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된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는 국가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Youth Forum이라고 하는 영구 자문 그룹이 있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전역에서 선출된 15세와 26세 사이의 16명의 위원들로 Youth Forum for Democracy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들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폭 넓은 청소년 그룹을 대표한다. Youth Forum for Democracy는 정부의 자문 위원회이며, 이 포럼에 위임된 일에는 국가 정책, 교육 제도,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청소년들의 참

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안들이 포함된다.

(5)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및 청소년들이 제공하는 정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통계 조사 데이터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한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이 모니터 체계를 확장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 정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말을 듣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독일에서는 일부 지방 정부 기관들이 아동 및 청소년 포럼과 그 외에 개방된 형식의 토론 모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견해와 관심을 지방 정치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핀란드 정부 기관들은 청소년바로미터(Youth Barometers), 다양한 연구 조사, 특별한 청소년 연구 프로그램, 젊은이들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뱅크 등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정하였다.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보 제공자로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보완을 하였다. 즉, 아동과 청소년들과의 그룹 인터뷰, 일기, 물리적인 환경을 그린 그림, 젊은이들이 그린 삽화 등을 이용했다. 소위 말하는 미래 워크숍 형태로 조직된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한 오스트리아 실험의 저변에는 청소년을 정보 제공자로 사용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그런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주제를 접하고 다루어 보게 된다. 그런 미래 워크숍에서는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합의 를 얻어야 하며 워크숍의 결과는 정치인들에게 제시된다.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적어도 두 개의 국가,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자극하는 도구로 미디어 캠페인을 사용했다. 핀란드 총선에서 청소년 투표

을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대중 매체와 학교에서 캠페인을 마련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전국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벌여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었다.

(7) 청소년의 공개 토론 참여

국가별 보고서 중에서 청소년들의 공개 토론 참여를 자극하려고 시도한 예를 언급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독일에서는 도시 계획 규제법에 계획과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끼워 넣었다. 이것은 지방 수준에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자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젊은이들의 통신망 역할을 하게 될 가상 청소년 국회(Virtual Youth Assembly)를 설립할 계획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종류의 가상 네트워크의 예는 아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생긴다고 해도 일반적인 공개 토론에 청소년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주요 청소년 조직체 및 단체

전국 규모의 청소년 협의회나 그 외의 다른 종류의 산하 단체들 외에, 국가별 보고서들에서 전국 규모의 어느 청소년 조직체와 단체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체인가에 관한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 분명히 대부분의 연구 대상 국가들(정치적 국가, 종교적 국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가,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 노동 조합 주의 국가, 문화적인 국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조직체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회원 자격, 지방 단체나 분회의 수, 리더나 강사의 수 등과 같이 규모를 알려주는 정보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될 것이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만한 청소년 단체는 종교적인 단체 밖에 없다.

(9) 종교적인 청소년 단체

역사적으로 교회는 주요 청소년 사업 단체 중의 하나이며, 아마 아직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보고서들은 몇몇 경우에만 종교적인 청소년 단체를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런 단체가 정치적인 주요 세력이거나 유일한 주요 청소년 사업 단체인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아일랜드의 보고서는 많은 수의 종교적인 청소년 단체들을 언급하며, 특히 청소년과 성인 지도자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교육, 이벤트, 활동을 지원하는 기독교 청소년 협의회를 부각시킨다. 이 단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청소년 정보 센터와 범죄 줄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는 전국 규모의 교회 내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YMCA와 YWCA(기독교청소년회와 여자기독교청소년회)는 전국적인 규모로 활동 중이며 기독교 청소년 사업의 국제적인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이러한 단체들이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핀란드에서는 복음주의 루터 교회가 가장 큰 규모의 청소년 사업 단체이며 1,200명 이상의 직원들과 30,000명 이상의 훈련된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십대 및 젊은이들과 협력하는 방대한 규모의 청소년 사업을 이끌고 있다. 또한 핀란드 정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사업, 특히 스카우팅 클럽과 청소년 클럽을 마련하고 있다. 전부 합해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핀란드 청소년의 10%가 종교적인 청소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보고서에서는 그리스 정교회가 정부 기관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정교회는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주일 학교와 하계 수련회,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이나 지방 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개발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하는 역할은 논의되지 않았다. 과거에 리히텐슈타인의 교회가 주요 청소년 정책 관련 단체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청소년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10) 정치적인 세력으로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농민 운동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은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세력 중의 하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도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가별 보고서 중에서 우리 시대의 정책 관련 세력으로 노동 운동과 손을 잡은 청소년 단체를 명시한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 청소년 노동 단체들은 언급이 되지만(예를 들면 독일과 덴마크의 보고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국가별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청소년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별 보고서에서 청소년 정책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에 부여한 우선순위(및 노동 시장 정책에 부여한 더 낮은 우선순위)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노동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는 청소년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농업 부문 내에서의 청소년 운동은 이전의 중요성을 많이 상실했다. 젊은 농부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보고서에서만 언급이 되며, 적어도 포르투갈에서는 젊은 농부들의 단체가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줄 힘이 거의 없다.

이탈리아의 경우가 예외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학생 운동은 분명히 국가 정책, 즉 청소년 정책과 일반적인 정책에 미치는 이전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적어도 학생 운동은 이탈리아의 보고서에서만 언급이 된다.

청소년단체들과 정부와의 관계는 변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청소년 조직체와 청소년 단체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인 리더와 강사들이 운영하는 사설, 비영리 단체들이었으며, 법령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요즘은 청소년 단체

들이 국가나 그 외의 공공 기금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단체 운영은 대체로 법령에 따라 정해지거나 법령에 맞게 수정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인 청소년 사업과 법령에 따른 청소년 사업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이 재원지원(subsidiarity)이라는 원칙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 협동조합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형태로 향하는 추세도 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현대 청소년 단체의 성격을 포함하는 유사 비정부 단체(quasi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런 발전으로 인한 영향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국가에 있어 청소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에는 지역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체와 단체들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서유럽 국가들, 즉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대체 형태의 청소년 참여를 거의 시도하지 않는 국가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분명히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단체 회원율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대표형 청소년 조직체와 단체들을 강화하고 끝으로 정부 기관과 제3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포르투갈의 보고서에서는 정부 기관이 청소년 단체와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청소년 단체들은 이런 종류의 협력에 참여할만한 역량이 부족하다. 청소년 단체의 무대인 포르투갈 전국청소년위원회(Portuguese National Youth Council)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정의하는데 기여하는 것보다는 내부 갈등에 더 관심이 많다 또한 청소년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는데 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공공 기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데도 공동 참여 수준은 여전히 낮은 스페인에서도 상황은 다소 비슷하다. 참여 수준이 낮은 청소년 단체로 인한 결과는 지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많은 지방 정부 기관은 청소년 협의회를 설립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모임에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하다.

그리스에서는 청소년 단체에 참여하도록 청소년들을 설득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 모든 청소년 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자원 봉사 정신을 강화하고 지방별 청소년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연맹에서 국가적인 청소년 협의회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1999년에 상정된 새로운 청소년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 청소년 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며 지방 수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대표단이 구성될 것이다.

2) 교육정책

청소년 자격향상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행해지는 교육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교육훈련에 관한 놀랄만한 수의 정책 이슈들 중에서,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높은 비율의 중퇴자를 줄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 단계의 교육체제에서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충분한 자격의 부족과 실업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학위나 수료증을 받지 않고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이 정규자격조건을 갖춘 이들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훨씬 적은 임금밖에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그런 연구들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및 이탈리아에서 구상한 중퇴자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이나 졸업률을 높이려는 프로그램의 근거가 된다.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 중에 중퇴자를 위한 재기회 학교, 강화된 상담프로그램, 평생교육,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등이 있다. 정규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비정규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격을 인정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덴마크에 있는 공개청소년교육(The Open Youth Education)이 그 예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중요시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위험이 클 때, 교육체제가 충분한 자금이 없어 곤란을 겪을 때, 그 중요성을 더욱 커진다. 이탈리아와 영국은 보고서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야심에 찬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3) 젊은이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젊은이들의 취업을 통한 융화는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주요 관심사이다. 두 나라는 젊은이 실직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에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치솟았고 각국은 실업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 수나 다양성에 있어서 너무나 방대하여 이 보고서 내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들이 젊은이의 자세를 바꾸려고 한다는 인상을 준다. 즉, 그들의 자격을 격상시키고, 상담을 하고, 직업 관련 기술을 교육한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나이와 관련된 핸디캡을 보상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노동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4)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정책

젊은 층이 구입할 만한 여유가 되는 적절한 크기의 주택을 찾는 것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다. 네덜란드는 예외인데, 주택 문제를 소위 초보자 주택이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에게 알맞은 주택과 아파트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별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 문제는 문젯거리로 언급되고 성년기로 들어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모 집에서 얼마나 오래 같이 사는지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기간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는 추세다(아이슬란드, 덴마크, 스페인)

대부분 국가들의 보고서에서는 어떤 종류의 기존 국가주택정책의-특히 젊은 층을 위한 것이든 젊은이들에게도 열려있는 일반적인 주택 계획이든- 혜택을 언급하고 있지만, 요 몇 년간 주택문제가 청소년 정책의 주된 목표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젊은이 층을 위한 주택문제가 국가의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좀 더 많은 값싼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거환경의 개선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젊은이의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이 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보완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젊은이들과 성년기에 들어서는 이들을 위한 적당한 주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5) 건강을 위한 대책

청소년을 위한 건강정책은 단지 몇몇 국가의 보고서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틀 내에서 건강정책의 중요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단지 우연의 소치일 수도 있다. 건강문제를 강조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 등이다. 앞의 국가에서 젊은이는 마약, 알코올, 담배, 교통사고, 정신적 질병, 자살, 에이즈 같은 성관련 질병 및 생활방식 등과 관련되기 쉬운 위험한 집단의 전방에 선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명백히 조사하고 있지 않다.

산아제한이나 심대 임신문제는 핀란드, 그리스, 특히 영국(UK)에서 우선시 되고 있는데, 영국(UK)은 서유럽에서 심대 임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0년까지는 18세 이하의 임신을 반감하려는 프로그램이 영국과 북 아일랜드에서 세워졌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정부의 행동계획은 국가캠페인, 학교에서 성과 성관계에 관한 질 높은 교육, 임신방

지를 위한 부모의 참여,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과 임신예방대책, 소년들과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 청소년 범죄자와 같은 특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예방대책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성교육과 부모수업을 받고, 십대 부모의 교육훈련, 십대 부모를 위한 지원, 18세 이하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제공 등의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6) 일탈청소년을 다루기 위한 정책

특히 최근에, 폭력에 대한 염려가 증대되어 일탈행위를 한 청소년과 위기의 청소년을 다루기 위한 정책 안이 상정되고 있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처럼 노상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독일처럼 정치적 성향의 폭력문제도 있다. 최소한 덴마크에서는 폭력범죄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노상 폭력의 두려움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심지어 우익세력의 폭력이나 노상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청소년에 의한 일탈행위나 범죄에 관해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일탈청소년에 관한 정책들 중에서 두 가지 추세가 있다. 하나는 청소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그 자신과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 현재 우세하다. 흔히 청소년범죄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측이 이러한 사상을 지지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독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청소년 형벌기관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덴마크의 범죄예방계획에 의하면 청소년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까운 기관에 감옥과 유사한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범죄 예방적인 비(非)감금의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들이다. 이런 대안들 중에 공공봉사(핀란드와 덴마크), 명상(핀란드), 특별 청소년담당 경찰관제도(오스트리아), 청소년계약(덴마크), 가해자-피해자보상(독일, 네덜란드), 청소년법에 대한 경고조치(아일랜드) 등이 있다.

7)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

국가별 보고서들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은 요즘의 정치적 현안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 여가의 활용은 정규수업 이외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청소년활동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범위의 공공 및 제 삼부문의 조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몇몇 예외일 뿐이고, 여가정책은 전혀 중요치 않게 취급되고 새로운 정책과 실험은 얼마 안 되는 보고서에서 보여 질 뿐이다.

영국에서는 점차로 스포츠와 문화활동이 사회적 배제와 범죄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각인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는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술과 스포츠 모두 가난한 주거 환경 내에서도 건강, 범죄, 실업 및 교육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문화부와 매체 및 스포츠부에서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스포츠와 연관된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청소년스포츠단을 설립했다.

네덜란드보고서에서 강조된 것처럼,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청소년 여가활동의 상업화와 개인화를 가능케 했고 부분적으로 상업적인 서비스가 전통적인(자원봉사나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를 대체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클럽에서 적절한 컴퓨터 서비스와 온라인 접근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유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스페인 보고서는 독특하고 새로운 대책으로 상업적 서비스와 비상업적서비스의 경쟁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즉, '새벽까지 개방'이라는 청소년단체는 밤과 주말에 도시시설-학교, 도서관, 박물관, 스포츠 시설, 수영장 등-을 이용하여 문화 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제공한다. 밤 시간의 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가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실업

자와 궁핍한 젊은이들에게 상업적인 방문화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8) 청소년단체를 위한 정책

이 주제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들의 보고서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청소년조직과 단체에 대한 공적인 지원과 자금제공 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강력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청소년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중해연안의 국가들은 청소년연합조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한다.

예컨대, 포르투갈에선 단체운동의 강화가 청소년 정책의 대들보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의 공민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잠재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적당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유사한 예로, 그리스정부는 자발적 참여의 증진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독일의 동부 쪽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조직과 기타 비정부 조직에 의한 민간인 사회의 건설을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는다.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조직이나 단체회원의 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 회원수의 감퇴는 청소년 정책을 위한 조건들도 변화시킨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발적·법적 청소년활동은 지난 수십년 동안 쇠퇴하고 있다. 요즈음의 청소년은 다양한 젊은이들을 위한 불거리와 건물들 사이의 자유공간에서 움직인다. 그들은 더 이상 영속하게 조직화하려 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결과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사라진 점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청소년 사업과 정책이 요구된다. 청소년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청소년프로그램은 지속성을 잃고 청소년 문화와 흥미의 빠른 변화로 인해 아주 짧은 시간의 생명을 가진 프로그램이 나와야

할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청소년조직과 단체의 역할이 변함으로써 공공 기관이 젊은이들을 대표할 새로운 청소년조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을 대표하는 조직들의 독점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국내의 청소년 위원회들과의 많은 실험이나, 젊은이들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청소년 조직들의 참여 없이 행해졌다. 이는 각 지역의 정부가 조직화된 젊은이들을 희생해서라도 비조직화된 젊은이들을 청소년대표로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9) 강제 군복무와 군복무 이외의 강제 국가용역

대륙 국가들은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강제징집을 자발적인 직업군으로 대체했다. 프랑스, 네덜란드(1997년부터), 스페인(2003년 시행예정), 이탈리아(2005년 시행예정) 등이 그 예이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치적 이슈로 강제 군복무를 거론한 나라는 몇 안 된다. 독일에서는 군복무를 위한 청소년소집이 강력한 정치적 논쟁의 주제였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은 논쟁을 벗어난 얘기이다. 군복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되었고 대다수의 독일 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의무사회봉사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봉사의 기둥이다

군복무나 양심적인 이유에 의한 민간사회봉사가 덴마크 청소년들에게도 의무이지만, 강제징집대신 직업군으로 대체 하던가 여자들도 포함시켜 군복무나 사회봉사를 하게 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강제징집을 하는 국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의무군복무는 정치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분명히 의무병제

도를 가진 국가들은 양심적 반대자들을 법제화해 두었으므로, 군복무에 반대하는 권리란 지금으로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유럽 국가들 중 양심적 반대자들을 위한 대안 이외의 다른 강제적 국가 용역을 허용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자발적인 국가용역프로그램이 있다. 즉, 자발적인 지역사회봉사, 환경봉사, 자발적인 문화재보호활동 등이다.

10) 청소년 정책에서의 시장중심적 요인

국가별 보고서들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촉진시키는데 관련된 시장 중심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상업적인 여가 활동(영화, 음악회, 놀이동산, 인터넷 카페, 디스코텍 등등)외에는 이 문제를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어쩌면 기업체나 그 외의 시장 중심적인 요소들이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생략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국가별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예를 강조한다.

상업적인 기업체와 기금으로 청소년 대상 사업을 후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스웨덴의 보고서와 덴마크의 보고서에서만 언급이 되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할 것이다 후원이나 자금 지원이 상당한 양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사업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단체와 노동 단체들은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의 보고서들에서 강조되었다. 직장 단체와 노동 단체들이 직업 훈련이나 젊은이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것과 같은 청소년 정책의 특정 부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산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노동 시장 정책을 중재하는 국가와, 산업계가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노

동 시장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에서 그러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틀림없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몇몇 국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 청소년 연맹은 청소년 정책에서 이런 종류의 협력을 보여주는 특이한 예이다. 이 연맹은 주요 농업 기업, 산업체, 상업, 금융과 서비스 기업, 지방 자치 단체 및 몇몇 공공 기관 등에서 자금을 지원 받으며, 이 단체의 목적은 젊은이들을 전문 직업 생활로 끌어들이는 일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보고서는 전통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중심적인 공급업체들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현재,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청소년 서비스 중에서 그런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하지만,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보고서에서 강조된 것처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이 상업화되고 개인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며, 상업적인 서비스가 부분적으로나마 기존의(자발적이거나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체하였다.

민영 건강 보험 제도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에서는 아마 민영 건강 보험 회사가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정책의 발전에서 그런 업체가 하는 역할을 확실하지 않으며, 그런 기업을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어느 정도까지 분류할 수 있는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5. 청소년정책 동향 및 평가

1) 청소년정책 동향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수많은 새로운 정책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비교 보고서에는 범국가적 주요 추세만 포함되어 있다.

(1) “세대간 계약”과 늘어나는 청소년기

몇몇 국가에서는 “세대간 계약”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세대간 계약이란 세대를 기준으로 본 사회 보장 제도를 의미한다. 즉, 현재 성인 세대는 자녀 세대를 부양하면서 자기들이 늙어서 가족과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면 자녀 세대가 부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사회 보장 제도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다음 두 가지 추세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는, 인구통계학적 추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서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수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음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노년층에 비해 청소년층의 비율이 뚜렷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Indicator A4, 1995; Indicator A5, 2010).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세금과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되거나 노년 세대의 생활수준이 저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길어진 청소년기이다. 모든 서유럽국가에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과 훈련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더 늦추어지고 있다. 청소년기가 늘어나는 현상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단지 학업 기간이 늘어나거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

만은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기 동안 거치게 되는 새로운 사회화 모델 때문이기도 하다. 실험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인 연속적인 실험을 거치면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는 단번에 정의되지 않는다.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를 시험하고 다듬는 인생의 한 단계가 된 것이다.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새로운 청소년기 모델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비용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청소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세대 간 계약의 미래에 관한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을 얼마나 빨리 노동시장에 통합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좋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교육과 고용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도구들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변화되고 길어진 청소년기와 인구통계학적인 사회 구성의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 정책이 젊은이들을 젊은이답게 만들어 청소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성인들의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리를 잡도록 도와서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것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흥미 있는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대안을 지나치게 부풀리다 보니, 청소년 정책의 목적이 청소년을 개발하는 것인가 위축시키는 것인가 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이러한 토론은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정책의 주요 철학에 관한 문제이다. 즉,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느냐 문제거리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젊은이들이 성인의 세계에서 보다 쉽게 자리 잡게 하려는 목표의 정책은 오히려 청소년기가 인생의 골치 아픈 시기이고 축소시켜야 하는 시기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

의 경험은 이전 세대의 경험보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젊은이를 젊은이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청소년층이 특별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특수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굳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묘하게도, 젊은이들이 다른 그룹의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이론을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들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모든 나라에서 정책 지역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청소년기를 문젯거리나 자원으로 보는 지배적인 이미지의 차이와 청소년기를 개발하는 것과 위축시키는 것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청소년의 정치 참여

투표, 정당 입당, 청소년 단체와 조직 가입, 의사결정 기구에서 발표하는 것 등과 같은 정치적인 참여의 감소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 유럽 국가들에서 주요 청소년 문제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치 활동이나 전통적인 사회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이러한 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영국(UK)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강연과 정책들이 청소년 문제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주변 환경이 된다.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문제가 대화의 주제이며, 청소년 참여 자체를 목표로 보면서 동시에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핀란드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참여의 대안을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신민주주의(Tele-democracy), 인터넷을 통한

참여, 지방 자치 단체의 청소년 의회를 통한 참여 등이 있다. 주요 정책 영역 중의 하나(주요 영역은 아닐 수도 있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영향력 행사인 덴마크에서도 이러한 실험을 찾아볼 수 있으며, 몇몇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차원과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투표권이 없는 연령의 청소년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록셈부르크에서는 청소년부가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첫 번째 행동 계획을 실행했고,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도입했다. 노르웨이에서는 국가가 청소년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활동과 법안의 틀을 잡고 이행하는데 아동과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가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3) 청소년 정책의 명시화

EU내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최종보고서(European Commission, 1995)가 발행된 1995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보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명시적이고 조정이 되고 법적으로 공식화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추세 가 뚜렷해졌다. 이런 추세의 변화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등에서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서는 최근까지도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이 없었고, 기존의 각 사회 부문들 사이에서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일도 없었다.

이탈리아에는 1998년까지도 명시적인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에 이탈리아의 사회연대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Solidarity)이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대의 사회 진입을 촉진시키는 정책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라는 과제를 맡게 되었다. 그 다음 해, 이탈리아 정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대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최초의 청소년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정책을 조정하고 수립하는 부가 기능

을 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1997년까지도 청소년 문제를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내각 부서나 전문 기구가 없었고,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도 없었다. 그 당시에는 내각의 각 부서들이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부면을 개별적으로 만들었고 내각 부서들 간의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부터는 정부의 청소년 위원회(9명의 각부 장관들이 위원임)와 내각 부서간 청소년 위원회가 각 내각 부서에서 나온 정부 관료들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을 조정했다. 동시에 덴마크 정부는 많은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최초의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을 제출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주요 정책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우선순위도 높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규정은 아직도 다양한 부서를 담당하는 해당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덴마크의 새로운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은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 기획과 이행이라기보다는 여러 내각 부서들이 청소년 관련 규정을 가볍게 조정하는 것에 더 가깝다.

또한 덴마크에서 여러 부문이 관련된 청소년 정책 조정이 추세인지 일시적인 정책 변경에 불과한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청소년 정책 조정은 사회 민주당이 이끄는 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앞으로 비 사회당 정부가 이런 종류의 청소년 정책 조정을 지원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덴마크의 역사를 보면, 사회 민주당 정부는 청소년 정책을 장려하고 비 사회당 정부는 청소년 정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단일화된 청소년 정책을 만들려는 최초의 잠정적인 노력이 상당히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 분야는 여전히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즉, 중심점이 없으며 수평으로 보면 국가 차원, 지역 차원, 지방 차원에서 부서간 조정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었

다. 이런 상황은 주로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진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 지역, 국가 차원에서 시민권과 민주적인 참여가 염려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2) 좋은 실천사례

국가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방, 지역,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전 유럽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가 나온다. 다음은 각 국가의 리포터들이 좋은 관행의 예로 부각시킨 정책들의 개요이다.

(1) 교육

개방적인 청소년 교육은 덴마크에서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의 대안이다. 2-3년 동안, 참여자들은 독자적인 학습 과정, 즉 훈련, 교육, 실습, 자원 봉사, 여행 등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 과정은 개인적인 학습 계획과 주제를 기준으로 함께 묶여진다.

또래 교육은 젊은이들이 다른 젊은이들과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물론 그 주제는 토론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래 교육은 청소년들 사이에 정보를 배포하는 기존의 방법에 대한 대안이며, 학생 지도나 청소년 카운슬링과 같은 공식적인 상담 기관을 보완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것이 대화하고 정보를 배포하는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벌이는 안전한 학교(Safe School) 캠페인은 경찰, 법무부, 보건 당국, 정신 질환이 있는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기구 등과 협력하여 좀더 안전한 학교 풍토를 만들도록 자극하려는 것이다. 평가해 본 결과 학교 인근의 조직체들과의 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캠페인

의 주된 결과는 학교들이 보안과 안전 문제를 개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노르웨이의 환경 교육 네트워크(Network for Environmental Education)는 학교, 환경 기관, 연구 조사 기관, 자율적인 조직체 등이 관련된 공동 작업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취학 아동들이 수질, 에너지 사용, 학교 내부 분위기 등을 모니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를 지도로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고, 휴식하는 곳을 청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등의 일로 지방 당국을 도울 수 있다.

(2) 고용 정책

유럽에서는 청소년 실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모든 조치가 실직과 투쟁하는 것이었다.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좋은 실천 사례의 예로 그 중 몇 가지를 부각시켰다.

청소년 실직율이 매우 높았을 때, 핀란드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이 워크숍은 주로 지방의 기관이 운영하며, 6개월 동안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일거리를 마련해 준다. 목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워크숍은 실직과 실직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쓸모 있는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보고서는 학교 생활을 끝내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관련된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정책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의 일부에는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학교, 지방 기업체 등의 협력이 관련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전환 시스템이 잘 조직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자금이 지원된다는 평판이 있다.

덴마크는 청소년을 위하여 강화된 정부 규정을 실시했다.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소년은 6개월 간 실직을 하게 되면 최소 18개월 동안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이 그룹의 청

소년에 대한 실업 수당은 50%나 삭감된다. 그 때문에 청소년들은 일반 교육 기관에서 교육비의 할인혜택을 지원 받고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청소년 규정이 젊은 실직자들에게 실업 수당으로 살아가게 되기 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취업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청소년 규정이 청소년 실직을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데 기여한 것이다.

(3) 청소년의 정치 참여

지방 자치 단체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정책은 사회 여러 부문과 행정에서 지방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윤곽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덴마크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쌓은 경험은 성공적인 지방 자치 단체 청소년 정책은 달성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결과는 토론, 계획, 위임받은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 지방 자치 단체 행정부와 청소년 사이의 협력 등이다. 종합적이고 긴밀한 지방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참여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 관리들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통신 민주주의(Tele-democracy)는 핀란드에서 지방적인 문제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Idea Factory를 포함하는 인터넷 채널이다 이것은 지방 청소년들에게 시 행정 기관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인터넷상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고, 토론 후에는 프로그램 사회자가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제안을 해당 지역 청소년 협의회로 가져간다. 그러면 청소년 협의회는 그 문제를 시 행정 기관에 넘긴다.

포르스그룬모델(Porsgrunn Model)은 청소년들 사이에 지방적인 참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서는 모든 학교의 학생 협의회와 모든 청소년 중에서 선택된 지방 자치 단체 청소년 협의회를 포함하고, 상담 교사와 아동의 대변인을 임명하고, 청소년이 관리하는 즉각

적인 조치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 정치인과 청소년들 사이를 중재하고 매년 아동과 청소년 주간이라는 책을 발행한다(노르웨이).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포럼은 노르웨이 전역에서 선출된 15세에서 26세 사이의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들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청소년 그룹 전체를 대표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포럼은 사회의 청소년과 개발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 정부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조직체를 대표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작업 그룹(Group 2050이라고 함)은 노르웨이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의회와 의회의 특별 위원회, 그리고 정부와 정부의 내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하는 것이 포함된다.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의 이익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 프로그램과 대체 주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

청소년 자문 협의회는 정부 기관과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으로, 포르투갈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청소년 정책에서 좋은 관례의 뛰어난 예라고 한다.

스웨덴의 올해의 청소년 지방 자치 단체상은 매년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참여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지방 자치 단체에 수여된다.

(4) 청소년의 기본 권리

청소년의 권리를 좋은 관행의 예로 언급하는 것은 노르웨이 보고서 밖에 없다.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의 권리가 여러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14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행정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공 행정법,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정보를 공개하게 만드는 지방 정부법, 문서를 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 자유법, (청소년을 포함하여) 도시 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룹에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계획 및 건축법 등이 있다.

(5) 청소년에 대한 정책 관련 정보

스웨덴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위한 국가 위원회가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이 정보를 경험 은행으로 배포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국에 백 개 가량 존재하는 지방 청소년 협의회가 있다. 그동안 다양한 모델의 멤버십, 그리고 많은 작업 방식과 참여 형태를 시도해 보았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정보 제공자로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을 사용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현실, 경험, 관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생기게 됨을 의미한다. 청소년 정보 제공자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는 설문지와 면접, 학생 협의회, 아동 협의회, 청소년 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수집하는 것,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청문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조건에 대한 검토, 일기, 지도 도면, 대지 사용 등록 등이 포함된다.

3) 청소년정책 평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주요한 청소년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평가가 기본 과정인 것 같다. 그리스는 정책의 결과를 논한 보고서가 없고, 포르투갈에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해 최근에 아무런 평가도 행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청소년프로그램의 평가는 기본이지만 국내의 청소년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행해지지 않는다. 예컨대, 노르웨이에서는 대개 대도시로부터의 여러 방법들과 경험이 보고서로 꾸며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체계화되고 검토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지는 않는다. 덴마크에서는 국내 청소년 정책 조치들이 흔히 아무런 자금 없이 혹은 프로그램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자금 없이 시행되기도 한다. 만약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거나 완성된 후에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각국의 청소년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그 프로그램들이 문서화하여 발행되지 않으므로 평가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 청소년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의 부족

각 국가의 리포터들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부적절하며 이처럼 청소년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것 같다.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그리고 영국 제도에서 그러하다.

포르투갈의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비평적인 견해를 표현한다. 포르투갈에서는 공공 청소년 정책 평가가 부족한 것이 성공을 가로막는 일반적인 주요 장애물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바로잡고 재구성하는 것이 지연되어 잘못된 부분이 영구적이 된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일련의 진지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면 공공 기관이 의도한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다. 그리스의 보고서는 그리스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결과를 논하는 보고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의 유효성을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맺는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는 지방 차원의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이 아니며, 그 결과를 일반 대중이 쉽게 구할 수도 없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모니터링 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2) 청소년의 개인차와 편차에 대한 부족한 고려

국가별 보고서에는 청소년은 점점 더 개인화 되고 있고 더 이상 단일화된 연령층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동일한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 현대의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실험을 거치면서 형성이 되는 실험의 기간이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은 더 이상 단변에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시험을 거쳐 다듬어지는 인생의 한 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개인화는 이질적인 청소년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분절화는 차별화 된 방식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가지 모델의 청소년 사업만으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보고서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이질적인 개념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런 식의 비평은 독일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독일 보고서에는 표준화된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불평을 생기게 되는 예가 나온다.

(3)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청소년 정책의 주요 대상화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정책의 협소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청소년 정책에는 이질성이 필요하다는 사실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일부 국가별 보고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별한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주는 최근의 추세를 비평한다. 위험에 처한 그룹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책 방향, 개발, 자금 지원 등이 가장 최근에 식별하게 된 위험에 처한 그룹을 쫓아다니게 되고 청소년 정책 체계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필요에 파묻혀 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청소년의 개념을 편협하게 사회적 문제나 위험 요소에 연결시키게 되어 청소년의 개념이 사회적인 비정상인 또는 잠재적인 비정상인과 동일시 되게 된다(영국)

동일한 우려를 아일랜드의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즉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로 구성된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더 강조하게 되면 주류를 이루는 청소년 서비스와 대상을 정한 서비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된다.

6. 유럽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

유럽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에서 우리는 비교 방식을 통해 국가의 유형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비교 분석을 위해 국가적 유형은 경험적 기초를 제공한다. 게다가 청소년사업에 관한 유럽의 연구 문헌들은 이 해석을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비교 분석의 목적은 유럽 청소년사업의 상황을 정형화하고 추이와 유럽 청소년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발전 상황을 개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요가 작성되었으며 모든 국가의 유형은 포괄적인 틀 내에 요약된다. 이 개요의 비교 분석 접근 방식으로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개념화된 다른 용어가 첫 번째 적합한 유형학이 제안, 선택되었다. 이 예비 유형학은 청소년사업의 상이한 초점과 전후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그 배경, 즉 과업과 청소년사업에 야기된 문제들, 적용된 방식과 그것들이 전달되는 제도적 환경의 차이 등을 제공한다. 이는 청소년지도자들 교육과 훈련의 특정 구조, 문제, 그들의 교육과 훈련, 유럽 청소년사업의 관례가 현재 처한 프로페셔널리즘의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 관점들이다. 이러한 면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사업 '상황'의 임시 유형이 제안된다.

청소년사업의 유럽화 측면은 마지막 두 항에서 다루진다. 첫 번째 청소년사업에 대한 발안 및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평가된다. 두 번째로 지역 및 유럽 수준으로 청소년사업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몇

몇 권고 사항이 이뤄진다.

1) 청소년사업의 공식 용어 및 내재 개념

유럽에서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업 교육 및 훈련의 비교시 가장 두드러진 면 중 하나는 용어의 다양성이다.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난점 중 하나는 제보자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와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첫 눈에 남북한의 경계선이 남유럽국가의 대화자들은 때로 영어 용어 '청소년사업(youth work)'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함을 반영해 그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대답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일하는 젊은이')의 노동 상황을 언급했다. 그래서 공식 용어 측면이 중대함을 질의서에 포함하였다. 우리는 한 편으로 언어가 문화 가치, 인지 및 사회 현실의 해석, 즉 '정상적임'에 가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형태의 청소년사업 시행의 차이는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용어의 다양성이 단연 더 크다면(우리는 어느 정도 글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된 총 30여 개 용어를 받았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의 다른 전통, 다른 전후관계, 환경 및 다른 과업을 뜻하는 다른 다섯 가지 과업을 밝히는데 도달했다.

· 청소년지도자: 아일랜드나 영국에서 자명한 역할 외에 '청소년지도자'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독일, 네덜란드 및 벨기에를 포함 북유럽의 중심용어로 간주될 수 있다. 그의 영어 용어 지배성과 이 광범위한 나라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근접성외에 이는 소외 단체의 사회 배척을 막는 것과 관련 좀더 사회 정책 중심적인 과업뿐만 아니라 일반적 젊은이들의 여가 시간 활동의 규정을 포함 가장 포괄적인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주로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 사회사업의 하위 학문을 대표하는 반면 독자적인 직업주의가 발전했다. 좀더 급진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법을 주장한다.

공교육의 수립 및 확장 결과, 청소년 발달과 청소년 생활의 증대하는 역동성과 요구사항 같은 사실로 인해 청소년사업은 국가의 책임이다(모취와 라센, 1998).

• 문화기획자: ‘청소년사업가’가 북유럽에서 지배적인 용어라면 문화기획자는 로마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대응물이다. 이는 여가시간 활동단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관점에서 하계 캠프와 스포츠활동 공급조직은 청소년사업 및 집단 관련 활동을 개시하는 동등한 역할을 한다. 그 용어는 젊은이들의 여가 활동을 시작하고 육체가 없는 인생세계를 보상하는 필요성의 증대를 뜻한다. 남유럽과 관련 전후관계의 의존성은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정책에서의 다소 늦은 공공기관의 관여로 설명될 수 있다. 포괄적인 청소년 및 사회 정책 틀의 결여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향(여가 시간, 돌봄, 청소년실업 등)이 개발되었다(필칭어, 1993, 로렌즈 1996; 아킨과 도우어드, 1998).

•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은 한편으로 청소년이 공부하는 일반 학과목이다. 반면 여러 전후관계로 봐 청소년사업 전문인들은 사회사업가로 지칭된다. 다시 다른 함축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사업가가 사회사업가로 언급되는 곳에는 청소년은 처음에 특별한 욕구(그러나 때론 노인이나 지체장애자에게도 발생 등등)를 가진 자와 상충될지 모르는 사회집단으로 여겨진다.

• 사회교육자. 상이한(북쪽 대 남쪽) 전통에서 연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락에서 사회 교육학과 사회 교육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양 개념은 사회사업의 다소 자원 및 갈등 관련 학문간의 결합 필요성 및 청소년과 같은 취약한 사회집단들의 교육적 필요성을 언급한다. 학교 외적이나 비정규적인 학습 과정과 관련 이 교육적 측면은 복잡한 사회에서 사

회화와 사회 통합은 충분히 가족과 일상생활에 의해 제공될 수 없으나 제도적이며 전문화된 보상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이는 학문적 전문인과 과학에 기초한 학과목에 대한 사회사업의 전문 과학적인 움직임을 반영한다. 사회교육학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관련 있는 반면 사회교육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보완물이다(cf. 샤이플, 1997; 로페즈 블라스코, 1998).

• 청소년정책 전문인: 이 용어는 또한 청소년정책이 비교적 늦게 도입된 남유럽국가에 국한된다. 이는 구체적인 자격에 기초하지 않고 청소년정책이 그들 행정 조직에 기능을 첨가시키려는 지역 당국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반영한다. 여전히 이 용어는 단순한 행정 기능에서 청소년정보원의 관리나 1대1 상담 등 다양한 직업을 지칭한다(cf. 몽타나리, 1993; 사이벨, 1995).

2) 청소년사업의 사안과 방법 및 환경

(1) 과업과 사안

이미 이 마지막 항에서 청소년사업은 유럽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언급되었다. 청소년사업은 여가 활동, 비형식적인 교육 및 사회정치 책임의 혼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비형식적 교육과 사회정치 과업 목적에서 우선 순위는 크게 다르다.

•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의 조직은 아마 유럽 18개국 전역에서 청소년사업의 가장 흔한 측면이다. 아마 이 또한 어른과 젊은이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공식 청소년사업 성격을 유도하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밝히는 구성 요건을 형성한다 이는 도시나 시골같이 현

대 구조적 공간에서 청소년 생활을 보내는 젊은이들의 공간 및 기회의 감소뿐만 아니라 (성인 관련해서만 사회화와 비교하여) 별개의 생물학적 요구로서 청소년 생활의 사회화 필요성을 반영한다. 아주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특별한 사회적 요구가 필요한 것에 기인하는 때론 지정 집단으로 여가와 방지적 측면을 나타내는 옥외 활동의 증가이다(데이넷과 스투젠헤, 1999).

• 문화 활동: 1980년 이래 청소년사업 환경에서 조직된 여가 활동 측면 하에 원래 포함된 문화 활동(공연 예술, 구상 예술, 매체)은 청소년사업 내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일부 국가에서 문화청소년사업(독일), 사회문화사업(네덜란드, 벨기에) 혹은 지역사회 예술(영국)의 구체적 방향이 개발된 반면, 문화애니메이션과 청소년 문화와의 구체적인 관련을 밝히는 것은 이 조사에서 가능치 않았다. 심미적 표현과 작용의 내재적 가치 외에 청소년 문화에 기울이는 점증하는 관심은 청소년문화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간, 장비 및 숨겨 관련 젊은이들 요구에 대해 청소년사업가를 의식화 시켰다(윌리스, 1990). 이는 또한 공연 예술은 청소년 변화를 다루는 청소년의 능력, 즉 자신감, 사회 및 대화술, 오리엔테이션 및 전기 능력(반하 외, 2000)을 증대시키기 위한 뛰어난 수단을 나타냄이 입증되었다.

• 소외 집단과의 일/사회 배치의 방지: 청소년사업의 가장 강력한 합법성(자금 기관과 관련)은 소외 청소년 집단에 대한 책임에서 기인한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회하고 소란을 피우는 형태인 사회 갈등을 거리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정치 사회 '소방대'로서 특징 지워진다. 이는 사회공간이나 지역사회 관련 접근방식과 우연히 일치한다. 청소년 클럽이나 청소년센터는 때로 주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혜택을 덜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우선 목표 집단은 이주 청소년들, 거리 아이들, 소외 지역의

청소년들(교외), 혹은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청소년(예를 들면 동독)이다. 이 점에서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과 관련 개발된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청소년사업 수용’관련 격론을 유발시켰다. 이는 이 같은 젊은이들(주로 남자)은 사회적 인식 필요하고 그들의 비행은 사회적 인식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인식(규범적 명확성을 가진)과 인종차별주의자 폭력에 대한지지 사이에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간 사안과 종족 간 긴장의 증가로 청소년사업이 증가하였고,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을 다루는 청소년사업 관련 토론이 유발되었다.

• 청소년 실업: 광범위하고 문제가 다소 적은 관점을 채택하기 위해 청소년 실업 혹은 청소년 변인 관련 청소년사업의 태도는 미묘하나 여전히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남유럽의 경우 우리는 분명한 청소년사업(현지 청소년정책의 일환)을 발견하며 상담, 지원,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북유럽의 경우 청소년 사회사업가는 변화 체계에서 그들 역할에 대해 모호하다. 한편 그들은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과 관련 사회 배척의 위험 증대와 직업소개소와 훈련 기관 관련 관료주의 구조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을 인식한다(드루리와 데니슨, 1999). 반면 그들은 직업소개소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고 결정되는 조치와 관련 청소년이 문화적으로 알고 믿을만하다는 신뢰성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사회 소방대’로 오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그들의 책임을 지기 위한 교육 및 노동 시장 정책을 주장한다 스웨덴 경우 국가청소년법에 젊은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은 청소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장된다. 사회사업 경우 노동시장프로그램과 관련 있다면 잠재적인 자신의 전문 지식이 인정되고 가치 있음을 뜻하며 혹은, 국가 기관이 특정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그래서 기타 사회 및 정책 무대에 관계하는 청소년 사회사업의 책임을 줄임) 청소년들의 구체적 욕구와 필요 사항을

더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국가위원회, 1999).

• 성 문제: 청소년 사회사업에서 성 관련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발전을 경험했다. 여권 단체와 청소년 사회사업가에 의해 시작된 청소년 사회사업 관련 개발된 하부구조가 있는 나라에서 소녀의 구체적 초점은 발전되어 때로 명시적으로 소녀와 젊은 여자를 다루는 제안들을 이끌었다. 사회 정책과 사회학의 여타 부문과 유사한 청소년사업은 이중 감소를 유발했다. 즉, 성은 여성의 사회화로 변했으며, 소녀가 되는 것은 소녀의 힘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이해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는 동안 주로 북유럽에서 남성다움의 특정 인식과 소년의 특별 육구사항이 등장했다(다른 종족 배경 출신의 개인에 대한 남성 폭력 증가). 동시에 '주류 성'의 관념 하에 성을 사회사업, 사회 정책 및 사회학에서 횡단면적 원칙으로 소개를 목표로 정책이 개발되었다. 이는 동일 기회행동의 '탈 소수인종지역화'를 이끌 수 있는 반면 소녀와 젊은 여성이 젊은 남자와의 압력과 경쟁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관심과 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해치기 시작한다. 긍정적인 의도는 고사하고 '성 주류'는 성 정책에 있어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점차 비난받고 있다(SPI, 1999; 오웨슬러, 2000)

청소년 사회사업이 최근에서야 시행된 남부유럽에서의 소녀의 구체적 여가, 상담 혹은 교육은 규칙이라기보다 예외인 반면 성 측면은 노동 시장을 들어설 때 여성의 동등 기회와 관련해 제한받아 왔다

• 건강과 방지 청소년 사회사업의 방지 기능과 관련 건강문제(주로 흡연, 마약, 알코올, 성 관행)는 항상 모든 맥락에 있어 청소년 사회사업의 중심 과제 중 하나였다 게다가 주로 대 도시에서 크게 눈에 띄는 마약 현장의 존재는 돌봄과 통제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가두 소년 선도원제도

의 시행을 유발한다. 비록 청소년사업 맥락에서 안전에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측면은 청소년사업 목표가 최우선 과제(라센과 모취, 1998; 모취 1999)인 노르딕 제국들(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의 구체적 관심을 받았다. 또래교육(위 참조)의 가장 혁신적인 경험 이 이루어진 것은 정확히 건강 문제이다. 다른 나라(예를 들면 독일, 네덜란드)에서 보건 교육 및 상담에서의 구체적 접근 방식은 소녀의 구체적 청소년사업 맥락에서 개발되었다(cf. 프레스시스 외, 1996; 소년을 다루는 첫 번째 모델은 위터와 노이바우어, 1998을 보시오).

유럽 전역에서 과업의 배분 및 사안을 요약하는 시도는 단순화의 위험을 갖는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청소년사업이 청소년에게 문화적 인프라(주로 공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남부 유럽에서는 특정 프로그램(하계 캠프, 개별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문화적 활성화라는 개념이 지배적인 국가들에서는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개방적 시설을 중시하는 데 비해 공공청소년사업이 나중에 발표된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정보를 중시한다. 청소년실업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사업에 있어 청소년실업과의 싸움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방법

청소년사업에 적용된 방법은 한편으로는 젊은이의 실세계와 문화, 또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갈등 및 소외의 예방(그리고/혹은 은닉)에 기여하는 제도적 과제 사이라는 청소년 사회사업 중간적 위치를 반영한다.

- 개방적 청소년 사회사업-문화 활성화. 대체로 북유럽에서 발전된

개방적 청소년 사회사업의 중요 형식은 ‘공개 청소년사업’이다. 공개 청소년 사회사업은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모든 젊은이에게 주로 공개된 공간(예를 들면 청소년센터나 청소년 클럽)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간(그리고 시간, 즉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만 청소년 사회사업가에 의해 구조화되고 대부분 젊은이 자신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대부터 계속 공개청소년사업은 청소년문화발전을 위한 하부구조로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개방적 사회사업은 여가 활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가 활동에 상담이나 소외 청소년들의 통합 같은 다른 사회교육적 과제가 연결되어 있다(ECYC, 1999; 데이넷과 슈트르젠헤네커, 1999). 그러는 동안 비록 다른 출발점에서 왔지만 문화애니메이션의 개념은 또한 스스로 활성화와 참여를 언급하고 점차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조직되고 있다. 동일하게 상담, 갈등 해결 등의 활동에 개방되어 있다.

• 동료 교육과 참여: 공개 청소년사업의 원칙의 추가 개발은 스칸디나비아 사회사업 안전에 주로 상정된 ‘또래 교육’의 접근 방식이다(라우센과 모취, 1998; 모취 1999) 어른이 아니라 동료에 조직되면 교육 문제(예를 들면 건강 관련)가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할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 모델은 ‘활동적 시민’의 개념 언급의 증가와 관련 유럽전역에 관심을 끈다. 그러나 참여와 시민권의 함축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스티븐스 외, 1999).

• 상담: 소외청소년, 보건교육, 청소년실업 등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 점증하는 사회 정치적 기능과 더불어, 상담은 청소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와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접근방식이 있다. 공개 청소년사업에서 일방적인 문 앞 총계 상담(규정된 상담시간이 있는 특정 상담 기관의 상담 등). 사회사업과 사회교육화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상담기술의 상당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 청소년 정보: 청소년 정보는 최근에 발전된 청소년사업의 여러 흐름중 하나이다. 일부 국가에서 청소년정보는 추가적으로 기존의 청소년사업 하부구조나 청소년사업 현대화(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측면에 도입되었다. 이 경우에 청소년정보는 좀 더 복잡한 탈현대 세계에 나아가는 점증하는 도전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청소년정보는 그때까지 개발되지 않은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한 가지 도구였다. 게다가 청소년정보는 청소년관련 여가활동, 청소년문화 하부구조 및 젊은이를 위한 목표로 한 상담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진로 지도의 과제를 채택했고 젊은 기업가를 위한 보조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은 되었으나 청소년정보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책 및 활동을 조정하고 시작하는 강력한 도구로 밝혀졌다.

(3) 청소년사업의 환경 및 맥락

청소년사업의 다양한 발전 경로는 관련 행위자의 역할을 다양화했다. 국가의 수준에서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청소년 관련 입법에 의해 제한된다. 청소년사업가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주로 지방이다. 청소년 정책 및 실천의 가장 중요한 수준은 지역당국이다. 모든 나라에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능력이 가장 강하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것은 지역 수준이다.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정책이 다소 늦게 발전한 남유럽 국가(이 경우 프랑스는 분명히 남부 나라가 아님)에서 지역 당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청소년사업가의 고용주이다. 이는 청소년정책의 종합적 틀이 아직까지 짜여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공공적 규칙에 대한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정의 제약 때문에 자원봉사 분야의 역할이 증대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또한 노르딕 나라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사업에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비형식교육이 중요 수단으로 취

급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부문 및 자원봉사 분야간에 균형을 이루거나(영국, 네덜란드), 혹은 자원봉사 분야가 지배적이다(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청소년사업의 주변부적 성격이 가족이나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현대화되어 제3섹터라는 자원봉사 형태로 확대되는(제3분야), 공적 서비스 전달 행정 체계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 청소년사업의 전달과 관련되어 왔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발적인 청소년사업연합회가 상당한 정도로 공공 청소년사업과 상호 연관이 되어있다. 자원봉사분야를 국가적으로 통합하는 국가(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주변부의 제도화를 통해 자원봉사분야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획득한 행위자가 되어 공공행정에 높게 관여하는 등 세속화와 개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교회와 지역당국의 심한 반목 및 책임 전가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주의가 등장했다. 즉, 일부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구속으로부터 완전 분리된 반면, 일부는 교회적 고해관계의 현대화된 형태로서 협력관계를 띠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분야의 청소년사업의 전문화란 전통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공적 청소년사업의 전달 종사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단체 청소년사업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오는 동안(국가와 교회간의 전통적인 노동 분업 하에서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천주교 및 정교회는 예외), 청소년사업이 '사회교육학'과 '사회정치학'으로 전환되면서 민간단체의 공공당국 사업 대행이 증가하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재정에 의한 비영리부문과 경쟁하고 있는, 상업적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시장부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 이것은 다양화라기 보다는 공공 청소년사업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을 단지 여가나 청소년문화활동 차원에서 수용하는 경우(사회사업 참여자의 감소를 유발), 고도로 다양화된 여가 산업과 재정기구조로 인

하여 청소년사업단체는 참여자와 후원자를 늘리기 위해 단체활동을 보다 전문화, 상업화하거나 사회정치적 문제(소의 청소년, 방과 후 시설 등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청소년사업의 공공부문에서 비영리 및 시장부문으로의 전환은 실제적으로는 청소년사업의 분권화로써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 또한 공공복지의 삭감 및 사회복지의 시장화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공적 과업이 '외주되고' 비영리부문 및 민간부문이 최저가로 경쟁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청소년지도자의 사회 보호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cf. IRIS 2000).

3) 교육과 훈련의 구조

변화무쌍한 교육과 훈련 루트는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장치와 전통이 얼마나 다양한 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전통이 우리가 현재 청소년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나라들에서 보여진 다양한 직업적인 궤도들은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유사성과 공통점과 뚜렷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1) 전문화의 정도

청소년지도자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 대다수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전문화가 덜 된 일꾼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직업교육차원에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행하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학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훈련은 사회사업이나 사회교육학, 또는 사회학이나 교육학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국가 간의 차이, 즉 사회교육전통이 더 강한

국가인가 아니면 영국처럼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역사적 전통이 강한 국가인가에 따라 다르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에서처럼 직업교육에 있어 사회교육학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훈련체제에 차별화된 루트가 있다. 이런 국가에서는 청소년사업전문가를 위한 고등교육 훈련 루트가 어쨌든지 사회교육학, 사회학, 교육학으로 통합된다. 사회사업적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사회사업학과 연관되어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가 공통되어 있다. 이들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등의 몇 개 국가에서만 고등교육에 있어 청소년사업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2) 이론과 실천 : 중요시되는 사항들

청소년지도자 훈련교과목에 있어 공통된 것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정책, 교육학과 같은 여러 사회과학에서 파생된 청소년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기초지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목표 집단에 관련된 이슈(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자)나 건강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지식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적 수준에서는 청소년사업이 독자적 코스인가, 다른 학과에 통합되어 있는 코스인가에 따라 교과목이 다양하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교과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 법
- 사회사업방법(사례 관리, 집단 역동, 지역사회사업)의 방법들
- 개인적 기술(카운슬링, 응변술, 등등)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공통된 경향은 더 높은 단계의 훈련에서는, 경영과 사업관리기술이 고급교과과정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직업훈련단계에서는 음악, 연극, 춤, 비디오, 컴퓨터 등의 실용적 기술의 훈련이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습이 필수교과로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접근법은 전문학교와 기술종합학교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학술적 수준, 대학교 수준에서는 실제적 요소가 거의 없었다. 독일, 이태리, 아일랜드, 스웨덴의 대학들은 예외여서 훈련과정에서 실제적 요소가 10%에서 80%로 다양하다.

(3) 표준화와 자격부여

청소년지도자 훈련의 표준화와 자격부여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영리부문에서의 단기간의 다양한 훈련과정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비영리단체에 의해 조직, 운영된다. 몇몇 국가에서만 이러한 훈련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와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다. 벨기에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중앙조직이 이러한 훈련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로서 이러한 단기과정에서 습득한 자격증이 국가수준에서 표준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습득한 증명서가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장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비영리 청소년사업 분야에서 획득한 자격이 고등교육기관의 청소년지도자 훈련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훈련과정들은 현장경험이 있는 학생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4) 전문화

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청소년사업에서 더 높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그 배경과 출발점이 다르다.

청소년에 대한 공공정책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태리, 스페인, 핀란드의 경우, 전문화는 두가지 수준에서 진행된다: 한편에서는 지방당국이 청소년정책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창출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지방당국에 의한 청소년사업/청소년 정책 부문에서의 계속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이 보다 전문화된 양성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고 있는 지는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의 청소년사업이 개발된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역사가 비교적 긴 국가들에서도 같은 경향, 즉 보다 좋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유럽국가,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고등교육취학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청소년사업의 성격이 보다 전문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사업은 점점 더 위험청소년 등 특정집단을 목표로 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사업이 상담 등 전문적 과업과 기술과 통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화는 비영리부문의 전문화 추세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 공공조직이 수행했던 청소년서비스를 비영리단체가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조직의 전문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현상은 비영리부문에서의 활동경험이 고급화된 양성체제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일부지역의 경우는 비영리부문에서 일해 왔던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비영리부문의 경험의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이것은 명백하게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전략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개방화가 가능했던 것은 영국에서처럼 교육훈련체제의 유연화와 모듈화에 있다. 자격의 표준화 수준이 낮을 때는 고등교육에 접근기회가 일반 교육체제보다는 현장경험에 훨씬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든 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결과이다. 이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다른 훈련과정이 그렇게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이러한 훈련과정을 결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비영리활동 경험을 중시하는 하나의 예로 핀란드와 덴마크에 도입된 청소년지도자 견습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비영리부문의 활동 경험을 양성커리큘럼에 통합시켰다.

4) 청소년사업의 체제

본 보고서는 유럽국가의 청소년사업체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1) 보편주의 모형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시민사회 하부구조로 발달되어 왔다. 즉 청소년사업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참여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동시에 국가는 교육목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참여적 구조에 통합시키고 있다. 동료교육의 압력은 이러한 모순적 구조의 결과 중 하나이다.

(2) 자유주의/ 지역공동체 모형 :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최소복지국가에서는 청소년사업이 놀라운 정도로 보편적인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청소년 클럽 기반시설을 제공하려는 지방당국의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 국가 수준의 지원과 관심이 없는 관계로 이를 지역공동체차원에서 마련해 왔다.

<표 III-1> 청소년사업의 체제

	중심개념	주요 이슈	주요 배경	교육과 훈련	국가들
보편주의 모형	청소년사 회사업가/ 사회교육 자	여가 카운슬링 건강/예방	지역당국 의 우세	고등교육(사회 교 육학)이 지배적이 며 비형식교육의 동등한 지위가 인 정됨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자유주의/ 지역공동 체 모형	청소년사 회사업가	여가 지역공동체 사업 소외청소년	지역당국 과 비영리 부분의 균 형	주로 고등교육(청 소년과 공동체사 업 학위): 교육기 회확대에 중점을 둠	아일랜드 영국
보수주의 /조합주의 모형	청소년사 회사업가/ 사회교육 자/문화지 도자	여가 카운슬링 소외청소년	비영리부 문의 우세	사회사업(이나 문 화활성화)관련 대 학 또는 전문학교 수준의 자격 필요 함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지중해변/ 하위제도 화 모형	문화지도 자/사회교 육자	청소년진로 청소년정보 여가	지방당국 의 우세	비영리부문, 전문 학교, 대학수준의 개발과정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3)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모형 ·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들의 경우 청소년사업은 조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사회화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관심이 있다 사회교육적 측면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강한 측면이 있지만 초점은 상당히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지역 및 지방, 중앙행정과 협력적 관계 속에 비영리부문이 이를 대행하여 실행하고 있다.

(4) 지중해변/ 하위제도화 모형 : 카톨릭이나 정교회의 조합주의적 역할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남유럽국가들은 때로 교회의 영향력 및 사회문화적 적합성 상실로 자율규제의 공백을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 된다.

지역자원이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지역당국이 갖는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지역적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 새롭게 형성되는 제3섹터와 더불어 지역당국은 느리게나마 이러한 차이를 메꾸어 나가고 있다.

7. 유럽의 청소년정책모형

본 절에서는 가설적인 수준에서 유럽 청소년 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Duncan Gallie와 Serge Paugam이 제안한 복지제도의 유형화에 따라 (Gallie and Paugam, 2000) 유럽의 청소년정책을 유형화한다. 이것은 또한 유럽의 청소년 지도자 교육과 훈련(IARD, 2000)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청소년사업체제 분석에 활용된 방식이기도 하다.

이 유형화 방식에 따르면, 유럽 복지 제도는 사회 민주주의식 복지 모델(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자유주의 모델(영국 제도의 최소 복지 국가들), 보수주의 모델(중부 유럽 국가들의 고용 중심 모델), 하위 제도화된 모델(지중해 연안 국가들)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청소년정책의 유형화에 있어 Gallie/Paugam 분류 방식과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라도 청소년정책모형은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특징들에 따라 다르게 명명된다. 이를테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보편형 모델, 영국제도의 지역공동체 모델, 중부 유럽 국가들의 보호형 모델,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중앙 집중식 모델 등이다.

1) 보편형 모델

청소년 정책의 보편형 모델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즉, 이 모델은 지난 10-15년 동안 청소년에 대해 실시된 정책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 10-15년 동안 스칸디나비아의 청소년 정책은 여러 부문에 분산된 형태에서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한 내각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전담하는 청소년부장관이 없으며 특수화된 청소년 부문은 소규모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잘 발달한 복지국가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가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 사회의 정부 기관들은 청소년 정책을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협력한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보편적이다. 즉, 대상 그룹이 사춘기와 25세까지의 사춘기 이후 연령층으로 정의되는 청소년 세대 전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사춘기 이전 연령층은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청소년 개념이다. 청소년 실직 문제가 1990년대의 청소년 정책의 주요 문제이었고 청소년 실직이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 개발의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의 참여는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체로도 개발해야 하는 사회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적·심리적 발전 외에, 청소년 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율성과 독립이다. 이러한 목표는 일찍 성인 자격을 얻고 부모의 권위로부터 일찍 독립하는 스칸디나비아의 기존 관습에 의해 강화된다.

2) 보호형 모델

청소년 정책의 중부 유럽 모델은 긴 전통이 특징이다. 중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윤곽이 이미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이나 2차 세계 대전 중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청소년 정책의 이러한 긴 역사는 아마 이 나라들에서 확장된 청소년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일 것이다. 즉,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젊은이로 정의되며 아동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성인과 나이 어린 가족들도 모두 포함한다. 이 모델에서 지배적인 청소년 이미지는 이러한 폭넓은 청소년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청소년을 공격받기 쉬운 존재, 보호하고 후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회 그룹으로 인식한다.

이 모델에서는,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참여 의지가 청소년 전담 장관과 강력한 청소년 담당 부서와 큰 규모의 청소년 부문의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 보편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은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으로 시작이 되고 이행된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중부 유럽 모델은 종합적이다. 즉, 대상 그룹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특수 집단과 전체 청소년 세대 모두이며,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청소년의 사회적 배척을 모두 통합, 사회 문제 방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등으로 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 모델은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법적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다. 현재의 청소년 문제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 정책의 원칙과 조직이 안정적이다.

3) 지역공동체 모델

영국 제도의 청소년 정책 모델은 오랜 전통이 있는 공동체 중심의 청소년 사업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사업에 대중이 개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조정이 된 청소년 정책으로 바뀌는 추세이지만, 지금도 이 모델은 강력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강조는 청소년 정책 이행을 정부에서 시민 사회로 위임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청소년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청소년

년은 문제아라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것, 그리고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공공 청소년 정책의 대상 그룹은 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다양한 그룹들로 정의되며, 주된 목표는 사회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의 청소년 정책은 영국 제도의 최소 복지 국가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최근에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 자유주의 모델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4) 중앙집중식 모델

청소년 정책의 지중해 연안 국가 모델의 특징은 다소 새로운 것이다. 청소년 사업과 지원이 전통적으로 가족과 교회의 책임이었지만, 공공 기관은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책임의 일부를 떠맡을 수 있는 체계와 정책을 확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은 이 모델에는 새로운 것이다. 청소년 정책의 대상 그룹을 좁은 연령층으로 정의(15-25/30세)하는 것도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이 이렇게 늦게 도입된 탓이라고 해야 한다. 이 모델 내에서, 제3부문과 지방 정부 기관의 관여는 다소 취약하다. 그것은 청소년 정책이 국가 차원과 주 정부 차원에서 중앙 집중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은 주로 주 정부에서 이 행한다. 또한, 조직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낮으며 이런 종류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청소년들의 높은 실직 상태와 그로 인하여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것이 주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자율성, 독립성,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과 정책의 주요 목표가 아주 유사하지만 지중해 연안 국가 모델은 청소년정책의 규모가 보편적이지 않다. 즉, 청소년들 중의 특수 집단이 정책의 주 대상이다.

IV. 유럽의 국가별 청소년정책 사례

1. 독일의 청소년정책
2. 영국의 청소년 정책
3.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4. 핀란드 청소년정책

공 백

IV. 유럽의 국가별 청소년정책 사례

1. 독일의 청소년정책⁹⁾

1) 청소년 정책의 목적 :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1) 독일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발전

청소년 정책,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법제화된 것은 1922년에 청소년 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이 도입된 때였다. 이 법에서 이미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역량 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국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법 제 1조)를 규정했다. 다른 구성 요소들은 청소년 담당관을 두고 재원지원(subsidiarity)과 다양성(plurality)의 원칙을 확립하는 법령이었다(C.W. Muller 1994, J. Peukert/R. Munchmeier 1990).

제2차 세계 대전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정치 활동이 청소년들을 민주주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노동 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때, 다시 등장한 독일 청소년 정책은 미국의 교육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급격하게 향상(경제 기적)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가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부터 1989년 사이에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분야에서는 간섭보다는 지원,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비, 더 융통성 있게, 더 민주적으로와 같은 새로운 표준을 시험하고 적용하였으며, 1990년의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법에서는 그러한 표준을 규정하였다. 다양한 분야(실직, 범죄, 이민

9) 이것은 독일청소년연구소(Deutsche Jugerdinstitute)가 IARD에 제출한 National Report on Youth Policy in Germany의 일부를 번역한 것임.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융합)에서 모델 프로그램을 통하여, 좋은 실행 (Good Practice)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시험하고 실행하였다.

(2) 청소년정책의 목표

① 국가의 청소년정책 목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사업 (IJAB (편), 1994) 소책자의 서문에서, 전 연방 여성 및 청소년부 장관은 이렇게 명시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가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려는 욕망이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은 독립적인 정책 분야이며, 가정에 관한 정책, 교육이나 보건에 관한 정책, 사회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정책은 매우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 세대의 공동체에 적절한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필요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 정책은 체계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준다.

이 장관이 소개하고 독일 연방 공화국(IJAB)의 청소년국제교류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 Visitors 서비스)에서 다듬은 동일한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과제는 청소년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정책이 학교나 부모가 있는 가정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영역을 의미 있게 보완하는 서비스는 마련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즉, 성장해 나가면서 개방되어 있고 다채로운 사회로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몹시 힘든 과정을 수월하게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비행 청소년 법률, 아동과 청소년 보호 기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이상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회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 심지어는 환경 정책까지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중요한 관심사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가족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회 정책에서는 훨씬 더 분명해 진다. 사회 복지 기금에 의존하여 사는 가정이나 장기간 실직하여 주택이 없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정해진 몫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 태만, 성적인 학대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여러 정책 분야에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은 매우 다양한 정책 분야와 관련이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정의는 여전히 매우 논쟁거리이다.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에서 제출한 소책자인 아동·청소년법(The Child and Youth Services Act)(Social Code Book VIII-1996)에서는, 1994년에 설정한 목표를 다시 다른 몇 가지 목표로 다시 보장하였다.

연방 정부는 특정한 주요 분야를 특별히 강조하여 아동 및 청소년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동독에 자발적인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확대하는 연방 정부의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AFET 프로그램)이 통과되었다.

독일에서 증가하는 극우파 폭력에 주로 청소년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새로운 도전이자 매우 심각한 도전이다. 이 정책만으로는 이 위험한 사태 진전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다른 정치적·사회적

기관들에서, 특히 교육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분명히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대응은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고전적인 청소년 사업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교육 활동과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분야의 중심과 행동 영역은 BMFSFJ의 폭력 방지 프로그램에 규정되어 있다(The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편.) 1996, 9면).

모든 연방 정부는 특정한 주요 분야를 특별히 강조하여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특정한 목표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구현한 방법은 BMFSFJ를 참조하는 조항 내에 존재하는 국가적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위한 핵심 지원 도구인 Federal Children and Youth Plan of the BMFSFJ의 특정한 목적과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연방 계획서의 틀 안에서, 동독 내에 자발적인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확장하기 위한 이전의 연방 정부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 (AFT 프로그램)은 시민 사회 발전이 그 목표였다. 예를 들면, 청소년 단체와 복지 단체들, NGO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였다. 또한 독일에서 증가하는 극우의 폭력에 관련된 것이 주로 청소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구 연방 정부는 공격과 폭력을 방지하는 대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몇 가지 서로 모순이 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현재(2000년) 연방 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은 특히 새로운 방(New Lander)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전, 교육, 직업, 취업 등의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계속 보강한다. 다양한 폭력 방지 프로그램과 인종 차별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감 등에 대응하는 운동과 조치들에 새로운 재원이 투자되었다 또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과 새로운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좋은 관행의 예 참조).

② 청소년 서비스 정책 및 기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요 개념

정책 문서에 나타나는 청소년 서비스 정책(Jugendhilfe)의 가장 중요한 주요 개념 중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의사결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 권리 강화(피선거권의 연령 제한, 아동 및 청소년 의회 등등)
- 소년과 소녀, 남녀 청소년 등의 동등한 상태를 증진시키는 일
-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인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
- 매스미디어(인터넷)의 새로운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 가난/사회적 배척: 가난한 청소년들을 노동 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사회사업
- 외국인 청소년과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의 융합(독일 소수 민족)
- 시민 의식: 참여, 자원 봉사 활동 장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
- 외국인 혐오감, 인종 차별 주의, 반유대주의, 폭력, 그리고 우익 극단주의 등과의 전쟁
- 아동 및 청소년 비행 예방
- 청소년 서비스의 체계 내에서, 특히 법률로 정한 사회 교육 규정과 보호권(custodial right)에 대한 의사결정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 사이의 협력과 체계적인 연대
- 공공 청소년 사업의 조직 유형(새로운 공공 관리)
- 청소년들에게 위임된 권한
- 국제적인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정책
- 청소년과 유럽 유럽인의 정체성과 유럽의 시민 의식, 유럽의 프로그램

그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학습과 지식 사회 구축, 평생 교육, 학교에서 전문직 생활로의 변천을 촉진시키는 일, 직업 교육 제도의 틀을 잡고 확장하는 일, 학교와 유럽의 정체성
- 청소년 실직 문제 및 청소년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일
- 청소년들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일
- 복지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특히 마약 남용이나 AIDS와 관련된 예방 의학, 운전, 흡연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행동)
- 청소년들을 위한 소비자 정책
- 청소년들의 독립/보호처
- 세대간의 갈등, 현재의 젊은 성인들과 복지 국가의 미래, 연금과 보건 개혁에 대한 논쟁

(3)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목표 및 주요 영역

매우 다양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지역별 청소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씩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탁아소 마련
- 사회 교육 제도 (가족, fostering, 소규모 주거지 마련)
- 주택 정책을 통한 가족 지원 및 아동과 청소년에 적합한 이웃 지원(예를 들면, 건강한 환경, 운동장, 학교, 탁아소, 청소년 센터 등)
- SGB VIII를 실행(청소년 진흥책 등을 포함. 이것은 청소년 사업을 제한하고 여가 시간 인프라스트럭처(청소년 클럽 등)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여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청소년 대표들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형식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역 노동 시장 정책과 경제적인 지원

- 범죄 예방
- 외국인 가정의 융합
- Agenda 21 프로젝트
- Care 모델

지역별 청소년 계획

지역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청소년 서비스 계획의 체계 내에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법적으로 청소년 서비스와 청소년 기관 목록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평가하고 청소년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돌볼 책임(SGB VIII 80조)이 있다. 법적으로 결정이 되면, 자원 단체들도 이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 서비스 계획은 다른 지역적(사회적)인 계획과 조정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 목표들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청소년 담당 부서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런 계획 명령을 다소 내키지 않는 태도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계획은 타아소나 목록 작성과 같은 부분적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다른 지역적인 계획과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며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4) 국가, 지역, 지방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목표 집단과 현안

기본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우선 순위는 항상 특정한 대상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은 실행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집단들은 특히 빈곤한 청소년들, 실직자, 이민 청소년, 젊은 여성, 위험에 처한 청소년(예를 들면, 무주택자, 마약을 사용하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의 발전과 융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때로는 모든 청소년들과 관련이

있고 때로는 특정한 대상 집단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선택된 정치적인 문제들을 소개할 것이다.

①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 대우 퇴치

가난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 위협에 처하게 되며,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적인 차별 대우가 생기게 된다. 독일 아동들 중의 10분의 1정도는 수입이 독일 평균의 50% 이하인 가난한 가정에서 산다. 유럽 공동체의 사회적인 조치 프로그램과 법적·정치적 이니셔티브들은 유럽의 청소년 세대의 대부분을 사회적 낙인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독일의 프로그램인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지역의 청소년들의 발전과 기회(좋은 실천의 예 참조)는 청소년들의 사회 통합에 관한 유럽 공동체 협의회와 청소년 관계 장관 회의의 결의안에 일치하며 2000년 9월 11일에 청소년 관계 장관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② 소녀 및 젊은 여성의 동등권

독일의 청소년 정책에서 동등권 개념 구현은 청소년 정책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SGB VIII 9조는 제안된 모든 청소년 서비스가 소년과 소녀의 동등권을 장려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생활 상태를 돌볼 책임을 지운다.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 교육적인 제도에서는 여성 중심적인 활동 시도가 자리잡았다. 청소년 사업의 경우, 소녀 카페, 여성 그룹, 호신술 교육 등과 같은 시도가 표준적인 서비스 제안의 일부가 되었다(좋은 실천의 예 참조)

③ 아동 성적학대 방지

아동에 대한 폭력, 특히 성적인 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연방 청소년 정책에서 강조된 주요점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좋은 실천의 예 참조)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수행

했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Cruelty to Children/Neglect of Children(IKK)이라는 정보 센터가 German Youth Institute에 설립되었다. IKK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대한 세계 의회의 선언과 활동 계획에 따라 실행된 연방 정부의 아동 학대, 아동 음란물, 섹스 여행 등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의 부가제도의 일부로 설립된 전국적인 정보 및 연대 단체이다.

이런 기반에서, IKK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설명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게다가, IKK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저항하는 인터넷 상의 네트워크인 Child Centre for Children at Risk in the Baltic Sea Region (전자 메일: ikk@dji.de, 인터넷: <http://www.dji.de/ikk>)의 전국적인 연락처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가 1996년에 스톡홀름에서 세계 의회가 개최한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의 후속 컨퍼런스를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이 부서에서는 IKK를 이 컨퍼런스의 개념을 고안하여 실행하도록 임명했다.

④ 미디어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 보호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디어의 유해한 불법 콘텐츠를 퇴치하는 것은 독일 청소년 정책의 또 한 가지 핵심 문제이며, 유럽 연맹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화는 전 세계적인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결국 인종 차별 콘텐츠와 음란 콘텐츠, 그리고 미화되는 폭력을 통제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요즘의 멀티미디어 세계에서, 대중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국가 표준과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좋은 실천의 예 참조).

⑤ 아동 및 청소년의 위법 행위

아동과 청소년들의 위법 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 특별히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처벌과 예방 조치가 점점 더 청소년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 1차 예방 체계 내에서, 이미 추방당할 정도로 규칙을 위반하여 주의를 끈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2차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3차 예방 조치는 상습적인 비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조치에서부터 교정(예를 들면, 가해자-피해자 중재)과 석방된 자들에 대한 지원과 같은 특정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

⑥ 폭력과 인종 차별적인 행위에 관련된 청소년들(인종 차별 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증 등의 퇴치)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종류의 행위와 위법 행위에 관련된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이 점점 더 정치적 문화적 청소년 사업, 스포츠 활동, 국제적인 청소년 사업, 그리고 국가, 국제, 방(Länder), 지역 등의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의해 개발이 된 청소년 사회사업 등의 목표가 정해진 프로그램과 조치의 일부가 되었다. 인정에 기초한 최선을 다한 활동을 수반하는 조치들은 특히 위협에 처한 극우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익 정치적 과격주의에 관한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건 대비 조치와 억제 조치를 논의하는 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폭력, 우익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증, 인종 차별 주의 등에 대응하는 많은 수의 이니셔티브는 국가적인 차원, 방(Länder) 차원, 공동체 차원, (전문적인) 청소년 단체 차원 등에서 이미 존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XENOS 프로그램이 최근에 만들어졌다(좋은 실천의 예 참조) 게다가, 극단적인 태도와 폭력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에서는 청소년 극단주의자와 외국인 혐오 이론을 퇴치하기 위한 많은 수의 연구 조사, 정보, 시험 조치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

러한 조치의 목표는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현재의 사태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⑦ 참여와 정치 교육

참여는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에 속하며, 그들이 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성장해 들어가 자신들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이다. 참여는 강화해야 하는 권리 중의 하나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주며 오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내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의 문제는 독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에 유의하는 종합적인 문제(cross-sectional task)로 정의되었다.

정치 교육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민주적인 학습이며 사회적 정치적 참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치 교육은 가치에 고착하며 청소년에게 적합한 관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큰 잠재력, 그들의 소망과 환상, 청소년들의 호기심 그리고 발견하고 실험하는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 등을 인정한다. 정치 교육은 청소년들이 조직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⑧ 국제적인(양국 간의)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

독일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문제는 국제적인 또는 양국 간의 협력이다. 국제적인 청소년 정책의 맥락에서,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업 전문가들이 함께 만나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청소년 사업에 자극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Lander)간 협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방 정부의 책임을 기초로 지역별 청소년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적인 청소년 정책에서는 다른 국가와 문화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의 목표는 서로 이해하는 정도를 향상시키고 편견을 줄이고 우리 자신의 관점에 비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경계선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의 분야에서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도 목표이다(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제적인 청소년 교류 참조).

⑨ 청소년과 유럽

독일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 조사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 대해 다소 소원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발전시켰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유럽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직접 획득하고, 해외로 여행하여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의 관계와 우정을 쌓아 나가고, 어쩌면 전 유럽 규모로 그들과 장기적으로 함께 일하기까지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청소년들에게 전기에 포함시킬만한 주요 이벤트가 되며, 유럽에 대한 감정적인 관심과 열심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동성과 유럽 시민 의식을 지원하는 수단을 확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측면(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유럽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EU기관들은 빈번하게 이 정책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이동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해외여행 허가, 해외 체류권, 사회적 보안, 세금 문제 등과 같은 무수한 장애물에 대처해야 한다. 종종, 자금 조달이나 충분하지 못한 언어 능력 등도 문제가 된다 독일의 청소년 정책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

⑩ 청소년과 교육

요즈음,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기술 혁명, 세계화, 유럽 통합 과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만 많은 과제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교육은 개인들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된다. 교육은 또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상황에서 동등한 기회와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유럽의 미래도 결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 정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지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고 계속 증가하는 자격 요건 때문에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교육이 인생에서 한 사람의 기회의 묶을 붙잡는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 정의의 중심 요소이므로, 청소년과 교육 정책 수립자들이 교육의 기회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진보와 번영에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맞는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민주 사회 내에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틀 잡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주고 그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종종 취직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생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갖추고 있는 자격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종종 교육 제도가 이전의 부정적인 학습 경험에서 발전해 나오는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은 힘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연속적인 학습 과정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기초는 학교 밖에서, 즉 직장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 차원과 방(Länder) 차원의 담당 부서들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에서 청소년들을 지

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좋은 실천의 예 참조).

⑪ 빈곤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꾸준히 증가해 온 장기 실직을 줄이는 것이 연방 정부, 방(Länder),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선언된 목표이다 강조되는 점은 예방이다. 노동 시장 정책의 지침에서 명시된 목표, 즉 어떠한 청소년도 반 년 이상 실직하지 않게 한다는 목표는 매우 다양한 수단으로 실행되었다. 노동 시장 정책과 직업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도제 훈련 장소를 찾을 수 없거나 노동 시장에서 버티기에는 갖추고 있는 자격이 형편없는 실직한 청소년들을 사회교육학적인 자격 인정 과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주들이 견습공을 훈련시켜서 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 넘겨주는 것에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좋은 실천의 예 참조).

2) 주요 추진 사업

(1) 소외 청소년을 위한 기회 균등 프로그램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국가, 지역, 지방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전환 체계는 잘 조직되어 표준화되어 있고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평판이 있다.

① 취업 지도

취업 지도 서비스는 취업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취업 지도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2년 동안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접촉은 서비스 소개와 수업 중 취업 정보 센터 방문으로 구성된다 취업 정보 센터는 교육 중인

모든 전문직과 관련된 인쇄 자료와 비디오 자료, 그리고 셀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참고 자료 이용 센터이다.

개별 면담을 요청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은 조언자들과 상담하게 되며 견습 과정 계약의 80%는 취업 지도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진다. 정규 취업 훈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 지도 중에 취업 준비 교육을 마련해 준다. 취업 지도 서비스의 대표자들은 모든 졸업생들과 접촉하여 개인적인 취향과 생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된 주요 전문가들(교사, 사회 사업가, 청소년 사업가)과 청소년들은 표준화된 처리 방식을 비평하며 취업 지도의 주목적이 청소년들을 결원이 나온 견습공 자리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Nuglisch/Pfendner 1998).

② 취업 준비 교육

중등 교육 레벨 I 이후에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학교에서의 1년 간의 취업준비교육과정(BVJ /BGJ)이 마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경우 1년 간의 의무 취업 교육 과정이 도입되면서 의무 교육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의무 교육이기는 하지만, BVJ는 헛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수료증도 없이 중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과 중학교 수료증만으로 버텨 나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외에는 더 많은 자격을 갖추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실무자들과 연구 조사자들은 BVJ가 단순히 '대기실'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BVJ의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특성은 학교 종류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는 구조에서도 부각된다. 많은 지역에서 BVJ 분류를 따르는 직업학교는 BVJ 참여자들이 거의 100% 남녀 구분이 되어 분포되는 제조업 관련 직업학교와 가정학 관련 직업학교 밖에 없

다.¹⁰⁾ 그 대신에, BGJ는 이 지역에서 정규 교육 1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취업 교육을 하는 1년간의 전문 과정 학교이다.

③ 연방 프로그램: 취업 중심 사회적 청소년 사업과 점프

의무 교육 과정과 취업 준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직무상 미숙', 'not playable', 'disadvantaged'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특수 프로젝트, 즉 실직자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런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은 BMFSFJ가 후원하는 취업 중심 사회적 청소년 사업(Arbeitswelt-bezogene Jugendsozialarbeit)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에 속하거나 지역별 청소년 국에서 운영하는 노동 시장 중심 청소년 사회사업(Jugendberufshilfe)의 지방 자치 단체별 이니셔티브에 속하거나, 1999년부터 연방노동·사회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취업 프로그램인 점프(Jump)에 속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취업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주된 성공 척도는 청소년들이 비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1989년과 1993년 사이에,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는 연방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계획의 일부인 취업 중심 사회적 청소년 사업이라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90가지 실험 프로젝트를 평가했다. Braun (1996)이 완료한 이 연구의 한 부분은 (1) 오리엔테이션 단계, (2) 취업 준비 단계, (3) 사회 교육학적으로 수반되는 교육, (4) 자격을 갖

10) 사실, 취업 교육 기회가 감소하면서 BVJ 참여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육 시장이 축소되는 시기에 정규 교육으로 전환하는 면에서 보면 BVJ의 결과는 상당히 형편없다. 즉, 1994년에는 BVJ 참여자의 26%만이 이후에 정규 교육에 참여했다(BMBF 1997: 65) 하지만, 1992년과 1997년 사이에 BVJ 참여자 수는 76%까지 증가했다.

준 취업 등과 같은 정형화된 단계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단계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비평적인 의견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후에 정규 교육이나 취업 면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이 평가 연구의 다른 한 부분에서, 렉스(T. Lex)는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18-25세 사이의 청소년 2,232명의 이력서를 증거로 사용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중의 27%,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의 30%만이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한 후에 안정적인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취업 프로젝트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는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성공률을 30% 정도로 추정한다.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이 하는 활동과 참여자가 익힌 기능은 민간 경제 부문과 관련이 없으며, 더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는 자격 수준이 낮은 직업이 부족한 상황은 계속 지속된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진정한 취업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낙인이 찍혔다고 본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취업과 관련된 목표와 야망을 취소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악화시킨다.

④ 새로운 프로그램 점프(Jump)

1998년 선거 후에, 새로운 연방 정부는 실업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선언된 목표는 1년 이내에 교육 프로젝트나 취업 프로젝트에 최소한 100,000명의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1999년에 이 숫자를 넘어섰고,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비평은 이용 가능한 수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확장해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체계에 필요한 구조적인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주장하는 요지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점

프(Jump)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평가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일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 시장 중심 청소년 정책의 체계 내에서 고안된 모든 프로그램과 수단은 어떤 식으로든 통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받기 쉬운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면에서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비평적으로 숙고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상적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보상이 될 만한 교육과 사회 교육학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보다 종합적인 새로운 통합 전략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징병제 및 비군사적 서비스

Basic Law의 Art. 12a에 따르면, 독일 남성 시민은 징병을 당해야 한다. 병역(기간: 10개월 및 대기 기간 2개월)은 18세에서 40세의 남성들에게는 의무적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논쟁적으로 토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양심상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사회 기관, 환경 보호 분야, 또는 승인된 해외의 서비스 기관에서 대체 병역 의무를 필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18세에 병역 의무나 비군사적인 국가 공동체 봉사 활동 이행 의무(비군사적인 공동체 서비스복역법)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여성에게는 아직 병역 의무가 없지만, 군복무나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이나 환경 봉사 활동을 하기로 자원할 수 있다. 소방대나 구조 단체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 경찰서에 근무하는 것, 법적으로 승인된 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것 등과 같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도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느라고 생계 수단을 잃을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특정한 개인적인 환경(예를 들면, 농부)을 이유로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군사적인 공동체 봉사 활동 이행 의무법(Zivildienstgesetz)은 주로 사회 부문에서 비군사적인 공동체 봉사 활동을 하도록 승인된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는 공공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공동체 봉사 활동은 비군사적인 국가 봉사 활동 이행 의무법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할 수 있다. 공동체 봉사 활동은 봉사 활동 시작일로 지정된 일자에 28세 이하인 병역 의무 대상자가 수행한다.

비군사적인 공동체 봉사 활동 이행 의무법 14a조에서는, 30세까지 비군사적인 봉사 활동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 개발 지원법 제2조에서 인정한 자발적인 해외 봉사 활동 지원 기간에 계약에 따라 임명되어 있고 그 지원 기관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 2년 동안 자발적인 해외 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들이 해외 자원 봉사자로 앞으로 일하기 위하여 적절한 추가 교육을 받고 있고 이 점을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확인한 경우, 이 봉사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년간의 해외 자원 봉사를 완료했다면, 비군사적인 봉사 활동 이행 의무가 소멸되며, 국가 방위 상황에서 요구되는 비군사적인 봉사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자발적인 봉사 프로그램

젊은 성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동안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독일에 있는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연방 자원 봉사 활동은 자발적인 사회봉사의 해(Freiwilliges Soziales Jahr)와 환경 봉사의 해(Freiwilliges Ökologisches Jahr)가 있다. 전국적으로 세 가지 대체 봉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된 것은 없다(법적 체계 참조).

① 자원 봉사와 공동체 봉사의 해 (FSJ)

FSJ는 사회 부문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교육 경험을 쌓거나 이 분야의 전문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젊은 여성과 남성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런 봉사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 봉사 기관이나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운영한다. FSJ는 후원 기관의 본부가 독일에 있기만 하면 해외나 유럽에서 완료할 수도 있다. FSJ는 많은 사회적 전문직에서 실무 준비 교육으로 간주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대학 입학에도 도움이 된다. FSJ는 Promotion Act (FSJG)에 기초한 것이다(법적 체계 참조).

② 문화 유적 보호 자원봉사의 해 (FJD)

FJD는 문화 유적 보호의 이론과 실제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직 생활을 겨냥한 것이다(법적 체계 참조).

(4)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제 청소년 교류

외무부(Foreign Office)의 문화 정책과 교육 정책에는 국제적인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교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총 26개국과 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정부 대표자들과 자원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양국 위원회들이 지원 절차를 결정하며 관련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교류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한다

프랑스-독일 청소년사무소(Franco-German Youth Office)와 독일-폴란드청소년사무소(German-Polish Youth Office)는 양국 간 청소년 정책 협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Youth Office는 자율적이며 관련된 정부들의 기부금으로 패리티 원칙에 따라 자금이 조달된다. 그 외의 우선적인 청소년 정책은 독일-이스라엘 협력 프로젝트와 독일 체코 협력 프로젝트이다. 이런 목적으로, 조정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예를 들어, 우선권이 있는 다른 지역의 양자간 협력은 유럽 연맹의 국가들, 러시아와 발틱해 연

안 국가들을 포함한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국가들, 미국, 일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일부 제3세계 국가들과의 청소년 정책 협력 등이 있다.

이 두 개의 청소년사무소(Youth Offices)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청소년 정책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의 예산에서 독일 마르크화로 대략 6천만 마르크 정도를 지원 받는다. 아동·청소년계획(Children and Youth Plan), 프랑스-독일청소년사무소(Franco-German Youth Office), 독일-폴란드청소년사무소(German-Polish Youth Office)는 매년 300,000명 이상이 관련된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의 자원을 제공한다.

(5) 유럽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독일 연방 공화국의 다른 많은 기관들과 자원 단체들은 유럽 공동체에서 시작한 다양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Leonardo da Vinci, Socrates, Youth for Europe,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인 Youth 등이 있으며, 새로 창설된 European Voluntary 서비스가 포함된다)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이 재정 지원을 하는 보상 프로젝트들도 빈곤한 청소년들, 이를테면 이민 청소년들이나 수료증을 받거나 받지 않고 중학교인 중등 학교 레벨 I(Hauptschule)을 떠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실직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독일에서 여러 해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U. Wisser 참조, 연도 표기 없음, 브뤼셀). 게다가 총 9,616명의 독일인들이 1987년 4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0일 사이에 청소년 교류 및 이동 프로그램인 Youth for Europe (Action A.I.: 2개국 이상의 그룹들이 만남)에 참여했다 (Youth for Europe German Office at the registered IJAB (편) (1999), 12-13면 참조).

유럽의 자원 봉사를 만들자는 첫 번째 제안은 파리에서의 유럽 청소년 장관 회의(1989년 11월 9-10일)인 Generation 93 The New Frontier 중에 독일의 청소년부 장관이 제안하였다(Ministe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Commission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편) (1989) 참조). 그 이후 많은 활동이 전개되어 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EU-정책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청소년들의 주위와 관심을 매우 강력하게 이끌었다.

현재, 유럽자원봉사(European Voluntary) 서비스는 새로운 EU-프로그램인 YOUTH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략 8,000명에서 10,0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1998-1999년의 이 2개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중 20%에서 25% 정도가 독일에서 오게 되어 있었다(Youth for Europe German Agency for the EU-action-program YOUTH (출판됨), 2000, 1면과 7면). 이러한 수치는 독일에서 이 프로그램의 점점 커지는 영향을 보여준다(유럽 연맹과 유럽 협의회가 독일에서의 청소년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참조).

(6)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

독일의 청소년 정책 분야의 질적인 발전과 평가를 위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연방 정부 차원과 방(Länder) 차원에서 청소년 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부속 모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델 프로그램이면 이러한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는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 교육적인 활동 영역에서 단체나 기관 또는 비주거지 활동과 관련된 SGB VIII 개정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도록 규제가 되었다. 좁은 의미에서의 평가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모든 프로그램의 결과로, 다양한 대중이 청소년 봉사 패턴의 잠재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7)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복지 수당과 보조금

원칙적으로, 독일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동일한 사회 복지 수당과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규정이 있다. 이러한 모든 수당은 수입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미성년 자녀 당 수당
- 사회 지원 보조
- BaFoG = 취업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주는 수당
- 임대 보조금
- 실직 보상
- 교아 수당

(8) 청소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과 보조금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일찍 부모의 가정을 떠나며 자기 가정을 가지기 전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 여기에 관련된 생활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즉,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혼자 사는 방식, 젊은 가족이 있는 경우, 편부/모 가족, 취업 교육이나 대학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 취업한 청소년, 실직한 청소년 등과 같이 다양하다

자율적인 생활 형태는 대체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모든 생활 형태에 필요한 주택 조건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양하다. 이 모든 상황에 공통적인 점은 자기만의 지분을 가지면 청소년들이 더 독립적이 되고 새로운 생활 형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한 두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커졌다 지원 프로그램, 특히 주택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축 투자를 장려 기금을 마련하여, 독일에서의 주택 공급은 그 이후 상당히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998년에 연방 정부가 제출한 Tenth Youth Report는 독일 내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잘 돌보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가족들의 경우에 그러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편부모 가족,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족과 이민 가족, 그리고 특정한 청소년 그룹 등의 경우 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존재했다(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편), 1998, 54면 참조).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 590,000명 중의 33% (즉, 190,000명)는 아동과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무주택자와 혼자 사는 사람(길거리 아동)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다른 연구(예를 들면, R. Bendit / W. Gaiser / J. H. Marbach 1999 참조)들에서는 청소년들, 특히 도시 중심부에 사는 청소년들의 주택 상황이 Tenth Children and Family Report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고려한다.

연방 정부는 방(Lander)에 주택 보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한다. 금년에는, 약 66억 DM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6억 DM은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입이 적은 가족들에 대해 주택비용을 덜어주는 주택 수당의 효율성은 2001년쯤에 주택 수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히 향상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 문제나 자율적인 생활 방식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의 소망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존재하는 것(R. Bendit, W. Gaiser, J.H. Marbach 1999 참조)처럼,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의 주택 상황을 향상시키도록 마련되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된 구체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개발되어야 한다.

(9)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사업

독일에서, 가족의 사회적 환경과 관계가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목표로 한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전형적인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Social Town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사업과 청소년 사회사업 활동은 주로 특별한 지역적인 생활 조건을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서로 겹쳐지는 생활 단계들을 향한 첫 단계들이 최근에 점점 테스트를 받았다. 이것은 이웃 센터와 시민 회관에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봉사 단체들(예를 들면, 탁아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비공식적인 문화간 학습 경험을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특히 학교 외에서의 청소년 교육 분야이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다 강력한 사회 참여의 기준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Youth and Community라고 하는 모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가 지원하고 4개 방(Lander)의 청소년 클럽이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10) 보건 사업

이미 서술한 것처럼, Federal Ministry of Health (BMG)와 방(Lander) 부서들이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퇴치하고, AIDS 그리고 마약과 약품 남용을 근절시키는 일을 담당하며, 독일 전체 인구를 위한 보건 교육을 조직하는 일을 책임진다. 연방 정부의 AIDS 정책의 기초는 1987년의 제후 조약이다. 연방 정부는 WHO(세계 보건 기구)와의 계약과 유럽 연맹의 결정에 따라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AIDS 퇴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세 가지 초점은 HIV에 새로 감염되는 사람의 수를 최소로 줄이고, HIV와 AIDS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과 치료를 마련하고, 희생자를 받아들이고 결속시키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1987년에는 연방 내각 부서와 방(Lander) 부서 사이에서 활동을 조정하도록 Inter-Ministry AIDS Working Group가 설립되었다.

1993년에는 국가 마약 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 마약 협의회가 하는 일은 연방 정부에게 마약 정책 문제 전반에 걸쳐 중요하고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다. 보건 제도에서 방(Lander)의 중요한 과제는 공공 보건 기관에서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방(Lander)은 레저 센터나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스포츠 센터, 운동장, 캠프 등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동체 시설들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다.

□ 보건 교육을 위한 연방 센터 (BzgA)

보건 교육은 공공 보건 정책의 분야이다. 독일에서는, 관련된 모든 분야가 통합되어, 모든 레벨에서 다양한 분야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건 교육을 수행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Federal Ministry of Health의 책임 하에 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 (BzgA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이 특별 기관으로서 이 과제를 담당한다. 다음 몇 년 동안, Federal Centre는 목표 집단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 집중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으로 자라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ederal Centre는 한 편으로는 전국적인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보건 교육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일을 할 것이다. 1985년 이래로 전국적으로 AIDS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는 AIDS에 대처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National Programme on Drug Abuse Control을 토대로 마약 중독을 방지하는 것이 1990년이래 이 활동의 핵심이었다. Act on Assistance for Pregnant Women and Families가 통과한 다음, 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은 1992년부터 성교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도록 위임받았다.

(11) 일탈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정책

청소년과 성인들과는 달리, 사법부는 아동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동의 불법적인 행위의 경우, 가정 법원(1999년부터는, guardianship court가 법적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이 Child and Youth Services Act (KJHG)나 Civil Code (BGB)에 따라 사회 교육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으로 처리된 소송에 관한 JGG 1조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 검사는 누군가에게 통보해야 할 것인 지, 통보를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통보할 것인 지(주로 가정 법원과 학교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감독 책임을 물어서 누군가를 고발할 필요가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자체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 아동이 자유 재량권을 지니는 연령이 되지 않아 제한없이 부적격이라는 사실은 절차에 따라 공판을 시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된다. 용의 대상 아동은 유죄 선고를 받거나 무죄 방면이 될 수 없다. 아동은 고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법적인 방법은 없다. 아동 범행(child criminality)이라는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전혀 없으며 아동 비행(child delinquency)이라는 좀더 정확한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 대한 내용만 다루므로, 부모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함께, 주로 비행 아동을 책임지는 단체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단체들의 규정과 개입 가능성은 KJHG의 체계 내에서 규정이 되며 JGG 1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립과 사회적 개성을 목표로 개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행 예방과 관련된 사회 교육학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단체에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

① 청소년과 초기 성인을 위한 기관

사법부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는 사람들(청소년, 14세에서 17세)

과 초기 성인들(18세에서 20세) 사이의 일탈 행위와 범죄를 주로 담당한다. 여기서도 역시 경찰이 명시적으로나 함축적으로 교육학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물론, 경찰의 주된 임무는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② 사법부

다른 것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교육적인 사고를 처벌에 통합시키는 것이 사법적으로 특별히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동 및 청소년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의 전환에 특히 매우 중요하다

③ 아동 및 청소년 보호기관

아동 및 청소년 보호기관(여기서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보호 관찰 기관 Jugendgerichtshilfe (JGH))은 주로 비주거 분야에서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비행 청소년은 여기서 사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JGH는 재판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명성이 높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JGH가 교육학적인 중재 기관이 아니라 법적 제재 기관으로서 사법부와 너무 가깝다고 비난한다. 여러 단체들의 참여에 의해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지연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도시에서는 청소년 단체(보호 관찰 기관)가 범죄가 발생한 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했다

④ 경찰

그 동안 경찰은 청소년 경관을 조직하고 자정 무렵의 거리 파티 콘텐츠 등 범죄 예방 면에 매우 바람직하게 참여했다. 아동 비행이나 청소년 비행에 대해 처벌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교육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독일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침에 따라 상당히 일반적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한 교란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에도, 이 전략은 전문가

들 사이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일탈 행위 등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예방 전략을 지방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고 특정한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전략을 기초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3) 새로이 대두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

(1) C.G. Lazos의 유럽 협의회 제출 보고서 이후 주요 변화 (1993년 6월 이후)

- 그 동안 SGB VIII (Child and Youth Welfare Act)은 여러 곳이 수정되었다. Parent and Child Act 개정 중에 수정된 내용(이혼 소송에 청소년국이 참여하는 것과 사생아에 대한 공식적인 억제 폐지 등과 관련된 변경)을 여기서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은 한편으로는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공권력 축소를 가져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언과 지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 번 더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며 그것은 자금 조달 방식(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가정, 집단 주택 제도로 돌봄)과 관련이 있다. 개정안에서, 지원의 질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규정되었다.

- 1993년에 Lazos가 설명한 상황과 비교하여, 그 동안 SGB VIII의 주요 규정이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를테면 새로운 방(New Lander)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 사회사업의 새로운 조직 형태와 방식을 개발하여 실제로 테스트하게 되었다.

- 청소년 실직, 학교와 스포츠에서의 폭력, 외국인 혐오증, 인종 차

별 주의, 반유태주의 등과 같은 이미 알려진 문제들과 새로운 문제들이 90년대 말에 매우 치명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조치, 그리고 새로운 사회 교육학적 방법이 고안되어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사회사업의 경우, 특히 동독에서 노동 시장 정책(직업 창출 조치)으로 인해 다소 미미한 수준의 인건비가 지불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경제 구조를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일은 청소년사회사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노동시장 촉진사업 지원이 감축되는 경우, 청소년사회사업도 감축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되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 시장 촉진 재원이 없는 경우,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사회사업의 각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방 정부 차원으로 전달되고 있다. Lazos의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자원의 74%(이 지분은 청소년국 자원의 52%와 청소년국이 없는 지역의 자원의 22%로 구성된다)는 지방 자치 단체가 조달하고, 21%는 방(Lander)이 조달하고, 5%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조달한다(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사회사업의 위한 총 자금은 1998년에 29억 DEM이다). 비교해 보면, SGB VIII에서 언급된 모든 활동을 위한 총 자금액이 1998년에 346억 DEM (연방 정부 통계 자료)이었다. 이런 경향은 청소년 서비스의 패턴 내의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2) 좋은 실천 사례

본 보고서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관련 정치 분야들의 경우, 법정 기관이나 자원 단체들, 예를 들면, 연방 내각 부서나 방(Lander) 부서, 지방 자치 단체 청소년국과 시골 지역,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와 자체 구성된 그룹, 복지 단체, 자치 그룹, 이니셔티브 등에 의해 실행된 좋은 실천 사례가 무수하게 많다. 그 모든 예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방 내각 부서와 방

(Lander) 부서, 그리고 그 외의 공공 투자자들이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대체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의 자원 단체와 그 외에 독립적인 책임이 있는 단체와 기관들에 의해 실행되는 관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한 일부 예만 제시할 것이다.

① 청소년들과 참여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종 세상에 대해 성인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인들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기 견해와 생각을 표현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민주 사회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사회를 구현하는데 자기들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독일 공동체 내에는 기획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조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법 조항 덕분에 아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Building and Construction Act에 의하면, 시민의 참여는 아동 참여의 기초가 되며,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것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 연방 법률은 국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필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로 구성된 가족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구성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을 지방 자치 단체의 법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배경에 비추어, 독일 연방 공화국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가 확립되어 있다.

- 대표 참여 형태: 청소년 공동체 협의회, 아동 및 청소년 의회.
- 개방된 형태의 참여: 아동 및 청소년 포럼 - 아동들은 이런 형태의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중심 형태의 참여 시간과 목표 면에서 제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운동장이나 레저 시설을 만드는 것).

- 성인들의 위원회에 아동 배석: 아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이웃 스터디 그룹, 원탁회의, 시민들의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성인 기획 그룹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때로는 투표도 할 수 있다.
- 정치인들과의 접촉: 자문 시간, 수업 중 시청 방문, 불만 신고함. 정치인들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C. Brunner/U. Winkelhofer/C. Zinser 1999 참조)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는 8세에서 21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험 프로젝트를 방금 시작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아동 및 청소년 독본에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발표하여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Children and Youth Reader 2001은 정치인들이 자기 목표를 정의하고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밝힐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생각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최초의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프로젝트이다. Children and Youth Reader 2001은 2001년 6월에 실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연방 법률인 SGB VIII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의 의사 결정이 청소년들과 관련이 있고 청소년들의 발전 단계에 따른 것인 경우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제8조)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업 활동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제11조) 더 나아가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개념의 발

전과 관련하여 아동들은 별거나 이혼 사건에서 부모가 상담을 받을 때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17조 2항). 또한, 아동들은 교육 지원의 계획과 실행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며(제36조), 끝으로 시설이나 서비스 요건을 결정할 때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청소년의 바람, 필요, 관심사를 고려해야 한다(제80조 1항, Nr 3).

투표권은 사회의 틀을 만드는데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독일에서, 투표권은 성인 연령이 되면(즉, 만 18세가 되면) 갖게 된다. 현재, 이것은 모든 수준의 선거, 즉 유럽 선거, 연방 정부 선거, 방(Länder) 선거, 지방 자치 단체 선거 등에 적용된다. 5개 방(Länder)에서는, 16세의 청소년들이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방(Länder)는 Mecklenburg Western Pomerania, Lower Saxony, North Rhine-Westphalia, Saxony-Anhalt, Schleswig-Holstein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잘 짜여진 청소년 단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 네트워크는 지방 자치 단체와 방(Länder) 수준에서부터 연방 정부 수준까지 전부 담당한다. 참정권은 이러한 단체들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② 독일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종 차별 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증 퇴치

독일의 모든 사회단체들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 중의 하나는 외국인 혐오증, 반유대주의, 우익 과격파 등이 발전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 방(Länder),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전문적인) 청소년 단체 등의 수준에서, 폭력, 우익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증, 인종 차별 주의 등에 대처하는 많은 이니셔티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XENOS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우익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증, 인종 차별 주의 등에 대처하는 이니셔티브를

이용하여 노동 시장과 사회에서 분리와 차별 대우를 퇴치하는 조치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는 연방 정부 차원과 방(Länder) 차원의 노동 시장 프로그램과 사회 정치적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극단주의와 폭력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Democracy and Tolerance against Extremism and Violence)은 민주주의와 관용을 증진시키고 극단주의와 폭력을 반대하도록 일반 대중을 자극하려고 한다. 이 연대의 파트너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사회적 그룹, 단체, 시민의 이니셔티브 등이다. 이 연대는 가능한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 즉 이 연대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 기관/단체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특별한 목표 집단으로 전면에서 나서게 될 것이다.

극단주의와 폭력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Democracy and Tolerance against Extremism and Violence)과 함께, 시민 의식 현대화 법(이민 온 청소년들이 수월하게 독일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시민법 Citizenship Act)도 이 정책의 표현 형태이며, 우익 극단주의 범법자들을 일관성 있게 고발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러한 법들은 본 보고서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문화간 학습이나 독일에 살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의 융합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관행이 장기적으로 청소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사회적 분리 퇴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열어주고 분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외 지역 청소년들의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Chances of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E &

C)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으로 곤궁한 지역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골 지역에 사는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지역을 위한 자원과 조치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담당자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작업 방식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또 다른 목표는 아동 및 청소년 단체들이 이 사회적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좀더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이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지원하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여 테스트해야 한다. E & C의 우선적으로 처리할 몇 가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직업과 사회적 통합(생활과 사업에의 적응과 경쟁). 곤궁한 도시 이웃과 시골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실용적인 모델.
- 이웃 네트워킹 및 관리: 연방아동·청소년계획(Federal Child and Youth Plan)이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법정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지역에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개입하도록 동기화하는 한편 이제 막 구성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 자원 배치. 사회적으로 빈곤한 청소년들을 스포츠, 문화,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
- 이민 온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골 지역에서 무급 참여를 지원하는 것

아동 및 청소년의 가난을 퇴치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사이다.

④ 성평등화 정책

청소년 정책은 성평등(gender-mainstream) 방식을 실행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법률상의 명령, 프로그램,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의 분석, 계획, 집행, 평가에서 남녀간의 성차별을 토의하여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에는 남성적인 견해와 절차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성별간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목표에 맞지 않는다.

- 청소년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년과 소녀의 동등한 상태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선언된다. 게다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소년 소녀들의 구체적인 관심과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의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된다. 정규직 전문가들의 자리를 충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점을 고려한다 즉, 여성이 적절하게 대표되어야 한다.
- 1999년 6월에 채택된 Women and Employment 프로그램은 성평등(gender-mainstreaming)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 중에는 젊은 여성들 (특히 미래 지향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고 여성들이 취업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사업을 하려는 여성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가족과 직장을 모두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들을 차별 대우하는 임금 및 봉급 제도에 대응하고, 연구 조사와 교육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 직업 교육에서, 여성들이 IT와 미디어 관련 직종에 근무할 수 있

는 준비를 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연방 정부의 활동 프로그램, Innovation and Employment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 및 통신 테크놀로지 분야의 주요 기업체들의 D-21 Initiativ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실직을 줄이려는 비상 대책 프로그램에서는 실직자 또는 취업을 원하는 인구 중에서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젊은 여성들을 배려하고 있다.

⑤ 폭력과 학대로부터 청소년들 보호 조치

유럽 협의회에 협력하여, 연방 정부는 개인적인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섹스 관광에 관하여 알려주는 기내 스폿 광고인 토이스(Toys) 상영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여섯 개의 유럽 항공사에서 기내에서 무료로 이 스폿 광고를 방영한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넓은 층의 시청자들을 자극하기 위하여, 17개의 유명한 TV 방송국들은 이 스폿 광고를 무료로 방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스폿 광고는 이탈리아의 텔레비전 방송국(RAI I, II, III)과 이탈리아 출국 터미널에서도 방영된다. 2000년 5월에, IATA(국제 공항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이 스폿 광고를 방영하도록 권고했다. 여행사 운영자들, 그리고 여행자들의 아동 성 학대를 퇴치하려는 그들의 활동과 노력을 지원하여, 연방 정부는 관광 산업계에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ECPAT Germany가 실행하는 “섹스 관광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Preventing and Combatting Child Abuse by Sex Tourists) 프로젝트”의 체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⑥ 아동과 청소년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속성을 고려하여, 독일 정책의 한 가지 목

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최소 수준의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해결책과 대안이 제안되었으며, 그런 문제들을 관할권 맥락에서 유럽 연합 및 그 외의 국제단체들에서 가져다가 토의했다(OECD, G-8 국가, 유럽 협의회, UNESCO). 관련된 경제계에도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대중 속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독일정보통신법(Germ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Act)의 요구 조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연방 정부가 관련된 사업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단체들의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했다.

⑦ 청소년과 교육

(i) 평생 학습

독일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을 포함하는 교육 제도의 개발은 연방 정부, 방(Lander), 노조와 경영자, 기업체, 조합, 직업 교육과 일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 그리고 모든 교육 기관 등의 연대 프로젝트이다. 1999년에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연방 정부의 활동 프로그램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고용 (Innovation and Employment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시작. 새로운 정보와 통신 테크놀로지 사용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전반적인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 활동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주요 문제는 여성들의 교육 및 취업 기회와 여성들의 승진 전망,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추가 직업 교육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콘텐츠 중심적이고 개념적인 모듈을 개발하고 모델 프로젝트인 “생애학습연장교육(Life Learning Further Education as a Basic Need)”을 사용하여 학습

센터에서 그 모듈을 테스트하는 것.

- 직업 교육 및 IT 분야의 추가 직업 교육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모든 활동을 연계시키고 강화하는 일반적인 기능 훈련 센터 구축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IT 전문가들의 양성 공백이 연간 30,000에서 35,000 명에 이를 것이다.

방(Lander)은 일반 교육, 초기 교육, 계속 직업 교육 등을 결합하여 평생 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연방 정부와 연대하여 모델 테스트 프로그램인 평생 교육을 시작하여 모든 방(Lander) 사이에서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협력 관계를 시작할 것이다.

(ii) 학교 중퇴자수 감축과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용이화

앞서 설명한 빈곤한 자를 위한 조치와 프로그램(BVJ, BGJ, Jump 등) 외에도, 방(Lander)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 빈곤한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 지역별 사업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갈 때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초기 해결책을 개발한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학교와 지역 기업체 사이의 협력 관계의 형태를 취한다.
- 학교에 다니는 빈곤한 청소년들에게 보충 수업, 실무 교육, 직업 중심 프로젝트, 그리고 1년 간의 공동 직업 교육과 직무 준비 교육 등을 마련해 준다.
- 방(Lander)과 노조/고용주 단체에 자문을 구한 후에, 연방 정부는 “학교산업/직장생활(Schools Industry/Working Life)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학교와 지방 기업체 사이의 협력 관계를 개선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한 계층의 취업 기회를 향상시키고, 중퇴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거의 모든

방(Lander)에서 존재하는 “학교산업/직장생활(Schools Industry/Working Life)” 스터디 그룹의 활동이 이런 맥락에 속한다.

- 독일에서 학교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협력하게 하는 많은 시도가 성공했다. 이런 협력 관계를 확장하는 것은 큰 도전으로 남아 있다. 성장 과정에서 요구하는 점들이 점점 증가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문을 긴밀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iii) 직업 교육 제도 통합

정책수단의 실행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 1999년에, 연방 정부, 노조/고용주 단체, 그리고 방(Lander)은 복선적 직업 교육의 현대화(모듈화 포함)를 위한 공통적 기반과 방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빈곤한 청소년들(이 중에서 많은 수는 학교를 다 끝내지 못하고 행동이나 학습에서 문제를 겪게 된다)의 교육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합의했다.
- 1999년에, 방(Lander)은 8천 1백만 DM을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인 Getting Schools on the Net에 기부했다. I&C 부문에 대해 방(Lander)이 계획한 재정적 수단은 앞으로 다음 몇 년 동안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⑧ 지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실직 퇴치·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노동 시장 통합을 위한 복지법 적용

무엇보다도, 각 지역별로 취업 기회를 향상시키고 연방복지법(Federal Welfare Act)과 “아동·청소년법(Child and Youth Services Act)”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이다. 자선 분야와 상거래 분야의 전문직 자격 조건과 취업 기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직 자격 획득은 지역적인 경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는 연방복지법(Federal Welfare Act)을 통해, 연령

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고, 빈곤과 사회적 배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한 가지 목표는 자조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조금 수혜자는 가능한 한 보조금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닌 것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연방복지법(Federal Welfare Act)은 실직한 복지 보조금 수혜자가 소득이 있는 직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단체에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 게다가 취업 지원이 가능한 경우,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지방 자치 단체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특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9조 제1항, Federal Welfare Act). 헌법에 따르면, 방(Länder), 그리고 방(Länder) 내의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별 사회봉사 기관으로서 Federal Welfare Act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취업을 지원하려는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이 계속 증가했다. 독일도시연합회(Association of German Cities and Towns)가 1999년에 실시한 연구 조사에서는 300,000명 이상의 사회 지원 수당 수혜자들이 연방복지법(Federal Welfare Act)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1998년에 취업이 되었다. 이것은 이전 2년 동안보다 50% 증가한 것이었다. 이 연구조사는 취업 지원 조치의 혜택을 본 사람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특별 대상 집단으로 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런 지역사회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Cologne의 사회사업 관련 부서는 사회 지원 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곧바로 고용 담당 기관으로 보낸다. 그곳에서, 그 청소년들은 즉시, 즉 신청한 바로 그 날, 그들이 사회 지원 수당에 의지하지 않게 해 주고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게 해 주는 현장 훈련 계

약서를 받게 된다(springboard 프로그램). 또 다른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는, Integration through Work and Actions against Youth Unemployment 라는 프로그램이 199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 사회 지원 자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청소년들을 직업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과 사회봉사 부서의 공조 체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연방노동기구(Federal Institute of Labour)는 “청소년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의 고용국과 시의 협력을 위한 조언들(Recommendations for the co-operation of employment offices and municipalities in the professional and social integration of young people)” (2000년 4월)을 발행했다. 이러한 제안의 목적은 다양한 지역별 기관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영국의 청소년 정책

1) 유스 서비스(Youth Service)¹¹⁾

(1) 유스 서비스의 역사

유스 서비스의 시작은 19세기 말로서, 그 때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클럽이 구성되었다. 이 그룹 중의 많은 수는 산업 시대의 그늘에 대응하는 인도주의적인 의무감에서 형성되었다. 일부 그룹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었고, 어떤 그룹은 반항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가치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지만, 어떤 그룹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11) [http://www.nya.org.uk/YS\(2001.10.8 검색\).htm](http://www.nya.org.uk/YS(2001.10.8%20검색).htm)을 번역한 것임.

보다 자발적인 청소년 단체, 즉 주목할만한 조직화된 주요 단체들은 20세기 초에야 발전이 되었다. 1939년에 정부는 청소년 단체가 지방 정부가 지원할 가치가 있는 교육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점을 깨닫고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촉구했다. 1944년 교육법(Education Act)에서는 지방 정부가 자원 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훈련과 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후 재건 시대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는 당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존 레드클리프모두드(John Redcliffe Maud) 경이 청소년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지게 표현하였다.

여가 시간을 즐기는 각 청소년들에게 가정, 공식적인 교육, 직장 등에서 교육을 보완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신체, 정신, 마음 등의 개인 자원을 찾아내어 발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숙한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사회의 창의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1950년대 말이 되어서야 종종 보다 넓은 사회에서 위협적으로 보기가 했던 뚜렷한 심대 문화가 출현하면서 이 봉사 활동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1960년에 정부를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Albemarle Report)에서는 여가 시간을 통한 사회 교육이라는 개념을 밝혔다 이것은 자신만의 가치와 생활스타일을 설정하려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사회 안의 자기 자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였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의 청소년 클럽 구성 프로그램, '소속이 없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긴급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요청했다. 그 중 많은 사업이 연이은 여러 해 동안 수행되었다

9년 후에 나온 두 번째 주요 보고서인 '70년대 청소년과 지역사회사업(Youth and Community Work in the 70s)'은 청소년 사업의 초점을 넓히고 청소년들이 정치 교육과 같은 개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다. 많은 정부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수행하는 활동의 이름을 '청소년과 지역사회' 관련 활동으로 바꾸어 확대된 목표를 반영했다.

1982년 톰슨(Thompson) 보고서인 '경험과 참여(Experience and Participation)'에서는 청소년 서비스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회 교육과 정치 교육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그 서비스가 단순히 '청소년들의 경험을 즐겁게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구출해주는 서비스'였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청소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핵심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요 정부 검토와 함께 청소년 서비스는 다른 보고서 및 개인과 그룹의 연구에 따라 틀이 잡혀졌다.

1967년의 헌트(Hunt) 보고서에서는 '이민 청소년'의 필요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서비스의 역할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와 연이은 1970년대의 보고서들에서는 유스서비스(Youth Service)의 역할을 흑인 청소년들의 백인 사회 통합을 돕는 것으로 밝히면서 흑인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인 청소년 사업을 거부했다.

이러한 보고서들이 이런 방식은 흑인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대우를 무시한 것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1980년대가 되어서였다. 공식적인 청소년 봉사 단체와 상대적으로 거의 접촉이 없는 독립적이고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활동이 한 가지 결과였다.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활동의 역사도 비슷하다. 자원 봉사 부문의 일부, 특히 가이드(Guide) 운동은 오랫동안 단성(single-sex) 청소년 사업의 가치를 주장했었지만, 청소년 봉사 단체의 그 외의 다른 경향 때문에 독립적인 지원 활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전의 전국

유스클럽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Youth Clubs)의 여자청소년사업단위(Girls Work Unit)와 같은 단체들의 영향으로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의 가치가 다시 강조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 서비스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청소년서비스 국가자문회의(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the Youth Service)에서 나온 일련의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청소년들을 의사 결정에 좀더 크게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넓은 문제들과 여성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농촌 지역의 청소년 등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문제들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1990년대 초에 세 가지 장관 회의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청소년 서비스를 보다 일관성 있는 교육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보다 공통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나 성취했는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2) 활동 방식과 활동 영역

아직도 가장 친숙한 형태의 청소년 서비스 지원 활동은 청소년 클럽이나 청소년 센터이다. 전통적인 청소년 클럽은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는 따뜻한 환경과 청소년지도자들이 비공식적인 교육 기회를 체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클럽에는 음악, 간단한 식사, 게임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 여행이나 스포츠 여행을 가고, 실외에서 하는 모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청소년 그룹과 교환 모임을 가질 기회도 제공한다 마약이나 알코올, 건강, 인종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을 연구하는 등의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사업도 있을 것이다 능숙한 청소년지도자는 이런 활동과 그 외의 다른 활동을 사용하여 청소년들과 인간관계를 구축하여 앞서 약속한 목표들을 수행한다.

청소년 클럽은 임대한 매장에서 자원 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일주일에 하루씩 모이는 클럽에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축한 건물에 근거지를 두고 지방 정부가 고용한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 유급 직원들이 운영하는 본격적인 클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원 봉사 단체는 때때로 공동체 구성원이 설립하여 소규모 관리 위원회가 관리하는 순수한 지역 수준의 이니셔티브가 될 수도 있고, Boys' Brigade나 Woodcraft Folk와 같은 전국 규모의 단체의 지역 지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서비스에는 단순한 클럽이나 체계가 잡힌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스타일의 청소년 사업이 있다.

청소년 프로젝트는 무주택 문제, 실직 문제, 마약 남용 문제 등과 같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특정한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예술이나 환경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프로젝트는 한 건물에서만 수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런 프로젝트는 매우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사업가는 학교나 대학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종종 학생 연맹과 같은 대표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대학 생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움으로써 현재의 공교육을 향상시킨다.

1960년대 이래로 독립적인 사업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독립적인 청소년지도자들은 거리, 선술집, 카페, 쇼펍센터, 공원, 또는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다른 장소 등에서 활동을 한다.

이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클럽 환경에 이끌리지 않는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융통성 있는 대응으로 볼 수도 있다 독립적인 사업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조언, 상담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역시 건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업가와 비슷하게 일련의 이벤트를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청소년 서비스의 방대한 교육적인 목표를 지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매우 다양한 조직체들도 있다. 그 중에는 상담, 조언, 정보기관, 자원 봉사와 공동체 참여를 장려하는 청소년 활동 기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험적인 활동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단체 등이 있다.

(3) 유스 서비스의 구조

유스 서비스는 지역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 보통, 유스 서비스는 지방 정부 기관과 자원 봉사 단체나 독립적인 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마련된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교육 담당 부서 내에 독립적인 청소년 봉사 단체,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봉사 단체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유스 서비스를 지원하며, 레크리에이션 담당 부서나 레저 활동 담당 부서가 유스 서비스 주무부서가 되는 지방 정부도 몇몇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청소년 서비스 파트너십은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럽과 프로젝트, 그리고 보조금, 파견 직원 및 그 외의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 봉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계속 교육 대학, 훈련 및 기업위원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민간 부문들과 파트너십을 마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 사업을 마련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지부를 두고 있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국적인 규모의 자원 봉사 단체 외에도, 독립적인 자원 봉사 단체가 있으며, 종종 지역사회 내의 자립형 그룹도 존재한다. 그런 그룹은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참여하며 공식적인 청소년 서비스와는 거의 접촉이 없다.

지역 청소년 정책이 협의회 직원들의 자문을 받는 선출직 위원들이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 정부 기관들은 자원 봉사 부문과 청소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정부 기관들은 청소년 포럼이나 협의회를 지원하며, 일부는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와도 연결되어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는 청소년들의 견해를 정부에 대변하는 기구로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증가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인 제도는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내의 지사, 정부 지원 단체인 국가청소년기구(NYA), 그리고 구성 회원들의 산하 단체 역할을 하는 많은 전국자원봉사 청소년단체(National Voluntary Youth Organisations: NVYOs)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고용부는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며, 전국자원봉사청소년단체의 보조금 제도를 집행한다.

국가청소년기구(NYA)는 청소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1991년에 창설되었다. 국가청소년기구(NYA)는 청소년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며, 청소년지도자에게 정보, 출판 서비스, 자원 등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훈련 및 커리큘럼 개발도 지원한다. 전국청소년기구(NYA)는 또한 청소년들의 자원 봉사 활동을 장려하며, 훈련 과정과 스탠프 개발 정책 승인을 통해 청소년 사업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준다. 또한 청소년사업발전기금(Youth Work Development Grant) 기획도 관리한다

스카웃협회(Scout Association)나 가이드협회(Guide Association)와 같은 대부분의 전국적인 자발적인 청소년 단체들은 정책을 설정하고 지역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고도로 개발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른 자원 봉사 단체들은 다소 느슨한 형태의 지역별 클럽 연합체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Youth Clubs UK와 같은 종합적인 단체이거나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념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농부클럽(Young Farmers' Clubs)이나 청소년 클럽감리교협회(Methodist Association of Youth Clubs)가 있다.

(4) 지출 규모

청소년 서비스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출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규모의 자원 봉사자 참여 및 다른 재원의 모금 능력은 청소년 서비스 관련 공공 지출 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되는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 조사 수치에서는 효율이 1:8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원 봉사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기금을 모금한다. 지역별 차원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많은 자원 봉사 단체를 지원한다. 지방 정부 자체 재정은 지역적으로 증가시킨 금액과 중앙 정부의 지원기금(Revenue Support Grant)으로 구성된다. 1993-94년의 수치는 영국에서 2억 7천 5백만 파운드가 지출되었음을 알려준다.

청소년 서비스에 지출되는 일인당 금액은 지방 정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에 의하면 지방 정부에는 '적정 수준의' 청소년 서비스를 마련할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지침은 없지만, 지방 정부는 적게든 많게든 스스로 적합하다고 보는 만큼 지출할 수 있다.

교육·고용부도 청소년 서비스에 직접 소액을 지출한다. 이러한 지출에는 전국적인 자원 봉사 청소년 단체에 수여한 보조금 제도가 포함된다. 그 규모는 1996-7년에 300만 파운드였고 1996-97년에 국가청소년기구(National Youth Agency)를 대신한 보조금 지원은 170억 파운드였다.

1996년 4월부터 국립청소년연구소(National Youth Agency)에 대한 대량의 자금 지원은 지방정부단체들(Local Authorities Associations)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육·고용부의 GEST(Grant for Education Support and Training scheme)를 통해서도 청소년 서비스에 자금이 공급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발표되면 지방 정부는 이 제도에 따라 자금을 신청한다. 1995-96년에 GEST 청소년 서비스 보조금은 22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일부 청소년 서비스는 범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320만 파운드 규모의 프로그램과 학교 무단결석에 대처하는 1,000만 파운드 규모의 계획에 참여하기도 했다.

청소년 서비스는 농촌발전위원회(Rural Development Commission)와 같은 자금원에서 시간이 제한된 프로젝트의 특정 부문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금원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자선 기금이다. 예를 들어, 랭크 기금(Rank Foundation)은 청소년 사업을 지원하면서 매년 1백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며, 프린스 기금(Prince's Trust)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급에 약 2,500만 파운드 정도를 지출한다.

전국 로터리(National Lottery)가 창설되면서 새로운 자금원이 등장했다. 복권의 예술, 스포츠, 자선 등의 부서가 모두 청소년 사업의 자금을 대고 있다. 특히 자선위원회(Charities Board)는 청소년 문제를 최우선순위 문제로 규정했다. 이것은 첫 해에 분배된 2억 파운드의 상당한 부분이 청소년 서비스 프로젝트로 조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원 봉사 부문과 독립적인 부문,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관리자,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역할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바친 50만 명의 공헌의 가치를 수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지표로, '자원봉사청소년서비스를 위한 버킹햄셔 위원회(Buckinghamshire Council for Voluntary Youth Services)'가 실시한 한 연구 조사에서는 평균적인 청소년 사업 개최비율(sessional rate)로 지급을 했다면 회원 단체들의 자원 봉사의 가치는 매년 11,954,981 파운드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5) 이용 집단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가 될 것이다. 청

소년 서비스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법률이나 다른 어떤 것이 참여할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자발적인 인간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것이 각 지방 정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0년의 전국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11세에서 25세까지로 합의가 되었다. 이 연령 범위 내에서, 13세에서 19세까지의 연령 그룹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교육·고용부의 1994년 연구 조사에서는 임의의 한 시점에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의 20%가 청소년 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 84만 명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청소년들의 63%가 10대 시기의 임의의 시점에 청소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동일하지는 않다. 청소년들은 능력, 인종, 문화, 성별, 등등에서 다양하다. 청소년 서비스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개방' 정책으로는 소외된 청소년들의 일부에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를테면, 여성 청소년, 흑인 청소년, 장애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등을 겨냥한 몇 가지 지원 활동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청소년 서비스가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일부 소속이 없거나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은 공격받기 쉬운 청소년들을 찾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종종 법률로 인해서 또는 건강과 같은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한다.

모두에게 개방적이 되겠다는 청소년 서비스의 약속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압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청소년지도자 및 지도자 훈련 방법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은 유급 시간제 지원이나 자원 봉사자들이 수행하며, 비교적 적은 수의 자격을 갖춘 정규직 직원들이 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에서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 조사에 의하면 지방 정부와 자원 봉사 단체에서 일하는 정규직 청소년 서비스 직원은 약 5천 명 정도이고 시간제 청소년 서비스 직원을 3만 2천 명 정도라고 한다. 청소년 봉사에 참여하는 추정 자원 봉사자 수는 약 50만 명 정도이다.

정규직 직원의 대다수는 합동교섭위원회(Joint Negotiating Committee)를 대신하여 국립청소년연구소(NYA)가 인정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의 인증서나 학위이며, 고등 교육 기관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격 인정을 받는 경로가 다변화되었다. 일부 학위 과정은 이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들은 현재 직접 현장 중심 교육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의 많은 수는 2년 이상 정규 수업을 받는 것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 인정을 받는 경로를 열어 놓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1984년에는, 약 3백 8십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1996년에는 20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의 자격 획득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약 1천 6백 명 가량 있다고 국립청소년연구소(NYA)는 추산했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와 전국 규모의 자원 봉사 청소년 단체들은 시간제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교육 과정은 때때로 필수이지만, 그 다음 교육 과정으로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사업자에게 맡겨진다. RAMPs (Regional Accreditation and Moderation Panels)의 개발은 시간제 지도자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조직된 훈련과정에 대해 국가 차원의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일관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훈련 유형에는 청소년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다. 일부 시간제 직원들은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며 그들이 청소년 사업에서 받는 소득이 주 수입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규직 직원 자격을 따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일 주일에 하루밤 근무하며 청소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일제 직업(full-time job)을 가지고 있다.

2) 청소년 재정¹²⁾

(1) 개관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는 교육과 고용 분야에 2003-4년까지 1년에 120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New Deal은 영구 정책이 되었고 모든 실업자에게 확대되었다. 2003-4년까지 3년 동안 4억 5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Children's Fund가 설립되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4천만 파운드는 Social Exclusion Unit의 이웃 갱신 전략의 제안을 기초로 가난의 원인을 격퇴시키는데 할당되었다. Sure Start 프로그램은 두 배가 되어야 한다. 마약 방지 예산은 2003-4년까지 거의 10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다. 알코올 사용에 대한 국가 전략이 발표될 것이다. 학교 스포츠도 후원할 것이다.

Spending Review는 2001-2년에서 2003-4년까지 3년 동안의 새로운 공공 지출 계획을 설정한다. 다음 3년 동안 공공 서비스 지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 보건 분야와 관련된 것이며, 추가되는 20%는 운송, 주택, 법과 질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런 우선 분야 지출을 전부 합하면

12) <http://www.nya.org.uk/policy-comp-spend.htm>(2001 10 10 검색)을 번역한 것임

지출 증가의 75% 이상이 된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2003-4년까지 1년에 400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할 것이다.

①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내각 부서가 관련된 검토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기의 시기에 효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을 처음부터 방지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 부문, 공동체 단체, 법률에 따른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기관별 경계선을 무시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필요하다.

그 결과 다음 3년 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i) 커넥시온즈(Connexions) 개인 조언자 서비스는 새로운 자원과 함께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어, 13-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계속 받거나 훈련을 받도록 격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초점을 맞추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커넥시온즈(Connexions)은 정신 건강 서비스, 주택 문제와 약물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하여 공격받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봉사 활동과 함께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봉사 단체들의 연결 관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사이의 위탁 시스템이 더 향상되고 데이터 공유도 더 커질 것이다.

(ii) 새로운 아동기금(Children's Fund)은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척 문제를 격퇴시키기 위한 정부 전략의 새로운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기금은 초기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지원을 베푸는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이 기금의 목표는 아동들이 마약 남용, 무단결석, 따돌리기, 실직, 범죄 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3년 동안 총 5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으며, 다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iii) 슈어스타트(Sure Start)와 커넥시온즈(Connexions)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주로 5-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3억 8천만 파운드 규모의 예방 활동 프로그램. 아동들이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돕는다. 이 기금은 지방 정부와 그 외의 자원 봉사 부문 활동을 포함하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사용되며, '도시에서의 수월성(Excellence in Cities)'과 같은 다른 이니셔티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iv) 예산에서 발표되었고 자원 봉사 부문과 협의하여 개발이 된 7천만 파운드 규모의 아동 기금 지역별 네트워크. 이것은 모든 연령의 아동들을 위한 자원 봉사 부문 자체에서 관리하며, 지역 집단과 지역사회가 아동 빈곤 문제에 대해 지역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 자신의 포부와 인생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기금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에는 아동과 그 부모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에 연계되어 있는 전문가 기획, 가정/학교 파트너십, 온트랙(On Track)이나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와 같은 기획의 연속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동·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s Services)'에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감독하며, 새로운 부서가 관리하게 된다. 주된 공공 서비스와 자원 봉사 및 지역사회 부문을 함께 묶는 지방 정부 차원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적인 협력이 향상될 것이다.

- 목표는 청소년 범죄자가 자행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부서별 공공서비스 협약에 설정되어 있다. 즉, 돌보아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봉사 활동을 개선하고 최소 학력을 올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견해를 추적하려는 관점에서 보다 나은 협력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 아주 어린 아동을 위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인 슈어스타트(Sure Start)에 새로운 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슈어스타트(Sure Start)의 지출이 2000-1년의 연간 1억 8천 4백만 파운드에서 2003-4년의 거의 연간 5억 파운드로 증가.
- 슈어스타트(Sure Start)가 2004년까지 프로그램 수가 250개에서 최소한 500개까지 두 배로 증가하는 지리적인 확장. 확장된 Sure Start는 영국에서 4세 미만의 가난한 아동들의 삼 분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일부 새 프로그램들은 이를테면 농촌 지역의 박탈당한 자의 호주머니를 목표로 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작은 규모가 될 것이다.

② 빈곤한 지역의 가난 퇴치

Spending Review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 빈곤층에 대한 정책 목표는 극빈 지역과 나머지 지역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정부의 주요 목표와 일치하는 첫번째 단계이다.

빈곤한 지역에서의 정부 간섭에 대한 전체 내각 차원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작하기 위한 ‘이웃개선(Neighbourhood Renewal)’틀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i) 처음으로 정부 부서들에게 빈곤한 지역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명시적인 목표가 제시될 것이다. 범죄가 줄어들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건강이 개선되면 가장 가난한 지역과 국가 평균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게 될 것이다.

(ii) 이러한 까다로운 목표는 빈곤한 지역에서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자원의 실질적인 증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한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그 기금 조달과 할당 과정을 검토하여 소외 지역에서도 건강, 교육 및 그 외의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관대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

(iii) 이 과정을 신속하게 시작하기 위하여, 다음 3년 동안 가장 빈곤한 지역의 지방 정부에게 새로운 이웃개선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을 통하여 2001-2년에 추가 1억 파운드, 2002-3년에 3억 파운드, 2003-4년에 4억 파운드가 공급될 것이다.

이들 개선기금은

- 지역사회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ommunities)에 더 많은 자원이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지역과 이웃 차원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돕게 될 것이다.
- 실행은 협의회들과 정부기관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의존하게 된다. 즉 짜집기 형태로 조그마한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서비스 업체를 자원 봉사 단체, 지역사회 단체, 민간 부문 단체 등과 결집시켜서 서로 협력하여 각 이웃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s)을 만들 것이다.
- 새로운 범주의 통계자료를 통해 소규모 이웃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모니터하는 것을 돕게 된다.

③ 교육

영국 전체의 교육 관련 지출은 다음 3년 동안 실질적인 면으로 연간 5.4%나 올라가도록 설정되어, 2000-1년의 458억 파운드에서 2003-4년의 577억 파운드로 증가하게 된다. 3월 예산에서 발표된 기금과 합하면, 이것은 4년 동안 평균 6.6 퍼센트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검토의 주요 결과.

(1) 까다로운 새로운 표준이 중등 학교에 설정될 것이다 자문에 의

하면, 14세 학생의 85%가 2007년까지는 영어, 수학,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필수 표준 성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80%는 수학에서 필수 표준 성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1999년도의 영어에서 64%와 수학에서 62%와 비교가 된다.

(ii) 뒤에 처지는 학생과 그들이 도달해야 하는 표준 사이의 성적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11세, 14세, 16세 아동들에 대해 최소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의 학생들의 최소한 38%가 2004년까지는 5개의 A+-C 등급의 GCSE 그 이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iii)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에서 16세 연령의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iv) 18-30세 청소년의 50%까지 고등교육을 확장시키겠다는 포부하에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위한 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v) 성인들이 읽고 쓰기와 기본적인 계산을 능숙하게 하도록 돕기 위한 주요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 예산 지불을 2억 5천만 파운드에서 5억 5천만 파운드까지의 단위로 증가시켜 계속 학교에 직접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는 예산 상의 8천 파운드에 비해 2만 파운드를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중등학교에서는 예산 상의 4만 파운드가 아니라 6만 파운드를 받게 될 것이다.
- 더 많은 전문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가 지원.
- 학교 건물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더 많은 지출.
- 대학교육 기회 및 지원활동 확대를 통해 주요 대학교들이 공립학교와 단과 대학에서의 신입생 충원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새로운 목표.

④ 범죄 및 범죄 감소

전체 내각 차원에서 범 집행 제도, 경찰, 법정, 교도소 등에서의 범죄 감소와 불법 마약 신규 투자, 그리고 지역적인 범죄 감소 활동과 불법 마약에 대한 조치 등을 검토한 다음 제안한 다음 내용들은 Spending Review의 결과로 다음 3년 동안 실행된다.

(i) 2001-2년에 14억 파운드가 추가되고, 2003-4년까지는 27억 파운드가 추가되게 되므로, 범 집행 체계 전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범죄자가 벌을 받는 기록된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ii) 범죄 감소를 위한 내무부(Home Office)의 프로그램에 다음 3년 동안 매년 최소한 1억 6천만 파운드를 지출하게 되어, 2004년까지 차량 범죄를 30% 줄이고 2005년까지 가정 절도를 25% 줄이고 2005년까지 주요 도시의 강도를 14%나 줄이겠다는 계획에 기여하게 된다.

(iii) 효과가 있는 개입을 중심으로 마약 남용 문제를 뿌리부터 근절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을 매년 10%씩 실제로 증가시킴으로써, A급 마약 사용을 보고하는 25세 이하 인구의 비율을 2005년까지 25%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iv) 범 집행 제도를 위한 추가 기금을 새로운 IT에 투입하여 사례관리를 능률적으로 만들고 그런 사례를 다루는데 걸린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한다.

(v) 스테판 로렌스 조사(Stephen Lawrence Inquiry)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희생자와 증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다.

(vi) 범죄 감소를 위한 추가 자금은 지방 Crime and Disorder Partnerships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무단결석을 줄이기 위한 교육·고용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조치와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남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보건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의 조치가 보완을 해 줄 것이다

(vii) 마약을 위한 추가 자금이 새로운 전국치료기관(National

Treatment Agency)에 공급되어, 마약 중독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약 구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마약 위협을 평가하는데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생길 것이다.

⑤ 고용기회 및 뉴딜(New Deal)

2001-2년에 8억 7천 5백만 파운드 정도이고 2003-4년에는 14억 파운드로 증가하게 될 고용기회기금(Employment Opportunities Fund)을 사용하여 뉴딜(New Deal)은 전체 내각 차원 검토의 일부로 영구적이 될 것이다. 취해지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Budget 2000에 서술된 것처럼 2001년 4월에 도입이 될 보장된 New Deal 25 plus.

(ii) 새로운 ONE 서비스 확대 - 고용과 benefit advice 통합.

(iii) 장애인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하려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내고 계속 일하는 것을 돕는 조치가 취해진다.

(iv) 빈곤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child-care)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초기 자금 증가.

그 외의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문화·대중매체·스포츠국(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제공하는 2001-2년의 추가 1억 5백만 파운드, 2002-3년의 1억 5천 5백만 파운드, 2003-4년의 2억 2천 5백만 파운드. 이것은 2000-1년과 2003-4년 사이에 연평균 4.3%의 실질 상승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모든 지역의 변영 증가 - 매년 국정 채신 예산이 평균 15%씩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2003-04년에는 지금보다 9억 3천 2백만 파운드를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의 이러한 변

영과 고용 증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며, 그 결과 2010년까지 17% 이상의 브라운필드(brownfield) 땅을 개간되게 될 것이다.

- 농촌 지역의 기회 강화 - 농촌지역 개방 향상에 지원된 예산이 연평균 10% 증가하여 향후 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Bill을 실행하고 마켓 타운을 돕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하게 됨. 오늘날 처음으로 정부 전 영역에서 농촌 지역 정책의 뚜렷한 목표가 가시화 되었다.
- 지방 정부를 위한 6개 분야로 된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를 통하여 지방 정부를 위한 수입 보조금 증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에 성과와 보상 성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역별 공공서비스협약(PSA, Public Service Agreements) 시험 운영, 지역 서비스의 전자식 전달을 한 단계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방 정부 온라인 이니셔티브를 위한 추가 자원, 지방 정부를 위한 미래의 자금 조달에 대한 보다 큰 확실성.

(2) 아동기금 (CHILDREN'S FUND)¹³⁾

① 기금의 배경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척을 격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새로운 4억 5천만 파운드의 Children's Fund가 2000년 11월 15일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는 Paul Boateng, Malcolm Wicks, Yvette Cooper, Gordon Brown, David Blunkett 등의 내각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기 위한 일련의 지역별 회의도 계획되었다.

이 기금은 새로 발족된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에서 관리하며, 5-13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예방 서비스와 지역별 프로젝트에

13) http://www.nya.org.uk/Children's_fund.htm(2001 10 10 검색)을 번역한 것임.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자원 봉사 부문의 조직체들이 관리하게 되는 지역 별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있다. Home Office Minister인 Paul Boateng이 “Minister for Young People”으로 임명되어 이 Unit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새로 발족된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s 서비스)가 19세 이하 그룹에서 가난과 좋지 않은 환경을 방지하려는 정부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i) 멘토링 계획, 예를 들면 나이가 좀더 많은 친구가 범죄에 말려들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한다.

(ii) 상담 및 조언 서비스 - 예를 들면, 난민이나 영어를 모르는 가족과 협력하는 것이나 경찰이나 여성 보조자의 예기치 않은 조언이 있다.

(iii) 아동의 말을 청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한 부모 교육.

(iv) 사회 교육, 교육적인 활동, 창조적인 활동, 스포츠 등과 관련된 하계 학교가 포함된다.

② 기금의 규모

장관들은 이 기금의 원칙과 주요 목표를 설명하는 계획서를 발행했고, 새해에는 좀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년 동안의 4억 5천만 파운드의 기금은 아동 기금 지역 네트워크 7천만 파운드, 예방 사업 프로그램의 3억 8천만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금은 다음 회계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집행될 것이며, 2004년까지는 영국 전지역에서 일부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③ 기금의 사명

Children’s Fund는 소외 청소년들의 필요 충족과 유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연하고 수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빈곤과 악조건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한다. 포괄적인 목표는 주요 프로그램과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된 것 이상의 추가 자원을 제공하여 자원 봉사 단체나 공동체 단체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봉사 단체들이 아동들이 빈곤과 악조건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④ 기금의 주요 원칙

이 기금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i) 이웃 공동체 내를 기준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자극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복수 기관 사업을 장려하는 것.

(ii) 문제의 조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가족 내에서도 보다 넓은 공동체 내에서 그런 위험의 원인을 처리하는 것.

(iii) 정당한 증거를 기초로 기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도 지원하는 것.

(iv) 개별적인 가족 및 보다 넓은 공동체 내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각 아동을 직접 지원하여 장기적인 향상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

(v)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면서 소수 민족, 장애,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vi) 공공 기관의 개입과 복잡성을 최소로 줄이고 운영하는 것.

(vii) 기금을 처음 도입할 때 그리고 더 큰 필요가 있는 지역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산되게 하는 것.

(viii) Sure Start 프로그램과 Early Years 프로그램, 그리고 13세 이상 그룹을 위한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 개발 사이에 존재하는 사전 대비 서비스의 격차를 보완하고 메우는 것.

(ix) 지정된 자금을 지원하고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처리하는 집단을 포함하는 자원 봉사 집단과 공동체 집단이 향상된 서비스를 위한 지역적인 제안을 도출하는데 주 역할을 하게 하여 그런 집단에 참여하는 것.

⑤ 지역별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의 목표는 아동 빈곤 문제의 지역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지역 공동체와 자원 봉사 집단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가난한 아동들이 잠재력을 달성하게 돕는 것이다. 이 기금은 공동체, 가족, 아동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지니게 해 주고, 그들이 이용 가능한 기회를 증가시키도록 지원한다. 이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는 많은 그룹은 소규모이고 발달 초기 단계이며, 등록된 자선 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그룹까지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기 지역에서 소액 보조금 수여 능력이 있는 자발적인 중개 기관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 지역 네트워크는 다음 네 가지 주제 하에 지역 공동체와 자원 봉사 단체에 수여되는 보조금으로 0-19세 사이의 취약한 아동을 돕는 지역 자원 봉사 단체와 공동체 그룹을 지원한다.

- 야망과 경험--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하거나 보다 특혜를 받는 아이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 경제적인 악조건--가족들이 생활 표준을 향상시키고 낮은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 고립과 액세스--고립되거나 홀로 지내는 아이들, 또는 봉사 활동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
- 아동의 목소리--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조언해 주는 프로젝트

수여할 보조금의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하

지만, 대부분의 보조금은 몇 백 파운드에서 1, 2천 파운드 정도의 소액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네트워크가 도달할 목표인 소규모 지역 그룹의 가능성이 있는 규모와 수요에 맞추어진다. 2004년 4월까지 네트워크는 영국 전역에서 약 50개 정도의 지역기금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 기금은 (2001-2, 4월부터 시작하는) 첫 해에 국가의 삼 분의 일을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첫 해에 대상으로 선택된 지역은 2001년 초에 발표될 것이다

각 지역 기금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 봉사 부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자원 봉사 부문 보조금 수여 단체에서 관리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국(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은 전국적인 규모의 지역 “지부”를 보유하고 있고 보조금 수여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 단체들에게 지역 기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도록 초대했다. 선택된 활동 기관은 2001년 초에 발표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하려는 지역 사회와 자원 봉사 단체들은 지역 보조금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관의 지역 “지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각 신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전체 지침을 적용하여 적합한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수여한다.

소규모 보조금 수여를 해 온 자원 봉사 부문 활동 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그룹에 접근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종종 소수 민족 집단을 다루는 그룹의 경우가 그러하다.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은 아동이나 가족들과 협력하는 지역 자원 봉사 단체를 사용하는 활동 기관이나 특정 지역에 확실하게 자리잡은 국가 단체를 지원하여 한계를 벗어난 그룹을 돕고, 도달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체 집단에게 자문을 하고 훈련을 하여 그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격려한다.

⑥ 예방 사업 프로그램

이 기금 중의 3억 8천만 파운드는 조기에 문제 증상이 나타나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장애물과 악조건을 극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그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기금은 주로 현재 법률로 정한 서비스의 한계 이하인 상황이며 종종 발견되지 않아서 위기에 봉착할 때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찾아내어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기금의 사업은 Quality Protects와 같은 이미 존재하는 법정 봉사 단체와 이니셔티브, 그리고 무단결석과 따돌리기 문제 이니셔티브의 사업을 보완하여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법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추가 서비스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부적합한 지역별 법정 봉사 단체 활동을 대체하거나 빈틈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금은 주로 5-13세 아동을 지원하는데 집중되어 Sure Start와 커넥시온즈(Connexions) 사이의 빈틈을 메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동 서비스가 항상 이러한 연령대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별로 약간씩 연령 대에 차이를 두어 아동 봉사 단체 제안서에 포함시켜 지역적인 필요에 적절하게 맞추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제안서는 밑에서 위로 진행하며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가 원하는 것에 부응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소유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서비스가 지역적인 필요에 민감해지게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1) 조기에 문제 증상이 나타나는 아동을 찾아내어, 이를테면 통합 평가 방식, 향상된 데이터 공유, 공통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도록 위탁하는 서비스.

(11) 아이들과 그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 예를 들면, 멘토링 지원, 상담, 조언 서비스, 부모 교육, 결혼 가정 자녀 지원, 교외 활동, 학교나 체육 센터에서의 단체 활동을 통한 개별적인 아동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111) 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특히 중점을 두게 되며 이 기금에서 장애를 처리하게 되고 각 지역은 제안서에서 이러

한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금은 2004년 4월까지 영국 전지역에서 일부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새해에 이 기금의 첫 번째 집행(2001년 4월 - 2002년)의 해당 분야를 발표할 것이다.

목표는 이 기금이 필요한 곳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도달하게 하고 기금이 지역의 변화하는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공공 기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부서(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i) 자원 봉사 부문과 공동체 부문, 법정 부문, 아동, 가족 등을 동등한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지역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ii) 신청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사전 대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모든 주요 봉사 단체들이 온전히 포함되고 있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선택된 지역은 즉시 기금을 받게 될 것이다.

(iii) 첫 번째 심사에서 지방 당국의 장(Chief Executives)이 주요 지역 봉사 단체들을 끌어 모으고 자금 지원을 받을 봉사 단체에 대해 계획을 가장 잘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별 파트너십을 찾아내도록 요청한다. 경험에 의하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당국의 장들(Chief Executives)로 하여금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 정부 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부문들도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iv) 이 기금 전달을 위한 지역별 파트너십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아동들에게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가 각 지역에 생기게 될 것이다

각 지역은 기존의 기금과 이 기금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금을 사용하

여 자기 지역에서 예방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설명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초대받게 될 것이다. 제안서에는 현재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하려고 하는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것을 함께 지원하는데 어떻게 맞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안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 단계가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창의적인 비영리 활동을 포함하여 자원 봉사 부문이나 파트너십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서가 요구된 질적인 표준에 도달하면 그 제안서를 승인하게 된다.

□ NCH Action for Children's Baby Think Twice 프로젝트

스테베나가 가족서비스(Stevenage Family Support Service)는 사회봉사 단체나 건강 센터 방문자들이 위탁한 문제가 있고 압력을 받고 있는 가족을 돕는다. Baby Think Twice는 지원 봉사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부모 모임이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내포된 문제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을 한다. 지방 학교를 방문할 때, 이 그룹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법, 피임법, 인간관계, 재정, 주택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소년들과 토의한다. 그들은 또한 George라는 가상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아기는 실제 아기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즉 울고, 소리 지르고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다.

□ 해링지 청소년경력(Haringey Young Carers) 프로젝트

이 사업은 지방 자치 단체 구역에 살고 있고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들과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그룹 모임과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소년소녀 가장들은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역사회에서 나온 철저하게 선별하여 훈련을 한 자원 봉사자들을 사용하는 befriender

서비스도 소년소녀 가장에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준다. 소년소녀 가장과 그 가족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격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받으며, 이미 존재하는 사회봉사 단체와 레크리에이션 봉사 단체를 이용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 스트라스모어 센터(Strathmore Centre)

스트라스모어 센터(Strathmore Centre)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11세의 소외된 학생들, 감독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정규 교육.
- 학교나 사회봉사 단체에서 위탁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일대일 교내 지원 및 그룹 활동
- 청소년들과 함께 일할 지도교사, 지지자, 독립적인 방문자들을 마련하는 새로운 자원 봉사 계획
- 40명의 불평이 많고 공격받기 쉬운 청소년들(12-16)을 위한 하계 프로그램
- 공공 기관에서 보호하거나 수용해야 할 위험에 처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위기 개입 봉사 활동
- 불만을 품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풋볼 팀 (최근에 지역 리그에도 참여함)

이 센터는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위법 행위를 줄이고 교육적인 성과를 보장해 준 좋은 기록이 있다. 센터에 참여하는 도전적인 청소년들은 교육에 계속 참여했다.

지역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종류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역들을 돕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부서(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봉사 활동과 기대할 만한 접근 방

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실천 지침을 발행할 것이다.

(3) 이웃지원기금 (Neighbourhood Support Fund)¹⁴⁾

① 배경

교육·기술국(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이웃지원기금(Neighbourhood Support Fund)은 영국에서 40개의 가장 곤궁한 지방 자치 단체 지역에 사는 가장 불만이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3년 동안 총 6천만 파운드를 마련했고, 그 돈은 2000-2003년에 실행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현재 모든 기금이 배당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

이웃지원기금의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와 별도로 혁신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할 일이 없는 청소년들을 학습과 고용으로 다시 연결하는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 방식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교육, 훈련, 취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성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만과 비 참여 문제를 처리하여 청소년들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청소년들이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좀 더 넓은 규모의 연결전략(Connexions Strategy)의 중요한 부분이다. 연결전략(Connexions Strategy)은 학습 참여를 19세까지 증가시키고 학력 성취를 향상시키도록 돕고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 분배는 다음 세가지 Agent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전국청소년기구(NYA)
- 지역사회발전재단(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 학습동맹(Learning Alliance).

14) http://www.nya.org.uk/neighbourhood_support_fund.htm(2001 10 10 검색)을 번역한 것임

전국청소년기구(NYA)에서 분배하는 기금은 우량 청소년 사업의 가치, 프로세스, 원칙을 지키며 활동하는 자원봉사 부문, 또는 지역사회 부문 청소년 단체에 투자된다. 전국청소년기구(NYA)에서 기금을 제공하는 NSF 프로젝트는 기존의 청소년 사업 실천 사례 중의 최상의 방식을 기초로 구성되어 효과적이고 비공식적인 개인적 사회적 교육을 통해 가장 불만이 많고 할 일이 없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청소년기구(NYA)는 청소년 대상의 광범위한 활동에 다양한 청소년 사업 방식을 활용하는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② 대상 그룹

이웃지원기금(Neighbourhood Support Fund)은 가장 불만이 많고 할 일이 없는 13-19세의 청소년들(특히 16-1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 학교에서 쫓겨났거나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청소년
- 학교 성적이 낮은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한 청소년
-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 보호자 없는(care leaver) 청소년
- 마약 사용 문제나 의존성 문제가 있는 청소년
- 무주택 청소년
- 10대 부모
- 청소년 범죄자

③ 방식 및 활동

국가청소년기구(NYA) 계열에 속하는 모든 이웃지원기금(NSF) 프로젝트는 청소년 사업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매우 다양한 활동에 적용이 된다.

- 드라마, 음악, 비디오
- 인터넷 및 정보 통신 테크놀로지
- 자원 봉사 활동이나 자발적인 행위
- 직업 관련 기능 개발
- 또래 교육
- 모터 프로젝트
- 실외 활동 기회와 주거지 활동 기회
- 스포츠
- 상담, 조언, 정보
- 발전

④ 발전

이웃지원기금(Neighbourhood Support Fund) 개발을 통하여, 전국청소년기구(NYA)는 성공적인 실천을 측정, 반영, 개발하는 지역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4) 유스 서비스 표준기금 (Youth Service Standards Fund)¹⁵⁾

블룬케트(David Blunkett)는 유스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청소년 사업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4년 기간에 사용할 2천만 파운드의 유스 서비스 표준기금 (2002-3년에 1천만 파운드와 2003-4년에 1천만 파운드)을 발표했다. 교육·기술국(DfES)은 (7월 31일에 끝나는) '청소년사업 혁신 (Transforming Youth Work)' 자문 활동의 일환으로 기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하고 그 후에는 지침서를 발행할 것이다.

“청소년 사업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스포츠, 예술,

15) http://nya.org.uk/YS_standards_fund.htm(2001. 10. 10 검색)을 번역한 것임.

공동체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개인 기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삶을 지배하고 틀을 잡아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청소년 사업을 이용하면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공동체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거의 없으며, 훌륭한 청소년 사업을 이용하는 것보다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Blunkett의 말)

2천만 달러의 유스 서비스 표준기금 (Youth Service Standards Fund)은 다음과 같은 일에 사용될 것이다.

- 전국적으로 질 높은 청소년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일
- 자원 봉사 부문이나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
- 지역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확장하는 일.

“활기 넘치는 질 높은 청소년 사업은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커넥시온즈(Connexions)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청소년 사업의 표준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도록 보장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청소년 사업이 최상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 사업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선택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청소년 사업을 12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진행 중인 새로운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 개발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과 자원 봉사 부문의 청소년 사업, 경력 서비스, 현재 학교 개선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외에 보건과 레저 분야의 다른 지원 서비스 등이 결집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성공담이다. 현재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학교

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수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적다. 청소년들의 49%가 5+ A-C 등급 GCSE를 받으며, 12,000명 이상이 자원봉사자들(Millennium Volunteers)이다. 혁신적인 청소년 사업이 이런 종류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며, 표준기금(Standards Fund)은 이 운동이 계속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3) 주요 추진사업

(1) 커넥시온즈(Connexions)¹⁶⁾

① 커넥시온즈(Connexions) 전략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인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가 주축이 된 커넥시온즈 전략(Connexions Strategy)이 2000년 2월에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전략을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이렇게 표현했다. “10대를 거치는 동안 사회 참여와 학력 달성에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절하고 질 높은 학습 기회를 누리고 사춘기에서 성인 생활과 직장 생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전체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역 봉사 단체들에서 서로 협력하고 새롭고 보편적인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를 설립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보다 높은 표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중의 절반은 나중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마음껏 펼쳐야 한다 마찬

16) <http://www.nya.org.uk/connexions.htm>(2001 10 8 검색)을 번역한 것임

가지로, 청소년들은 가난한 배경을 지니고 있거나 불만을 품을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습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할 동기를 가지게 되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전략은 다음 네 가지 주요 개념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1) 다양한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관련된 필수 자격을 얻게 해 주는 융통성 있는 커리큘럼

- 교내의 청소년들이 직업과 관련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Key Stage 4의 구성 요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
- 자격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요 대인 기능과 자원 봉사 사업 개발의 가치도 인정하는 19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졸업증(Graduation Certificate)'에 대한 제안서
-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범위를 넓혀 주는 '성공자질(Qualifying for Success)'
- 주요 기능 자격 부여

(ii) 후기 중등교육,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대학, 직업 중심 교육 등에서 질 높은 지원 활동 보장

- 법률에 따라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Skills Council)를 구성하고 학습파트너십(Learning Partnerships)을 이용하여 학습 지원 활동의 기금 조달과 조정을 향상시키는 일
- 현대도제(Modern Apprenticeships)와 국가훈련생(National Traineeships)을 개발하고 도제 제도를 개발하여 직업 중심 경로를 향상시키는 일
-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16-19 지원 활동 검사

(iii)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표로 설정

- 학습 참여를 보상하고 학습과 관련된 장애물을 줄이기 위해 레저활동, 여행 등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유스카드(Youth Card) 개발
- Further Education Access Funds를 학교에 머무르는 16-19세 청소년에게 확대
- 학교에 머무르는 16-19세 청소년을 위한 Access Fund 도입
-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최소훈련수당(Minimum Training Allowance) 상향 조정
-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휴가를 낼 수 있도록 '공부를 위한 시간에 대한 권리(Right to Time for Study)' 규정 집행
- 현재 15개 지역에서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실험 실행하고 교육을 계속 받는 청소년들에 대해 주당 최대 40 파운드까지 지원
- 16-19세에 대한 기존의 재정 지원 조치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장기적으로 좀더 합리화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는 일

(iv) 최선의 활동, 정보, 조언, 지원, 지도

- 따돌리기 반대 조치와 무단결석 반대 조치
- 새천년자원봉사(Millennium Volunteers)
- 이웃지원기금(Neighbourhood Support Fund)
-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

새로운 관점의 진로지도사업, 뉴스타트파트너십(New Start Partnerships) 사업,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러닝게이트웨이(Learning Gateway) 등 세가지 연결 사업이 새로운 커넥시온즈 서비스의 중요 구성 요소이다.

②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

커넥시온즈(Connexions) 전략의 핵심은 새로운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이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별적 상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재의 단편화된 서비스를 끝내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공공 단체, 민간단체, 자원 봉사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나오며 최상의 실천을 기초로 구축된다.

(i) 목표

이 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인생 목표를 고양시켜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FE 대학, 교육 서비스 업체, 또는 그 외의 공동체 환경 등에서 적절한 학습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광범위한 학습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질 높은 지원과 지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일련의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 서비스는 보편적이며 종합적이므로 어떠한 청소년도 지원 망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 줄 것이다.

(ii) 원칙

이 서비스는 다음 여덟 가지 주요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인생 목표를 고양시키는 것 - 모든 개인의 기대치를 높게 설정
- 개별적인 필요에 맞추는 일 - 그리고 학습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
- 새로운 서비스가 발전이 되어 지역적으로 운영이 될 때 개인적이거나 집합적인 청소년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일

- 통합 - 청소년들을 중심 교육 제도 안에 머무르게 하고 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일
- 파트너십 - 기관들이 고립적으로 일하기 보다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들, 부모들, 공동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 지역사회 참여와 이웃 채신 - 지역사회 멘토의 개입을 통해, 지역적인 복지, 보건, 예술, 스포츠, 지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적 조언자들을 통해
- 기회와 기회의 평등성을 확대 -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와 학력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 활동의 이용 가능성, 적합성, 질 등에 영향을 주고, 기회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
- 실천에 기초한 증거 - 새로운 조정은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엄격한 연구 조사와 평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보장하는 것.

(iii) 구조 및 활동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최소한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적절한 책임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높은 표준, 그리고 개별적 상담자 활동의 적절한 조정을 보장하되 활동 모델은 부과되지 않는 구조를 통하여 제공될 것이다. 이것은 전략적인 수준의 기획과 자금 지원을 허용하며, 동시에 지역적인 지원 제도가 지역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장한다. 이 서비스의 단계적 조정 덕분에 지역별 협력 단체와 함께 특정한 지역적인 상황에 맞는 최상의 조직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이때문에 지방마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제안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봄부터 존재해 온 부서간연결서비스전국부서(Cross-Departmental Connexions National Unit, DfEE) 이 부서는 DfEE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직원들은 여러 정부 부처와 외부 단체에서 보내주게 될 것이다. 이 부서(Unit)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의 지

원을 받으며 교육부장관(education secretary)이 의장으로 일하는 내각 장관 모임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 지역적인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의 지역 수준 커넥시온즈 파트너십(Connexions Partnerships)은 기획과 기금 조달 기획을 담당한다. 그 구성원은 지역 관리 위원회의 의장, 지역 LSC의 의장이나 사무국장, 민간 부문 대표, 그리고 자원 봉사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지방 정부 수준이나 지방 정부 그룹 수준의 지역별 관리 위원회는 지역적인 상황에 맞추고, 지역별 협력 단체를 결집시키고 지역별 지원 활동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의장은 지방 정부 사무국장이나 다른 최상위 지역 인물이 될 것이며, 그 구성원은 자원 봉사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 인력회사, 고용주, 그리고 Youth Offending Teams의 회원 단체를 포함한 법정 서비스 단체 대표, 그리고 청소년 자신들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지역 관리자는 여러 협력 단체에서 고용한 개별상담자(Personal Adviser)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지역별 서비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원회에게 책임진다.

(iv) 주요 협력 단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진로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민간 및 비영리 인력회사는 자신들 수준의 파트너십과 계약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인력회사의 참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하면서 단계별로 조정하는 동안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정 단체든 자원 단체이든 간에 청소년 서비스는 이미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련의 귀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종 탁월한 아웃리치 활동과 개인 조언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의 보다 폭넓은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들이 서비스에 기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 정부는 자기들의 아웃리치 사업가와 독립적인 청소년지도자들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구성된 개별적 상담자의 다학문(multi-disciplinary) 팀에 통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원을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에 쏟아 부을 때,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청소년 서비스 활동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이러한 활동을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업에는 청소년 그룹과 함께 하는 센터 중심 활동과 주거지 활동이 포함되며, 그런 활동은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자원 봉사 단체에서 마련한다. 예를 들면, 동기화 사업이나 외유 사업이 있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 서비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응집력이 있게 하고 지원 활동의 빈 공간을 메꾸게 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역교육당국들이 청소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지속시킨다.”

그 외의 협력 단체에는 Youth Offending Teams, Education Welfare Service, Learning mentors, 그리고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돌보도록 마련되는 전문 개인 조언자 등이 포함된다.

(v) 자원

서비스의 자원은 현재 청소년 지원과 지도 활동에 제공되는 자원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파트너들에게서 나오며, 정부의 2000년도 세출안에서 추가 자금이 서비스 자원이 될 것이다. 지출 검토에서는 이 서비스가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에 미치게 될 수 있을 지 추가적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vi) 품질 보증

이 서비스는 교육 훈련과 직업에의 참여와 성취 관련된 일련의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마약 남용, 청소년 범죄, 십대 임신 등에 대해 설정된 목표도 있다.

이 서비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적 당하는 자들과 같은 위험에 처한 소수 민족 집단과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 십대 미혼모,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참여를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 등의 참여와 성취를 전체 인구의 참여와 성취수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될 것이다.

이 서비스는 목표 설정과 벤치마킹,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검사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갖춘 질 높은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 체계에서 빠져나가거나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십대 시기를 거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가 모든 청소년들 및 그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상태를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다.

③ 개별 상담자

개별 상담자는 청소년들의 모든 필요를 통합적·일관적 방식으로 충족시킬 책임을 진다. 개별 상담자가 하는 일은 16세 이전의 학교 출석 보장, 앞으로의 교육과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층적 지원, 그리고 전문 서비스의 조정 등과 같이 다양하다. 개별적 상담자는 학교, FE 대학, 지역사회 환경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 배치되어 청소년들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shop front'에 존재할 것이며, 테크놀로지를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의 종류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

충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일반적인 조언과 지원 -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위해 교육과 직업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조언,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각 청소년의 생활에서 일어난 주요 에피소드를 제공함.

(ii) 심층 지원 - 교육과 훈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함. 이 그룹에는 인생목표에 자기의 능력이 반영되지 않는 청소년, 학교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청소년, 배우는데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 당연히 도달해야 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16세 이후에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의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처리하도록 돕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심층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iii) 통합된 전문가 지원 - 청소년들은 학습참여를 방해하는 실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교육, 사회 복지, 법 집행 제도, 보건, 주택 등에 관련된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임. 마찬가지로,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일련의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별 상담자가 필요할 것이다

(iv) 장애물이 협력적 방식으로 극복되고 진보 상태의 계속적 파악을 보장하는 것.

개별적 상담자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학교, 대학, 훈련 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그 소속으로 일하는 것
- 일대일 지원 및 정보, 조언, 지침을 제공하는 것
- 평가, 계획, 검토
- 부모 및 후견인과 협력하는 것
- 지역사회 지원
-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것

- 계속 접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④ 공동체 및 동배 조연자(Mentor)

지역사회 출신의 멘토(Mentor)는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낙제할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경우,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격려를 하여 동기를 만들어 주고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습이나 일에서 낙오되었으며 법정 단체와 접촉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첫 번째 접촉 지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2차 계약을 맺고, 취업 권수를 관리하고, 멘토와 함께 일하면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멘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많은 수의 멘토를 이끌어내는 책임을 지게 된다. Excellence in Cities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이 서비스의 핵심 부분으로서 중요하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동배 조연자(Mentor), 특히 자신이 직접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청소년들을 신규 모집하여 청소년들이 비슷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 모델이 되게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조연자(Mentor)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 개별 상담자(Personal Adviser)가 되는 첫 단계가 된다.

⑤ 새로운 전문직

개별적 상담자 네트워크를 개발하려면 다음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일부 기관 내와 기관 사이에서의 상당한 문화적 변화
- 다음 몇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개별 상담자(personal adviser)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모집 추진
- 전문가들의 기능 수준을 최상급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

개별 상담자는 일정한 배경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모으게 되므로, 새로운 서비스에 맞게 기능을 조정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성공의 열쇠는 그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지니는 것일 것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응집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교육 체계로 뒷받침할 것이다. 정부는 개별 상담자를 위한 새로운 전문가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폭넓게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자문에서는 기본자질(foundation qualification)의 필요, 확장 및 관리 프로그램, 직업 관련 표준의 필요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⑥ 청소년 참여

청소년들은 모든 레벨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서비스의 관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지역학습파트너십(Local Learning Partnerships)은 청소년들의 견해를 알아내는데 기존의 효과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적절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게 될 것이다. 커넥시온즈(Connexions) 파트너십은 지역별 자문 제도, 파트너십 위원회 참여, 그리고 청소년들의 견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파트너십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다.

Regional and National Youth Councils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정책 개발, 커넥시온즈(Connexions) 전략, 그리고 청소년 의회 발전 가능성과 연계된 앞으로의 서비스 발전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⑦ 추진 일정

커넥시온즈(Connexions) 서비스는 2001년 4월부터 2년에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곧 북동부에서 커넥시온즈(Connexions) 무료전화선이 시험 가동될 것이다. 국립청소년연구소(NYA)는 영국 각 지역에 최소한 하나씩 운영하려는 목표로 보다 많은 시험 운영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2) 학습 지원(Study Support)¹⁷⁾

① 학습 지원(Study Support)의 정의

학습 지원의 정의는 Extending Opportunity: A national framework for study support에 나온다. 학습 지원을 위한 Standards Fund와 NOF(New Opportunities Fund) 보조금은 다음 정의를 근거로 지원한다.

학습 지원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상적인 학습 이외의 학습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 지원은 많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이름도 다양하고 외형도 다양하다. 학습 지원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동기화를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자부심을 육성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습 지원은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정의 내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은 개념이다.

- 자발적인 참여
- 정상적인 학교 학습 이외의 학습 활동
-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

학습 지원이라는 용어에는 몇 가지 다른 용어 및 관련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지원이라는 용어는 교외 학습(out of school

17) DfES(2001), Youth Work and Study Support Framework . Key Policy and Practice issues를 발췌 번역한 것임.

hours learning)과 동의어이다. 동시에, 이 정의를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업 중에서 학습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일 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학습 지원은 여러 해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물론, 공식적인 이름은 1997년 이후에야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흑인 및 소수 민족 보충 학교는 20년 이상 동안 몇 군데에 존재했으며, 종종 지역 공동체에서 후원하고 운영하였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업자들은 여러 해 동안 교육의 초점을 일부 학교에 맞추고 Outward-Bound 스타일의 활동을 했다.

② 학습 지원(Study Support)의 전반적 환경

학교 내와 학교 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학습 지원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비공식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학습을 촉진시키려는 국가적인 이니셔티브이다.

지난 4년 동안 학습 지원의 발달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동기화, 자부심, 학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학습 지원은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성취와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의 주요 특징이었다. 많은 수의 지역교육당국과 학교에서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때로는 청소년 봉사 활동, 자원 봉사 단체,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그렇게 했다. 그들은 DfES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The Princes Trust, University of the First Age, The National Youth Agency, Education Extra와 같은 단체의 지원도 받았다. Standards Fund와 NOF(New Opportunities Fund)를 통하여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습 지원 활동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정부는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만으로는 모든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이었던 David Blunkett는 2000년 3월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1차적인 교육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은 방과후에 그리고 집에서 자극적이고 가치 있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습 지원의 발전 배후에는 세 가지 주된 영향력이 있다. 첫번째 요소는 학습 조언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성과를 향상시켜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정부 정책상의 우선 순위였다. 두 번째 영향력은 평생 학습이라는 관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는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세계에서 독립적인 평생 학습을 하도록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소는 취학 중이나 졸업 후에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애착,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거둔 성과, 그리고 교육이나 개인적인 발달과의 관계 등의 면에서 그러했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배제는 학습에 대한 환멸, 학교나 다른 공공 기관에 대한 반감,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신뢰심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긴다.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는 사회적 배제와 싸우고 청소년들을 주 교육 기관으로 융합시키거나 재융합시키는 것이다. 2000년 3월에 나온 Policy Action Team의 Schools Plus33 Schools Plus: Building Learning Communities. Improving the Educational Chanc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Disadvantaged Area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보고서는 이 점을 보여 준다 Study Support라는 제목 하에,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무단 결석, 추방, 또는 그 외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주 교육 제도에서 떠나거나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의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학습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라고 권고한다. 또한 난민 아동이나 학생교체가 많은 학급을 지원하는 것도 목표가 되어 있다.

학습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청소년 사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업 패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학습 지원과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 개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의 지원 하에 학습 지원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체계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 학습 지원의 중요성은 이러한 목표나 연관된 목표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많은 정부 이니셔티브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이니셔티브 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 The Connexions Service.
- Education Action Zones.
- Excellence in Cities.
- New Deal for Communities.
- Standards Fund.

학습 지원 활동은 다음 사업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 Raising Basic and Key Skills.
- Family Learning
- Lifelong Learning
- Social Inclusion Strategies
- Learning and Skills Councils.
- The Citizenship curriculum
- 중등학교로부터의 전환과 연결되는 key stage 2 & 3 이니셔티브
- National Grid for Learning.
- Arts, Sports and Recreation.

이러한 관련된 이니셔티브와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에 나온다.

④ 학습 지원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

학습 지원 활동은 다양하며 창의적이다. 하나의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아래 나오는 하나 이상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니셔티브의 목적.
- 기관과 직원들이 이 사업에 반영하는 기능과 경험
- 대상 청소년 집단
- 해당 지역에서의 시설과 자원 이용 가능 상태

활동은 세 가지 그룹으로 묶어져 있다.

Enabling activities:

- 읽고 쓰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력, ICT 등의 기본 기능을 도와줌
- 의사 소통, 숫자 응용, 문제 해결 등의 기타 주요 기능
-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능. 학습에 관하여 배움
- 인간 관계, 몸가짐, 인지력, 동기화, 함께 일하는 것 등과 같은 개인 기능 개발
- 성인이나 다른 학생들의 지도
- 동배 지원 및 동배 교육 프로그램
- 학교나 공동체 내에서의 자원 봉사 활동

Extension activities:

- 학교숙제 클럽과 시설
- 커리큘럼 과목과 연결되어 있거나 확장하는 스터디 클럽
- 코스워크와 시험 대비를 위한 공간과 지원
- 하계 학교와 하계 대학교
- 거주지 이벤트- 주중이나 주말에 학습

Enrichment activities:

- 스포츠, 게임, 모험적인 실외 활동

- 음악, 드라마, 댄스, 영화 등의 모든 종류의 예술에서 창조적인 시도
- 과학, 고고학, 언어, 서커스 기술, 모터 유지 보수 등과 같은 특정 관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

□ 부록 A

학습 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국가적인 정책 개발

다음과 같은 개발이 포함된다.

- Connexions Service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인 지도와 개발 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중점을 준다. 교육적인 달성, 평생 교육, 사회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Connexions Service는 몇 가지 학습 지원 활동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Education Action Zones. 여기서는 사회적 박탈된 영역에서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학습을 장려한다.

- Excellence in Cities. 이것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나 학교 밖 교육 모두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City Learning Centres를 중심으로 결집된 학교 네트워크의 예처럼 학습 지원과 관련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Gifted and Talented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중의 많은 것이 정규 학교 과정 밖에서 이루어진다. Learning Support Units는 주교육제도의 교실 밖에서 불만이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별도의 단기 교육을 제공한다. Learning Mentors는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 New Deal for Communities. 이것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인생의 목표와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한다.

- Standards Fund Gifted and Talented 하계 프로그램 읽고 쓰기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을 위한 하계 학교. Study Support Grant.

학습 지원 활동은 다음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 Raising Basic and Key Skills: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읽고 쓰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 그리고 그 외의 주요 기능의 표준을 향상시키려는 기존의 국가 전략에 상당한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 Family Learning: 부모와 가족들이 종종 주말과 휴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습 지원은 그들에게 개인 교사, enabler나 독서 파트너, 문제 해결사, 공동 학습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Lifelong Learning: 학습 지원 활동은 다세대 학습의 기회와 교육/기술 공유의 상호 유익한 교환 기회를 제공한다. Adult Learning Plans는 현재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Lifelong Learning Partnerships은 학습을 증진시키고 타당도와 접근 기회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Social Inclusion Strategies: 이것에는 범죄와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무단 결석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주택, 운송, 환경 등과 같은 정책 영역들이 관련된다.

- Learning and Skills Councils: 대학 교육과 훈련, 성인과 공동체 학습, 작업 중심 훈련, 그리고 2002년부터는 제6 학교(school sixth form) 등을 포함하는 일관성 있는 16세 이후 학습의 개발.

- 평생 학습과 민주적인 구조 참여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시민 의식 커리큘럼.

- 중등학교에서의 전환과 연계된 2단계와 3단계의 주요 이니셔티브.

- National Grid for Learning: 많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확장하는 ICT 이용과 ICT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지원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National Grid 개발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계획과 연결될 수 있다

- Arts, Sports and Recreation: 많은 예술과 스포츠 시설이 학습 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이미 사회 쇄신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3) Youth Bank: 활동보조금 사업

Youthbank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전 영국 규모의 일 대 일 보조금 수여 이니셔티브이다. 보조금 수여자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지역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5000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이상 사이의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각 지역 위원회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자체 적용 업무 절차와 홍보 방법을 조직하고, 적용 업무를 평가하고 의사 결정을 한다. 시험 프로젝트는 1999년 이후로 각 위원회에서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

최초의 UK Youthbank Board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청소년은 다른 곳에서 시험 프로젝트나 그와 비슷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New Board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Community Fund (이전의 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에서 지원하는 기금 관리
- Youthbank 프로젝트 사이의 의사 소통을 보장하는 일.
- Youthbank를 모든 수준에서 청소년이 이끄는 조직체로 만들어서 지역별 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경험을 확대하는 일
- Youthbank 방식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조직하는 일

Youthbank는 원래 청소년을 의사 결정자로, 그리고 공동체의 적극적인 책임감있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일하는 국가 단체들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다. 그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 The National Youth Agency (England)
- Changemakers
- British Youth Council the Community Foundation Network (전

영국 규모의 지역별 보조금 결정 트러스트 네트워크) · Prince's Trust의 지원.

지역사회기금(Community Fund)에서 나온 보조금은 3년 동안 982,315 파운드이다. 이 자금 덕분에 Youthbank는 Leicester에 본부를 둔 전 영국 개발 기구를 설립하고 각 지역별로 개발 사업자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청소년지도자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는 유급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로 시간제로 일한다.

1998년에 실시된 England's Youth 서비스에 대한 교육·고용국의 감사에서는 지방 정부에 고용된 직원이 정규직 근무자 4,000명과 시간제 근무자 24,000(정규직 근무자 4,000명에 해당함)이 있다고 추산했다. 유급 직원도 있고 자원 봉사자도 있는 자원 봉사 단체의 경우 숫자를 계산하기 어렵지만, 인력은 상당하다.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스 서비스의 어느 한 분야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 청소년지도자는 어떻게 자격을 갖추게 되는가?

현재 2가지 주요 자격 레벨이 있다. 지역적으로 자격을 갖춘 (보통 시간제 직원과 자원 봉사자) 기본 과정 - 보통 6-12 개월 기간임. 이미 지적인 것처럼,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유급 직원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자원 봉사자들이다. 일부 시간제 직원이 청소년 사업을 정규직으로 삼게 되어 적절한 훈련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사업을 다른 사업과 결합한다.

많은 시간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서비스 지원 활동을 직접 사용

하면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Scout Association이나 Guide Association와 같은 자원 봉사 단체의 경우에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소속이나 공동체 그룹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간제 청소년지도자가 된다.

이전에 그런 접촉이 없는 가망 시간제 청소년지도자는 교육부와 같은 지방 정부의 청소년 서비스와 접하면서 관련된 기회에 대해 알게 된다. 지역적인 자원 봉사 청소년 그룹을 위한 산하 단체 역할을 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협의회도 많은 지역에 존재하며, 기회에 대해 알 수 있는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지역적인 자격 부속 훈련은 시간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이용된다. (유급이나 무급인) 시간제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신청을 한 후에 청소년 사업의 특정 부문에 대한 활동 중 과정으로 보충해야 한다. 점점, 교육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 방식이라고 알려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참여자의 기능과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며 개별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제 근무자 교육은 현재 지역적으로 자격을 갖춘 교육 과정을 전국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부이다.

(2) 정규직 (또는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청소년지도자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청소년지도자가 되는 경로는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무수하게 많다. 교육 과정의 이름은 매우 다양하다. 즉, 청소년과 공동체 사업, 청소년과 공동체 연구 등과 같다. 하지만, 전국청소년기구(National Youth Agency)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사업을 위한 연합청소년위원회(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Youth and Community Work)’에서 인정하는 자격 있는 청소년지도자 상태를 부여한다¹⁸⁾

정규직 교육 과정에는 고등 교육 과정의 2년 수료증서, 3년 학위 과정, 1년 대학원 과정 등이 포함된다. 시간제 학원 대학원 과정도 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19세에서 21세까지 (일부 학위 과정에서는 18세)의 최소 연령 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신청자들은 유급이나 자원 청소년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많은 학위 과정은 특히 어린 신입생에 대해 최소한의 입학 요건을 지정하지만 대부분은 공식적인 자격 제한을 하지 않고 관련된 경험이 있는 성숙한 사람의 신청은 전부 환영한다. 청소년과 공동체 사업의 액세스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역적으로 자격이 있는 상태는 현재 기존의 요구 조건과 함께 청소년과 공동체 사업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3.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1) 청소년의 일반상황과 청소년사업의 정책구조

(1) 프랑스에서의 청소년의 상황¹⁸⁾

1997년 전체 5천 8백 5십만 명의 인구 중 15-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3.6%이다. 이들 중 28%가 스포츠 협회에 속해 있으며, 48% 정도가 자유 시간에 스포츠를 한다고 하였다. 스포츠는 프랑스에서의 청소년 문화의

18) 영국의 청소년지도자 자격인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2 '청소년지도자 양성 고등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NYA의 국가자격 인정 요건' 참조

19) European Union(2000), Study on Sport as a Tool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Young People, pp. 77-78을 발췌·번역한 것임.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협회들은 회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협회에서의 스포츠를 더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7년 프랑스 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남자 청소년의 50%는 19세에 학교를 떠나며, 24세 조금 전에 부모집을 떠나며, 26세에 동거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여자 청소년의 50%는 20세에 학교를 떠나며, 22세가 되기 전에 부모 집을 떠나며, 22세가 되기 조금 전에 동거에 들어간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의 프랑스 사회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청소년기를 벗어나기 전에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특히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실업은 프랑스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1998년의 통계 따르면, 25세 이하의 실업률은 남성이 12.1%이고, 여성이 27.5%이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 지역들은 특히 큰 도시들의 외곽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의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은 지나 10년동안 계속해서 정치적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리옹 시의 어떤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100-150대의 차가 불에 탄다”. 이것은 오랫동안 아주 야단법석을 일으키는 사실이지만, 이제 리옹 시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Dubet/Lapeyronnie(1994)는 시 외곽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은 잡동사니 일들과 온갖 종류의 생존 기술들을 통해 살아간다 마약 중독은 걱정스러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약 거래가 경제의 한 부분이 되어 왔고, 폭력과 온갖 범죄의 근원이 되어 왔다. 어떤 지역들은 무법지대로 간주되고 있고, 경찰이 우연히 그

러한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돌들이 날아온다. 슈퍼들은 경비를 위해 철제 셔터를 만들고 경비원을 채용한다. 청소년들과 경비원, 경찰들과는 거의 매일 사고가 일어난다. 증오와 범죄가 뒤섞여 이유 없는 심각한 폭력이 발생된다. 조그만 사건도 쉽게 경찰에 대한 전쟁으로 확대된다.

모든 도시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의 청소년 담당 경찰들이 어떤 문제들을 직면해 있는지는 분명하다. 해결책에 있어서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프랑스의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정책의 구조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조정과 업무는 청소년체육부(Youth and Sports Ministry)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 청소년과 관계된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부처들이 있다.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는 학교에서의 교육문제들을 담당하고 있다. 불우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위해서 1983년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DIIJ: Delegation Interministerielle a l'Insertion des Jeunes en difficulte)”가 만들어졌다. DIIJ는 고용안정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lidarity)의 산하에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지방 청소년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the “missions locales”와 the “permanence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PAIO) 등 두 종류의 지역 기관들이 이 위원회(deleg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두 기구는 고용, 교육, 건강, 주거, 혹은 여가의 분야에서 도움을 구하는 16-25세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정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고용안정부는 청소년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청소년고용 nouveau service - emplois jeunes”을 시행해 왔다. 청소년들은 지역 기관에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체육부는 이 프로그램의 부처간 협조의 틀 안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분야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직업의 창출이 청소년 영역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 청소년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의 집(Maisons de Jeunes)” 뿐 아니라 청소년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사회센터(Centres Sociales)”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의 여러 차원에서 제공된다. 사회복지사들은(social workers) 그 분야에 따라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공공복지를 위해 받아들여진 비정부조직에 의한 청소년 사회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력들은 프랑스에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해 공동의 사회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을 위한 법은 가족법의 일부인 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다른 법률들은 “형법 (Code Penal)”과 “청소년보호법 (Code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에 나타나 있다.

2) 체육청소년부 예산²⁰⁾

(1) 금액의 민감한 상승: +3.7%

2001년 체육청소년부의 예산계획안이 34억 프랑이 올랐다. 2000년 예산에 비해(33억1천8천만 프랑) 3.7% 상승한 것이다.

스포츠 진흥기금(FNDS)이 약 12억 프랑이며, 그중 1억 5천만 프랑이 스포츠 “공제조합기금”에 해당되는 스포츠 관련 중계방송권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연합생활 발전기금(FNDVA)은 4천만 프랑에 이를 것이다.

4년 연속, 예산이 계속 상승되었고 이는 체육인과 자원봉사자들, 청소년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 새로운 인력방침, 청소년 대중교육 고문과 감사라는 일자리가 15개 신설되었고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도 15개의 새로운

20) www.jeunesse-sports.gouv.fr/francais/mjsbudget.htm(2001. 10 12) 'Le budget 2001'을 번역한 것임.

계약이 체결되었다.

2001년, 현재 운영지출은 3억4천6백만 프랑인데 2000년 3억 7백만 프랑에 비해 13% 상승되었으며 IV조항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부처의 인력교육에 우선적으로 지출되었다. 활동금액은 12억8천4백만 프랑으로 약10% 상승되었다.

프로그램 허가금(2000년, 1억6백5십만 프랑) 1억1천백만 프랑이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지역안 계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금액이 이렇게 강화되었다(해외령을 제외하고 체육청소년부처에 해당되는 금액-7년에 8억1천1백만 프랑). 2001년 이 금액은 지방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대중교육센터(CREPS), 학교, 학원들의 안전과 유지문제를 새로 하는 데에 쓰여지며 또 한편으로는 연합자산을 혁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 청소년일자리와 스포츠관련 직업을 개발한다. 사회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내에서, 스포츠 쿠폰으로 5천만 프랑(2천8백만 프랑이 새롭게 늘어남)이 사용될 것이다. 가난한 환경의 10세-18세 청소년이 이 쿠폰으로 클럽에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데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스포츠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가진 지방에서 이 쿠폰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01년도 BAFA와 BAFD(스포츠 관련 자격증시험) 시험을 치르는데 2,500명이 추가로 최고 2,000프랑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2천8백만 프랑이(5백만프랑 추가)이를 위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정부부처의 담당과, 연합분야, 스포츠운동 단체들의 움직임이 효과를 가져왔다. 작년 12월 1일, 49,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 이후의 주요한 과제는 이 자리를 지속시키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단체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계속 한다. 2억8천7백만 프랑에 1억1천4백만 프랑이 새로 추가되어 실습교육의 기회를 확대 될 것이다.

체육청소년부는 또한 “스포츠직업계획”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개발시키고 6천5백만 프랑으로 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2) 실습교육의 효과를 강화

2000년 7월 6일의 스포츠 관련법은 체육청소년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전문적 자격증으로 확정하였다.

- 스포츠, 지도자의 직업을 전문화시키고 사회문화적이며 스포츠관련 실행방안을 새로 파악하는 것이 자격증과 실습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 동시에 체육청소년부처는 스포츠 관련 업종의 종합적인 협약의 조인식을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을 고무하였다.
- 대표적인 실습교육의 보편화가 뒤이을 것이다. 2001년에는 1천4백4십만 프랑(8백 4십만 프랑이 새로 추가)으로 실습교육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 전문지식발효, 시험단체를 위한 운영금으로 1백8십만 프랑이 새로 추가된다.

체육청소년부처의 인사대표와 관리부처가 연합해서 ‘직업-일자리’ 원탁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표적인 실습교육에 1천8백9십만 프랑(3백8십만 프랑 추가)이 책정되었다.

(3) 청소년들과의 계속적 대화

1997년이래 청소년들과 대화를 계속해 왔고, 1998년에는 국립, 도 소속 청소년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를 파견하였다. 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2001년에는 두 번째 시민의식 페스티발이 개최될 것이다.

200개의 청소년지역위원회 창설에 도움을 준 덕분에, 공공생활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 구조는 계속될 것이다. 2001년에는 1천6백2십3만

프랑이 이 운영을 위해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예산의 절반이 새로 증가된 것이다.

청소년은 질 좋은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길 계속 요구한다. 따라서 해마다 5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1,500개의 정보문서센터(CIDJ), 청소년 지역정보센터(CRIJ), 청소년정보국(PIJ)을 대표하는 청소년 정보망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2001년에는 2백만 프랑이 추가되어 5천7백7십만 프랑의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2000년 국무총리가 제안하였던 '정보사회를 위한 청소년 행동지침서(PAJSI)'가 청소년 정보망에 연계되어 나올 것이다. 청소년 정보망에 개설된 사이버-청소년 란은 인터넷에 접속하게 만들고 전달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비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안에는 2천2백4십만 프랑이 책정되었고 그중 2천만 프랑이 새로 추가된 금액이다.

국제적 행동지침서를 본다면, 캐나다 몽통에서 2000년에 개최되었던 불어권 회의결과, 불어권과 불어권 경기에 대해 4백8십만 프랑이 추가될 것이다(이 금액중 5십만 프랑이 경기에 사용되고 프랑스-독일청소년 사무소(OFAJ)와 프랑스-케백 청소년 사무소(OFQJ) 두 곳에 보조금 증액을 목적으로 4백3십만 프랑이 사용될 것이다). 2001년에는 8천9백2십만 프랑이 청소년분야의 모든 국제적 행사에 사용될 것이다.

체육청소년부처는 한편으로 휴가센터 단속에 계속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2000년 여름동안 8,000건의 단속이 있었고, 22곳의 센터가 문을 닫았다. 체육청소년부처는 또한 휴가센터를 개혁하고 위생성, 보안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001년에는 3천2백4십만 프랑(참고: 1998년 천만프랑, 1999년 천7백만5십 프랑, 2000년 2천6백만2십 프랑) 관광부 예산처의 1천1백만 프랑에 추가될 것이다.

(4) 스포츠활동 개발을 지원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모든 이들의(아동, 청소년, 어른) 통로를 개발한다.

실습교육과 일자리 제공 이후, 체육청소년부는 지금부터 벌써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원봉사 안내책자 23만 권이 발간되고 배포되었다. 2000년 7월 6일의 스포츠 관련법에 실습교육을 위한 휴가가 포함되었다. 단체생활 발전기금(FNDVA)이 거의 두 배가 되었다(2천4백만 프랑에서 4천만 프랑이 됨) 경제적인 점에서 본다면, 기금의 세금인하가 법으로 정해졌다. 자원봉사참여가 노동시간으로 계산되어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자원봉사자로서 습득한 경험은 유용하다.

클럽들은 운영 기금을 가장 필요로 한다. 그런 이유로 3년 전부터 이 분야에 후원금이 지불되었다 스포츠진흥기금(FNDS)내의 지역분이 40% 증가되었고(1997년 2억4천5백만 프랑/2000년 3억4천3백만 프랑) 혜택을 받는 클럽들도 32% 늘어났다(23,000개 클럽에서 30,500개 클럽) 지원금이 4,500프랑에서 6,000프랑으로 증가하였다. 페르낭드-사스트르 기금은 1억5천만 프랑의 분할지불금 덕분에 할당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불금 중 7천3백만 프랑이 498개의 프로젝트에 쓰여졌다. 그밖에 체육청소년부는 스포츠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권에 대한 5%(1억5천만 프랑, 2001년 상승-2000년에는 7천5백만 프랑)세금을 실습교육과 클럽운영을 위해 스포츠진흥기금내 지역분으로 받기로 스포츠단체와 결정하였다.

체육청소년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지역클럽들을 후원하고자 2백만 프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중들이 또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성스포츠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2001년 제공된 기금은 2백만 프랑에서 5백 5십만 프랑으로 추가될 것이다. 체육청소년부는 2백만 프랑에서 4백 5십만 프랑으로 증가

한 기금으로 회사 내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한다. 마리-조르주 뷔페장관의 장애인올림픽 참가는 장애인과 건강한 스포츠맨 사이의 관계 변화를 촉구하였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팀을 이루고 하는 부분이 연구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5) 고등 스포츠 (sport de haut niveau) 발전에 공헌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서 프랑스 팀이 참여하여 프랑스 팀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 효율성이 입증된 “올림픽 준비” 공공이익단체(GIP)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고등 스포츠 국내위원회내의 ‘올림픽 준비’단체와 연계하여 그 활동을 더 조직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

1999년에 1,643명이었던 기술자가 2001년에는 1,693명으로 증가한 것도 부각시킬만 하며 “희망”극 최고의 간부배치, 운동선수들의 프로입문을 위한 노력 등도 강조할만하다.

슬트레이크시와 아테네시 경기준비와 다음 달 프랑스에서 개최될 큰 행사맛이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일도 남아있다.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펜싱세계선수권대회, 레슬링세계선수권대회, 하키 여자선수권대회, 농구여자선수권대회, 비에트롱 여자선수권대회, 터키에서 열리는 지중해권 국가 경기, 오타와의 불어권 경기 등이 그것이다.

체육청소년부처는 2001년 2천7백5십만 프랑의 기금으로 2008년 올림픽경기와 장애인올림픽 경기의 파രി유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작년 11월 6일, 파리에서 열렸던 스포츠 부처 유럽장관들의 회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선언문 합의가 이끌어내졌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한 단계를 통과한 것이었다. 이 선언문은 연맹의 위상, 실습교육의 중요성, 젊은 운동선수들 보호, 경기의 공정성, 중계방송권, 이전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6) 운동선수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흥분제, 폭력 추방을 강화

2000년, 고등스포츠선수 6,000여명 가운데 3,500명의 운동선수들이 1999년 3월 23일 실행된 법 12조에 의거하여 의학검진을 받았다. 2001년, 남은 2,500명 선수들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6천9백5십만 프랑의 금액이 이 검사를 위해 책정되었고 이중 천8백만 프랑이 새로 추가된 금액이다

또한 흥분제 사용검사 국립연구소(LNDD)를 증설하고 비뇨검사(8000)회 수를 늘리기로 예정되어있다 안전과 질의 기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검사전체를 실행하기 위해, 보다 개발되고 넓은 지역에 연구소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운동선수들의 건강보호와 흥분제투여 추방을 위한 법령의 적용이 조만간 실행되어질 것이다. 2001년에 지역의료반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경기장내에서나 스포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역시 중요한 문제이므로 체육청소년부처 장관의 또 다른 근심거리이다. 내무부와 함께 체육청소년부처는 새로운 국립예방조직을 26개의 도에 일관화시키고 스포츠 내에서 폭력추방을 결의하였다.

(7) 대중교육을 발전시킴

1998년 소르본 대학 집회이래 대중교육 운동단체들이 제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찰제안서 기한이 만료된다. 11월 초에 460개 그룹들이 한 작업이 대학 내에 모여졌다. 구체적 제안들이 담긴 백서가 2001년 발간될 예정이다.

이러한 협상과 흐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육 청소년 국립연합체에, 운영을 위해 상징적인 일부금을 지원하였고, 이 금액은 5천2백만 프랑에서 6천5백만 프랑으로 증가되었다.

단체생활의 핵심도 지역차원으로 발전된다. 대중교육과 사회문화적인 계획안에 책정된 지역할당금이 증가하였다. 자발적인 지역행사들을 후원

하기 위해 1천9백만 프랑이라는 새로운 금액이 책정된다. 여기에 단체생활발전기금(FNDVA)이 4천만 프랑 증가되고 관리 개선도 이루어져 모든 단체들이 환영하였다.

청소년협력과 대중교육기금(FONJEP) 부서는 일자리 증가 뿐 아니라 단체 후원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2000년 1월 1일, 체육청소년부에는 이 기금에 의해, 3,265개의 부서가 만들어졌다. 2001년에는 각 부서당 45,000 프랑에서 47,500프랑의 지원금을 추가해주며 100개 부서가 추가로 신설될 것이다. 2001년 FONJEP 부서로 1억5천9백5십만 프랑이 사용될 것이다.

이 금액전체는 1901년 제정된 법 백주기를 맞는 것을 기념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준다.

(8) 지역교육계약안(CEL)을 일반화한다

교육은 국립교육청, 교사, 지역 단체, 연합체들과 가족들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다. 교육정책에 관련되는 4개 부처가 확립한 개념이다. 지역교육계약안(CEL)은 전지역교육정책 연맹조직자들의 계약안을 말한다. 아동과 청소년들 삶의 시간전체를 계산한다. 2000년 6월 28일, 2백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참여하였고 1,815개의 계약이 조인되거나 올해에도 계속 조인되고 있다. 목표가 단순히 양적인 차원만은 아니다. 이 계약안의 교육적·문화적·체육적인 내용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4천5백만 프랑이 새로 책정되었고 전체적인 예산은 3억9백5십만 프랑에 이른다.

3) 주요추진사업²¹⁾

(1) 사회·문화적 활동 (Les pratiques sociales et culturelles)

① 영화(le cinema)

영화는 하나의 예술이다. 영상이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게 된 이

21) www.jeunesse-sports.gouv.fr/francais/

세상에서 영화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매개체이며, 그들의 상상력을 구현하고 감수성이 모여져서 표현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다. 영화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이다. 영화는 타인과 세상에 대해 출구를 열어주고, 여러 문화장르 사이의 대화이며 영상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도와준다. 영화는 창조자이며 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동화시킨다.

도시 변화가에 위치하던, 변두리에 있던, 지방에 있던지 영화관은 만남과 발견, 지식이 오가고, 공간의 창조자이며 사회와의 연결점으로서 활기찬 장소이다. 영화는 세상을 대변한다는 그 상징적인 힘으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공간과 시간을 연출하는 비평적인 시각으로, 대중교육의 계획안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1) 체육청소년부와 영화

체육청소년부는 오랜 기간을 두고 다음 목표를 설정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진흥한다.
- 청소년들을 위한 질 좋은 작품의 발견, 제작, 보급을 장려한다.
- 영상 지식뿐만 아니라 영상을 읽고 배우는 기회를 주며 시청각과 영화적 수단들을 적용시키는데 기여한다.
- 국내, 해외 전시회 참여를 장려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발전시키도록 청소년들의 책임감을 고무한다.
- 젊은 창작가들을 돕고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유도한다.

(ii) 체육청소년부의 참여 영역

영화부문에서 체육청소년부처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

□ 영화제 지원

영화제는 생기 넘치는 장소이며 만남의 장소이자 교환의 장소가 된다. 청소년대중이 즐겨 찾으며, 영화제를 통해 미공개 필름을 접할 수 있고 영화적 자산과 연계를 맺고 대중적인 영화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 성찰하게 하며, 창안자와 배우, 작가, 비평가들을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 해당 지역방문이 재활성화 되고 영화관과 시네 클럽이 활기를 띠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체육청소년부는 몇 개 국내 또는 해외 영화제를 지원해준다 이 영화제들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며 사회입문과 문화 교육이라는 나름의 목표에 부합한다.

- 아동기와 청소년기 시기 주변이야기를 다룬 영화제: 라옹, 오베르빌리에, 시네 주니어⁹⁴, 르아브르.
- 청소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영화제와 실험영화제: 갱페르(어려운 처지 청소년들의 사회입문), 크레테이(청소년 심사단 참여 하에 “영화제의 씨앗” 프로그램)
- 젊은 창작가들을 위한 영화제: 클레르몽페랑(단편영화)
- 만화영화를 위한 영화제: 안시

만화영화는 차별화된 하나의 교육수단이며, 거의 장인의 경지에 이르는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기도 하며(그림, 글씨, 영화장면...), 표현과 전달기술이 극도로 세련되어진 작품도 있다.

□ 단체 후원

청소년 대상의 10여개의 영화단체들은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국가적 승인을 얻었다. 매년 이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 시네클럽 연합회: 영화를 이용한 청소년 교육, 잘못 알려진 영화기

법과 자산 발견, 기초 실습. 몇 년 전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시네클럽 연합회들은(1980년에는 8개 존재, 1999년 4개 연합회만 남음)여전히 시네클럽 2500여 군데의 700번 상영을 대표한다. 체육청소년부처는 영화기법 국제센터(CNC)와 함께 이 곳을 후원 하고 있다. 특히 지방과 어려운 지역에서 영화관 “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려고 이 부문(비상업용 영화)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예술, 실험. 체육청소년부는 예술과 실험영화 프랑스연합 관리위원회(AFCAE)에 소속이 되서 영화관과 영화필름 등급위원회에 참여한다. AFCAE 덕분에 아동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예술과 실험” 영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 아동기, 청소년기를 위한 영화 프랑스조합(UFFEJ) : 1990년, 체육청소년부와 영화기법 국제센터(CNC)의 도움으로 창설되었다 외교부와 함께 이 조합에는 청소년문제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다(제작자, 시네클럽, 배급자, 신문기자, 연출자, 영화제 책임자, 체육청소년 교육과 기술 고문).

체육청소년부는 이 UFFEJ 함께 영화와 대중교육이라는 주제로 2년마다 회의/세미나를 조직 한다. “도시속의 영화와 지방”(1995년 마르세이유 회의), “영화, 청소년, 시민, 대중적인 행동은 무엇인가?”(1996년 브레스트 회의), “청소년들의 시각을 어디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1998, 망데브르 회의)

□ 전문인력

체육청소년부의 분산행정과에는 전문화된 교육, 기술고문 15여명이 영화 만들기에 참여한다. 중학생, 대학생, 선생님과 청소년이 어려워하는 연합적, 제도적, 전문적 장소를 직접 연락하여 상영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습교육을 실행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카탈로그를 기획하고 영화제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영상관련 작업소를 격려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낸다.

□ 영화관에서의 여름/영화마을

체육청소년부는 영화기법 국제센터와 함께 “영화관에서의 여름/영화마을”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매년 여름, 지방 청소년들이 영화와 영상을 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체육청소년부의 역할은 그 산하의 다양한 조직망과의 작업을 통해 이 행사가 한 가지 면에 국한되는 것 아니라 특히 발달되지 않은 영역(작업소 창설 등등..)에도 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연합적인 조직망을 넓히기 위해 체육청소년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1999년이래, 영화마을을 통해 이 행사가 한해 내내 지속되고 있다.

□ 필름 등급위원회

체육청소년부는 매일같이(산하의회) 매주 마다(총의회) 필름등급위원회(문화부 산하)에 참석한다. 이 의회는 12세 이하 금지, 16세이하 금지 등 필름 추천을 책임지고 있다.

체육청소년부 산하의 청소년 대중교육 국립위원회(CNEPJ)는 이 등급 의회에 3개 청소년 단체에서 9명의 멤버가 참여하도록 제안하였다.

체육청소년부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 분야 단체 중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한 곳에서 3명의 멤버를 의회에 참여토록 제안하였다(심리학자, 교육학자, 정신과의사, 의사 등).

□ 칸느 국제 영화제의 청소년 상

“청소년 상(Prix de la jeunesse)”은 체육청소년부의 영화와 시청각을 위한 노력에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범람하는 영상이미지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 또한 성인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작업하는 여러 단체와 기술, 교육부문 전문가들 사이에 상이 갖는 유명세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다.

□ 키에르슬로바키 상

키에르슬로바키 상은 해마다 경쟁부문의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1999년, 통합, 교육, 문화) 청소년부와 비슷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 상은 16세에서 30세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와 소리를 통해 상상하고 확립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② 독서(la lecture) · 청소년에게 여가선용으로 독서의 즐거움 주기 전국운동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 부서의 최우선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독서는 자립심을 길러주며 재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야심적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항상 삶에서 글쓰기 세계에 진정으로 가까이 접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가정이나 학교 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문화센터(centre de loisirs)에 가게 되는 경우 항상 독서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본 부서는 올해 문화센터에서 오락적인 독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작전을 계획하였다.

30개의 행정구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문화센터를 위해 특별히 구상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자들을 교육시키고 어린이들과 직접적인 행사도 벌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의 여가시간 독서 활용의 진정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수국 상자(boute a Hortense)'라는 교육도구는 다양한 모임, 문화센터, 방학프로그램, 생메다르 청소년집(MJC), 사회복지시설 등등에서 일년간 행사의 밑받침이 되었다.

③ 연극(le theatre)

단순한 문화소비와 달리 연극창조라는 행위에 국민이 동원된다는 것은 본 부처 활동의 독창성을 잘 보여준다. 연극 연출교육이라던가 상당한 인원수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는 행사(축제, 여름 행사, 여름 공연 등등)는 계획의 시급성이나 다분히 현실성이 있는 성공의 필요성 때문에 시민의식 발전과 뗄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하며 상호간의 존중, 자립심, 연대의식, 책임감 등등을 유발한다.

연출의 특징상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연극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다. 픽션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을 연극으로 보이고 역할담당으로 생기는 비판적인 거리감 갖기, 들어주기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상황 등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연극의 예술적인 측면이 형식과 내용을 인정함으로써 나온다면 연극의 아름다운 경험(실행과 생산)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민주사회에 필요한 사회윤리교육에서 생기는 태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예술 연출과 교육에 있어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한 인력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예술적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잠재성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절박감이 인간의 풍부함을 가장 잘 알게 해주며 창조라는 경험을 통해 시민의식 또한 알게 된다. 이렇듯 연극을 창조하는데 책임감을 부여해주면 공동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대해서 개인들도 인식하게 된다.

발표 때에는 주어진 문화라는 목적물의 행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연극에 개입된 연기자로서 책임감에 대한 인식에서 생기는 즉각적인 고려가 생긴다. 관객들의 경우, 친숙한 형식을 쉽게 발견해야하기 때문에 연기자와 관객간에 정체성을 공동으로 찾기 위해서 균형이 형성된다. 연기자는 근본적으로 연기에 개입되었으며 그의 대사는 연기자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 표현을 하는 데 있어 몸에 대한 인식(여기 그리고 지금)은 연극의 모든 기능을 균형 잡아주는 것으로 세계(사회)안에서의 나(시민)에

대한 강하고 비판적인 인식의 기초가 된다

예술교육을 받은 유자격자들이 지도하는 창조공간은 적극적이고 참여를 잘 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근원으로, 이 연극 활동은 열정에 불을 피우면서 격리된 문화를 타파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연극이 문화의 프로젝트 활동으로 문을 열어주어 창조와 직업간의 벽을 허물어주고 성격이 재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단체적인 계획이 생겨나도록 한다.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1999년 20개의 연출 연수에는 양질의 교육과 예술창조작업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적 수단이 상당히 동원되었다. 상시적인 본 부처의 기술·교육 고문들의 활동은 활동센터(centre d'activites), 교육 및 창조수단을 낳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발산 가능성과 실질적인 능력사이의 기복과 개인주의를 없애도록 할 것이다.

④ 사회적응(l'insertion)

본 부처의 활동은 학교 외 시간외에 여러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이다.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단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다. 사회·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대하여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중적인 교육취지에 바탕을 둔 체육청소년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정에 기초해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기여한다.

- 직업세계에 적응한다는 것은 동시에(가능하다면 사전에) 사회적인 적응을 필요로 한다.
- 신체적·사회문화적 활동은 한 사람을 개인 및 단체라는 양차원에서 구조화하는데 기여한다. 직업세계에서 발휘될 수 있는 한사람의 사회적인 기량과 적응력을 개발시켜준다

직업을 통해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줄어가

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창조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개인적이거나 단체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관점에서 체육청소년부의 활동분야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서가 이러한 논의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본부서의 적응정책은 프로그램과 같은 딱딱한 개입차원에 매어있을 수 없다. 부서의 활동들은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급한 치료 목적의 개입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일관성있게 단기적이고도 장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단기적인 차원에서 동반, 개인적인 개발, 표현 또는 창조 활동을 통해 적응하는 대중정책장치를 관리한다.
-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추이 과정의 전망 하에 목적을 고수한다.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은 힘차야 하며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사회적응의 주체이며 그렇기에 사회를 변화시킬 인물이다.

청소년국은 실험적인 케이스 또는 파트너로서의 많은 연구에 개입되어 있다. 두개의 실무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적응'이라는 임무는 다음 두개의 축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 문화 . 소개, 현실에서 상징까지, 역할, 이미지 제어, 자기투영
- 스포츠 . 자기표현, 공간 내에서 표현, 몸과의 관계, 움직임 속의 주인공

(i) 문화활동과 사회적응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표현과 활동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며 시민 교육과 지역 내 사회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기여한다.

이 분야에서 본 부처의 활동은 청소년들이 표현하고, 들어주고 보는

것을 배울 줄 알며, 몸과 말을 자중하고, 행동에 의미를 주며 자신의 감성 표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종 자기의 구역에 갇혀 있거나 시골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문화프로젝트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소외현상을 퇴치하여야 한다.

전문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본 부처의 기술 및 교육 분야 간부들은 제도와 대중사이에서, 예술가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를 통한 사회적인 활동에 개입된 교육고문들과 함께 '청소년과 단체생활국(DJVA)'의 적응과 영화-시청각 업무 담당자 등 정부 실무 진들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능력과 관련 파트너간의 사회활동사이의 보완성과 이러한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숙고해오고 있다.

(ii) 신체 운동 활동과 청소년의 적응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청소년과 단체생활국(DJVA)'은 본 부처의 다른 두개의 목표관련국 및 DIV와 DIJ와 함께 연구-활동을 실행했다. 이에 대한 보고는 프랑스문서국(documentation francaise)에 의해 발간되었다(신체 운동 활동과 청소년의 적응 : 교육의 문제점과 제도적 활동, 1997).

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적응'과 '스포츠/문화 . 이미지 문제'라는 업무를 개시하여 문화 행사를 통하여 이 테마를 지방으로 확산한다. 이 임무는 다음 사항을 모색한다.

- 부처 간 연구-활동의 결과를 최적화하고 최대한으로 보급하도록 한다.
- 교육프로젝트 개발과 활동의 영구화와 관련된 상담과 관계하여 스포츠-적응 분야의 오퍼레이터와 활동가들의 늘어나는 요구사항에 부응한다.
- 지방의 진취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개발하고, 촉진하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단결시킨다.

- 시민적, 창조적, 여가 기능 안에서의 스포츠 문제 다루기.

⑤ 과학 및 기술 활동 (Activites scientifiques et technique)

과학기술 활동 분야는 발견을 통해 세계에 눈을 뜨게 하며 자연현상과 인간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대중교육을 시도한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에게 필요한 비판적인 사고를 낳게 한다. 이 분야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은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논증적이어서 매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하에 본 부처는 15년 전부터 항상 천문 여가활동과 같은 과학기술 문화를 지원하여 왔다. 과학기술문화는 청소년 국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스포츠 지국(특히 약 40개의 과학기술활동 전문 청소년대중교육고문(CEPJ)과 공조하여)과 대중교육 및 청소년교육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천문학이라는 테마는 개기일식이 있었던 1999년 특별히 지방과 전국 차원에서 부각되었다. 이 행사는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정보, 예방적인 정보 및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했으며 그리하여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이는 많은 대중들이 천문여가활동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관련자와 일반시민이 동원되고 단체들이 실시한 행사들의 큰 성공에 비추어 볼 때 본 부처가 이 여가에 대하여 쏟았던 관심과 이 행사에 대한 노고는 헛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본부처가 천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그 중에서 특히 방학과 여가센터차원에서) 천문학은 우주(보편성), 시적이고 신화적이고 문화, 과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여가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으로 연결시켜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며 또

한 공동프로젝트시 각 문화와 각각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 하지만, 천문학 문제는 과학기술문화의 다른 분야를 가리는 일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보완하고 보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⑥ 환경교육

- 환경교육, 바캉스 센터, 문화센터 : 독창적인 제휴 프로그램안

여가와 단체방학을 장려하고 센터의 교육적인 질 개선은 본 부처와 '야외의 청소년(JPA)'내 여러 단체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방학 여가센터(CVL) 취지 강화, 내용 개선, 교육 또는 시민교육 목표 구체화, 또는 대중교육의 가치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은 환경교육이 이런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 여러 분야의 관련된 테마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환경교육단체(CFEE)가 창설되고 2000년 2월 릴(Lille)에서 열린 환경교육 전국회의가 열리면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본 부처는 CFEE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회원인 JPA는 회의를 통해 발안된 전국행동계획과 같이 여러 활동들을 공동 주최한다. 전국행동계획은 CVL내에서의 환경교육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이곳을 찾는 5백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양적인 잠재성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질적인 특성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계획과 연계되어 다음 방안이 마련되었다.

- 현재 방학여가센터(CVL)내에서의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
- 여러 방면에 관계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국대회 때(2001년 9월 20일, 21일 몽트리Montry의 스포츠대중교육지역센터) 동원하기, 문제, 구상, 환경교육 및 CVL의 활동과 이 두 관계에 대하여 의견 나누기

- 환경교육을 위한 전국행동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단계의 제안 및 방향 찾기
- CVL내에서의 환경교육 특징과 환경교육과 대중교육 관계를 부각시키며, 국제 세계 포럼(2001년 11월) 개최 준비와 내용구상에 기여하기

이 방안은 본 부처(CVL국, 국제관계 및 문화사회활동국, ‘스포츠, 청소년 지역국’(DDJS) 또는 ‘스포츠·청소년 도·지역국’(DRDJS) 대표), 환경부 (청소년과 단체국), ‘야외의 청소년’JPA (전국대표와 일부회원단체 : 현장교육방식교습센터(CEMEA), 프랑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EEDF), FNFR, 레오 라그랑쥐(Leo Lagrange), 프랑까스(Francas), 교육리그, 대중교육피후견인(PEP)) 등의 실험그룹이 진행하고 있다.

이 방안의 재정지원은 청소년 체육부와 국토정비 및 환경부, 그리고 단체생활발전기금(FNDVA)에서 시범케이스로 담당하고 있다

(2) 청소년 의회(les Conseils de la Jeunesse)²²⁾

1997년 11월 마를리-르-루와에서 국무총리와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체육청소년부 주도로 10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청소년 전국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청소년 연합의 요청에 따라, 협상을 이행하고 청소년을 위해 결정된 70가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청소년 의회”가 발족되었다.

① 청소년 의회

1998년 1월 7일, 청소년 상임의회를 신설하는 법령이 포고되었다.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의회를 주관하고 모든 청소년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제

22) <http://www.jeunesse-sports.gouv.fr/francais/miscpi.htm>(2001 10. 8)
 ‘les Conseils de la Jeunesse’를 발췌·번역한 것임.

안사항이나 의견들을 작성하는 임무를 갖는다.

청소년 상임의회는 2000년 봄, 청소년 의회에 그 사명을 양도한다. 청소년 의회는 16세-28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도 의회 단체'(청소년 의회에 각 도의회 대표상주)와 '전국 청소년 조직단' 두 단체로 나뉘어 진다. 전국 청소년 조직단에는 연합체들과 정치단체, 조합들의 대표들이 소속되어있다.

직업, 유럽, 협력과 국제적 연대, 시민권 페스티발, 차별, 청소년과 대중매체, 지역성, 건강 등 7개의 주된 임무 중심으로 청소년 의회가 조직되어있고 해외지역에도 정책을 펼친다

② 청소년 도의회들

도의회는 각 도마다 하나씩 존재한다. 도청에서 도의회를 주관하고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단체들과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 등과 청소년간의 항구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한다.

청소년 도의회들은 16세-28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되며, 청소년 지역의 회와 지역연합체의 대표와 청소년 조직의 대표(정치단체, 조합단, 대학생과 고등학생 운동단체) 두 단체로 나뉘어 진다.

청소년 의회는 제안·상담 두 가지 역할을 통해, 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일상과 지위를 개선시키는 구체적 수단이 되었다.

대중적인 생활에 새롭게 접근하면서, 청소년들은 정기적인 발언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한 방식이 되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정치적·제도적 영역에서 실제로 반영되고 정치토론을 쇄신하고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 의회들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나 알리바이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약판이자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모두와 제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1) 지역성 위원회

이 위원회는 지역에서의 요청을 전달하고자 하는 도의회에 의해 따라 탄생되었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 지역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가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 직업·문화·건강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국토개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촉구한다.
- 지역생활에서도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보다 개선된 삶을 살고자 연대적 경제성을 고려하여 효과 있는 해결안을 제안한다

□ 관련부서

- 교통부 : 청소년들의 이동성과 도로의 안전
공공교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구매와 운전면허증 준비에 0%금리 대부를 실행한다.
- 공공사업부
임대주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자산을 재건하며, 순회공공사업 담당부를 만드는 것을 활성화한다.
- 국토정비부
지역을 나누는(“보이넷”이라 칭해지는 법) 개발의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대표들에게 촉구한다.
- 일상생활과 시민의식부
단체 관리 부서에 청소년들의 통로를 활성화하고 미성년자가 단체생활에 가입하고자 할 때 경력을 인정해준다(자원봉사 가치부여).

(ii) “청소년과 대중매체” 위원회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기회를 통해, 대중매체가 청소년 문제를 폭력과 부정적인 면만을 다루는 점을 비판하고 이 방식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대중매체를 만드는 다양한 분야(기관, 신문기자, 경영자, 연합체)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안하였다.

- 단체 생활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 신문방송학교에 주의를 촉구한다.
- 전문기자, 신문방송과 학생, 아마추어 기자들에게 상을 수여하여 청소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룬 기사들을 높이 평가한다.
- 단체 대중매체와 “청소년” 대중매체의 발전을 돕는다(정보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다양함을 주기 위해서다).
- 다른 대중매체와 이미지(교육적 분야와 그 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허가한다.
- 정보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에 관한 시민정보조작을 실행한다 (이미지권, 응답권, 특사청원, 상소)

대중매체 위원회는 시청각 최고위원회 의원들과 문화, 정보통신부처의 책임자들을 만나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0년 12월 16일-17일, 생 우왕에서 청소년 의회가 개최되면 대중매체위원회와 정부부처 간의 회의가 열렸다. 대중매체 위원회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청취가 가능토록 하고자 청소년 라디오 “le mouv’(운동)” 방송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였다.

(iii) 직업/교육 위원회

직업과 교육문제는 청소년과 사회전반 모두에게 핵심적인 문제이다

직업/교육 위원회는 불확실한 문제들 중 다음 4가지 주제를 우선 선택하였다.

□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직업 문제는 미래의 걱정거리들 중 바로 지금 닥쳐온 문제이다. 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직업이 더 많이 생성되길 바란다. 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새로운 직업”이라 칭한 계획 아래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제도권 담당자들과 청소년 직업 담당자들을 직접 접촉하였고 대표단이 이 문제에 대해 직업과 연대부의 장관과 접견하였다.

□ 배움, 실습

후원자들을 책임 있게 하고자 기업체와 교육 장소간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증진되어야 한다. 적절한 실습(전문적인/대학 안에서)은 어떤 것이고, 그 유용성과 인정성, 실습생들의 위상(권리, 임금, 수당)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

□ 계절적 직업

행사, 관광, 농업 분야에서 매년 수백만의 청소년이 계절적 노동자가 된다. 직업/교육 위원회는 계절적 노동자와 고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에 관해 노동관리부서와 협동하고 취학 청소년들과 직접 만났다.

위원회는 계절적 노동자의 업무조건 변화를 위해 관광부 장관을 만나고자 한다.

□ 직업과 교육의 장 속에서 청소년의 자율성

직업/교육 위원회는 자율 급여 실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주제에 대해 의회 대표들과 국회위원회는 합의를 벌여야 한다

(iv) 건강 위원회

건강이 내포하는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자 청소년 의회는 건강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특히 건강/소외, 건강/지역성 등의 여러 분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이라는 나이는 예방이나 치료의 기회를 무시하고 건강에 가장 지출을 적게 하는 그룹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복지, 性, 영양섭취, 마약중독 등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이라는 분야를 다루었다.

성(性)에 관련 되서는 자신의 몸을 다루는 방식과 자신의 性향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되었다. 건강 위원회는 다수의 청소년을 대신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性에 대해 얘기하고 의료적인 차원을 제외한 여러 질문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찾고자 하였다. 이런 '나눔'의 공간이 특히 지방에는 부족했기에 가족계획처에서 “性버스(bus sexualite)”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환영을 받았다.

일반적인 건강문제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 간호사들이 보다 많고, 이들이 예를 들어 피임약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틀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책을 교육하는 시간이 주어지길 희망하였다.

기억할 것은 “건강”위원회가 “피임”캠페인 평가의회의 일원이고 性관련 정보 고등의회(CSIS)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v) 차별 위원회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다루어지고 논의되었으며 매 건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건의되었다.

□ 인종차별

- 학교에서 교사 교육과 인종차별 반대의 날 조직
- 스포츠 영역' 클럽-심판관-후원자간의 파트너십을 맺는다.
- 디스코 장에서. 인종차별 반대법안의 문구가 담긴 전단을 의무

적으로 붙이며, 관광부와 체육청소년부, 내무부에서 조인한 헌장을 보급하고, 디스코장의 문지기에게 어떤 일정의 위상을 부여하며 그들을 교육시킨다.

- 직장에서 고용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장 감사를 요청하게 한다.
- 모든 영역에서, 시민권 통로 도의회(CODAC)에 제도적인 방책을 보다 제공한다.

2000년 9월, 푸아티에市서 열린 청소년 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녹색 번호 114라는 그룹과 만남을 가졌고,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114그룹 조직 운영을 설명하면서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청소년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거부에 대한 반대는 법적인 틀과 대중적인 움직임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학교에 소책자 배부와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을 들어주는 114를 개설하고, 특히 이들이 지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를 신설할 것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또한 디스코장과 같이 여러 오락장소에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vi) 유럽, 협력과 국제적 연대 위원회

2000년 6월, 프랑스 정부가 의장국이었던 EC(유럽공동위원회)의 '청소년정책백서'를 준비하고자 유럽 위원회가 생겼다. 유럽공동위원회 국가의 청소년들이 여러 차례 회의와 질의서를 통해 논의하고 사회 대표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백서는 2001년 11월 벨기에 강市에서 공표될 것이다.

위원회는 유럽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유럽정책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유럽위원회의 뒤를 잇는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길 희망하였다 유럽

위원회는 교육, 실습, 노동, 배움, 이동, 문화, 복지, 복지라는 이 주제는 성(性), 영양섭취, 건강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유럽위원회는 신속히 유럽, 협력과 국제적 연대(CECSI) 위원회로 탈바꿈하였고 이 새로운 이름을 통해 의회는 유럽의 국경을 넘어 청소년 모두를 염려하는 뜻을 드러낸다. 지난 1월, 의회 회원들 중 두 나라가 프랑스-야운데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해당국가의 청소년들을 위해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에이즈와性病), 신기술 이용통로, 공공생활 참여와 정보통로와 같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시민의식 페스티벌 2001 개최될 것이며, 외국 대표단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청소년 정보화기구(CIDJ, CRIJ, CIJ, BIJ, PIJ, Businformation jeunesse)²³⁾

청소년들의 정보화를 위한 기구들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총 15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정보센터(CIDJ) 1개소, 지방센터(CRIJ) 27개소, 연근해지방센터(CIJ) 4개소, 청소년정보사무실(BIJ) 243개소, 청소년정보실(PIJ) 1239개소, 청소년정보버스(Bus information jeunesse) 30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들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예약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대로는 건강, 법률 등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4) 데피죄느(DEFI jeunes)²⁴⁾

체육청소년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15

23)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함병수 외, 2000 121)에서 재인용한 것임

24)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함병수 외, 2000 121-122)에서 재인용한 것임.

세부터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구성한 일정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해주고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1987년에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 90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되어졌으며, 고용 및 사회연대성 담당 부처, 우체국, 프랑스의 교육 및 평생교육 연맹 그리고 기타 이에 관심있는 민간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체육청소년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 15세에서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학생, 피고용인, 실업자, 인턴사원, 프랑스 거주, 외국 거주 등)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일정의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는 경우 거주 지역별 체육청소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 접수 후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제출된 프로젝트의 주체는 반드시 청소년 자신이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단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 특화된 전문가 연계망으로부터 청소년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한 진단,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다.
- 프로젝트 구성 분야는 문화, 사회, 환경, 스포츠, 과학, 기술, 경제 등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여행, 학업, 교육, 인턴, 스포츠 경기 참여 등과 같은 목적은 재정적 지원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습득이 요구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에 의해 제출된 계획서는 지역 심사위원이 심사 후 선정될 경우 최저 1만 프랑에서 최고 5만 프랑의 상금을 받게된다(18-28세에 해당되며, 15-17세는 최고 1만 프랑임). 또한 선정된 청소년들 중 다시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만 프랑의 상금을 수여한다 연 1000여 개의 계획서들이 선정되는데, 민간 지원조직들은 이 금액의 30% 정도를 청소년

들이 제시해야하는 보증금의 형식으로 책임지게 된다.

(5) 청소년고용정책(Emplois Jeunes)²⁵⁾

1998년에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18세에서 26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또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 중 실업수당의 조건(8개월 기간 중 4개월 이상의 노동)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 이 연령층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시장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의 공익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거나 발전되지 못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교육, 스포츠, 가족, 건강, 사회연대성, 주거문제, 지역 문제, 교통, 문화, 법률, 치안, 환경, 관광 등과 같이 거의 모든 일상적 영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따라서 이미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직업활동과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청소년고용프로그램”에서의 계약은 노동법의 영향을 받는 노동계약이다. 또한 이 계약은 노동의 본질은 파트타임이지만 정식노동으로 규정된다. 계약은 확정기간 계약과 불확정기간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계약기간의 조건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다. 불확정기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계약은 일반노동계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확정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이 되며, 확정기간계약으로서 고용주와 청소년 모두 일정의 의무사항을 가지게 된다.

첫번째, 고용주는 수습기간과 한달간의 갱신기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두번째, 계약은 1년에 한번 파기될 수 있다. 이 때, 청소년은 고용주에게 2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하며, 고용주는 해고의 이유에

25)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함병수 외, 2000.122-124)에서 재 인용한 것임

대해 청소년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지난 18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다른 직종에서 고용희망이 표시되어 오면 계약은 고용주의 동의하에 파기되는데, 이는 청소년이 다른 직종으로 옮겨 일정의 수습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임금수당은 일반직 종사자의 수준과 동등하며 최소수당은 법정최저임금 수준과 동일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고용주에게 청소년 한명당 일년에 95,010프랑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고용된 청소년들 중 약 80%는 이전에 국립직업소개소에 등록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20%는 장기실업인구, 8%는 RMI의 수혜 대상자들이었다. 연령층으로 볼 때 2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약 20%에 해당한다. 1999년 6월 31일 자료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하여 실업률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그 기대효과는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 실시 이후 창출된 일자리 수는 총 200,645이며, 이중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총 178,050이다.

(6) 방학 및 여가 센터(CVL)²⁶⁾

방학 및 여가 센터(CVL: L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는 청소년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교과 과정 또는 자격증 교육을 제외한 창조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규요원 및 자원봉사 요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이들의 방학 및 방과 후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마련된 모든 종류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 기관들로 구성된다. 주요 대상은 4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며, 이들 기관에서는 최소 12명 이상의 수용인원이 5박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6)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함병수 외, 2000·124)에서 재인용한 것임.

CVL센터는 미래, 상속, 교육, 시설 등과 같은 4가지의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들 기관들은 학기 중에는 등교하지 않는 수요일에 개방되고, 다른 요일에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개방된다. 방학 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되며, 때에 따라 토요일에 개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활동은 수용 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아 방학 센터(Centres de vacances maternels: 4-7세), 방학 센터(Centres de vacances: 8-12세), 청소년 방학 센터(Centres de vacances d'adolescents: 13-17세), 스카우트 캠프(Camp de scoutism) 등으로 구분된다.

4) 청소년지도사²⁷⁾

무역이나 시청각 분야(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에서뿐만 아니라 관광, 여가, 교육, 문화, 나아가 스포츠와 노동운동에서도 쓰이는 이 지도사란 용어는 언제나 그 의미가 특별히 다양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의 다양한 분야들은 대중교육이라는 지극히 프랑스적인 역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문화, 사회교육, 노조운동에서건 또는 최근에 생겨난 조직에서건 지도사는 스스로를 자신들과 그들의 고용주, 후원기관과 자신들이 대상으로 하는 대중들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르게 수행하는 즉 지도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는 점차적으로 전문화되면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좀 더 세분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지도와는 딱히 연관이 없는 다양한 새로운 지칭들을 통용시키기에 이르렀다 “검증되지 않은 이 명칭들”로 인해 그 기능이 상당히 막연해졌고 부정확한 이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

27) Qui Sont Les Animateurs Aujourd'hui? (<http://www.injep.fr/etud/index.html>), 2001년 9월 17일을 번역한 것임

고 있으며 사실 최근에 생겨난 조직에서 지도사라는 직함으로 일하는 소속원들은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교육(바칼로레아대입시험 후 3년 교육)의 제 3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지도사 기능 자격증(DEFA)을 준비중이며 직업이 있는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후 제출한 논문심사를 한 결과, 과거에 전문지도사에 해당되었던 이들이 현재는 기관장, 코디네이터, 실장, 사회발전 연구원, 중재원, 프로젝트 팀장, 각 분야 팀장 등 완전히 다른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오늘날 지도사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지칭들이 지니는 초보적이고 논리적인 역동성을 볼 때 그리고 대상인 일반인들을 볼 때 지도받는 이들과 일대일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라고 추론하여 가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검증되어야 하며 새로운 명칭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먼저 분석한 연후에 좀 더 다듬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서가 검토하고자 하는바이며 우리는 주간 노동소식 (Actualites Sociales hebdomadaires), 지역공동체소식 (La Gazette des Communes)과 같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430개의 구인란(492개의 일자리에 해당)에서 실질적으로 지도사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료대상

연구대상이 된 광고물은 국가간행물에서 발췌한 것이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특정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공고는 물론 국가간행물에 공고를 내지는 않고 지역광고나 벽보 또는 준전문적이고 예비된 지역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지 않고 지위가 불안정한 지도사 인력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 자

료대상은 두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한편으로 뒤바르(Dubar, 1997년)가 언급하였듯이 고용주들은 특정의 ‘공식적인’ 범주를 바탕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내건다. 이 범주 자체 또한 활동인물 소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고용의 범주관례에서는 직무자의 명칭은 일차적인 언어작업이다. 고용주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말로 만들어진 구인광고는 지도사들의 명칭이 직업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만들고 내다보는 토론의 장이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명칭은 자아와 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갖는다. 활동지도분야가 과거와 같이 오늘날에도 구조적인 변화 그들과 연계된 용어적인 불확실성을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구인광고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구조적인 관리에 대한 고용주 능력의 결실로 현시점에서의 고용의 현실과 가장 근접한 중기적인 전망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 자료대상을 형성하기 위해 선택한 간행물들은 고용주들이 구직의 수요를 간행물화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공간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공고들의 상징적인 면이 지도라는 광범위하고 때로 부정확한 이 분야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세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라는 기능의 주요한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지도사들을 부르는 명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중재자, 노동운동자, 프로젝트 팀장, 사회발전연구원 등 위에서 언급한 일들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2) 지도라는 기능에서 지도사라는 직업까지

서민교육이라든가 지도의 역사를 다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 지도라는 것이 60년대 여가사회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도시화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발전되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이러한 발전은 사회교육적 시설들에 따라서 거기서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급속히 늘리려는 정책에 힘입었으며 서민교육 및 청소년 연맹 출신인 활동가들이 전문

화와 사회교육 및 사회문화 서비스들이 각 구청에 생겨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오귀스탱(Augustin)과 이온(Ion, 199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도사들이 참여하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여가관련 비 직업적인 표현과 예술적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 분야

② 사회발전, 협회활동 지원, 도시에서의 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 사회경제 분야

③ 휴가와 여가를 위한 센터, 지역 회관, 지도센터 등 전통적인 유아 청소년기를 위한 지도 분야인 사회교육 분야

④ 고난도의 경합스포츠와는 다른 각도에서 간주되며 연맹의 기술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는 스포츠 분야

⑤ 여기에 관광과 지역발전 분야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지도는 문화, 교육 그리고 사회가 모두 결합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Douard, 1997a). 서둘러 이 분야를 정의하려 든다면 분명 왜곡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계획이다. 대중을 경영하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계획이지만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는 정치를 완곡하게 실현하는 계획이다(Poujol, 1996). 항상 새로운 경험과 혁신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도사들은 끊임없이 하나의 분야를 형성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분야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활동이 형성되는 성향이 있어 독특하게도 지도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80년대에 지도사들은 노사문제를 경영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자, 사회서비스 보조자, 사회 및 가족경제 고문관들처럼 역사 속에 기원을 둔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Castel, 1995).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 이를 가장 잘 극복했던 이들이 바로 지도사들이라는 점을 많은 옹서버들에게 피력함으로써 지도사들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 독창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Douard, 1997b).

학위 / 자격증	등급(국 립교육)	업무
BAFA 지도사직 자격증		방학, 여가활동 센터 지도사
BAFD 책임자직 자격증		방학, 여가활동 센터 원장
BASE 사회 교육 활동 지도자격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격증
BAPAAT 지도기술 보조자 전문자 격증	V	청소년 및 스포츠 관련분야 기술 지도 보조사
BEATEP 대중교육 기술자격증	IV	대중교육 및 청소년 기술지도사
BEES, BEESAPT 체육교육 국가 자격증	IV	체육지도사, 일반대중을 위한 체 육지도사
DEFA 지도사직 국가학위	III	활동지도 간부
DESA 고등지도활동교육 졸업증	II	활동지도 관련 고급간부
DEDPAD 활동지도 및 개발 프로 젝트담당 국가학위	II	활동지도 프로젝트 담당, 활동지 도 엔지니어
DSTS 고등사회근로학위	II	고급간부 또는 양성자

지도의 여러 다른 직업들을 여기서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겠지만 (본 연구를 계속 읽다보면 정확한 소개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위를 수여하는 주요한 교육과정들과 과정 이수 후 취업 가능한 고용의 형태를 간단히 소개하면 위와 같다.

(3) 지도사직 범주화 작업의 전략 및 관건

우선 분류표에 채용공고에서 사용한 다양한 명칭들을 분류하여 요구되는 학위에 따라 직위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나타내 보고자 한다. 일차적인 이 작업을 통해 공고에 나타난 다양한 명칭들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분야의 전문화와 그에 동반되는 학위수여 교

육과정과 대비해서 지도사 역할을 하는 이들의 명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채용공고의 문안을 자세히 분석해 볼 것인데 이는 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공고들과 비교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작업의 목적은 지도사라는 용어의 어휘 및 의미적 특성, 나아가 고용주가 요구하는 업무능력, 수행임무와 (또는)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명칭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동기를 밝히도록 시도한다. 또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있는 분야에서 직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 표의 구성

지도사 또는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채용공고가 자료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수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용공고는 다음 기준을 근거로 선별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즉 채용공고 문안에 지도사 폭넓게는 공고가 지도사를 채용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될 경우 노동운동가의 학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자료집에서는 최근 발표된 두개의 근거에 의하여 지도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이 3가지로 분류되었다. 첫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도사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는 채용공고다. 양적 중요성과 총칭적 기능에 따라 이 부류는 표의 중앙수평선에 위치한다. 두번째는 지도사라는 용어와 이것을 세세히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한 직업들을 분류한 것으로 표의 시작부분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부류는 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명칭들을 모은 것으로 표의 하단에 위치한다.

도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모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공통점을 지닌 많은 다양한 명칭들을 다양한 항목으로 엮어 보았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명칭” 항목에는 지도사들을 다양하게 부르는 첫번째 명칭들을 모았

다. 상설지도사, 전문지도사, 사회문화 지도사, 사회교육지도사, 문화 지도사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여기에 해당한다 “책임자” 항목에는 책임자, 유년청소년 책임자, 사회복지센터 책임자, 활동지도책임자, 청소년활동지도 책임자 등이 포함된다. “담당(디렉터)”라는 항목에는 담당, 담당 코디네이터, 부담당 등이 포함된다. “코디네이터” 항목에는 코디네이터, 활동지도 코디네이터가 해당된다.

(4) 학위와 직위간의 연관형태

앞서 언급했듯이 자료집은 구조상 직업분류의 가장 낮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존경을 받는 직업의 경우 학위와 직위를 연계시킴으로써 표는 단번에 다양한 점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학위와 지도 분야의 사람을 임명하는데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요구되는 학위가 높을수록 찾고 있는 지도 분야의 인력 또한 지도사라는 명칭 이외의 다른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명칭들이 책임 높은 직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는 3급과 4급의 학위들이 지도사라는 명칭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언급한 대부분의 지도사들이 국가 지도사 기능 자격증(DEFA) 학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ATEP은 평균적으로 대중과 직접 대면을 하는 지도와 연관된 직종에서 파고 있다. 어쨌든 지도사라는 어원은 단독으로 쓰였을 때 4급 학위를 지닌 이들과 3급 학위를 지닌 이들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의 핵심적이고 합법적인 부분은 이 두 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BAPAAT는 상대적으로 덜 인용되는데 이는 자료집의 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최근에 생긴 학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자격 여부를 주요 고용자 연합인 SNOGAEC등을 포함한 많은 조직들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① 명칭의 다양성과 지도 변화의 연계에 관하여

지도라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자료집에는 72개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명칭들을 살펴보면 지도라는 영역이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지역발전 에이전트, 사회중재자, 교육가라는 명칭들이 그렇다. 다른 명칭들은 특수한 대중정책들이 생겨나면서 나타난 것으로 소외방지(사회지도사, 사회고문관), 미교육 방지(후원 지도사), 통합(중개 지도사, 사회중재자), 도시정책(구역 지도사, 시 지도사, 프로젝트 팀장), 탈선방지(길거리 지도사, 예방 지도사, 구역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청소년 적응지도(양성자, 적응담당 지도사, 청소년 활동 코디네이터) 정책 등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이런 명칭들을 보면 자료집 구성을 위해 참고한 간행물의 선택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는 있다(2개는 광의의 "노동운동" 간행물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사회의 위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도사들이 점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지도가 역사적 노동운동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명백하게 쓰이기도 한다. 즉 교육가, 공동체 생활 지도사, 예방 지도사라는 직책은 사실 지도라는 영역의 분야에서 새로운 구성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자료집을 보면 그 명칭상 훨씬 더 고전적인 다른 호칭들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지도의 서로 다른 분야의 구조, 조직 그리고 경영 형태를 알 수 있다. 연령별로 형성된 각 분야의 수많은 책임자들이 그러하다 즉 청소년 분야 책임자, 소년 분야 책임자, 13-25세 청소년 분야 책임자, 소년 이전 분야 책임자, 청소년 담당책임자, 유아-청소년기 담당 책임자,

소년 이전과 청소년 담당 코디네이터, 청소년국 부장 등이다.

좀 다른 논리이기는 하나, 3세대, 노년분야의 책임자들 뿐 아니라, 위생과 사회와 관련해 노인병 분야 책임자라는 직책도 볼 수 있다. 전문성을 띠는 지도활동의 분야에 따라 구조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사회문화 지도사, 문화 지도사, 사회 지도사, 체육 지도사

또는 지도의 일반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다중 지도사, (특기에 대한 언급없이)기술지도사, 대표단 책임자, 기술 고문관, 지도 코디네이터, 국장-코디네이터, 지도 책임자 등으로 불리운다. 지도사를 임명할 때 이런 일반성이 많이 보이면 소관 업무에 대한 채용하게 될 인력으로 정확한 설명이 따르게 된다. 호칭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높은 학위를 요구하지 않거나 차라리 굉장히 높은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전자의 경우 대상, 기술, 개입분야를 정확히 밝히고, 후자의 경우 책임감 정도, 위계상의 위치, 권한의 정도, 정치와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고위직에는 지도사가 아닌 다른 직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경우를 설명해 볼 수 있다. 데파지앵(DEFA)학위를 받은 사람들)중 소수(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행한 설문)의 27%)만이 직접 지도를 첫 번째로 꼽았다. 국가 지도사 기능 자격증(DEFA)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와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임명과 자체임명이 서로 연계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급과 그 이상의 지도 분야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적 지위는 관련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경력상 유리한 직위에 임명되거나 자칭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가늠하기 어려운 이 중재적 직위는 뜻밖으로 국내 직위들 중 지도직 임원의 지위를 연구(두아르, 1997c)하는 과정에 명백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 지도사 기능 자격증(DEFA) 학위 소지자들은 직업군을 총망라하여 다른 초기 공식 문서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도라는 다른 계통

의 지위로 분류되기를 더 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이 호칭으로 연관된 분야(인사관리, 지역사회 주요 설비국, 연구소)와 나아가 지도사들이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뜻밖의 직책에 새로운 지평이 사실 열렸다. 이렇게 해서 시청의 총무, 과책임자, 의정관, 커뮤니케이션 담당 등 다른 직위로 발전되어간 경우가 많다

② 채용공고에서 지도사라는 용어의 의미부여

최근의 모든 형태의 고용공고에서 보여지는 특징적 모습은 직책을 명시하고 자격과 학위 또는 요구되는 경력을 정의하는 것이다. 직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고용할 사람의 임무와 기능을 명시할 수도 있다. 서술하는 문안형태거나 숫자로 열거한 경우거나 이런 관행은 직책에 대한 확대된 논증일 수 있다. 이런 확장된 서술은 직책에 임명될 사람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 뿐 아니라 의미도 부여한다. 따라서 임무를 맡을 사람의 의미는 통사적 환경, 즉 공고에서 사용된 모든 어휘와 관련해서 정의된다.

지도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공고의 후보자 프로필에 대한 서술을 분석해 보면 어휘와 통사면에서 지도사라는 용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도사가 지녀야 하는 자질이 얼마나 다양하고 사용분야가 많은지 또 지도사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이 얼마나 다양한 가치의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지도사의 경우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학이야말로 좋은 무기가 된다. 어떤 공고에서는 서민교육의 뿌리를 이루는 사항을 언급하여 요구자격을 기술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법규화 하기, 청소년을 위한 계획들을 고안하고 실행하기,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등은 조직과 규범화에 대한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계획안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전문적 사회 활동의 성격을 띠며 이는 지도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고에서 나타나는 지도사의 성격과 같이 교육적인 역할은 장·

단기적으로 청소년과 계획 세우기(구상화하기와 쓰기) 등 지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 지도사는 이렇게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사고를 낳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다른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주관'과 '통제'의 프로그램들은 지도사 정책과 매우 가깝다. 지도사의 요구된 자질은 단지 구상, 프로젝트 실행뿐만 아니라 도시프로젝트개발 참여, 파트너와의 코디네이터, 행정, 관리 등과 같은 대중 관리 내에서의 지도사 역할을 극대화하는 자질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도사의 활동환경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직과 관리 차원에서 지도사의 자질 외에도 도시 내 각각 상호적인 교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발시키고 구역간 활동차원의 문자교육을 펼쳐야 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지도사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간의 연계역할을 하므로 사회 관계를 만들고 복구시키는 역할을 부여한다.

일부 프로파일 중, 이 역할은 임무라는 말로 공고에서 청소년 및 유년의 교육 및 활동지도 임무라는 말로 구체화되어 있다. 임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 공고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용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단어는 활동지도라는 활동적인 참여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도사들의 참여적인 개입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 참여에 대한 완화는 실제로 고용주가 활동 참여적인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이면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임무는 지속적인 것이고 근로법의 규제적인 틀과 대립할 수도 있다. 지도사는 전통적으로 활동적이며 종종 이런 과거사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 교육자, 관리자이며 사고력의 산파인 지도사는 또한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실 지도사에게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부여하는 항목이 많다.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본 지도사 용어에 부여된 의미들은 이 지칭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명 이런 지칭의 의미적인 잠재성을 아는 고용주들은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 있는 다양

한 형식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지도사 타입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공고에서는 특정한 프로필과 구체적인 자질을 표명해야 하는 필요성은 직책에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명칭을 낳는 과정이다.

③ 활동지도분야의 구조조정 효과로 새로운 명칭 발생

지면 제약상 자료대상에 있는 모든 새로운 명칭을 다 열거할 수 없으나 지도사 역할의 감지되는 변화에 따라 의미 있는 것들 중 일부를 거론 하도록 한다. 활동지도와 관계가 없는 명칭은 해당직무와 프로필 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어야 한다. 채용공고 내용 분석은 일반적으로 지도사의 다양한 자질을 보여준다. 교육, 인간관계, 사회환경, 관리, 행정, 조직, 개입기술 등. 하지만 흥미롭게도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은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종종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제점, 적합한 책략 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다.

(1)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라는 구직까지도 접하게 된다. 이 용어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어떤 직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경쟁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거와 다른 고용주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구인란의 문안은 전문 교육자, 사회복지 보조사 및 지도사의 대우를 동등하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3등급 학위 소지자 대상으로 책임감이 높은 자리를 위한 사회사업고급디프로마(DSTS, 2등급)가 있어 합법화되었다(다른 교육을 받거나 유효한 경험이 있는 DEFA, DEES, DEAS, DUT). 이러한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사업 분야를 변증법적으로 참조한다.

이렇듯 사회사업에 더 많은 지도사를 두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땅따먹

기게임에서 나타난다. 사회사업에서 지도사의 개입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 : 학교내 구체적인 사회예방작업 완수하기). 이러한 개입은 교육자나 사회복지 보조사인 기술적인 사회사업가의 것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ii) 임무 담당

위에서 우리는 임무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했다. 임무 담당을 맡은 경우 지도사들은 사회학을 잘 알고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참여적인 치료, 교육-활동 동참 및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9가구에 대한 전망연구와 진단 작업 전반을 연결하기, 사회 통계적인 자료 분석하고 종합하기, 진단 유효화를 위해 거주자와 현지에서 협상하기, 시범그룹과 공동으로 전망 가설 만들기의 예처럼 우리가 이들로부터 기대하는 이러한 참여적이고 비판적인 사회학은 교육, 환경 연구, 사회변화 요원으로서의 역할 정의를 하게 한다. 분명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대중교육의 이상적인 백그라운드는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연구원, 사회학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대중에게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iii) 양성자

청소년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경험을 지닌 지도사는 무수하다. 이 직무에 대한 훈련은, 위탁 단체의(Francas, CEMEA) 능동적인 교육 방법 숙달 센터, 교육리그, UFCV 방학센터 프랑스연맹, 일부 구조단체 등등) 자격을 부여받은 청소년 단체 자원봉사지도사(BAFA, BAFD를 거쳐서)들의 활동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조적인 양성자를 교육(대학이나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하여 상당수가 있다)시키므로 또는 양성자 선택과목이 있는 DSTS를 획득하므로써 이 분야의 전문화는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다

(iv) 개발요원

지도사의 전문화 초반부터 특히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지도사는 사회변화요원처럼 묘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년 전부터 활동지도는 점차적으로 지방, 농촌, 도시 개발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일자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BEATEP 교육에서 지역 개발 또는 사회개발과 같은 선택과목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공인된 교육 목록 분석에서 매우 확실하게 드러난다.

활동지도직과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공동의 교육이 있었으며 일부 프로젝트 감독자와 지역개발요원이 본인의 직업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근접성은 지도직 활동이 제공하는 특정한 분야의 고위직 지도사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v) 중재자

사회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중재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지도사에게서는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환경이 어려운 지역 등 특정한 상황에서 사회사업가들이 일부 시민계층과 제도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개입이 특별히 활동지도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혹자는 심지어 방법, 활동지도의 직업적인 문화, 중재개념간의 이견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저기 지도사들은 중재자가 아니라 같은 계층에서 나온 연락선을 두고 있다. 고용주들이 이 지도사들로부터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이 채용된 이들이 지도사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는 걸 알게되면서 느낄 그들의 당혹함, 아니면 활동지도의 패러다임을 알아나가는데(인정) 대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인가?

(5) 제도약에 기여하기 위하여 : 활동지도에 관한 논박

이 연구와 함께 우리는 활동지도의 현 변화에 관하여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속하는 직업의 범주화에서 연결된 언어영향을 강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오늘날 활동지도의 기능은 3, 4등급의 지도사들을 항상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언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고용주들은 (하지만 이들만이 아닐 것이다) 대중과 함께 하는 지도자를 지도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2, 3 등급의 지도사는 다른 방식으로 부른다. 동급의 서로간의 뜨거운 경쟁관계에 있는 3등급의 이하의 자격증 소지자이건 아니건 활동지도기능 요원은 2, 3등급의 지도사 지칭의 새로운 전략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역동성은 아직 얻지 못한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지도분야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명칭의 생성은 분야의 구조조정, 활동지도가 투자하는 새로운 분야,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도사들을 새로운 직업분야로 재교육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려한다. 반면에 고용주들은 가끔 활동지도라는 일자리를 통해 일부 채용공고 내용이 보여주듯이 전통적인 사회사업가보다 더 정치적인 '투쟁적인' 전문가들을 찾는 것 같다. 고용주들은 활동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기재할 수 없다. 이렇기에 구인광고에서 기술자들을 제외하고 여건, 위기 상황, 어떤 대중에 대한 어려움, 채용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노하우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일부 고용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활동지도는 민주주의 정의, 과학과 양심의 관계(기술과 윤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 교육, 일, 상업, 미용, 성 등과 종속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심장부에 위치(질레, Gillet 1995년)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이온(Ion, 1996년)은 사회사업의 전문적인 분야 밖에서 새로운 적응제도에 몸을 던질 준비태세를 갖춘 요원을 찾는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요원들 중 상당수가 그러한지, 전문적인 요원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할(그리고 보여줘야할) 때이다 이런 선택은 개입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의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 다양한 명칭을 연구하였고, 해당 지도사 본인들이 지칭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4, 5, 6등급의 지도사들이 합법적으로 지도사를 지칭하기 위해 하는 노력에 반하여 이 지칭을 지닌 전통적인 소지자들로부터 저항은 그다지 없으며 이들은 이들이 보기에 과대 평가된 다른 명칭의 합법화 만을 기대하고 있다(Douard, 1997년c).

새로운 제도적인 논리가 제도화 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지도사 명칭 자체, 더 나아가 오늘날 지도사 기능의 실행이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내다보기 위하여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의에(Huet, 1994년)가 사회문화적인 활동 다시 생각하기라고 책제목에 보여준 것처럼, 현재 활동 지도는 사고의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본 연구가 다시 제기하고 있는 논의에 부응하기를 바라며 오거스틴과 질레(Augustin & Gillet, 1997) 및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논의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또 언어/직무라는 관점에서 지도사를 다른 직업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이번 조사가 지도사들을 특이한 직업이라는 부당한 직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활동지도의 독창성이 일과의 관계, 사회 관리와의 관계에서 자리 매김 하기를 바란다.

4. 핀란드 청소년정책²⁸⁾

1)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들

28) 이 글은 김두현(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이광호(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가 공동 집필한 것임. 참고문헌에 명기된 공식적 문헌 이외에 2001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핀란드 현지에서 교육부, 헬싱키시와 히빙케시 정부 관계자, 청소년단체나 기관,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등과 면담하면서 얻은 자료와 수집된 문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글의 성격과 지면 관계상 일일이 면담자와 관련 문서를 명기하지 못함을 밝혀둔다

핀란드(Republic of Finland)는 전세계적으로 우리 사회와 같이 가정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외에 법적 근거에 의해 청소년육성체제(youth work system)²⁹⁾라는 제도적 영역을 두고 있는 몇몇 되지 않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핀란드는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나 기본적인 틀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는 우리 청소년정책의 강점과 보완점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은 청소년육성법(Youth Work Act)에 근거하여 29세 미만의 자로서 전체 인구의 36.8%인 1백 9십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청소년 대부분은 최근 들어 더욱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고, 아울러 건강, 내 집과 가정 마련, 좋은 대인관계 유지, 사랑, 직업(일) 등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99:33).

그러므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일(직업)을 갖고 건강하며, 사랑을 통해 내 집과 가정을 만들어 가는 등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 학교교육제도나 환경, 경제여건, 기타 청소년관련 사회제도나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9) 핀란드의 youth work의 개념을 청소년육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핀란드에서 youth work는 청소년육성법(Youth Work Act)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youth work는 '청소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각종 시민적 활동을 위한 여건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과 조치(measure)'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핀란드의 youth work 개념을 '청소년사업'으로 번역하여 이해(임성호, 1999)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육성 개념과 제도적 영역과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육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 핀란드의 일반적 개요

핀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숲(69%)과 호수(10%, 188천개)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이다. 기후는 가장 따뜻한 여름에 평균 기온이 섭씨 21-22도(남쪽), 가장 추운 겨울에 섭씨 -25도(북쪽)로서 차갑고 온화한 지대이다. 핀란드는 유럽에서는 일곱 번째로 커다란 영토를 갖고 있음에도 전체 인구는 우리 나라 서울의 1/2 정도에 불과한 5백 10만명이며, 그중 국외에서 이주해 온 인구는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로의 이주민은 지정학적 위치와 기후 등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최근 세계화와 피난자의 수용 결과와 결혼이나 일 등의 이유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및 소말리아 등지에서 이주해왔다. 이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46% 정도는 30세 이하의 젊은이들로서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청소년사업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는 핀란드어(93%), 스웨덴어(3%), 그리고 토착민인 사미족(saami, 1%)의 언어 정도인데, 그 중 절대다수의 인구가 사용하는 핀란드어와 함께 소수이긴 하지만 오랜 동안 지속된 스웨덴의 영향력과 아울러 경제적 상권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웨덴어를 고려하여 스웨덴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공식 문건은 물론 길거리의 주요 안내 표지판 등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13-14세기 이후 스웨덴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나 1809년 전쟁 이후 러시아제국의 자치구로 합병되어 우리 나라와 같이 식민지의 경험을 겪었다. 그러나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끝난 직후인 12월 7일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회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식민지 경험은 지금도 핀란드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젊은 남성들이 우리와 같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³⁰⁾를 해야 하는 제도적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러시아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1907년부터 유럽에서는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국가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동시에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참여는 그만큼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한편 핀란드는 북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복지국가의 구조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8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를 지나 1990년대 초반의 경제적 침체의 결과로 높은 실업율과 힘겨운 산업 구조 개선의 과정을 거쳤다. <표 IV-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이후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10%대의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IV-1> 핀란드의 경제적 동향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GDP성장율	4.0	6.3	5.3	4.2	5.7	
인플레이션	0.6	1.2	1.4	1.2	3.4	3.4 (5월 기준)
실업율	14.6	12.7	11.4	10.2	9.8	10.3 (4월 기준)

* 출처 : NORDICUM: Scandinavian Business Magazine, 2001년 3-4월호, "Economic Trends", p 14.

30) 핀란드의 모든 남성은 17세부터 60세까지 44년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징병되어 180일, 270일 혹은 362일 등의 기간을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군복무에 임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은 숙식을 하며 근무하거나 집에서 출퇴근 형태로 근무하는 등의 복무 유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개의 젊은이들은 19세 내지는 20세에 군복무에 임하고 있다. 1995년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원하는 자에 한하여 군복무 기회가 개방되어 있다(Mmistry of Education, 1999. 20)

1993-4년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10만여명에 육박하던 청소년실업이 최근 4만명 정도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는 1990년대 초 경기침체기 이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1995년 핀란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청소년실업은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실업의 형태로 2만명 이상 상존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파로 핀란드의 청소년육성체제는 경제침체기였던 1993-4년 사이에 급격한 구조변동과 개혁을 겪었으며, 동시에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실업 해소에 매우 높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급속한 노령화사회로의 진전 예상과 아울러 청소년의 취업과 실업문제의 해결이 주요한 청소년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즉 인구 노화로 인하여 현재 일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8 : 1 정도이지만, 2030년경에는 1 : 1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빨리 취업하게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핀란드 청소년의 일반적 생활과 학교교육 환경

핀란드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체 인구 약 510만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 인하여 연간 출생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1.8% 정도의 다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30% 정도의 어린 아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는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즉, 핀란드의 아동관련 법령은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부모의 책임과 임무를 강조하며 아동은 자신의 고유 가치를 가지며 부모의 재산이나 힘에 복종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의한 탁아 기능과 방과후 아

동 프로그램 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성장한 아동이 18세가 되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독자적으로 계약하고 재산을 처리하고 결혼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근래에 청소년의 정치 참여나 투표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핀란드의 커다란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다른 한편 청소년들의 자발적 조직체에 대한 참여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도에 청소년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29세 사이의 52%정도의 청소년은 몇 가지의 자발적 조직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활동 참여율이 높은 연령층은 10세에서 14세 사이로 이들의 2/3가 조직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가장 인기 있는 조직적 활동은 스포츠클럽, 학생회활동, 다양한 취미 조직체 및 청소년교회활동 등이다. 특히 핀란드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스포츠로서, 3-18세의 84%가 스포츠를 자신의 취미로 삼고 있으며, 13세 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은 유럽 전체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Ministry of Education, 1999: 33-34 ; 41). 최근 청소년 사이에 특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로서 길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소년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최근 핀란드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는 전세계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다양한 가치와 전망과 삶의 방식에 기초하여 무정부주의자, 스킨헤드족, 인터넷 서핑족 등 많은 하위문화로 분화되는 등의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 및 문화 등의 급격한 변화를 읽어내고 그들의 변화와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1994년 이후 교육부와 청소년자문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년

년지표(Youth Barometer)'를 개발하여 측정 발표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 청소년들은 흡연이나 약물, 성적 문제나 낙태 혹은 경제적 침체로 인한 장기 실업 등 사회적 소외와 같은 문제에도 적지 않게 시달리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의 흡연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조기에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자살율 또한 유럽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90년대 초반에 국가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예방 연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성적 개방에 따른 청소년의 성문제는 핀란드가 가장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핀란드 정부는 결혼전의 질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빠른 성적 행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과 학부모에게 성교육의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16세가 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와 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등의 국가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청소년의 낙태율³¹⁾은 스웨덴의 1/2 수준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치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청소년의 낙태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근래 청소년 낙태율의 증가는 최근 교육제도와 행정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자율화됨에 따라 성교육과 인간관계 등의 교육이 소홀해진 데에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다시 청소년의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등의 시각도 없지 않았다.

한편 핀란드 청소년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로 보낸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1년간 아동은 아동센터(day-care centers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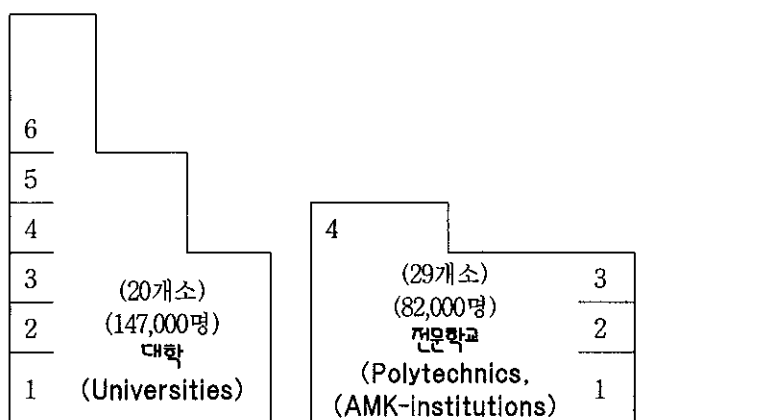
31) 핀란드 미성년자의 낙태율은 평균 10%대를 넘나들고 있다 1997년 11.5%, 1999년 13.5%, 2000년에 약 14% 정도로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미성년자 출산율은 1997년 9.3%, 1999년 9.6%, 2000년 10.1% 정도로 낙태율에 비해 다소 낮다.

schools)에서 무료 급식과 함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량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리고 우선 8세부터 16세까지 9년간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s)에서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종합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료, 식사, 교통수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복지사와 심리사가 배치되어 학생의 학습과 적응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학생복지 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수 후에는 3년간의 중등교육과 2-3년간의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일반 중등학교와 직업학교로의 진학 비율은 각각 50% 정도이다. 의무교육 이수 청소년의 90% 이상이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단지 8%정도의 청소년은 의무교육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작업장(Youth workshops)과 같은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그밖에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지방정부나 민간의 스포츠 관련 기관, 민속 관련 기관 등에서 다양한 직업훈련 등이 자유로운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 고등교육은 20여개의 종합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폴리테크닉 형태의 전문대학, “예술연구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 직업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중등학교 졸업생의 50% 정도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며 나머지 40% 정도는 각종 직업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다. 핀란드의 대학입학은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지만, 입학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입학시험은 여름에 실시되며, 중등학교에서의 내신과 입학시험 성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런 관문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지망자의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청소년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원하는 분야의 대학에의 입학을 시도한다 따라서 매년 대학 신입생의 1/4 정도는 25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3	(430개소)
2	(113,000명)
1	

고등학교
(Upper secondary schools)

3	(327개소)
2	(138,000명)
1	

직업학교
(Vocational schools)

나이
16

15	9	
14	8	
13	7	
12	6	
11	5	
10	4	
9	3	
8	2	
7	1	
6		학령전 교육(종합학교나 종일반 아동센터)

(4,203개소)
(592,000명)
종합학교
(Comprehensive schools)

<그림 IV-1> 핀란드의 학교 체계도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해 중등 이상의 교육비를 학업보조금과 지방정부의 보조융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융자금은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교육발전 노력으로 핀란드는 전국민의 100%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문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교육발전의 결과로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 수준은 유럽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정책의 개요

(1)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육성 구조

핀란드 청소년정책은 1972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1986년에 통합 입법된 청소년육성법(Youth Work Act)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995년 3월 개정된 현행 청소년육성법은 '세대간, 성별간, 다른 종교 사이의 평등과 관용,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지속적인 자연의 이용 증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법의 목적을 위하여 첫째, 청소년육성(youth work)은 '청소년의 삶의 조건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시민활동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measure)' 둘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시민으로서의 기량을 증진하는 시민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참조: 임성호 편역, 1999 ; Ministry of Educatio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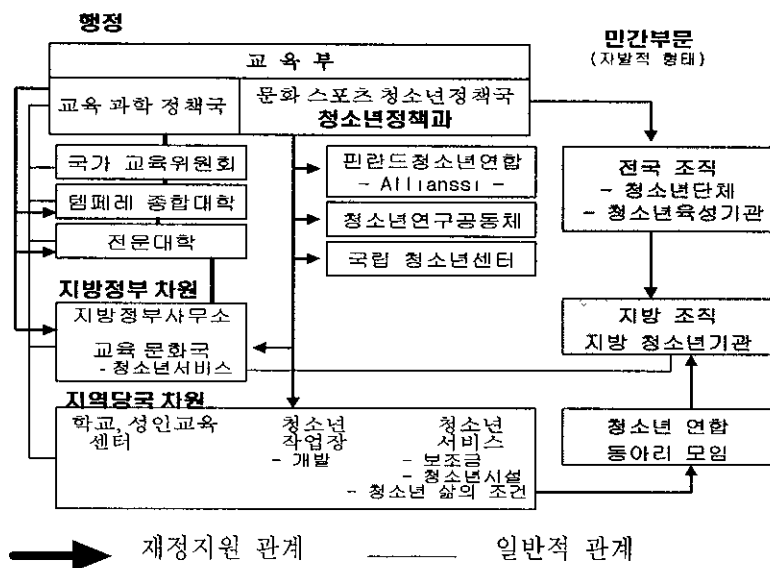
개정된 청소년육성법의 기본 정신은 사회가 청소년육성의 전통적인 형태를 조직하는데 덧붙여 청소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조치의 책임은 3단계로 나누어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정부(the government)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정부(the provincial state office)가,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당국(local authorities)에 각각 두고 있다.

핀란드의 행정체계는 중앙행정과 자율적 지역행정의 2가지 기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수준에서는 총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사결정

체(국회와 지역의회)를 두고 있으며, 조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우리 나라의 시·도와 같은 수준의 주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당국(시와 군)은 지방간의 협력과 개발을 위해 지방위원회(Regional Council)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에는 5개의 지방정부와 1개의 자치지방정부(아랜드, Aland)를 두고 있고, 시와 군(지역당국)에서 구성한 19개의 지방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448개의 지역자치단체인 지역으로 가장 작게는 인구 122명의 소툽가(Sottunga)시에서부터 55.1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헬싱키(Helsinki)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지역의 평균 인구수는 11,400명 정도이다(Allianssi, 2001' 13).

<그림 IV-2>의 핀란드 청소년육성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에서 청소년 삶의 조건 개선과 관련된 각각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 조정과 총괄 기능을 한다.



<그림 IV-2> 핀란드 청소년육성의 구조

그리고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중앙 단위 차원에서 핀란드 청소년단체나 기관의 총연합회의 성격을 지닌 Allinassi(Finland Youth Cooperation), 청소년 관련 연구자의 연합회 성격을 지닌 청소년연구공동체(Finish Youth Research Society)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부분의 전국 규모의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과 폴리테크닉 형태의 전문대학들은 청소년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설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 등으로 청소년육성체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핀란드에서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는 주로 전문대학 수준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으로는 템페레(Tampere) 대학에 유일하게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이 있었으나, 최근 폐지³²⁾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청소년활동과 국제 사업을 지원하는 9개의 국립청소년센터(National Youth Center)를 설립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센터의 운영은 지역당국에서 맡고 있으며, 주로 레크리에이션활동, 숙박, 오락 및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캠프학교, 자연학교, 청소년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국 단위 청소년센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regional youth work) 구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에는 독자적인 세금 수입이나 선출직도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청소년육성이나 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바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지역의 다른 기관

32) 최근 템페레 대학에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이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접통로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분명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아마도 핀란드의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위상과 보상,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 등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나 파트너간의 연계 협력 등에 대한 지원이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교육 문화국은 청소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청소년 삶의 조건 개선, 지역 청소년육성 사업의 기초 서비스 평가, 청소년 작업장 개발, 학교 아동의 방과후 활동 개발, 인종주의 타파와 관용주의의 함양 및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99: 26).

셋째, 핀란드 행정체계 상의 가장 기초단위인 지역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운영 등 청소년육성의 실질적인 저변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즉, 1995년 개정된 청소년육성법에 의거하여 지역자치단체는 청소년 삶의 조건 개선과 청소년활동지원이라는 청소년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은 자율적인 자치단체로 운영되는 만큼 청소년육성 사업의 형태나 구조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10여개의 지역자치단체만이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행정 부서를 두고 있다. 지역당국은 우선 전국적으로 1,200개소의 청소년 관련 시설과 여기서 근무하는 3,400명 정도의 지도자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아울러 지역에서 자발적인 동아리 형태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6,500개 정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핀란드에 있는 1,200여개의 청소년시설 중 약 절반은 직영하고, 나머지 절반은 임대 형식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사업은 청소년실업과 소외문제의 극복을 위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청소년작업장 사업과 방과후 아동활동센터 및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 지역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 통로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역자치단체의 33% 정도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시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이며 향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넷째, 핀란드의 청소년육성 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청

소년육성 사업이다. 2000년 12월 현재 핀란드인의 종교 분포를 보면 절대 다수인 85.3% 정도가 루터교이며, 그밖에 소수인 1% 미만의 동방정교회, 카톨릭, 이슬람, 유대교 등이 있으며, 10% 정도인 50만명은 무종교 등이다. 핀란드에서 루터교는 핀란드인의 생활과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80% 정도의 핀란드인은 루터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 태어나는 90%의 신생아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90%의 핀란드인은 교회묘지에 묻히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육성 사업에서도 루터교회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루터교회는 전국적으로 활동과 재정 측면에서 비교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약 600개의 회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합체가 교회 청소년육성 사업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합체에서 운영하는 4-6세 사이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day-care centers)에는 해당 아동의 절반 이상인 52%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밖에 5-11세 아동을 위한 일요학교, 7-11세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혹은 저녁 클럽활동이나 교회 스카우트, 그리고 15세 청소년의 90%이상이 참여하는 견진성사반(confirmations classes), 15-18세의 교회 청소년그룹 등 매우 다양한 클럽 활동과 모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육성 사업을 위해 1,200여명의 전문 청소년지도자를 고용하고, 3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루터교회는 매년 400명 이상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위험 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 지원과 아울러 문제 가정의 청소년과 아동 지원의 일환으로 한가정과 교회, 학교, 지역당국과 민간 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핀란드 청소년육성체제의 단계별 구조와 사업

①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와 사업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은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청소년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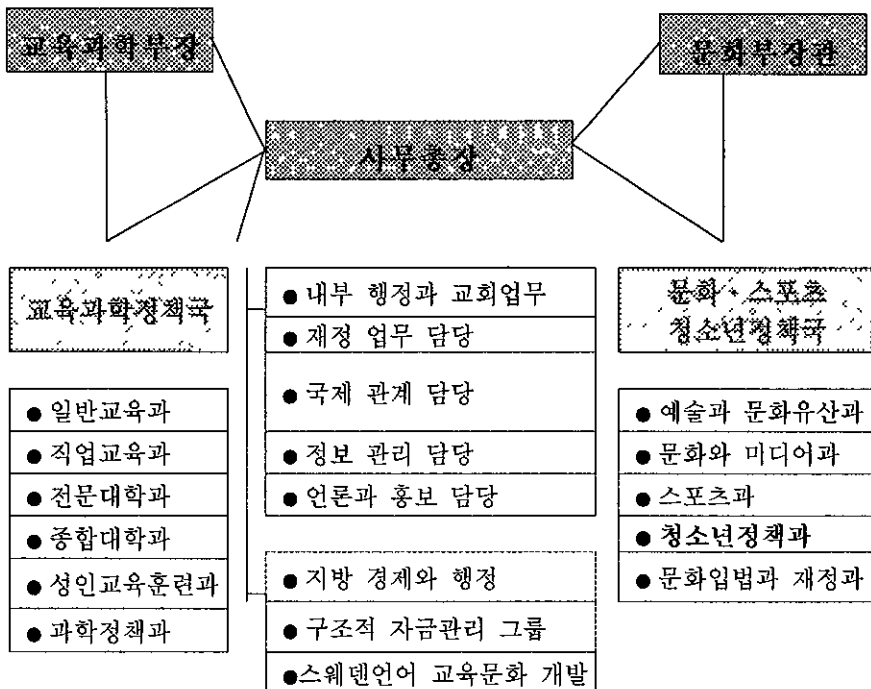
를 동시에 관할하는 교육부의 청소년정책과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핀란드 교육부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교육부 내에 교육과 과학업무를 담당하는 장관과 문화, 스포츠, 청소년업무를 관할하는 장관 등 2명의 장관을 두고 있다. 교육부라는 한 부처 내에 2명의 장관이 있는 셈이며, 우리 나라의 행정구조로 비교하면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 업무를 모두 관할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독특한 행정부 형태는 다당제에 바탕을 둔 연정이라는 핀란드 정치구조의 소산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인구 5백10만명의 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구조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의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 시민활동의 진흥과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청소년회관 등 관련 시설의 설립 운영 지원, 국제교류 진흥 및 청소년육성 분야의 재정 지원과 배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과는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청소년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성취를 위하여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가진 ‘청소년사업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f Youth Affairs)’이다. 자문위원회는 청소년육성 관련 각 부처 대표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주거, 교육, 재정상황, 고용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120개의 지수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조건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지표(Youth Barometer)’라고 불리는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의 사회화와 자기관리를 지원하며, 사회적 참여를 고무하는 동시에 문화와 사회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업들을 기획수행한다(Allianssi, 2001: 10-11)

둘째,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자문하고 제안하는 4년 임기의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단체보조금위원

회(the Youth Organization Subsidies Committee)'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단체에 자문하고, 이를 기초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재원 조달과 관련된 체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 위원회의 위원장을 30대중반의 현직 야당 국회의원인 카타이넨(Katainen Jyrki)이 맡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야당 현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국회에서 청소년육성 관련 예산의 확보나 재원의 통로의 확대 등에서 매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금년 말 현재 청소년육성 재원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로토(Lotto 복권수입) 수입의 배분에서 청소년육성 재원의 비율이 5.5% 수준에서 9%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두는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림 IV-3> 핀란드 교육부의 행정 조직(2001)

* 출처 Allianssi, 2001, p.11.

②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육성 구조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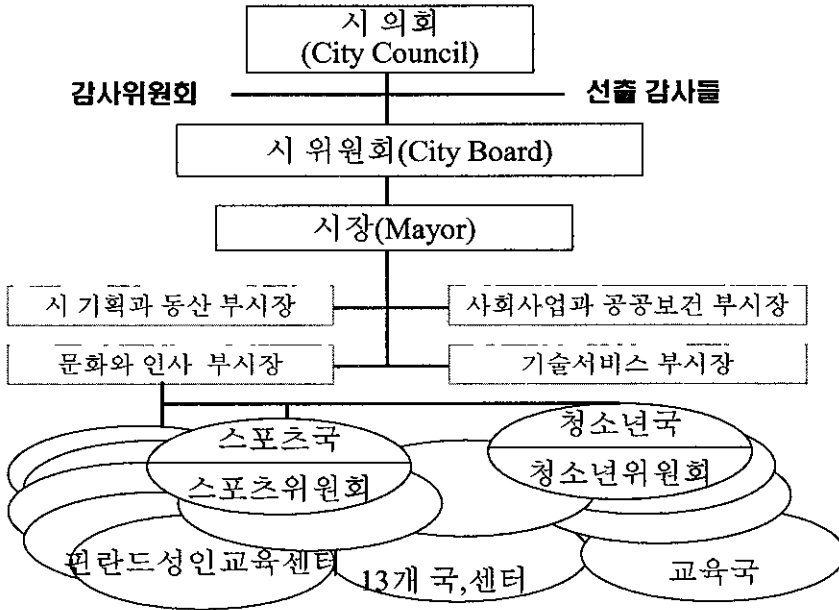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핀란드의 행정체계의 기초단위인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13-85명의 구성원으로 의회가 구성되며, 이 의회에서 지역 행정 위원과 각 영역별 위원회를 임명한다. 따라서 여러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93년 이전에는 모든 지역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3년 행정개혁으로 지역당국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업무는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스포츠, 문화, 교육 등과 함께 다루어지며, 드물게는 사회복지와 건강보건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자치단체도 있다.

1995년 청소년육성법이 개정된 이후 지역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부과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육성의 책무에 따라 각 지역당국에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Allianssi, 2001: 13-15).

한편 지역자치단체는 인구 등 지역 크기에 따라 청소년육성 사업의 형태와 운영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시나 지방의 수도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에서는 독자적으로 많은 청소년활동 클럽이나 청소년작업장 혹은 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성화되어 있지만, 많은 소규모의 농촌형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청소년센터나 작업장의 운영 등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몇몇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청소년육성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투루쿠와 포리 지방에 있는 로이마시 주변에 있는 12개의 시는 공동으로 청소년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5-6시가 공동으로 청소년작업장을 운영하는 곳도 흔하게 볼 수 있다.

(1) 헬싱키시의 청소년정책

헬싱키(Helsinki)시는 핀란드의 수도인 만큼 핀란드 지역자치단체 청소년육성의 전형적인 특성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헬싱키시의 행정조직상으로 청소년업무는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하에 있는 13개의 국과 센터의 하나로 청소년국(Youth Department)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에는 청소년위원회(Youth Committee) 등과 같은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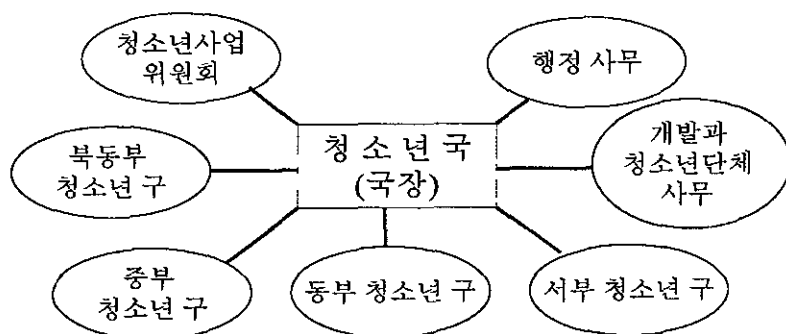


<그림 IV-4> 헬싱키시의 행정조직과 청소년국

그리고 청소년국은 별도의 청소년위원회 외에 행정사무, 개발과 청소년단체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과 더불어 헬싱키시의 위치에 따라 중부, 동부, 서부, 북동부 등 4개의 청소년 구(Youth District)로 나누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1년 현재 헬싱키시가 관할하는 청소년시설은 총 105개소에 면적으로 약 5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구체적인 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

년센터가 63개소, 청소년단체 시설이 19개소, 6개소의 자전거 수리 작업장, 2개소의 훈련센터, 2개소의 캠핑장, 실내 스케이트공원, 문화공연장 그로리아(Gloria), 가능성의 집 패닉 하우스(Fenix-House), 교통교육센터 및 청소년종합 정보안내 및 상담센터인 콤파시(Kompassi)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청소년육성 인력으로는 370명의 전일제 직원(이중 270명은 청소년지도자임)과 137명의 시간제 강사, 197명의 단기 고용자 등이 청소년육성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예산은 인구 1인당 229 FIM(핀란드마르크), 전체 126백만 FI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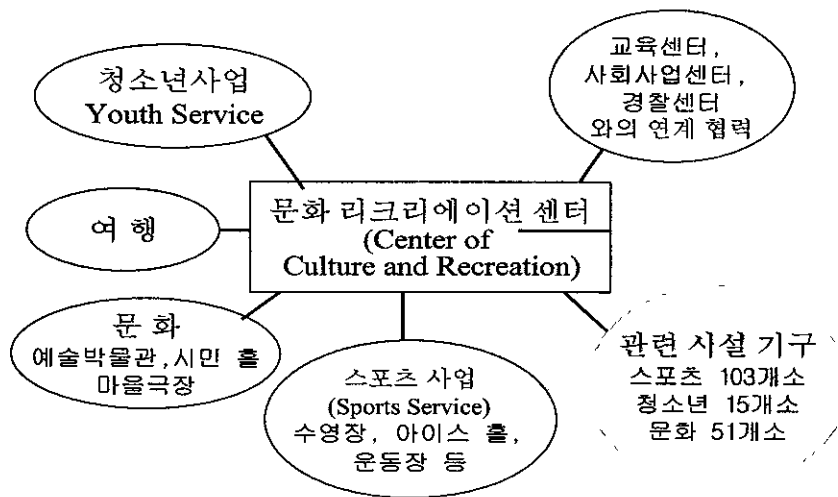


<그림 IV-5> 헬싱키시 청소년국의 하위 조직 구성

또한 헬싱키시 청소년국은 ‘핀란드 청소년육성을 이끌어 가는 한편 유럽 전체 청소년육성 사업의 선두 주자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청소년이 사회의 동등하고 활동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청소년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헬싱키시가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 강조하는 것은 교육, 훈련과 직업생활, 사회활동, 문화생활 및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 등이다. 즉, 헬싱키시 청소년국은 주로 10-18세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여를 진흥하고, 직업생활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청소년 삶의 조건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문화적, 여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ii) 히빙케시의 청소년정책과 사업

히빙케(Hyvinkaa)시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전원형의 농촌 도시로 인구 42,000명 정도의 중규모 도시이다. 히빙케시는 헬싱키로부터 기차로 40분, 자동차로 50분 정도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각종 스포츠와 레저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레저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히빙케시에는 핀란드 교육부에서 설립 운영중인 '아동과 청소년 예술센터(Art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가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림 IV-6> 히빙케시 청소년담당 부서의 관할 업무와 관련 시설

히빙케시의 청소년육성 업무는 문화와 리크리에이션 센터(Center of Culture and Recreation)에서 전체 인구의 약 24.3%에 해당하는 0-18세 사이의 10,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히빙케시는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청소년이 독립적이고 협력적이며, 책임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가능성, 지원 및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성인과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모으고 있다. 궁극적으로 히빙케시는 청소년의 자유와 사회적 관리 사이의 다리를 놓은 일을 청소년육성의 미션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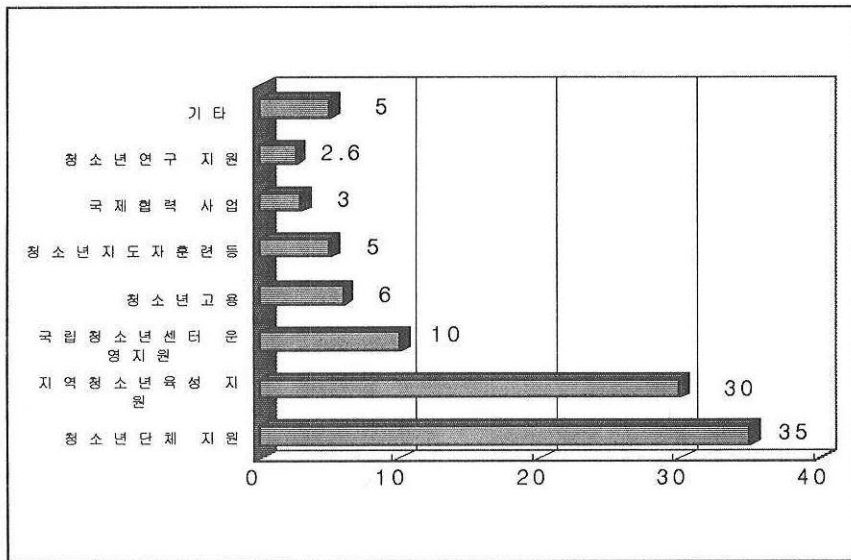
또한 히빙케시는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미션과 목표 달성을 위해 15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며 7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학령전 아동과 부모를 위해 가족클럽(Family Clubs)을 운영하며, 놀이와 부업, 노래, 게임 등을 매주 인근 마을을 돌아가며 개최함으로써 가족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매일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연령층의 아동을 위한 아동클럽(Kids Clubs)에서는 놀이, 스포츠, 아르바이트, 초보적 모험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체험기회와 학교 공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매주 1회 방과후에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13-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집(Youth Houses)에서는 매일 밤 청소년의 리더십, 탁구, 당구 등의 게임이나 영화나 캠핑과 같은 주제의 밤 행사를 갖는 등 '오픈 도어(Open Doors)' 사업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타 청소년의 집(Silta Youth Houses)에서는 매주 주말인 금요일 밤에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를 제공하며 친구와 만나고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밤 카페(Youth Night Cafe)를 운영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3) 핀란드 청소년육성 재원

핀란드 정부의 직접적인 청소년육성 예산은 2000년 기준으로 1216백만 핀란드마르크 정도이며, 이는 29세 이하 청소년 인구 1인당 약 64 핀란드마르크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청소년육성 재원은 핀란드 전체 예산 199,575백만 핀란드마르크의 0.06% 정도이며, 교육부 예산 27,924 핀란드

마르크의 0.4%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소년고용, 교육, 보건 등의 청소년관련 정책 재원을 포함하면 대략 30,000백만 핀란드마르크 정도로 국가 전체 예산의 15% 정도에 육박하는 예산하는 투여하고 있다.



<그림 IV-7> 핀란드 청소년육성 예산의 지출 내용(2000년)

핀란드 정부가 직접적인 청소년육성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121.6백만 핀란드마르크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전체 35%정도인 43백만 핀란드마르크는 전국적인 청소년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30% 정도인 36.7백만 핀란드마르크는 지역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지원에 그리고 10% 정도는 국립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6% 정도는 청소년고용, 5%는 청소년지도자 훈련과 청소년육성 관련 개발 비용에 그리고 3% 정도는 국제협력 사업 등에 지출하고 있다. 그밖에 청소년연구지원(2.6%), 방과후 활동 지원(2%), 지방청소년육성 사업 지원(1.8%) 등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주요 특징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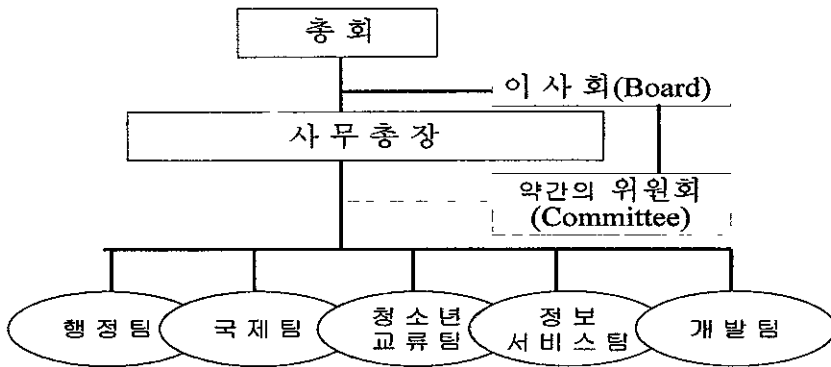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청소년 관련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핀란드 청소년육성 사업 현장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여기서는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을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센터 운영 및 최근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의 하나인 청소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핀란드청소년연합과 청소년연구공동체의 설치

핀란드 청소년정책과 육성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청소년단체와 관련 기관의 단일연합체와 청소년관련 연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핀란드청소년연합(Finnish Youth Co-Operation)으로서 알리안씨(Allianssi)는 첫째, 많은 핀란드 청소년단체를 포괄하는 조직체로서 둘째, 핀란드 청소년과 단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 셋째, 지역이나 지방 수준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넷째, 청소년을 위해 직접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비정부기구(NGO & NPO)로서 어떤 정치적 지배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조직체이다. 그리고 가입 여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핀란드내의 어떤 기관에도 개방되어 있다.

알리안씨는 1993년에 기존의 3가지의 전국적인 청소년연합 조직체 - 청소년육성 분야를 위한 다양한 지원 조직, 지역 청소년지도자의 서비스 및 이익 단체, 전통적인 청소년단체를 포괄하며 국제협력에서 핀란드를 대표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가 구성원, 활동 및 이해관계에서 상호

중첩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를 위한 단일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 따라서 알리안씨는 다른 유럽 국가의 청소년위원회와 달리, 다양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알리안씨는 청소년단체나 지도자 등 회원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의 기획 제공, 청소년정책 당국에 대한 정책 건의 등 영향력 행사, 그리고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림 IV-8> 핀란드청소년연합 Allianssi의 조직

알리안씨는 전국적인 이익단체, 취미 및 청소년 정치단체 등을 포함한 100여개의 회원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다른 청소년관련 조직체와 청소년 전문가 등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핀란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전문가를 대표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기구이다. 알리안씨의 주요 의사결정은 1년에 봄과 가을 등 2회에 걸쳐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가을 총회에서는 의장과 이사회 선출 및 다음 해의 예산과 사업 승인 등을 위한 총회이며, 봄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계 승인 등을 다룬다. 회원 단체는 회원의 수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회는 무보수의 의장과 부의장, 14명의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알리안씨의 사무국에는 20여명의 직원이 <그림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팀으로 나누어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알리안씨 사

무국은 1952년 올림픽을 개최한 스타디움 내의 사무실 공간에 청소년연구 공동체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연구공동체(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는 1988년 청소년연구의 학제간 연구와 연구자간의 연계 협력을 진흥하고, 이러한 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연구공동체의 일차적 목적은 청소년관련 전문연구자와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간의 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핀란드청소년연합 Allianssi와 공동으로 분기별로 청소년정책이나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전문 연구 잡지인 '청소년연구(Nuorisotutkimus ; Youth Research)'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 청소년연구자의 관심영역과 연락처를 명기한 목록 발행, 최근에는 핀란드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관련 기관 목록 발행 등과 함께 교육 부나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청소년연구 이슈나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연구네트워크를 내부에 두어 활성화 시키고 있기도 하다.

(2) 청소년 종합 정보 상담 센터 콤파씨(Kompassi)의 운영

청소년 종합 정보 상담 센터(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Center)로서 'Kompassi³³⁾'는 앞서 살펴본 헬싱키시 청소년국에서 운영하는 100여 개소의 청소년 관련 시설 중의 하나이다. 콤파씨의 일차적 목적은 헬싱키시에 거주하는 29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 및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상담과 가이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누구나 사전 약속 없이 정보나 상담 혹은 가이드스가 필요할 경우애나 아니면 전문 청소년지도자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나

33) Kompassi는 핀란드어로 나침반(영어의 compass)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다

토론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꿈파씨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과제는 주거, 훈련, 학교공부, 일(직장, 봉사활동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유학, 여행, 사회안전, 환경문제, 리크리에이션과 여가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꿈파씨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보와 상담을 위해 최신 정보와 전문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화, 인터넷이나 E-mail 등을 통해서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꿈파씨는 1982년에 헬싱키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청소년정책의 중심점에 놓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설치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1983년에 청소년의 왕래가 가장 빈번하며 중심부에 위치한 헬싱키시 중앙역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주로 청소년의 성, 여가, 건강과 가정문제 등과 같은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소극적 역할을 하였다. 그밖에 법적 문제나 세금과 관련된 자문의 요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꿈파씨는 급변하는 청소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1993년부터 1998년간에는 정보와 정보 채널의 질 개선과 다양화가 크게 개선되는 시기이었다. 1998년 꿈파씨는 중앙역 앞에 위치한 헬싱키 중심부의 라씨팔라씨 미디어 필름 센터(Lasipalatsi media and film center) 건물로 이전하면서 전자미디어를 활용한 종합 정보센터로 변모하였으며, 이용하는 고객도 이민자, 학생 및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한해 총 이용자는 54,000여명에 이르며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17-25세 연령의 이용자가 전체 6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4-16세 이용자가 15%, 26-29세 이용자가 13%, 그리고 30세 이상 이용자가 9%, 14세 이하 이용자가 전체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 청소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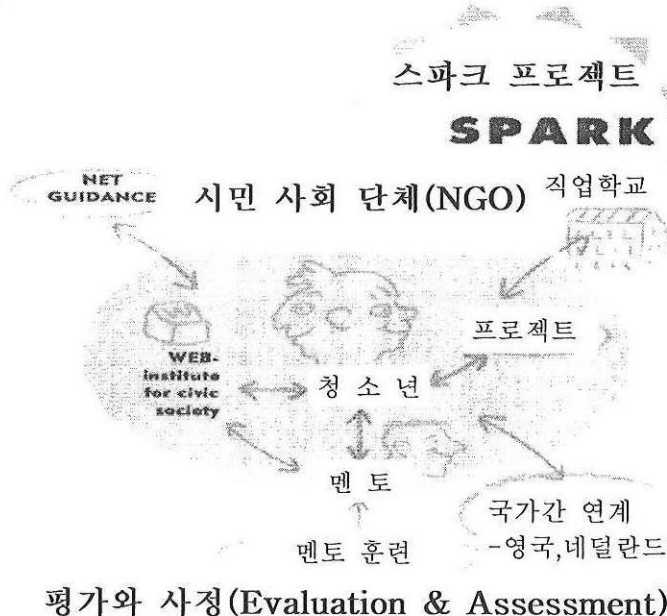
앞서 핀란드의 경제적 여건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핀란드는 1990년대 초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청소년의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경제불황을 극복한 1995년 이후에도 청소년실업은 성인실업의 2-3배에 이르는 등으로 청소년의 일 혹은 직업교육훈련 문제는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청소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작업장 설치 운영, 스파크 사업, 뉴워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작업장(Youth Workshops)은 1990년대 초 경제 침체기에 높은 청소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소에 달하는 주요한 청소년 관련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청소년실업과 체험중심의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의 장으로서 청소년정책 면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청소년작업장의 90% 이상인 대부분의 시설은 지역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운영 목적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 많은 훈련에 참여하고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고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두고 있다. 현재 청소년작업장에는 1회에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매년 약 6,000여명의 청소년이 훈련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청소년작업장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부, 노동부, 지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몇몇 작업장은 유럽공동체 사회기금(EU Social Fund)의 공동 지원을 받는 곳도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청소년작업장 체계의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은 주로 훈련과정 개선, 창업교육, 작업장 학교, 직업학교에서 작업, 도제식 훈련, 활동 센터 내의 작업장 설치 및 소외 청소년의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청소년작업장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1993년 비공식적 기구로

전국작업장연합이 결성되었고, 1997년에는 공식적 기구로 등록을 마치고 활약하고 있다. 연합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약 4만 명 청소년을 청소년작업장에서 채용하였으며, 그중 65- 70%는 이후에도 교육과 직업에 계속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실업 해결과 21세기 지식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학습과 기능습득을 위해 알리안씨를 중심으로 1998년과 1999년 2개 년에 걸쳐 투루쿠(Turku)와 조엔수 (Joensuu)등 2개 지역에서 스파크 프로젝트(Spark Projects)를 실험적으로 운영하였다. 스파크 사업은 비정부 기구인 제3영역에서 청소년에게 일을 제공하고, 학습을 위한 틀과 실제적인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림 IV-9> 스파크 프로젝트의 운용 체계

스파크 사업은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개념과 제3영역에서의 무형식 교육과 활동이 장래의 고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탄생되게 되었다. 따라서 스파크 사업의 주요 목표는 우선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을 위한 환경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용주로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과 고용당국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작업기회 확대와 운용의 새로운 수단을 찾는 데 있어 NGO의 역할을 지원하며, 아울러 청소년에게 실천적인 작업 체험을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면이 동시에 고려된 운용의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고, 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수단을 유용하게 만들어 가는 등에 있었다.

스파크 사업은 2개의 실험 지역에 있는 비정부기구에서 60명의 실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실제 작업을 제공하였다. 알리안씨의 스파크 사업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스파크 사업은 성공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지 목표집단의 정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목표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웹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훈련기관간의 연계 협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뉴워크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셋째, 뉴워크 사업(New Work Project)은 스파크 사업과 유사하게 비정부기구 즉, 제3영역을 활용한 청소년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실험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다. 현재 핀란드청소년연합 알리안씨와 핀란드 스포츠연맹, 핀란드사회복지보건연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뉴워크 사업은 제3섹터에서 실업청소년과 장기실업자에게 보다 장기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아울러 민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고용과 지원체계의 새로운 모델 창출과 청소년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 분야와 스포츠, 사회복지 분야간의 연

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워크 사업은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3섹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로바니미(Rovaniemi), 오우루(Oulu), 조엔수(Joensuu), 지베스키레(Jyvaskyla)와 헬싱키(Helsinki) 등 인구통계상의 특성이 각각 다른 5개 지역에서 실험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10-15개의 비정부기구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유럽연합과 떼제베(DGV)와 핀란드 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실업 해결과 동시에 직업체험 기회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실험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 실업과 아르바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핀란드의 이러한 실험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V. 요약

공 백

V. 요 약

<표 V-1>은 이제까지 살펴 본 유럽의 청소년정책동향을 유형화하여 요약한 것이고, <표 V-2>는 유럽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자격을 유형화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V-1> 청소년정책의 유형

청소년정책모형	국가	청소년부서/이사회	청소년부문	청소년의 주요이미지	주요 목적	주요 문제	목표 그룹	주요 연령대
보편형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 -/- +/- +/-	청소년부문이 약하거나 없음	· 자원으로써 청소년	· 자율성 · 독립성 · 개발 · 정치참여	· 청소년의 참여	전체청소년	13/15 - 25살
지역사회 기반형	아일랜드 영국	+/- -/-	청소년부문이 약하거나 없음	· 문제로서 청소년	· 사회문제 예방 · 정치참여	· 청소년기의 연장 · 사회배제 · 청소년의 참여	소외청소년	초등학교 - 25살
보호형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 ++/+ ++/+ ++/+ ++/+	주요 청소년 부문 존재	· 취약한 청소년 · 자원으로써 청소년 · 문제로서 청소년	· 사회문제 예방 · 통합 · 정치참여	· 사회배제 · 청소년의 참여	전체청소년, 소외청소년	0 - 25/30살
중앙집중형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 +/- +/-	주요 청소년 부문 존재	· 문제로서 청소년 · 자원으로써 청소년	· 자율성 · 독립성 · 통합 · 정치참여	· 사회배제 · 청소년기의 연장	특정 청소년집단	15-25/30살

1) '국가'는 4 모형 중 하나로 쉽게 분류될 수 없다.

2) '청소년부서/이사회'에서 +는 청소년정책의 한 부서에 배분됨, ++는 독자적인 전문화된 청소년정책 담당부서가 있음, -는 청소년정책 부서가 없음을 의미함

<표 V-2> 유럽 청소년 지도자 양성개요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 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전문학교	고등교육		
오스트리아	SP		·전문학교들 '사회 교육학' 5년제 전입 학생 과정, 10% 실기 ·사회 교육학을 위한 전문대학 2년(전입), 3년제 비상근, 실천적 요소들이 겸비된 이론교육, 계속 교육 과정에 의해 민간 자격증 2년	·사회사업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 자격증 ·대학 교육학 자격증 두 과정들 모두 주로 이론에 초점	민간 비영리 조직들이 청소년 지도자들 고용에 가장 큰 몫을 차지	·레저 활동 조직 ·소외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상담
벨기에	YW SW	일반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서로 다른 언어 지역 공동체들에 의해서 이뤄진다(플랑드르, 왈로니, 독일어 사용권 및 브뤼셀) 따라서 모든 지역사회에 모든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서비스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서비스와 공공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사업 목표 집단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청소년 클럽(여가활동) ·청소년 정보 ·소외집단
		청년 사회사업 80시간 훈련과정, 교육부 공인 증서	4년 시간제 과정, 80% 실기, 교육학 학위 공식 인정	종합기술학교 4년 과정, 사회사업 학위에 이르는 6-12개월의 4년제 과정 대학들		

*YW=청소년지도자(청소년강사, 여가시간지도자), CA=문화촉진자, SP=사회교육자, SW=사회사업가(사회문화지도자)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덴마크	SP YW	자원 지도자 단체에 의한 훈련(일부는 비공식적 인턴 성격), 덴마크청년협의회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정됨	청소년클럽교육가 훈련과정 자격증이 없는 자원 지도자를 위한 1년반 과정의 계속 교육이 민간훈련센터에 이루어짐	·사회교육가 학위 4년 과정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사업, 육아 및 장애인 교육을 다루는 교육 대학	공공단체 고용이 주류를 이루나 민간 단체도 증가 추세	·여가활동(청소년 클럽) ·소의 청소년들 ·건강과 예방 ·지역사회 프로젝트 ·청소년 실업
핀란드	YW	비영리단체에 의한 자원 지도자 훈련 교회가 광범위한 훈련 조직 '청소년 학원'에 의한 자발적 훈련조정	'청소년 및 여가활동 강사' 후기 중등 교육 2년 과정(2001년부터는 3년), 20% 실기, 청소년 클럽, 가정 및 사회 예방 관련 고용	·공민학 및 청소년 사업학/여가활동 3-5년 종합기술학교 학위, 20-40% 실기, 청소년 사업 경영 및 기획관련 고용. ·사회 교육학 연구 대학 석사 학위 연구 및 경영 관련 고용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고용되나 민간 및 비영리 부문 증가	·여가활동 ·청소년 실업 ·건강 및 마약 예방 ·사회적 배제 방지 ·이민 청소년들 통합 ·청소년협의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프랑스	CA SE	BAFA, BAFD, BASE는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원 지도자 3개 과정임. 특정 경우에는 전문 학교 진학 기회 제공됨.	1) BAPAAT 인턴형 2) BEATEP 사전 선정된 분야에서 8-12개월간 이론 및 실기를 교대하여 훈련 3) DEFA 훈련 전일제(3년), 혹은 시간제(6년), 4개월 실습 4) DEDPAD. 2-3년(각각 750시간의 실습 및 교육)	1) 기술대학 학위(DUT) 전공에 따라 '사회문화활성(ASC)'을 선택할 수 있다 3년 학부과정. DHEPS 졸업장 취득 가능 2) 사회 사업가들을 위한 계속 교육 과정	파반수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NGO에 고용됨	•여가 및 스포츠 활동/하계 캠프 •청소년 정보 •청소년 고용
독일	SP SW YW	청소년 단체 및 협회는 자원 지도자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계속 교육을 제공함. 그들 중 소수만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함.	1) 사회사업 보조원 양성과정, 학교에서 2년 과정 2) 사회교육가를 위한 전문 교육 및 훈련 3-4년(1년 실습) 3) 사회부문을 위한 전문학원 3년 학위과정(이론 및 실습 교대)	1) 교육학 분야의 대학 졸업장(사회교육학 분야) 4년 6개월 과정. 2) 사회사업/사회교육학 분야의 종합 기술교육 졸업장	대부분이 NGO에 고용	•여가활동 중심의 청소년센터 •문화활동 •상담 •청소년실업 프로젝트 •학교 숙제 지원 •방과후 시설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그리스	SW CA	•협회는 레저 및 문화 분야를 목표로 한 훈련 과정 제공 유료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졸업장 요구 •정교회는(이론 및 실습을 포함한) 1년의 훈련 과정 운영 고등학교 졸업장 요구 공공자격은 아님	민간직업훈련원은 문화, 스포츠 및 여가 분야 고용을 위한 훈련 과정(때때로 상업적 환경)을 제공함 약 500시간 이론 및 실습 학습	•대학학위(사회사업, 사회학) 청소년 대상으로 특화되지 않은 상담, 건강, 중독 등을 포함한 이론 학습. •사회사업 전문학교 학위 청소년 사회사업을 준비하는 실습 위주의 3-4년 학위 과정 •청소년 사무국이 제공하는 계속 교육 과정(150-220시간)	•공공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교회는 주로 소의 그룹과 관련 중요하다 •여가 시간 활동에 관련된 협회 및 민간 제공 단체들	•청소년 실업 •여가 및 스포츠/하계 캠프 •건강 및 약물 중독 상담
아이슬랜드	YW	자원적 수준의 훈련은 존재하나 조정되지 않음	무관	•청소년 사업 졸업장 7% 수준의 미미한 실습을 겸비한 1과 1/2년 학부과정 •사회사업학 학사 전공 분야로 차별화된 3년 과정	공공 기관의 고용이 지배적이나 자원적 분야 증가	•건강 및 중독 상담 •정치 교육 •여가 활동 •청소년 실업 •성 문제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아일랜드	YW SW	비영리부문이 제공하는 자원 지도자를 위한 비표 준화된 양성과정		1) 사회학 석사 청소년 및 지 역사회학 대학 학위 2년 대학 원 과정. 2) 사회학 석사 실제 배치가 이루어지는 2년 전일제 과정. 3) 청소년 및 지역사회학 학 사. 실습이 포함된 3년 과정	청소년 단체의 지원 업무가 중심이나 전 문직화 증가	•여가 활동 •위협에 처한 청소 년 •청소년 클럽
이태리	CA SE YP	보편적 국가 청소년 정책이 없고 지역 청소년 정책이 늦게 시행됨에 따라 지방, 지역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공 및 비영리 분야 에서의 고용(비영리 분야가 공공 부문 업 무를 위탁받으면서 비영리 분야 증가)	•청소년 정보 •직업 상담 •여가 활동 •사회적 소외 방지 •교육 및 훈련 상담
		비영리 단체나 협회는 광범위한 장단기 훈련과정을 제 공한다 이는 일부 적절한 자격 없이 지역 청소년 정 책과 관련 업무를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속 교육 과정임	비정규 교육에서의 전문 교육 가: 실습을 포함한 4년 과정의 대학 학위 그 외 3년 학위 파 정 도입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리히텐슈타인	SP	청소년 단체에 의한 양성(자격증 없음)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인접국들을 보면, 오직 계속 교육만 제공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등 인접국들을 보라	지역 당국이 주 고용주	·청소년 클럽 ·청소년 정보
룩셈부르크	SE CA	비형식적 훈련 과정	종합 기술 학교에서의 교육 a) 전문학교 수준 졸업장 b) 고등 교육 수준 3년 과정의 전일제 교육학 학위, 6년 시간제 과정 양 과정은 균일한 실습, 기술, 이론 훈련을 포함한다. 대안 프랑스나 벨기에에서의 학습		지역 당국이나 자선 단체에 의한 고용이 중심	·정보 및 상담 ·청소년 클럽 ·청소년 시설
네덜란드	YW SW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를 위한 훈련	사회 문화 사업가, 사회 교육자, 사회사업가 지방교육에서 제공하는 2-4년의 4단계 학위 과정(60% 실습 훈련)	문화사회교육(CMV) 관련 고등직업교육(UPE)·종합기술대수준에 해당되는 4년 학위 과정, 실습 경험 통합.(1990년까지 특별 UPE 청소년 사회 사업 프로그램)	비영리단체 및 이와 유사한 지역 봉사 단체에서 고용	·청소년 정보 ·청소년 사업(여가) ·청소년 비영자들 ·소외 집단 ·문화 및 예술 ·청소년 실업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분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노르웨이	SW SP	자원적 수준의 훈련은 존재하나 민간 및 비영리 단체의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조정력과 적합성이 떨어짐	사회 및 보건 사업, 유치원 및 청소년 클럽 보조원으로 서 공립중등학교 4년 과정(2년 학교, 2년 현장)	사회교육학 학위; 사회교육학(사회 사업, 육아, 위험에 처한 청년) 자격을 주는 주립 대학교 3년 과정, 6개월의 실습 포함	대체로 공공 기관에 서의 고용. 그러나 민간 단체에서도 증가	•건강 및 예방 •상담 •여가 활동 •청소년 이주자들의 요구 사항과 문제들
포르투갈	CA SE	자원적 수준의 훈련이 증가하고, 이는 포르투갈 청소년 협회에 의해 조정됨	사회 사업 및 사회 교육. 6개월 간의 육아 및 청소년 사업 기관 실습이 포함되는 직업 및 기술직 전문학교의 3년 과정	1) 사회 사업 학사. 30-40% 실습이 포함된 종합기술학교 수준의 3년 과정 2) 사회사업학부 4년 대학교정(배치 포함) 관리 및 전문직책 고용	주로 공공분야 그러나 비영리 부문 증가	•여가와 스포츠 •청소년 실업 대책 •청소년 정보
스페인	SW SE CA YP	비영리 청소년 단체가 지방 성인 교육원에서 조정되는 자원지도자 훈련 제공(자격증 부여)	사회 사업 사회 문화 촉진을 위한 고등 기술자 실기 및 이론 간 균형을 이룬 2년 과정의 지방 전문 학교	사회 사업 및 사회 교육 지역 청소년 사업에서 관리직을 얻거나 특수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3년 대학 과정 50% 실습 및 학습	지역 당국에 주로 고용, 비영리 부문 고용 증가	•청소년 실업 •사회적 소외와 주 변화 예방 •여가 활동 •상담

	용어	교육 및 훈련 경로 (기간, 실기/이론 및 자격의 형태)			고용부문	업무의 초점
		자발적 수준	직업학교	고등교육		
스웨덴	YW	비영리 단체가 제공, 비영리 단체가 자격증을 위한 훈련 제공, 때때로 계속 교육 자격증 수여	청소년 사회사업가 훈련. 1) 후기 중등 교육 3년 과정, 1005 이론 교육(보건, 여가 및 사회 예방) 2) 민속고등학교 2년 과정, 이론 및 실습 균형(여가 조직에 초점)	청소년 사회 사업 학위, 4년 과정의 고급 이론 교육이 80-90%, 주요 초점은 건강 및 예방	지역 봉사 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고용	- 건강 및 예방 - 여가 활동 - 성 문제 - 정치 교육
영국	YW SW	몇몇 비영리 단체가 일부 공인된 훈련 과정을 제공		1) 청소년 및 지역사회 전공의 고등교육 학위 2-4년 전일제 과정 2) 전일제, 시간제, 원격 교육 등이 포함된 학사 학위 과정 대부분 졸업에 1년이 추가됨	지역사회 단체나 지역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센터가 주요 고용 부문	- 청소년 클럽 - 지역사회 사업 -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

참 고 문 헌

독일

Europa(2001). Study on the state of Young People and Youthpolicy in Europe. http://europa.eu.int/comm/education/youth/studies/iard/summaries_en.pdf(검색일 : 2001. 9. 17).

Deutsche Jugerdinstitute(2001). National Report on Youth Policy in Germany. http://europa.eu.int/comm/education/youth/studies/iard/summaries_en.pdf(검색일 : 2001. 9. 17).

영국

National Youth Agency(2001). Youth service standards fund.
http://www.nya.org.uk/YS_standards_fund.htm(검색일 : 2001. 10. 8).

National Youth Agency(2001).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http://www.nya.org.uk/policy-comp-spend.htm> (검색일 : 2001. 10. 10)

National Youth Agency(2001). The children's fund.
http://www.nya.org.uk/Children's_fund.htm(검색일 : 2001. 10. 10).

National Youth Agency(2001). The neighbourhood support fund.
http://www.nya.org.uk/neighbourhood_support_fund.htm(검색일 : 2001. 10. 10).

National Youth Agency(2001). What is the youth service?
<http://www.nya.org.uk/YS-what-do.htm>(검색일 : 2001. 10. 10).

National Youth Agency(2001). Connexions
<http://www.nya.org.uk/connexions.htm>(검색일 : 2001. 10. 8)

프랑스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2001). Qui Sont Les Animateurs Aujourd'hui? <http://www.injep.fr>(검색일 : 2001 9. 17)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01).
<http://www.jeunesse-sports.gouv.fr>(검색일 : 2001. 10. 12)

핀란드

임성호 편역(1998). Finland의 청소년정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연구 자료집 1998~3.

Allianssi(2001). *Who is Who in Finish Youth Work*. Helsinki: Finish Youth Cooperation Allianssi.

Ministry of Education(1997).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Finland, National Report*. Helsinki: Yliopistopaino.

Ministry of Education(1999). *Youth in Finland*.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ATAVA Publishing Company LTD(2000). *Facts about Finland*. ATAVA Publishing Company LTD.

NORDICUM(2001). *Scandinavian Business Magazine*. NORDICUM

Local Youth Work in Nutshell(2001). *Hyvinkaa Center of Culture and Recreation*. Local Youth Work in Nutshell

핀란드 주요 번답 자료 제공 기관 및 인사

Finish Parliament(국회)

- Jyrki Katainen(야당 국회의원 및 청소년단체보조금위원회 위원장)

Ministry of Education(교육부)

- Kalevi Kivisto(문화정책국장)

- Olli Saarela(청소년과장)
- Kimmo Asltonen(청소년과 문화담당)

Mikko Varesmaa(청소년과 국제교류담당 및 핀란드 에딘버러포상제도 담당자)

Youth Affair of Helsinki City(헬싱키시 청소년담당)

- Toivonen Markku(청소년국 청소년단체 담당부장)

Cultural Affairs of Town of Hyvinkaa(히빈캐시의 청소년담당)

- Luuski Arja(문화 여가국 매니저)

Cultural Affairs of Elimäki Municipal(엘리메키시의 청소년담당)

- Tuula Soinnkallio(청소년육성 스포츠과 과장)

공 백

부 록

- 부록1 독일 청소년 지원법
- 부록2 지도자 양성과정
인정요건(영국)

공 백

독일 청소년 지원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가정 내 교육 및 피부양의 권리, 부모의 의무,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1) 모든 청소년들은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육을 받을 권리와 그들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아동의 보호, 양육 및 교육은 부모의 자연권이자 제1의 의무이다. 사회는 이들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3)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상의 제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관한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부모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4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정이 양호한 생활 조건 및 유리한 환경

을 유지하고 창조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2 조

청소년 서비스의 기능

(1) 청소년 서비스는 청소년과 가정에 유익한 혜택 및 他 기능들로 구성된다.

(2)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지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사업,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적 지원,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적 조치 (11조-14조)
2. 가정에서의 교육과 양육 촉진을 위한 지원 (16조-21조)
3.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육 시설에 관한 지원 (22조-25조)
4. 문제 아동들을 위한 사회·교육 관련 및 보충 지원 (27조-35조, 36조, 37조, 39조, 40조)
5. 정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충 지원 (35a조, 37조, 39조, 40조)
6.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및 갱생지도 (41조)

(3) 기타 청소년 서비스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보호시설의 지원 (42조)
2. 양육 및 후견의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송 (43조)
3. 양육권의 인정, 무효화 및 철회 (44조)
4. 보육시설 운영권의 인정, 무효화 및 철회. 그리고 사후 수반되는 보육시설 관련 조건 및 기능들의 부과 (45조, 47조, 48a조)

5. 고용의 금지 (48조, 48a조)
6. 후견심사 법원 및 가정법원 재판 절차에의 참여 (50조)
7. 입양 절차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 (51조)
8. 소년법원법(The Juvenile Court Act)에 의한 소송 참여 (52조)
9. 법적 후견인을 위한 상담 및 지원 (53조)
10. 단체 후견에 대한 허가권의 인정, 무효화 및 철회
11. 청소년 청(The Youth Office)에 의한 후견 및 보호 업무, 청소년 청의 지원 및 보호감찰에 관한 조항 (55조, 56조, 57조, 58조)
12. 기록 및 증명서 (59조)
13. 시행명령서의 집행 (60조)

제 3 조

민간 청소년 서비스와 공적 청소년 서비스

- (1) 청소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념과 철학을 추구하는 다양한 단체와 기구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 방법, 절차에 따라 제공된다.
- (2)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항은 민간 단체와 법률이 정한 공적 기관들의 의무이다. 법률이 정한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관들은 이 지원법이 규정한 바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 (3) 他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공적 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청소년 서비스 기관은 이 법에서 언급된 것에 한하여 他 기능들에 관한 조항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 4 조

민간 청소년 서비스와 공적 청소년 서비스의 협력

- (1)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공적 청소년 서비스와 자율적 청소년 서비스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조직의 구조를 계획하고,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있어 민간 단체의 독자성은 존중된다.
- (2) 민간 청소년 서비스 기관들이 적절한 시점에 합법적인 시설물, 서비스 및 기능들을 수행하고 개발하는 한, 공적 기관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 (3)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관은 청소년 지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청소년 단체를 지원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자력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선택권

조항에 규정된 사람은 서로 다른 단체나 기관들의 서비스 혹은 시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들이 바라는 지원의 방식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것이 불합리할 정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이나 희망사항은 수용되어야 한다. 법률이 규정한 수혜자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제 6 조

적용 범위

- (1) 이 지원법의 조항들은 청소년, 부모, 및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후견권이 부여된 자를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문장 1은 他 기능들의 이행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 (2)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외국인 법에 근거한 관용의 정신에 따라 독일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은 이 지원법의 조항들에 구속되지 않는다.
- (3)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경우 거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이 지원법의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 (4) 초국가적 혹은 사내 법의 규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용어의 정의

- (1) 이 청소년 지원법을 위하여
1. 2항 3항 4항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것이 없다면, '아동(Child)'은 1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2. '청소년(young person)'은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3. ‘청년(young adult)’은 17세 이상 27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4. ‘少年³⁴⁾(young people)’는 27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5.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는 민법 조항에 근거 단독 혹은 타인과 함께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6. ‘부모의 권리를 가진 자’는 양육과 후견인의 권리를 가진 자, 혹은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의에 의하여,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항시적인 양육 및 후견의 기능이 부여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2) 제1조 2항의 규정에서 ‘아동(child)’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3) 이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사생아’는 18세 이하의 비합법적 출생자(법적 혼인관계의 의하지 않고 출생한 사람)로 정의한다.

(4) 이 지원법에서 입양에 관한 조항은 18세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된다.

제 8 조

아동과 청소년의 관련

(1) 개인적 성숙과 성장에 발맞추어,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에 관한 법적 청소년 서비스의 모든 결정에 관련을 맺는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행정적인 절차와 후견심사 법원 및 행정 법원(Guardianship &

34) 번역 상 적절한 용어를 찾기 힘들어, “Young People”을 小人이 아니라 “少年”으로 번역한다

Administrative Courts)으로의 소송에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2) 아동과 청소년들은 모든 종류의 교육과 성장의 문제에 있어 ‘청소년 청’에 상담할 권리를 갖는다.

(3) 아동과 청소년들은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이것은 위급하고 갈등적 상황으로 인해 상담이 불가피한 경우와,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의 인지로 그 상담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교육과 양육의 일반 원칙, 소년과 소녀의 동등한 권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 혜택이 준비될 것이며, 기능이 이행될 것이다.

1. 종교 교육의 결정에 있어, 아동 혹은 청소년과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갖는 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갖는 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교육의 일반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2. ‘少年(young people)’과 그 가정의 특별한 사회·문화적 필요 및 개별성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책임 활동’을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점증하는 소질과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
3. 소년과 소녀의 삶에 있어서, 각기 다른 상황을 존중하고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며 소년과 소녀의 동등한 권리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제 10 조

기타 혜택과 의무의 관계

(1) 기타 사회 보장 혜택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 혹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개인들과 같은 他 부문의 책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도 이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他 사회부문들은 지원법 하에서 동등한 보장 혜택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

(2) 이 지원법에서 보장하는 혜택은 ‘연방 사회 지원법(The Federal Social Assistance Act)’에 규정된 혜택에 우선한다. 만일 ‘少人’이 주요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 영향 및 위협을 받게 되어 ‘연방 사회 보조법’에 규정된 사회에 통합 복귀를 위한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원조는 우선되어야 한다. ‘주법(州法, Land law)’은, 장애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혜택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他 기구들에 의해 초기의 보호책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제 2 장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지원

제 1 절

청소년 사업, 사회·교육적 지원,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적 조치

제 11 조

청소년 사업

(1) 지원은 少年들이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관심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少年의 능동적 참가와 함께 조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들은 자결권, 공동의 사회적 책임감 및 사회적 공헌을 고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2)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조직, 단체 및 他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들에 의한 발안에 의해 제공된다. 이는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청소년 사업,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3) 청소년 사업의 주안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少年을 위한 제도 교육 이외의 일반, 정치, 사회, 보건, 문화,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교육
2. 스포츠, 게임, 사회생활 부분에서의 청소년 사업
3. 직장, 학교,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 사업
4. 국제적 청소년 사업
5.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휴일 프로그램
6. 청소년 지도

(4)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제한기준 내에서 2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제 12 조

청소년 기관을 위한 지원

(1) 청소년 기관, 청소년 단체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에서 행하는 활동은 법적 집행력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74조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

(2)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사업은 공동책임에 근거하여 少人들 스스로 계획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은 비회원 少人들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 한 영속적 속성을 가진다. 청소년 기관과 그들 연합은 少人の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고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 · 교육 지원

(1) 사회적 불이익을 보충하고 개인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少人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의 틀 내에서 그들의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직장 취업,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그 같은 少人の 교육과 훈련이 他 단체와 기구의 조치방안과 프로그램에 의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들의 능력 및 개인 개발을 위한 적절한 훈련 및 고용계획으로 적절한 사회 ·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활동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취업활동을 위

해, 少年들에게 상응하는 사회·교육적 지원과 함께 특별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少年들은 적절한 생계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40조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그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들은 학교 행정 기구, 연방 노동 협회(The Federal Institute of Labor), 산업 및 실직자 훈련 프로그램 및 고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들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제 14 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방안

(1) 부모의 위치에 있는 少年과 청소년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방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그러한 방안들은

1. 少年들로 하여금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별과 판단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이웃과 그들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부모 혹은 부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 15 조

주법(Land Law) 단서조항

이 15조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 혜택과 기능들의 범위와 내용은 주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 2 절

가정 교육과 양육의 증진

제 16 조

가정 교육과 양육의 일반적 증진

(1) 부모와 부모의 권리를 가진 자들과 少人에게 가정 교육과 양육의 일반적 증진에 관한 조항을 개방해야 한다 그 관련 조항은 부모와 부모의 권리를 가진 자가 교육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정 교육과 양육의 증진에 관한 조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과 교육의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가정들의 경험과 더불어, 필요와 이해에 부합하는 가정의 프로그램. 이는 가정에 교육적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하고, 이웃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조적인 결정권을 가능하게 하며, 少인이 결혼, 동반자적 관계 및 아동과의 삶을 준비하도록 한다.
2. 少인의 교육과 개발의 제반 문제에 관한 상담
3. 필요한 경우 아동의 교육적 보호를 포함하여, 특히 고통받고 있거나 위기에 직면한 가정을 위한 여가 시간과 오락 프로그램

(3) 그 같은 기능들의 범위와 내용은 주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 17 조

별거나 이혼의 경우 관계 상담 및 조언

(1)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틀 내에서, 부모 권리를 갖고 있거나, 아동 혹은 청소년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경우 관계 상담 (relationship counseling)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상담은 다음 사항을 지원할 것이다.

1. 가정들이 협력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2. 가정 내의 충돌과 위기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3. 별거와 이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부모가 책임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2) 별거와 이혼의 경우 부모는 별거와 이혼에 뒤따르는 후견인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결정을 위한 적절한 근거로서 부모 쌍방간의 보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개진하는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양육 및 후견에 관한 지원 및 상담

(1) 아동 혹은 청소년을 돌 볼 권리가 있거나, 혹은 실제로 돌보고 있는 부모는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신하여 생계비 요구 및 생계비 보상 요구를 포함하여 양육과 후견을 행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1세까지, 少年은 생계비 요구 및 생계비 보상 요구에 있어 지원 및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사생아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 예정된다면, 그 엄마는 출산하기 전에 적절한 조사와 수단에 따라 부권을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한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후견인이 부권을 이미 위임받은 경우, 혹은 후견심사 법원(Guardianship Courts)이 태어날 아이에 대한 후견인이 없다고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생아의 어머니는 민법 1615조 1항에 따른 생계비 및 1615조 k항에 따른 출산 비용의 청구 의뢰를 위해 지원과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부모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는 아동에 대한 접근권에 관해서 지원과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법 혹은 우호적인 접근 규정을 수행하고 방문 접촉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9 조

편부, 편모 및 아동을 위한 공동 시설

(1)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단독 보호 권리를 갖는 편모 혹은 편부는, 아동의 인성 개발을 위해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서 그러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와 적절한 시설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보호는 편모 혹은 편부가 단독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경우 아이의 형제 혹은 자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비모 또한 출산 전이라도 이런 종류의 거주지 수용시설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이 기간동안, 편모 혹은 편부가 학교 교육의 계속적 진행, 직업 훈련, 및 구직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이 조항은, 40조에 따른 의료비 혜택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생계비를 포함한다.

제 20 조

위급 상황에서의 아동의 양육 및 부양

(1) 아이를 돌 볼 우선 권리를 가진 부모 중 한 사람이 건강상 및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아래의 경우 해당), 다른 한 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 및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다른 한 부모가 직업이 없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아이의 복지를 위해 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아이가 현재의 보육시설 및 보육환경 하에서 적절한 양육이 불가능할 경우.

(2) 건강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편부모 혹은 양친 모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상의 1조 3항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아이의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양육 및 생계비가 그러한 가정에 지원되어야 한다.

제 21 조

의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용시설 확보에 대한 지원

전문적 활동 및 고용의 이유로 인해 아동 혹은 청소년을 돌 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아이의 의무 학교 교육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원 및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생계비 및 의료비용을 포함한 관리 보호 수용시설을 제공하는 비용이 부모의 수입 및 노력에 의해 충당될 수 없다면, 그 비용은 공공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비용의 지원은 의무교육 연한을 넘어서까지 가능하다. 단, 이는 현재의 공교육이 최대한 21세까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제 3 절

보육시설기관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육시설

제 22 조

보육시설기관의 아동에 대한 지원 원칙

- (1) 아동이 하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내는 유치원, 보육센터, 혹은 他 시설들은 아이를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2) 그러한 기능은 아동의 보호와 아동을 위한 종합 사회 교육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아동들과 그 가정들의 요구에 교육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 (3) 보육 기관의 자격 종사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위해 부모의 권리를 갖는 자와 협력해야 한다. 부모의 권리를 갖는 자는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3 조

보육시설

(1) 아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출생한 지 일년 내의 경우에, 하루 중 일정 시간 혹은 하루 종일, 보육사(보호)의 집이나, 혹은 부모의 권리를 가지는 자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보호자와 아이에 대한 양육 및 후견 권리를 가진 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보육의 모든 문제에 있어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적절한 보호를 구하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의 지원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양육비를 포함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양육비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지출은 청소년 청에 보육이 적절하고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며, 보육사의 활동이 적절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상된다.

(4) 보호 연합은 상담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공공 지원과 시설의 조직

(1) 3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모든 아동들은 유치원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개인적 복지가 필요한 탁아소를 위한 장소 그리고 보육장소가 3세 이하의 아동들과 취학 연령의 아동들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적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3세부터 취학하기 전의 각각의 아동들에게 유치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 3세 이하, 취학하기 전의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은 실제적 필요에 따라서 증설되어야 한다.
3. 보육시설 조항은 실질적 필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25 조

아동의 자립심 촉진을 위한 지원

아이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 혹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26 조

주법(Land law) 단서조항

이 제3절에서 제공되는 기능들과 혜택들의 내용과 범위는 주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유치원에 교육의 분야를 일임한 1990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된 주법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4 절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정서적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少年을 위한 지원

부속 1 절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제 27 조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 교육 지원

(1) 아동 혹은 청소년의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보호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는 그가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및 양육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와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하여 그러한 도움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제아를

위한 사회·교육 지원)

(2)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은, 특히 제 28조에서 35조에 따라 제공된다. 그러한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개별 사례의 교육적 요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아동 혹은 청소년의 실제적 사회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은 특히 사회·교육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치료 지원으로 구성된다. 필요하다면 사회·교육 지원은 제 13조 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직업 및 고용 훈련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 28 조

아동 지도

아동 지도를 제공하는 아동지도 병원, 他 서비스 단체 및 시설들은 아동, 청소년, 부모,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가지는 자들이 개인적 문제나 가족과 관련된 문제, 그들의 내재적 문제요소를 밝혀내고 대처하며, 또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별거와 이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각 다른 방법과 접근법에 해박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 29 조

사회 단체 사업

사회 단체 사업의 참여는 성장한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의 어려움 및 행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 단체 사업은 그 단체 내에서 사회적 습득을 통해 성장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촉진시키는 단체 사업 이론과 기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30 조

사회 · 교육 문제에 관한 조언자, 사례별 지원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사회 · 교육 문제에 관한 조언자 그리고 사례별 조력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가족과 함께 자연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1 조

가정의 사회 · 교육 지원

가정의 사회 · 교육 지원은 집중적인 관심과 부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고,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며 국가기관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정 스스로의 자기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사회 · 교육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의 참여 하에 이

루어져야 한다.

제 32 조

주간 단체 교육

주간 단체의 사회·교육 지원은 아동 혹은 청소년이 자기의 가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의 업무 및 과외 활동의 촉진을 수반,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습득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상근 보육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장 및 나이, 이들의 개인적 유대, 가정 내의 교육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에 따라, 상근 보육과 관련된 사회·교육 지원은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또 다른 가정에서의 영구적 거주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성장시기에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하여, 적절한 형태의 가정 보호가 개발, 발전되어야 한다.

제 34 조

주거교육,

사회 복지사의 지원을 수반하는 다른 형태의 시설

주야 시설(주거 교육) 혹은 사회 복지사 지원을 받는 또 다른 시설에서의 사회·교육 지원은 일상생활과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결합시킴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 같은 지원은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장 및 나이, 이들의 개인적 유대, 가정 내의 교육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에 따라,

1. 아동 혹은 청소년이 그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2. 아동 혹은 청소년이 또 다른 가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3. 장기간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은 일반적 삶의 영위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및 고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지원 및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개인의 집중적인 사회·교육 관리

사회에 통합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집중적인 사회·교육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개인적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속 2 절

정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 통합 지원

제 35-a 조

정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 통합 지원

(1) 정서적 장애로 고통 받고 있거나, 그 같은 장애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 통합 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이 지원은 개별적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비거주 형태의 필요
2. 부분적 거주 시설물 혹은 아동을 위한 보육 교육 시설의 필요
3. 자격을 갖춘 보육사의 필요
4. 주야 보육시설 및 他 수용 시설의 필요

해당 사례에 취해지는 조치의 종류와 더불어, 지원을 위한 목표와 대상, 대상 집단의 구체적 요건은, 정서 장애인 혹은 그러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개별 조항이 적용되는 정도로, 제39조 부속3절과 연방사회지원법의 40조 그리고 연방사회지원법 47조에 규정된 법적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2)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면, 사회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교육적 요구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 기관과 서비스 그리고 개인의 지원을 받을 의무가 있다 학교 취학 연령 이전의 아동들이 아동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아동용 치료프로그램을 따르게 될 때,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이를 허용할 때, 장애아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가하는 시설들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속 3 절

부속 1, 2절을 위한 공동 조항

제 36 조

참가, 지원 계획

(1)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아동 혹은 청소년이 사회·교육 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이들 규정의 형태와 범위에 대한 어떤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부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동 혹은 청소년은 조언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 혹은 그 동안에, 가족 입양 외부의 사회·교육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가정 외부의 사회·교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문장 1에서 언급된 자는 시설단체, 가정 혹은 개인을 선택하는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한 정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의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2) 사회·교육 지원이 특정 기간동안 연장되어야 할 필요 및 이유가 있을 경우, 개별 사례에 나타나는 그러한 종류의 지원에 대한 결정은 몇몇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협력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동 혹은 청소년과 함께 세부적인 조항을 구성하는 근거로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교육적 필요사항, 승인될 지원의 형태, 필요한 지원혜택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들 전문가는 지속적인 적합성과 필요를 위해

선택된 형태의 지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기타 개인이나 서비스단체 혹은 기관시설들이 그 지원 조항에 관련된다면, 그 같은 개인이나 서비스단체 혹은 기관시설 및 그 직원들은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3) 35a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애 아동을 치료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일과 실질적 지원의 제공에 관련해야 한다. 직업 재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방 노동 협회의 적절한 서비스에 참가해야 한다.

제 37 조

가정 외부의 지원 제공자들의 협력

(1) 제32, 33, 34조, 35a조 1항 문장 2 3, 4변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부모와 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도와 지원에 의한 가정 내의 교육 환경은,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기간 안에 가정이 아동 혹은 청소년의 교육 및 양육의 책임을 다시 맡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 가정은 가정과 아동 혹은 청소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지도와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 가정 내에서의 교육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계속해서 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정책들이 관련된 당사자들과 더불어 시행되어야 한다.

(2) 보육 담당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을 보호 할 책임을 떠맡기 전, 그리고 보호하는 동안 지도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

년이 사회 교육 지원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나,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제44조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23조 4항도 적절히 적용된다.

(3) 청소년청은 개별 사례의 필요사항에 따라 보육 제공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에 알맞은 교육 및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육 제공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을 청소년청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양육 및 후견의 실행

(1)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견을 달지 않거나, 후견심사법원(Guardianship Court)이 이견을 달지 않는다면, 보호 시설에서의 교육 담당자나 양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33, 34, 35조, 그리고 35a조 1항 문장 2, 3, 4번에 따른 사회·교육 지원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를 대신하여 부모로서의 양육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신하여 일상의 합법적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수익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

3.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변하여 생계비, 보험료, 연금 및 他 사회 보장 혜택을 청구, 관리할 수 있다.

4. 시설보육기관 및 학교 입학과 관련한 법적 행위 혹은 수습제나 고용의 개시에 관련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의 원칙이 우선한다.

5. 긴급 위기상황의 경우에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법적 행위를 수행한다.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2) 만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가 양육을 제공하는 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설립기관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와 그 밖의 다른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은 청소년 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3) 지도기관이 후견심사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적 화해를 위해서는, 위의 1항에서 언급된 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의 합의를 수용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이 후견심사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면, 법원으로부터의 허가는 법적 대리인에게로 주어져야 한다. 이에 민법 제1829조가 적절하게 적용된다

제 39 조

아동 혹은 청소년의 생계비 혜택

(1) 제32-35조, 제35a조 1항 문장 2의 2-4번에 따른 사회·교육 지원이 인정된 경우, 부모가 있는 가정 이외의 공간에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필요한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교육비를 포함한다.

(2) 재발하는 모든 필요 사항들은 정규적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한다. 제32조, 35a조 1항 문장 2의 2번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고, 아동이나 청

소년의 개인적 자유재량권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합리적 양의 현금을 이에 포함한다. 제34, 35, 35a 1항 문장2 4번에 따라 열거된 사례의 경우, 이 비용은 주법에 따라 알맞은 기관에 의하여 명기될 것이다. 그 같은 양은 연령 집단에 따라서 그 등급이 매겨진다. 상근 보육 (제33조)의 틀 안에서 인정되고 적절한 보육사가 보살피는 이들에게 지불되는(35a 조 2항 문장2 3번) 재발 혜택은 4, 5, 6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재발하지 않은 원조금 혹은 수당은 특별히 초기 장비 및 지원, 아동이나 청소년의 휴양 및 휴일 여행, 중요한 개인적 행사를 위해 지급될 수 있다.

(4) 정규적 혜택은 그것이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실비용에 기준하여 제공된다. 그 같은 혜택은 개인의 특별한 환경이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한달 일시불 금액으로 처리된다. 만일 아동 혹은 청소년이 또 다른 청소년 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수용되어 있다면, 그 혜택의 규모는 지역 청소년 청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5) 정규적 생계비를 위한 일시불 금액은 주법에 따라 적법한 기관에 의하여 확정된다.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의 부양비는 연령별 기준 체계의 적용의 받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주법에 의해 규정된다

(6) 아동 혹은 청소년에 관하여 규정된 아동 혜택사항, 아동 수당, 유사한 연금 요소는 연방 아동 혜택 법(Federal Child Benefit Act) 제10조에 따라 정규 부양비에 기준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제 40 조

의료 혜택

제 33-35조, 35a조 혹은 2항 문장2 3번 4번에 근거하여 생계비 혜택을 지급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혜택의 범위는 연방사회보조법의 제36조 37조 2-4항, 제37a, 37b, 38조에 근거한 알맞은 적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 청소년 청은 그 사례가 합리적인 경우라면 대신하여 사실 건강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절

청년을 위한 지원

제 41 조

청년을 위한 지원 및 직업 지도

(1) 청년은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 지원을 받드시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개인 성장 및 삶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우에 21세까지 허용되며 특정 상황 하에서 일정 기간동안 연장 될 수 있다.

(2) 지원의 세부적 내용은 제27조 3항, 28-30조, 33-36조, 39, 40조에 따른 적절한 적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조항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신

하여, 혹은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갖는 자를 대신하여 청년에게 적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3) 이 41조에 근거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청년은 여전히 독립적 자립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지원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청소년 사업 및 복지 서비스의 기타 기능

제 1 절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

제 42 조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보호시설의 제공

(1)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보호시설의 제공은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일시적 수용을 의미한다

1. 적절한 사람과 함께
2. 적절한 수용 시설에서
3. 사회 교육사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보호 수용시설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이 보호시설을 제공받는 동안, 생계비 지급과 의료 혜택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위 혜택의 제공여부를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보호시설의 제공이 계속 되는 한, 청소년 청은 이들에 대한 거주지의 결정권, 교육권 및 감독권을 갖는다. 단 적절한 선에서 부모의 권리 혹은 이들에 대한 보호 및 후견인의 권리를 가지는 자의 예상되는 의견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 청은 이들 아동들이나 혹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일하며, 이들이 처한 현재적 조건 하에서 이들을 지도하며, 이들의 지원 및 도움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찾아내야 한다.

(2) 청소년 청은 아동 혹은 청소년이 위와 같은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들을 위한 보호 및 보호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청소년 청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즉시 부모의 권리를 가진 혹은 양육 및 후견인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부모의 권리를 가진 혹은 양육 및 후견인의 권리를 가진 자가 보호 및 수용시설의 제공에 반대할 경우, 청소년 청은 즉시 다음을 행해야 한다.

1. 부모의 권리를 가진 혹은 양육 및 후견인의 권리를 가진 이에게 아동 혹은 청소년을 인도해야 한다.
2. 혹은,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후견심사법원에 판결을 의뢰한다.

부모의 권리를 가진 혹은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장 3의 2번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청소년 청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 및 보호시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들에게 보호 및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억류 및 유사한 조치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제 3자의 신체 및 목숨과 관련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은

그러한 구류는 늦어도 그것이 개시된 날 안에는 중단되어야 한다. 2조 2-4번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43 조

양육과 후견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송

(1)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아래 어떤 시설 물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며, 이 사실이 민법 1666조의 조건 아래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청소년 청은 절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을 현재의 거주로부터 이송하여, 임시적으로 보호시설 등에 수용하여 사회 보육사의 보살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청은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갖는 자에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양육 및 후견의 권리를 갖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소년 청은 즉시 후견심사법원에 즉결 심판을 의뢰해야 한다.

(2) 42조 1항 문장2-5가 적절히 적용될 것이다.

제 2 절

보육 기관 및 가정 양육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제 44 조

입양 허가

(1) 부모의 가정 내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신의 가정에서 수용하여 일상적으로 돌보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양육 및 시설의 제공에 관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1. 사회·교육 지원이라는 조건 아래 청소년 청의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맡게 된 경우
2. 자신의 일상적 의무로서 보호인이나 후견인의 역할을 해왔던 경우
3. 혈연, 결혼을 통해 3촌 이상의 친척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8주 이하일 경우
5. 취학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일 경우

또한, 다음의 사람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 아동 혹은 청소년을 입양의 방법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자 (민법 1744조)
2. 단지 2명의 다른 아동이 같은 장소에서 낮 동안의 보육을 받고 낮과 밤 동안 수용되어 있을 경우 낮 동안 아이를 돌보는 자

(2) 입양 신청을 한 자의 가정 시설이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를 충분히 보증하지 못할 경우는 허가가 거부된다

(3) 허가가 인정된 경우, 청소년 청은 각 사례별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그러한 허가가 적절한지를 조사, 감시해야 한다.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 환경이 입양된 가정과 그 시설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보육 신청을

한 자가 그러한 위험성 있는 환경을 기꺼이 제거할 수 없다거나,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면, 허가는 무효화된다.

(4)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아동 혹은 청소년을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청에 항상 보고해야 한다.

제 45 조

보호시설 운영 허가

(1) 아동 혹은 청소년이 하루 종일 혹은 하루의 일정 시간을 보육 받게 되는 시설기관의 조직 및 관련 책임자는 그 같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허가는 필요치 않다.

1. 청소년 여가활동 관련 기관, 청소년 교육 센터, 유스호스텔(대학 기숙사 혹은 청년 여행자 숙소) 혹은 학교 캠프용 시설
2. 주법에 따라 학교의 감독 하에 있는 기숙 학교
3. 다음 기관
 - a) 적절한 법적 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사업이나 복지 서비스가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기능을 이행하는 기관
 - b)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수용 및 편의를 위한 것이 주요 업무가 아니면서 호텔이나 음식 숙박업체 등에서 운영되는 지원 기관

(2) 허가는 다음의 부수적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적절한 직원에 의해 아동 혹은 청소년을 보육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거나, 법적 권한을 갖는 담당 기관이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를 보증할 수 없다면 허가는 취소된다 해당 국가 기관은 적절한 조건에 대하여 보육기관의 책임

자 및 업무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가 그 보호기관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기관의 운영 담당자가 위험 가능성의 요소를 제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경우 허가는 취소 또는 무효화된다.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속 조건들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한다. 허가의 취소 혹은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나 반대는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

(3)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다른 법률적 조항에 문제가 되면, 법적 권한을 갖는 담당기관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법적 권한을 갖는 담당기관은 다른 법률 사항에 존재하는 더 많은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보호기관의 담당 책임자에게 적절한 시간에 조언해야 한다.

제 46 조

현지 조사

(1) 해당 국가 기관은 개별 사례의 요건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 청과 민간부문의 주요 기관은 그 기관과 서비스단체가 그 주요 기관의 관할 하에 있을 경우 실사 및 감시에 참여해야 한다.

(2)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기관에 대한 실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주간에 신청 시설기관의 내부 시설 및 방들에 접근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아동 혹은 청소년들과 접촉하거나 관련 직원들과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내부 시설 및 방들에 대하여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할 경우 위의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 반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문장 1에서 언급된 낮 시간 이외에, 점유자의 권리와 상관없이 권한을 위임받은 이는 위 구역과 방들에 접근할 수 있다. 시설 기관의 책임 운영 담당자들은 위 문장 1과 2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들에 대하여 묵인한다.

제 47 조

의무 보고

(1) 허가가 요구되는 시설에 책임을 지는 기관과 서비스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즉각 해당 국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1. 보육시설 운영의 개시, 조직 및 서비스의 명칭 및 주소, 기관의 형태 및 위치, 이용 가능한 장소, 매니저 및 보육자의 이름 및 전문 자격증
2. 향후의 보육시설의 폐쇄

법적 권한을 갖는 담당 기관은 위 1번에 따라 정보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보고를 받아야 한다. 관련 거주 장소의 수는 매년 한 번씩 보고되어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전일 보육 제공의 허가를 받은 보육 시설의 책임 기관 및 서비스단체는 아동을 수용할 때마다 해당 국가 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개인 신상
 2. 이전 거처에 대한 정보
 3. 아동을 위탁한 이의 성명
 4. 아동의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양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
- 위 4번에 관한 정보는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며 매년 한 번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국가 기관은 2항에 따라 보고의무를 보육시설 기관들로부터 면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아동에 대한 반복적 보고도 면제할 수 있다.

제 48 조

고용 금지

해당 국가 기관은 허가가 필요한 시설기관이나 서비스 단체에게 본 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해당 관리인, 피고용인 및 他 직원들의 직무 혹은 직능의 일부 및 전부에 관한 고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48a 조

사회 복지사의 지원을 받는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

(1) 제45-48조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다른 형태의 보호 및 보호시설을 받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적용된다.

(2) 조직적으로 보육시설기관과 연계된 다른 형태의 보육시설은 보육기관의 일부로 여겨진다.

제 49 조

주법(Land aw) 단서조항

49조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의무에 대한 상세사항은 주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 3 절

법정 소송 참여

제 50 조

후견심사 법원 및 가정 법원 소송 참여

(1) 청소년 청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 후견심사 법원과 가정 법원을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청은 비경쟁 소송법(Non-contentious Proceedings Act)의 제49조와 제49a조에 따라 가정 법원의 법정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2) 청소년 청은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사회 보장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의미를 법정 소송에서 소개하고, 지원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청소년 청이 아동 혹은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청소년 청은 관련 문제를 법원

에 의뢰해야 한다. 제2항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제 51 조

입양 소송에 관한 상담 및 교육

(1) 민법 1748조 2항 문장 1에 따라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청소년청은 부모에게 그러한 동의 반복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청소년청은 동의 반복의 가능성을 알린 후 3개월이 될 때까지 가정 법원이 동의의 반복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부모가 새로운 주소지를 알리지 않고 떠났을 경우, 혹은 새 거주지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청소년청이 새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이 주지사항을 알릴 필요가 없다. 이 같은 경우 위에서 언급된 기간은 청소년청이 위의 사실을 부모에게 주지시키려 했던 시점 혹은 부모의 새 거주지를 찾아 나선 시점과 함께 개시한다. 그 기간은 아이의 출생 후 5개월 이전에 만료되지 아니한다.

(2) 위 1항에 근거하여 부모에 주지시키는 바와 더불어 청소년청은 부모에게 아이가 그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허용되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한다. 아이가 특정 기간을 넘어 입양된 가족과 그들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거나, 현 양육자로부터 부모에게 돌아갔을 때 아이의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담은 요구되지 않는다. 청소년청은 소송에서 후견심사 법원에 혜택이 제공될 것을 권고하거나 혹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권고해야 한다.

(3) 청소년청은 민법 제1747조 2항 문장 2, 3에 따라 사생아의 아버지에게 그의 권리에 대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담은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의 법적 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입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은 청소년청이 법원의 의견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52 조

청소년 재판법(The Juvenile Court Act)에 따른 소송 참여

(1) 청소년 재판법의 제38조, 제50조 3항 문장 2에 따라 청소년청은 청소년 재판 절차에 참여한다.

(2) 청소년청은 재판의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지원이 청소년이나 청년을 위해 고려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청소년 복지 및 지원과 관계된 사건이거나, 청소년 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이라면, 청소년청은 즉각적으로 검사와 재판관에게 관련 청소년 규정이 기소의 중지(청소년 재판법 제45조)를 정당화 할 수 있는지, 혹은 진행되는 재판을 기각(청소년 재판법 제47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3) 청소년 재판법의 38조 2항 문장 2에 따라 청소년청의 대표 혹은 민간 청소년 관련 조직의 대표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전 소송과정동안 지원해야 한다

제 4 절

아동과 청소년의 후견

제 53 조

후견인을 위한 상담 및 지원

- (1) 청소년 청은 개별 사건에서 후견인의 직위에 적당한 단체나 개인을 후견심사 법원에 제안한다.
- (2)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정기적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3) 청소년 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교육 및 보육의 차원에서 잘 돌보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청소년 청은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과의 동의에 따른 자문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발생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소년 청은 이를 후견심사 법원에 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 청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개인적 복지 및 성장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청소년 청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후견심사 법원에 알려야 한다.
- (4) 위 1항과 3항은 민법 1690에 의거한 지원 및 도움의 제공에 적용되며, 1항과 2항은 민법 1685에 의거한 지원 및 도움의 제공과 관련하여 적절히 적용되고, 관리 후견업무에도 적용된다. 후견인이 단체일 경우는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54 조

단체 후견 수락의 허가

(1) 집단 혹은 단체가 후견인의 의무를 맡거나, 주(Land) 청소년 청이 허가한 관련 지원 및 도움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2) 단체가 다음의 경우를 보장할 경우 허가가 인정된다.

1.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 관리, 교육하며, 그들이 업무의 수행 중 제 3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켰을 경우
2. 개별 후견인들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등록시키고,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 및 훈련을 진행할 경우
3. 고용된 직원들 간의 경험의 교환이 장려될 경우

(3) 단체가 일정 주소를 갖는 연방 영토에 대하여 허가는 유효하며, 주 청소년 청의 관할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제한될 것이다.

(4) 세부 사항은 주법에 명기될 것이다. 주법은 허가 승인을 위해 부합하는 요건들을 명기한다.

제 55 조

청소년 청의 후견 의무

(1) 청소년 청은 민법에 정해진 사례에 따라 법의 정신에 의거 후견인

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 관할기관에 의한 후견 의무)

(2) 청소년 청은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현직 개별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에게로 이관한다. 이러한 업무 이관은 정규적 행정의 문제이다. 업무가 이관된 이상,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률적 대리인이 된다.

제 56 조

청소년 청의 후견 이행

(1) 청소년 청의 후견 의무 이행은 이 법에서 달리 언급된 것이 없다면 민법조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 청은 민법 제1802조 3항과 1818조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의 1803조 2항 1811조, 1812조 6번 7번의 경우에 후견심사 법원으로부터의 어떤 허가도 요구되지 않는다. 주법은 재정문제에 관련한 후견심사 법원의 감사와 수습 및 고용의 계약 결정에 관련된 소수자의 후견에 관한 민법(제1773-1895조)의 다른 조항들로부터 청소년 청의 후견인 임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피후견자를 위해 맡겨진 돈은 후견심사 법원의 허가와 함께 청소년 청의 집단계좌로 관리 혹은 투자할 수 있다 청소년 청에 의한 집단 계좌 관리가 피후견인의 이자를 증대시켜 주거나, 안전한 관리 및 구별, 이자를 비롯한 돈의 회계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법은 후견심사 법원의 허가가 필수사항이 아님을 명기할 수 있다 민법 1807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맡겨진 자금은 청소년 청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한한다.

(4) 청소년 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후견인과 개인 및 단체 후견인의 임명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결과를 가정법원에 조언해야 한다.

제 57 조

기록원의 보고 의무

기록원은 비경쟁 절차법 48조에 따라 사생아로 판단되는 이의 출생 통고서를 청소년 청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출생신고 명부에 모(母)의 이름이 있을 경우, 모(母의) 종파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청소년 청은 관련 사항을 후견심사 법원에 지체 없이 전송해야 하며, 후견심사 법원에 후견의 개시를 조언해야 한다.

제 58 조

청소년 청의 감독 후견 업무와 지원

청소년 청의 후견인 임명과 관련한 관리 후견 의무와 이와 관련한 지원 조항은 55조와 56조에 의해 관리되며, 위 조항들은 적절하게 적용된다.

제 5 절

기록 및 증명, 집행명령서

제 59 조

기록 및 증명

(1) 법적 문서를 기록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혹은 관련자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신고가 공식적으로 증명된 양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부(父)의 승인 신고, 아동 혹은 청소년 혹은 모(母)의 동의 신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신고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다.(부권 승인 신고)
2. 모권의 승인 신고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모의 법률적 대리인의 동의를 기록한다.(시민 신분법 제29b조)
3. 기록할 당시 시점에 생계비 수혜자가 21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생계비를 위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생계비 대신 보상을 지급할 채무증서를 기록한다.
4. 생계비 및 출산 비용의 지불에 대한 모의 청구를 만족시키는 채무증서를 기록한다. (민법 제1615k, 1615l조)
5. 사생아에 대한 성(姓)을 만들고 이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민법 서론 제10조 6항, 민법 1617조 2항, 1618조)
6. 입양에 대한 아동의 동의의 취소를 기록한다. (민법 제1746조 2항)
7. 아동의 부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 (민법 제1747조 2항 문장3)

공식적 기록 및 증명을 위한 他 공증인, 공증기관, 확증자의 적법성은 변하지 않는다.

(2)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 당사자의 한쪽을 대변하는 경우라면 기록 및 확증을 할 수가 없다

(3) 청소년 청은 위 1항에 따라 적절한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방기관(Länder)은 이 같은 공무원들의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제 60 조

집행명령서

(1) 위 59조 1항 3, 4번에 의거한 채무에 관한 증명서와 공무원 혹은 청소년 청의 직원이 자신의 직권아래 규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된 증명서는, 그것이 돈의 지불에 관한 내용이고, 채무자가 즉각적 지불 이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별 공무원이나 직원이 채무자에게 증명서의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은 효력을 갖는다. 민사절차법의 212b조 문장 2가 적절하게 적용될 것이다. 집행 절차는 민사절차법의 794조 1항 5번에 따라 사법적 증명으로부터 집행에 적용할 때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같은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1. 법적 효력을 갖는 사본은 의무의 기록을 담당한 공무원이나 청소년 청의 직원에 의해 발급된다
2. 추가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사본의 발행에 대한 요구나 집행 조항의 허용성에 대한 반대는 그 청소년 청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공무원이나 청소년 청의 직원이 그들의 직권에 따라 작성된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하여, 민사절차법의 제642c조 2번, 642d조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준 생계비, 기준 생계비의 증감)

제 4 장

신상 자료 보호

제 61 조

적용 범위

제 62 조

자료 수집

제 63 조

자료 보관

제 64 조

자료 이용 및 개방권

제 65 조

개인 · 사회교육 기밀자료의 특별 보호

제 66 조

자료 처분 및 보호

제 67 조

관련 당사자 정보

제 68 조

청소년 청 관리직 신상자료

제 5 장

청소년 서비스, 협력, 책임의 법률 및
자율 사항

제 1 절

청소년 서비스의 법률사항

제 69 조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청, 주(州) 청소년 청의 법률사항

(1) 법률로 규정된 청소년 서비스는 지역, 지방 기구에 따라 제공된다. 69조에 규정된 지역기구는 카운티(county) 이하 단위로 정하고, 지방 기구는 주법(州法)에 따르기로 한다.

(2) 주법은 신청에 따라 지역에 소속된 공동체를 지역기구로 명할 수 있다. 단, 이 공동체들은 청소년 지원법이 규정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주법은 카운티가 청소년 지원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카운티의 다른 공동체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카운티의 전 지역이 지역기구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카운티는 69조에서 정의하는 지역기구가 될 수 없다.

(3) 모든 지역 기구들은 청소년 지원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청을 세워야 하며, 모든 지방 기구들은 주 청소년 청을 설립해야 한다.

(4) 몇몇의 지역 및 지방 기구들이, 심지어 다른 지방에 속하게 되더라도 특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 법령 및 서비스를 제정할 수 있다

(5) 69조에서 정의된 지역기구가 아닌 지역에 소속된 공동체나 공동체 연합은 지역 수준에서 청소년 사업과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맡을 수 있다 그 같은 기능의 계획과 달성의 주요 문제는 지역 기구와 협의해

야 한다. 단, 지역 기구의 전반적 책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서비스의 민관 기관과의 협력은 4조, 74조, 76조, 77조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그 조항들의 규정은 적절하게 적용된다. 주법에 상세 내용이 명기될 수 있다.

제 70 조

청소년 청과 주 청소년 청의 조직

- (1) 청소년 청의 의무사항은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와 청소년 청 행정관이 이행한다.
- (2) 법률로 규정된 청소년 서비스의 분야의 정규적 행정 업무는 해당 지역기구의 행정기관장이나 청소년 청의 청장 명령에 따라 부칙이나 대표기구 결의안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 (3) 주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와 주 청소년 청의 행정관은 주 청소년 청의 의무를 주 청소년 청의 부칙 및 이용 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주 청소년 청의 청장은 정규적 행정 업무를 주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의 부칙과 결의안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 71 조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 주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

- (1)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의 투표권자중 -

1 3/5은 법률로 규정한 청소년 기구의 선거위원회 투표권자나, 위원회

에서 선출된 청소년 사업 및 서비스 남/녀 유경험자로 구성한다.

2. 2/5는 법률로 규정한 청소년 기구 관할 내에 있는 공인된 자율적 청소년 서비스 조직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한 남/녀로 구성한다: 청소년 조직 및 복지 단체의 제안은 분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는 청소년 사업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뤄야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에 중점을 둔다.

1.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발전의 제안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들 가정의 現문제점도 토론한다.
2.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계획도 세운다.
3. 자율적 분야를 위해 기금 조성 및 공적 지원을 한다.

(3)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제공되고 채택된 자금, 법령 그리고 결의안 범위 내에서 청소년 사업 및 복지와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는 위원회가 청소년 복지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리고 청소년 청의 청장이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청소년 청장후보는 지원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투표권자의 1/5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된다. 위원회의 회기는 공식적인 회기가 공공복지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단체의 법적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공개되어야 한다.

(4) 주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 구성은 주 청소년 청의 관할 하에 운영되는 공인 받은 청소년 서비스 민간조직 제안으로 선출된 최고 주 청소년 기관이 남/녀 투표자 2/5를 임명하고, 나머지 3/5은 주법에 따라 임명된다. 71조 2항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5) 상세 사항은 주법에 의해 규정된다. 주법은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갖추도록 하고있다. 주법은 지역기구의 최고행정관 혹은 청소년 청의 청장이 71조 1항 1번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 72 조

직원, 고등 훈련

(1)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는 청소년 청과 지방 청소년 청에 고용된 정규직원이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적합성을 지닌 경우에만 직원으로 인정한다. 특수한 업무가 요구될 경우, 그 업무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나 적절한 추가 훈련으로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만 주어진다.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전문분야가 다를 경우, 특수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로 협력한다.

(2) 청소년 청 혹은 주 청소년 청의 상급 행정업무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만 주어진다.

(3)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청소년 청과 주 청소년 청의 직원들에게 고등훈련 및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제 2 절

민간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민간 청소년 사업

제 73 조

민간 청소년 사업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자율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에 대한 지침, 조언, 그리고 지원을 받는다.

제 74 조

민간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공적 기금

(1)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관은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간 사업을 장려한다: 담당 기구들은 민간 조직들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적 기금을 지원한다.

1. 계획된 프로그램의 기술적, 전문적 요구사항이 충족됐을 경우
2. 공적 기금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이 보장 될 경우
3. 자선목적을 추구할 경우
4. 비용의 일부를 함께 부담할 경우
- 5 민간 사업이 청소년 지원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보장될 경우

장기간의 기금 지원은 75조에 따라 청소년 서비스 민간조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2) 민간 영역에서 청소년 지원법의 혜택과 서비스 조항을 실행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공적기금 지원은 민간 조직이 청소년 서비스 계획의 참고사항 조건과 9조에서 언급된 원칙에 해당되는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를 준비한 정도

에 따라 이뤄진다. 4조 1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관은 이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적 기금 지원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한다.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공적기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비록 하나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면 공적 기금지원을 적당한 수준에서 동등하게 적용한다. 각각의 민간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몫은 그 기관의 재정능력과 기타 환경에 따라 확정된다.

(4) 여러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결정은 관련당사자들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며, 그들이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5) 여러 개의 조직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안할 경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기금 지원의 기준 및 척도는 동등하게 적용되며, 각각의 조직이 부담해야 할 몫도 고려된다.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공적 기금의 지원에 대한 원칙은 두 영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6) 공인된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들의 공적기금지원에는 정규, 비정규 봉사자들의 교육비와 청소년 사업 분야의 청소년 여가 활동 및 교육 센터 설립비 및 유지비가 포함된다.

제 75 조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의 공인

(1) 법인체와 개인 연합체는 다음 조건을 갖출 경우,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으로 인정된다.

1. 1조에 기반해서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분야를 운영할 경우
2. 자선의 목적을 추구할 경우
3.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능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적 자질 및 직원들을 갖춘 경우
4. 그들의 사업이 청소년 지원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보장될 경우

(2)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운영해온 조직은 1조에 따라서 민간 청소년 조직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3) 자율적 자선조직들의 연방 연합체뿐만 아니라 公法에 따른 교회 혹은 종교 단체들도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으로 인정된다.

제 76조

공인 받은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의 기타 기능수행 참여

(1)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42조, 43조, 50에서 52조, 그리고 53조 2항-4항까지의 조항내용에 따라 그들의 기능을 공인된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으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이양할 수 있다.

(2) 그러한 기능의 이행은 공적 기구들의 책임 하에 있다.

제 77 조

비용 합의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이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적 기구와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은 그러한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 분배에 관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주법이 상세 사항을 규정한다.

제 78 조

연구 그룹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연구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연구그룹에는 공인된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 그리고 공적영역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포함된다. 그러한 연구 그룹은 조직 상호간의 프로그램을 서로 조정, 보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전반적 책임, 청소년 서비스 계획

제 79 조

전반적 책임, 기본 지원

(1)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계획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청소년 지원법에 언급된 기능들의 이행에 전반적 책임을 진다.

(2)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청소년 지원법에서 언급된 기능들의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교육과 양육의 다양한 일반원칙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 사항은 특히 관리자, 후견인 그리고 양육자들에게 적용된다. 법률로 규정된 청소년 서비스에 이용되는 자금의 적당 양은 청소년 사업에 배정된다.

(3)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는 청소년 청과 주 청소년 청이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을 보장한다. 본 조항에, 자질을 갖춘 최소 직원명수 규정도 포함한다.

제 80 조

청소년 서비스 계획

(1)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는 다음과 같은 계획의 책임을 진다.

1. 현행 시설들과 서비스를 평가한다.
2. 청소년과 보호·후견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 필요, 이해사항을 반영하는 중기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3.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시의 적절히 충분히 마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또한 위급 상황에 필요한 지원도 마련한다.

(2) 시설 및 서비스를 위한 계획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1. 가정내의 접촉 유지 강화와 사회환경과의 접촉 유지 및 강화
2.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다양성 그리고 조정의 극대화
3.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
4. 부모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

(3)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공인된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들이 계획업무의 모든 초기단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민간 청소년 조직들은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친다 만약 그들이 상위 지역 수준에서 활동을 한다면, 상위 지역기구의 청소년 서비스 계획 틀 내에서 주 청소년 서비스 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친다. 주법이 상세사항을 규정한다.

(4)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청소년 서비스 계획이 他 지역계획과 상위지역계획과 조정되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모든 계획이 청소년과 그들 가정의 필요와 이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제 81 조

他 기구들과 공공 기관들과의 협력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들은 그들의 직권과 의무 범위 내에서 청소년과 그들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他 기구 및 공공 기관들과 협력한다. 특히 다음의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행정당국

2. 초등, 고등 직업 훈련 기관 및 대행기관
3. 공공 보건서비스 기관 및 대행기관 그리고 他 보건 기관
4. 연방 노동 기관의 대행기관
- 5 他 사회 안전 보장 업무 담당 기구
6. 거래 감독 당국
7. 경찰 및 규제 당국
- 8 범법자 개선 당국
- 9 기술·전문 직업 훈련 기관, 고등 훈련 및 연구 기관

제 6 장

중심 기능

제 82 조

지방기관(Länder) 기능

(1) 각 지방의 최고 청소년 당국은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의 활동 및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성장을 북돋우며 지원한다.

(2) 지방기관은 설비와 프로그램 규정이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청과 주 청소년 청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83 조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방 정부 및 연방 자문위원회의 기능

(1) 청소년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최고 연방 당국은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활동을 복돋우며 지원한다. 단, 그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활동 성향상 州 단독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전문가 위원회(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방 자문 위원회)는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관해 연방정부에 자문한다. 상세사항은 연방정부가 행정 법령 형식으로 규정한다.

제 84 조

청소년 보고서

(1) 매 입법 기간마다 연방 정부는 청소년 상황과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노력과 업적에 대한 보고서를 Deutsche Bundestag과 the Bundesrat에 제출한다. 진전상황 및 분석과 더불어, 그 보고서들은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안을 포함한다. 매 3번째의 보고서에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전반적 상황 검토를 담는다

(2) 연방정부를 대신한 7명의 전문가들은(청소년 보고서 위원회) 각 보

고서를 편집한다. 연방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의 관점과 결론을 첨가한다.

제 7 장

비용의 법적 권한 및 배상

제 1 절

주제별 법적 권한

제 85조

주제별 법적 권한

(1) 청소년 지원법에 따른 他 기능의 이행 및 혜택 규정이 상위 지역당국의 주제별 법적 권한에 놓이지 않는다면 지역기구의 주제별 법적 권한 범위에 속한다.

(2) 상위 지역당국은 다음과 같은 주제별 법적 권한을 갖는다.

1. 청소년 지원법에 따른 기능의 이행을 위해, 지역 기구와 권고 받은 업무에 충고한다.
2. 특히 청년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의 계획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 지역 기구들과 공인된 민간 청소년 서비스 조직들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3. 지역 요구, 격려, 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지역 단위를 넘어설 경우, 상위지역 당국은 특히 청소년 교육 센터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혹은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법적 권한을 갖는다.

4.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모델 프로젝트의 계획, 촉진, 지원, 집행

5. 32조부터 35a조에 따른 사회 교육 지원에 관해 지역 기구에 조언한다. 특히 개별적 문제 사례들에 관해서 기관 선택이나 양육자 알선을 조언한다.

6. 기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기능 수행 (45-48조)

7.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들에 조언

8.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고용된 직원들의 고등 교육훈련

9 국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6조 3항에 따른 제외 독립인을 위한 규정

10. 54조에 따라서 법인연합이 관리 혹은 후견 및 기타 지원을 맡을 경우, 허가를 부여

(3) 지역범위를 고려할 때 2항 3, 4, 7, 8번에 따른 기능들은 지역 기구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4) 중위 수준의 지방당국과 관련된 2항 2번부터 5번 그리고 7번 기능, 혹은 하위 수준의 지방 당국과 관련된 유치원, 보육시설을 위한 기능, 그리고 45조부터 48a조에 따른 기능들의 부여에 관해 청소년 지원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 동시에 발효될 주법의 現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상위 지역 당국이 지방수준이라면, 1993년 6월 30일까지 주법은 지

방 기능의 일부를 公法에 따라 법률적으로 청소년 서비스에 책임이 없는 他 기구들로 양도할 수 있다.

제 2 절

지역 단위 법적 권한

부속 1 절

혜택에 관한 지역단위의 법적 권한

제 86조

아동, 청소년, 그들 부모에게 부여된 혜택에 관한 지역단위의 법적 권한

(1) 청소년 지원법에 따른 혜택 규정은 부모가 거주 주소를 갖고 있는 지역의 지역 기구 법적 권한 영역에 속한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의 혜택은 부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어머니에게 주어진다. 단지 한 부모만이 살아 있다면, 그 부모의 거주 주소를 고려한다.

(2) 부모들이 하나 이상의 거주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법적 권한은 아이를 돌볼 권한이 있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지역 기구에 부여된다. 이것은 또한 아이를 돌볼 권한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장 1에서, 아이 돌보는 것이 두 부모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법적 권한은 혜택이 주어지기 전 아동 혹은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같이 살았던 부모의 거주 주소에 따른다. 문장 2를 보충해 볼 때, 아동 혹은 청소년이 과거 두 부모와 함께 있었다면 법적 권한은 혜택이 주어지기 전에 아동 혹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부모 거주 주소에 따라 결정된다.

문장 2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이 부모 어느 쪽과도 함께 거주한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혜택이 주어지기 전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갖고 있던 거주 주소의 지역 당국이 법적 권한을 갖는다. 아이가 지난 6개월 동안 거주 주소를 갖지 못했다면, 법적 권한은 혜택이 주어지기 전 아동 혹은 청소년의 실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3) 부모가 서로 다른 거주 주소를 갖고 있으며 두 부모 모두가 아이들을 돌 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2항의 문장 1번과 4번 적용을 받는다.

(4) 부모, 혹은 1항부터 3항이 적용되는 부모들이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들의 거주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그들이 사망했다면, 법적 권한은 혜택이 주어지기 전 아동 혹은 청소년이 갖고 있는 거주 주소에 따른다. 아동 혹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6개월간 거주 주소가 없을 경우, 법적 권한은 혜택이 시작되기 전 아동 혹은 청소년이 실제 살았던 지역의 관할 지역 기구에게 주어진다.

(5) 혜택 혹은 법률 규정이 적용된 이후, 부모가 별거를 했다면 법적 권한은 아이를 돌보고 후견인이 될 권리를 가진 부모가 설립한 거주 주소의 관할 지역 기구에 있다: 이것은 또한 아이를 돌보고 후견인이 될 권리의 일부가 철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두 부모가 공동으로 아이를 돌보고 후견인 노릇을 할 경우나 둘 중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례는 이전 법적 권한에 따른다 4항은 적절히 적용된다.

(6) 아동이나 청소년이 양육자와 2년 동안 거주했고, 그 양육자 가정에 영구적으로 머물게 될 경우, 법적 권한은 양육자의 주소가 있는 관할 지역 기구에 있다. 이 경우 1부터 5항까지의 규정은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 관할 지역 기구는 그러한 법적 권한의 변화를 부모에게 상기시키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후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갖고 있다면 아이를 돌보고 후견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변화를 상기시킨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양육인의 집을 떠날 경우, 1항에 기반한 법적 조항은 중단된다.

(7) 망명 신청자에 대한 혜택은 망명신청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지방 기관의 발행 문서에 명기된 지역 관할 기구가 법적 권한을 갖는다. 권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례는 망명자가 입국한 지역의 관할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하에 있다.

제 86a 조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86b 조

다양한 형태의 공동 수용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및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86c 조

법적 권한이 변경될 경우라도 혜택 규정이 지속될 의무

제 86d 조

일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의무

부속 2 절

他 기능들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87 조

少人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법규 조치에 관한 지역기구의 법적 권한

제 87a 조

허가, 통고 의무, 금지에 관한 지역기구의 법적 권한

(1) 양육 허가의 부여, 취소, 무효화 (44조)는 양육자의 거주 주소 지역의 관할 지역 기구가 법적 권한을 갖는다.

(2) 시설기관 운영 혹은 독립적인 다른 형태의 거주시설 허가를 인정 · 취소 · 무효화할 경우(45조 1, 2항 48a조), 시설기관을 현지 조사할 경우 (46조, 48a조), 통고를 수신 받을 경우(47조 1항 2항, 48a조), 통고 의무를 면제받았을 경우(47조 3항, 48a조), 매니저 혹은 직원 고용을 금지할 경우(48조, 48a조)의 법적 권한은 각 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주법

이 정한 지방 기구나 他 기구에 있다.

(3) 시설기관의 현지 조사 참여의(46조, 48a조) 법적 권한은 그 시설기관이나 독립적인 다른 형태의 거주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역 기구에 있다.

제 87b 조

소송 참여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87c 조

청소년 청이 정한 후견제도에 관한 지역기구의 법적 권한

(1) 사생아 출생과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 발생한 후견인의 법적 권한은 사생아 어머니의 거주 주소를 관할하는 청소년 청에 있다. 사법적 결정에 의해 아이가 나중에 사생아라는 것이 결정되면, 법적 권한은 사법적 결정이 최후로 종료된 시점의 사생아 어머니의 거주 주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 어머니의 거주 주소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권한은 그녀의 실 거주지에 의해 결정된다. 민법 1709조 2항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거주 주소를 등록한 거주지의 관할 청소년 청이 법적 권한을 갖는다. 문장 3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아이가 다른 지역 청소년 청의 관할지역으로 거주 주소를 정할 경우, 현재 후견인 역할을 해오던 청소년 청은 아이가 이주한 지역의 청

소년 청에 후견 권리의 양도를 신청한다. 그러한 신청서는 아이의 후견인 역할을 해오던 청소년 청과 양도받는 곳의 청소년 청 혹은 아이나 청소년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서류화 할 수 있다. 후견인의 권리는 수락 선언과 동시에 다른 청소년 청으로 넘어간다. 양도한 청소년 청은 즉시 후견심사법원과 그 양도된 아이의 부모에게 통고한다. 양도 신청 거부는 후견심사법원으로 이관한다.

(3) 후견심사법원 결정에 의해 발생한 후견인에 대한 법적 권한은 아이나 청소년의 거주 주소 지역의 관할 청소년 청에 있다. 아이나 청소년이 거주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법적 권한은 후견심사법원 결정시 그들이 갖고 있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 이전이 요구 될 경우, 문장 2에 명기된 것처럼 아이나 청소년이 자신의 거주 주소를 바꾸자마자, 청소년 청은 후견심사법원에 이전을 신청한다. 문장 1부터 3은 청소년 청의 지원과 청소년 청이 실시하는 감독 후견 업무와 관련해서 적절히 적용된다.

(4) 입양 절차 틀에 따라 발생한 후견인에 대한 법적 권리는 입양자의 거주 주소 지역의 관할 청소년 청에 있다.

제 87d조

후견제도의 他 기능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87e조

기록과 증명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부속 3 절

해외 거주자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88 조

해외 거주자에 관한 지역 기구의 법적 권한

제 3 절

비용 배상

제 89 조

거주 주소가 불확실할 경우 비용 배상

제 89a 조

상설 수용에 관한 법적 권한이 변경될 경우 비용 배상

제 89b 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가 있을 경우 비용
배상**

제 89c 조

영구/임시적 혜택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비용 배상

제 89d 조

청소년 서비스 규정에 따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비용 배상

제 89e 조

양육자와 시설기관 보호

제 89f 조

비용 배상 범위

제 89g 조

주범 유보

제 89 조

중재

제 8 장

보수, 비용 회복, 배상 이전

제 1 절

참가 비용

제 90 조

참가 비용

(1) 다음과 같은 혜택과 규정 사용을 위해 참가비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1. 청소년 사업 (11조)

2. 가정 내 전반적인 교육 및 양육 촉진 (16조)

3. 보육 시설 아동 지원 (22, 24조)

주법은 아동 보육시설 사용의 총 비용을 세우거나, 수입 그룹 혹은 아동 수에 따라 총 비용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

(2) 1항 1번, 2번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 및 회비는 신청에 따라 공적

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 준다

1. a) 아동 혹은 그의 부모

b) 청년이

적정수준의 지불을 요구받을 수 없다면.

2. 아동, 청소년, 청년의 성장을 위해 혜택이나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면 아동 혹은 청소년이 편부모와 함께 산다면 편부모가 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

(3) 1항 3번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가 적정수준의 지불을 요구받지 않는다면 기부금 혹은 회비는 신청에 따라 공적 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준다 2항 문장 2는 적절하게 적용된다.

(4) 관련된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적정량은 연방 사회 지원법의 76-79조, 84조, 85조에 따라 확정되는데, 이 지원법 규정이 주법에 있지 않을 경우 적절하게 적용한다.

제 2 절

비용 회복

제 91조

비용 분담의 일반 규칙

(1) 아동 혹은 청소년,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아래사항의 비용에 기부한다.

1. 사회 교육 지원과 관련된 청소년 시설 (13조 3항)

2. 응급 상황에 있는 아동 생계 및 보육 (20조)
3. 의무 교육 기관에 필요한 시설 확보 지원 (21조)
4. 문제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 a) 주간 그룹 (32조)
 - b) 정규 보육 (33조)
 - c) 주거 교육, 사회교육자의 도움으로 1인 생활이나 공동 거주 (34조)
 - d) 개인 양육에 관한 집중적 사회 교육(35조), 단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5. 정서 장애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 a) 보육 시설 혹은 기타 부분적인 주거시설 (35조 1항 문장 2번의 2)
 - b) 적절한 보육사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혹은 다른 형태의 보육 시설 (35조 1항 문장 2, 3, 4번)
6. 아동 혹은 청소년 보호시설 및 보호지원 (42조)
7. 아동 혹은 청소년의 임시 수용시설 (43조)

(2)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비용을 기부한다.(23, 24조) 아동이 편부모와 산다면, 편부모와 아동 둘 다 비용을 기부한다. 주법은 이러한 기부금제도에 관해서 90조 1항, 3항, 4항에 따라서 보육 시설 아동 지원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을 명기할 수 있다.

(3) 청년은 다음 사항의 비용을 기부한다.

1. 사회 교육 지원이 있는 수용 시설 (13조 3항)
2. 정규 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수용 시설 지원 (21조 문장 3)
3. 1항 4번, 5번의 규정에 부합하는 청년(41조) 지원

(4) 19조에 따른 규정이 만들어 질 때, 기부가 요구된다.

1. 아동들과 부모들로부터 아동을 위한 교육비
2. 한쪽 부모와 그 배우자로부터 나머지 한쪽 부모를 지원하는 비용

3. 어머니와 그 배우자로부터 예비 어머니를 지원하는 비용

(5)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들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비용을 기부한다.

(6) 그러한 비용에는 보육 받는 자들의 적절한 생계와 의료혜택이 포함된다.

(7) 행정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제 92 조

법률로 규정된 청소년 서비스의 자금 제공

제 93 조

책임 범위

제 94 조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특별 규정

제 3 절

배상 이전

제 95 조

배상 이전

제 96조

민법에 따라 생계비 책임자에 대한 배상 이전

제 4 절

추가 규정들

제 97 조

사회 안전 보장 혜택의 확인

사회안전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는 사회 안전 보장 혜택의 확인을 추구할 수 있으며, 법적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다. 규정된 시한이 별 문제 없이 소멸됐다하더라도, 그러한 소멸이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것은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상 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97a조

공개 의무

제 9 장

아동·청소년 서비스 통계

제 98조

조사 목적 및 범위

청소년 지원법의 복지지원 효과와 결과를 평가하고, 이 지원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방 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기적 조사를 수행한다.

- 1 아래사항의 이행 여부
 - a) 문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 지원
 - b) 청년 지원
 - c) 정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사회 통합 지원
- 2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
- 3 입양 아동과 청소년
- 4 청소년 청의 지원이나 후견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
- 5 양육 받을 권리가 부여된 아동과 청소년
6.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조치
- 7 부권 결정

8. 공적 기금을 받는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9.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당국, 기관, 보육 시설 및 고용된 직원
10. 법률로 규정된 청소년 서비스의 지출입

제 99 조

조사 기준

- (1)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교육 지원과 사회통합 지원 그리고 청년의 지원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 29-31조에 따른 사회-교육 지원 수혜자인 아동,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41조에 따른 청년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 a) 기구·기관·지원의 유형, 지원 제안자 내지 그룹 유형, 지원 시작 종료 일자(월, 년), 지원 이유 및 기간
 - b) a에서 언급된 기준에 더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의 성별, 출생일, 국적, 지원 받는 기간동안의 거주 주소의 형태
 - c) a에서 언급된 기준에 더하여, 가족 구성, 부모나 후견인의 국적,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명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 명수, 가족 내 아동과 청소년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와 가장 어린 자의 출생일
 2. 28조, 35a조 혹은 41조에 따라 지도 서비스나 상담 수혜자인 아동, 청소년, 청년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 a) 지도 상담소와 접촉하는 기관과 시설 유형, 지도와 치료 형태 및 주안점, 지도의 시작 종료 일자(월, 년), 지도 및 지도 종료의 이유
 - b) 아동, 청소년, 청년의 성별, 나이 그룹, 국적, 형제 자매 수, 지도 받기 시작한 시점의 거주 유형 그리고 지도 받는 이유

3. 32-35조에 따른 사회-교육 지원 수혜자, 35a조에 따른 정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 및 41조에 따른 청년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 a) 성별, 출생일, 국적, 부모와의 법적 관계
- b) 지원을 받기 전에 부모나 후견인의 결혼 여부, 후견 취소나 부모 사망, 거주 주소·학교 교육 상태·수습 유형
- c) 현행지원과 과거지원 유형, 지원 시작 일자 (월, 년)
- d) 지원기간 동안의 수용시설 형태, 수용시설에 관한 후견심사법원의 판결
- e) a에서 언급된 사항의 변화에 더하여 지원기간 동안의 수용시설 변화가 있을 경우, 수용시설 변화 날짜, 과거수용시설과 현재 수용시설 형태 그리고 지원 유형
- f) a부터 d에서 언급된 기준에 더하여 지원 유형이 종료될 경우, 최근 학교 교육이나 수습 상태, 수용시설 형태의 변화, 지원 종료 시점(월, 년)과 이유, 후속 수용 시설 유형; 정규적 보육기관에 수용 받을 경우, 수용 받는 시간과 기간

(2)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 조사 기준은 42조, 43조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조치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 1. 조치 조직자의 유형, 조치 유형, 조치기간의 수용시설 유형, 조치 제안자나 기관, 조치 시작·종료, 조치 시행 이유, 후속 지원 유형
- 2. 1에 제시된 기준에 더하여, 아동과 청소년 자료는 성별, 연령 그룹, 국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의 거주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3) 입양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 1. 입양 아동과 청소년은 다음사항에 따라 분류된다.
 - a) 성별, 출생연도, 국적, 부모와의 관계, 입양대행 기구의 유형
 - b) 입양아 혈통, 입양 전 보육 유형, 부모나 후견 권리가 있는 부모의

결혼 여부, 입양 전 부모 사망, 입양 동의의 대체

c) 입양자의 국적 및 아이와의 관계

2. 명수

a) 입양대행 기관의 분류에 따른 입양아로 인정된 명수, 무효화된 명수
그리고 입양 보육이 중단된 명수

b) 입양대행 기관의 분류에 따른 입양 지원자 명수, 입양에 등록된 아동과 청소년 명수, 추가적으로 입양보육을 받고 있는 명수

(4) 55조 청소년 청의 후견인 조사와 58조 청소년 청의 지원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한 아동과 청소년 명수에 따라 시행된다.

1. 청소년 청의 법적 후견인과 임명된 후견인

2. 청소년 청의 지원

위 두 사항은 성별, 청소년 청의 활동 유형과 독일 및 해외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5) 44조에 따라 양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양육의 형태 및 성별로 분류하고 아동과 청소년 명수에 기초한다

(6) 보호권리에 관한 조치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명수에 기초한다.

1. a) 50조 3항에 따른 정보가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b) 사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의 여부

위 두 사항은 부모의 보호권리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 취소와 관련된다.

2 보호할 권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청소년 청에 이전된 경우, 성별과 이전문제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7) 부권 결정의 조사는 거부된 부권의 수와 형태에 따른 부권 결정의 수에 기초한다

(8) 11조에 따른 청소년 사업의 프로그램 조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조치들에 기초한다.

1. 청소년의 학과 외 교육 (11조 3항 1번)
2. 아동과 청소년의 오락프로그램 (11조 3항 5번)
3. 국제 청소년 사업 (11조 3항 4번)
4. 이 지원법이 적용되는 영토의 내·외부의 조치 및 상대 국가가 별도로 진행하는 국제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직원들의 고등교육(74조 6항)은 기구 유형, 조치 기간, 참여자 명수와 성별에 따라 분류한다.

(9)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당국과 시설기관에 관한 조사, 그리고 고용된 직원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한다.

1. 시설기관은 시설기관과 기구의 유형, 이용 가능한 장소의 숫자에 따라 분류된다
2. 조직 유형에 따른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기관 당국과 민간기관의 중앙사무실 조사
3.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서 조사가 이뤄진다
 - a) 시설기관, 당국 그리고 중앙 사무실의 유형
 - b) 시설기관을 담당하는 조직 혹은 기구의 유형과 시설 설립이 가능한 장소
 - c) 성, 출생연도
 - d) 이수한 직업훈련의 유형, 직업 상태, 고용 형태, 업무 범위

(10)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의 수입·지출 내역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한다

1. 책임 있는 기구의 유형
2. 수입·지출, 지원 유형에 따른 수입과 개인·그룹지원의 지출
- 3 시설기관 유형에 따라 분류된 시설기관의 수입과 지출

4. 지역기구가 아닌 부속기관 및 기관협회, 그리고 지역기구와 상위 지역기구들이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드는 직원 비용

제 100조

보조 기준

보조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공개할 의무에 따른 해당자의 이름 및 주소
2. 99조 1항, 2항, 3항 1번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지원기관이나 기구의 등록 번호
3. 문의를 이용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제 101 조

주기성 및 보고 기간

(1) 99조 1-6항, 9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수행한다. 99조 7-8항과 10항에 따른 조사는 4년마다 수행한다. 7항에 따른 조사는 1992년에 시작하며, 8항에 따른 조사는 1994년에 시작한다

(2) 조사를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한다.

- 1 99조 1항 1번은 지원이 끝날 시점에 이뤄지고, 지원이 지속될 경우 조사는 12월 31까지 이뤄진다
2. 99조 1항 2번은 지도가 끝났을 때 이뤄진다
3. 99조 1항 3번 문장 a-d는 지원의 형태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4. 99조 1항 3번 문장 e는 지원 받는 동안 수용시설이 변화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5. 99조 1항 3번 문장 f는 지원의 형태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6. 99조 2항은 잠정적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이뤄진다.
7. 99조 3항 1번은 입양에 대한 법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이뤄진다.
8. 99조 3항 2번 문장 a와 99조 6-8항과 10항은 그 이전 해에 실시한다.
9. 99조 3항 2번 문장 b와 99조 4항, 5항, 9항은 12월 31까지 실시한다.

(3) 조사목록을 위해서 99조 1항 3번 문장 a-d에 따라, 조사 기준을 1991년부터 시작해서 매 5년마다 기록한다. 이러한 조사목록은 1991년 1월 1일을 시작 시점으로 하고, 1995년 12월 31일을 종료 시점으로 한다. 이 기간 사이에 99조 1항 3번 문장 a-f에 따라 사용되는 조사 기준으로 조사목록이 갱신된다.

제 102 조

공개할 의무

(1) 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은 의무이다. 100조 3번에 따른 정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기구들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99조 1-10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공공 청소년 서비스에 책임 있는 지역 기구들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8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는 그 기구들이 그들 스스로 조치를 취한다.
2. 99조 3항, 8-10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공공 청소년 서비스에 책임

있는 상위 지역 기구들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8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는 그 기구들이 그들 스스로 조치를 취한다

3. 99조 8-10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최고 주(州) 청소년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 99조 10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문제의 법적 권한이 있는 최고 연방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99조 8-10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69조 5항의 의미 내에서 청소년 사업과 복지 서비스 기능을 이행하는 지역 부속 공동체 및 공동체 연합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6. 99조 1항 1번 2번, 2항, 3항, 8항, 9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청소년 서비스 민간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7. 99조 9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의 중앙 사무소 및 기관, 시설기관장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99조 1, 2, 3, 8, 9항에 따른 청소년 서비스의 공적 기관은 지방기관 통계청에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구의 주소를 필히 제공한다

제 103 조

정보의 이관

개별적 사례 해결이 아니라, 계획의 목적과 법적 기구 이용을 위해서 연방 통계청과 지방기관 통계청은 통계표가 단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더라도 통계결과표 문제에 법적 권한이 있는 최고 연방 기관이나 주 기관에게 통계결과를 양도할 수 있다. 단지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표라도 도시 지역 단위나 지방 행정 단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관될 수 있다

제 10 장

형사상, 행정상의 벌금 조항

제 104 조

행정 벌금 조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행정위반으로 간주한다.

1. 44조 1항 문장 1에 따라 허가 없이 보육 및 수용시설을 제공한 자
2. 48a조 1항과 관련해서 45조 1항 문장 1에 反하는 수용시설 및 다른 형태의 보육 기관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자
3. 47조 1항, 2항에 反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자, 정보를 늦게 제공하는 자
4. 97a조 4항에 反하여, 고용자 자격으로 고의적으로나 소홀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2) 1항 1번, 3번, 4번에 위배되는 행정 위반은 최고 1천 마르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항 2번에 위배되는 행정 위반은 최고 3만 마르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 105 조

형사 조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1. 104조 1항 1번이나 2번에 위배되는 위반을 저지르고, 그 위반이 아동 혹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2. 104조 1항 1번이나 2번에 위배되는 위반을 고의적으로 되풀이하는 자

[영국]

청소년 지도자 양성 고등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NYA의 국가 자격 인정 요건³⁵⁾

지도자 국가 자격 인정 요건

1. 다음 요건들은 Higher Education 기관들이 청소년 및 지역 사회 사업에서 교육과 훈련의 학습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다.
2. 제1절에서는 자격 인정의 특성, 자격 취득 경로, 기본 가치 기준,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상태의 최소 요건 등을 약술한다. 제2절에는, 제출물에 포함시킬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 및 그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온다. 자격 인정과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제3절에서 설명한다.
3. 이 요건은 자격 인정 기준과 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이며 NYA가 제출물을 분석할 때 엄격하게 적용된다. 실무 그룹(working group)이 따라야 할 절차에 적용되는 그 외의 진행 중인 논문들은 본 문서에 서술된 요건과 원칙에서 도출한다
4. 따라서 본 요건들은 제출물을 판단하는 토대를 구성하는 기준 및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을 구성한다.

35) National Youth Agency(2001), Professional Validation을 발췌, 번역한 것임

청소년 사업의 성격 및 목적

5. Youth and Community Work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및 사회에 관하여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계획된 기회와 의도하지 않은 기회를 모두 마련한다. 하지만 설정과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일부 접근 방식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강조한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NYA의 주된 관심사이며 NYA의 자격 인정 요건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청소년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청소년들이 사회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핵심은 독특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과 성인들이 함께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다.
6. 이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는 기회의 균등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약속, 그리고 선택, 자유, 책임, 공의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윤리적 행동 선언문(NYA, 2000)에서 도출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동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개인을 확장시키고 도전하고 자극하는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반성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7. 따라서, 청소년사업을 하는 사람의 과제는 적절한 경험을 계획하여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며, 상담, 후원, 그룹 활동, 지역사회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인 기능을 사용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에는 건강, 주택 문제, 취업 등과 같은 관련 주제와 문제들도 적절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 및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자격 인정과 프로그램 검증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내용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PAULO 2000)의 부문별 정의를 토대로 한 것이다.

기본 원칙과 가치

8. 1999년 가을에 NYA는 청소년 사업의 윤리에 대한 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그 활동의 결과 National Youth Agency의 가치와 원칙을 진술한 내용인 Ethical Conduct in Youth Work (NYA, 2000)가 만들어졌다. NYA의 Executive Board는 폭 넓게 상담하고 고려한 후에 이 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행하였다. 이것은 원칙과 가치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가 된, 그리고 강력하게 지원을 받는 주장이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건전한 기초가 된다. 본 요건의 취지상, 아래에 윤리적 원칙과 전문직 원칙을 요약 발췌하여 소개한다.

윤리적 원칙

9. 청소년 지도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 청소년을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며, 각 개인을 높이 평가하고 부정적인 차별 대우를 피한다.
 - 청소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장려한다.
 - 청소년의 복지와 안전을 장려하고 보장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이 도전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정의 증진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심을 장려하고 차별을 문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전문직 원칙

10. 청소년 지도자들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개인 생활과 전문직 생활 사이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청소년을 보살펴주고 지원해 주는 관계와 전문직 직업상의 적

- 절한 거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 동료, 더 넓은 사회,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관련된 이해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책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 고용 단체에 이러한 원칙들을 토의하고 평가하고 고수하는 환경이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동등한 기회

11.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은 동등한 기회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많은 개인들과 집단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불공정한 차별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한다. 많은 개인들과 집단은 이러한 차별 행위를 압제, 즉 보다 강력한 개인, 집단, 기관이 힘이 약한 개인, 집단, 기관의 삶, 경험, 기회, 선택권, 물리적인 복지를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경험한다. 효과적인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은 그런 불리한 상황과 차별 행위를 바로잡는 일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12. 사회적 정의를 고수하는 다양한 사회는 법률의 보호를 받든 받지 못하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성별, 인종적인 배경, 연령, 장애 상태, 성적인 경향, 종교, 계층 등에 대한 차별 행위에 반하여 사람들의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13. 최근의 Human Rights 입법과 SENDA(Special Education Needs Disability Act) 2001은 그런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
14. 게다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은 다양한 개인, 집단, 공동체의 공헌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널리 알리며, 그것을 지원하

고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압제와 불공정한 차별 행위에 맞서 싸우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회의 평등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용

15. 청소년 및 공동체 사업에 고용된 5천명의 정규 직원들의 대다수는 JNC(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Youth and Community Workers)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받는다.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상태는 National Youth Agency가 JNC를 대신하여 자격을 인정한다는 증명서(award) 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6.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에서 봉사 활동에 대한 JNC의 보상과 조건은 매우 다양한 직업에 해당된다. 자격이 있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자는 다양한 직업 환경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 청소년 정의 팀, 보건 당국, 여가 활동 및 예술 부서, 자원 봉사 부문 단체 등을 위한 특별한 역할에서 직책을 확보한다. 그 결과,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이 다양한 환경의 직업 관련 요구를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NYA의 주된 관심사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이며 NYA의 자격 인정 요건에는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제1절

자격 인정의 성격

자격 인정에서 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Youth and Community Workers가 하는 역할

- 17 1960년의 청소년 봉사 활동을 검토한 Albemarle Committee

는 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Youth Leaders의 설립을 제안했다. 1965년에 JNC는 그 명칭과 활동 범위를 변경하여 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Youth Leaders and Community Centre Wardens가 되었다. JNC Grading Matrix를 대대적으로 검토한 후에, 1987년에 이 보고서의 이름은 JNC for Youth and Community Workers로 변경되었다.

18. JNC의 형성은 자격 인정을 통하여 질높은 교육 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그러한 자격 부여와 관련된 임금과 봉사 활동의 조건을 중재해야 할 책임과 결합한 것이므로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이 전문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1961년에 JNC의 최초의 보고서에서는 자격 보유 상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자격 부여 조건을 서술했으며, 지금도 자격 인정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JNC이다.

National Youth Agency의 역할

19. 1961년부터 1982년까지 JNC는 인정할 자격의 종류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증명서(award)를 수여하는 다양한 고등 교육 기관이나 그 외의 단체들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1982년에 JNC를 대신하여 증명서를 상세하게 정밀 분석하는 업무는 CETYCW(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Youth and Community Work)로 넘겨졌고, 1991년에는 National Youth Agency로 이관되었다.
20. NYA의 Education and Training Standards Subcommittee는 전문직 자격 인정을 고려하고 추천하며(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것은 JNC 보고서에 포함시킬 자격 인정이 된다
21. 1999년에 NYA는 다른 협력 단체와 함께 자격 부여와 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책임을 지는 PAULO, 즉

National Training Organisation for Community-based Learning and Development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했다. 하지만, JNC를 대신하여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는 책임은 NYA가 계속 담당한다.

자격 인정의 원칙

22. NYA가 자격 인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자격 인정의 기준을 정의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 업무는 이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온전히 협력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표자들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 현장 참여 원칙 덕분에 교육과 검증 프로세스가 신뢰성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격 형성에 대해 집합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23. 대표자 개개인은 ETS Subcommittee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며, 집합적으로는 다음을 책임지게 된다.
 - 자격 인정 요건의 설계 및 적용
 - 인정받기 위한 제출물을 정밀 분석하고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합의한 표준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일
 - 자격 인정 관행을 합의된 가치와 원칙에 일치하게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것
 - 인정 활동의 주세를 관측하고 분석하면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발전을 제안하는 것

자격 부여 경로

24. 많은 경로를 통해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자격 인정은 해당 학제나 조직적인 제도에 관계없이 JNC 보고서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 받을 수 있다.

25. 현재 자격 인정을 받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의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Dip HE 2년간의 정규직 근무와 시간제 근무에 해당함
- 학사 학위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포함한 3년간의 정규직 근무에 해당함
- 대학원 수료/학위 - 1년간의 정규직 근무와 시간제 근무에 해당함
- Higher degree (자격 인정 포함) 1년간의 정규직 근무와 시간제 근무에 해당함.
- Apprenticeship 현재로는 Dip HE로 이어지는 도제 과정이 하나 마련되어 있음

26. 이러한 요구 조건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NYA는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결되는 대체 경로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현재 PAULO와 함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직업상의 표준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고용주와 각 사업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그리고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따라, NYA는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가 (accreditation)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의 요구 조건은 현재 검토 중이며 고등 교육 기관들과 관련된 요건과는 별도로 발행될 것이다.

Foundation Degree의 개발은 계속 검토될 것이며, 이것은 충분한 과정을 거친 다음 자격을 인정받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실천원리 원칙 - 학습 프로세스

27. 훈련 프로그램의 학습 과정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의 기초를 형성하는 윤리, 가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다음을 인정하고 통합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 주로 교육 과정으로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 자발적으로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된다.
- 관찰, 청취, 반성, 분석, 행동 등의 평생 개발 과정으로서의 학습.
- 사고력 있는 실무자 개발을 위해 통합된 구성요소로서 이론과 실습.
- 이전 학습과 경험의 가치.
- 학습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 청소년들과 성인들과 함께 하는 사업의 다양한 모델, 스타일, 접근 방법.
- 평등과 사회정의의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실천모델.

최소 요건

28. 자격 인정의 최소 요구 조건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는 JNC 보고서에서 채택한 *Grading Criteria Matrix*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PAULO, 2000)이다. 이 문서들은 부록에 약술되어 있다. 자격 인정의 모든 제안은 JNC 보고서에 나오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사업 분야가 프로그램의 핵심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 청소년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
- 담당 직원들 및 그 외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하는 사업

- 봉사 활동 개발
- 관리 및 재정

29. 고용 패턴의 중요한 변화로 인해 유자격 청소년 지도자의 초기 등급으로 레벨 1을 아주 이따금씩만 사용하는 고용주들이 생기게 되었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커리큘럼 설계와 실행 단계에서 이런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검증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평가 과정은 학생들이 JNC 보고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matrix 제2수준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올렸음을 보장해야 한다.

30.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Youth Work의 세부 사항이 2000년 1월에 합의가 되어 채택되었다. PAULO는 표준에 기초한 국가적인 자격 부여 체계에서 레벨 2와 3의 자격 기준을 구축했다.

PAULO는 표준에서 여덟 개의 주요 항목을 찾아내어 모든 청소년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했다. 그 항목은 A1, B1, B3, B4, D1, D2, D3, D4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라).

NYA는 사용할 항목을 정밀하게 지정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기대하며, 위의 항목을 고려하고 aspect A와 C를 사용한다

A: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검토하고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구축한다.

C: 청소년들이 활동, 이벤트,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조직하고 높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aspect E와 F의 표준을 이용하여 관리 기능과 조직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이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E: 청소년 사업을 계획, 관리, 개발한다.

F 청소년 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관행을 지원하고 개발한다

레벨 2 위치의 JNC 매트릭스의 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러한 표준은 커리큘럼에 반영되어야 하며 JNC 요건에 일치하는지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JNC Matrix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를 충족시키는 요건의 영향력

31. 단체와 기관들은 이 matrix와 NOS를 프로그램 설계의 템플릿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틀을 제공할 뿐이며 고등 교육 기관은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 목적, 수준, 기대를 충족시키는 고등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NYA는 의미 있고, 기초적인 정책적 기반 하에 사고력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출 자료는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모델에 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적용 분야에 대한 신뢰심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32. 커리큘럼과 현장 실습 사회 과학과 교육 이론에 뿌리를 박고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의 역사와 개발에 대한 지식, 1945년 이후의 관련된 정치적인 정책 개발,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개인적·사회적 교육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기초 지식도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주택 문제, 직장 문제, 교육과 복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의 국제적인 상황 등이다.

NYA는 제출 자료를 통해 커리큘럼이 우리 시대의 정책과 실천 사업과 개발에 충분히 발맞추고 있음과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과의 개인적·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주제와 우선 순위에는 청소년들이 교육, 사업, 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모든 수단과 이니셔티브가 포함될 것이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촉진시키는 Connexions 전략과 방법이 포함된다. 개인적·사회적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실습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교육 기관들은 커리큘럼의 적용 범위가 다른 직업 분야의 국가적 직업 표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PAULO 내에는 Standards for Community Work가 있고 Employment NTO 내에는 Standards for Advice, Guidance and Counselling가 있다. Standards for Playwork는 SPRITO에서 구할 수 있다. SPRITO는 스포츠와 신체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NTO이다.

청소년 및 지역사회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

- 33 이상의 내용은 유망한 지도자가 이해 관계가 있는 신청인에서 동기를 얻은 학생으로 전환하고, 이어서 자격이 있는 실무자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지만,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다소 덜 구체적인 일련의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속성은 처음부터 명확해야 하며, 훈련 중에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학생을 위한 더 많은 자극이 연구 프로그램 전체에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속성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모든 개인적·사회적 관계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 청소년 사업의 윤리적 행동 원칙을 인정하는 것
 -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숙고하는 실무자로서 전문적인 지도자)
34. 게다가, 교육 기관들은 학생들의 범죄기록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범법자는 아동·청소년 지도를 할 수 없으며 그 점을 Criminal Records Bureau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NYA는 이것을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35. 위의 내용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목록이 아니다. 즉, 전문성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에서의 전문적 역량은 이러한 요구 조건에 서술되어 있지만, NYA는 올바른 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신청자들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신청자들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관을 계속 찾아낼 것이다.

부록 1: JNC의 등급별 기준표

책임성	청소년 및 지역사회의 업무	직원 및 다른 기관과의 업무	활동 프로그램 개발	행정 및 재정
	책임 범위	책임 범위	책임 범위	책임 범위
	(1) 청소년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고용된 지역단체의 정책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동과 서비스, 시설 프로그램을 고안·마련하여 사회 교육을 발전시켜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하라.	(1) 다른 성인 직원들과 팀의 동료로서 정규직 근무이든 시간제 근무이든, 유급이든 자원 봉사이든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활동, 서비스, 시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이끌고, 자극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라	청소년 및 지역사회 활동의 (연구를 포함하여) 설계, 전달, 모니터링, 개발의 위원회와 고용 단체와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라.	활동, 봉사 활동, 시설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과 자금 조달(예산관리, 기록관리, 보안, 전화나 서면으로 의사소통 등을 포함).
	(ii)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말을 듣고, 친구가 되고, 조언을 하고, 청소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를 조직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참여와 책임을 증진시키고 장려하라.	(ii) 같은 지역, 같은 사업 분야에 있는 다른 관련 단체나 기관 직원들에게 조언·지원하고 연락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알려주어서, 지역사회 그 부서의 사업의 전체적인 필요에 좀 더 잘 대처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책과 실천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의 의사 결정, 정책, 자원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라		

책임성	청소년 및 지역사회의 업무	직원 및 다른 기관과의 업무	활동 프로그램 개발	행정 및 재정
	(Ⅲ)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지역사회 집단의 필요를 평가하고, 서로간의 관심을 자극하며 서로에 대한 반응을 개발시켜라. 집단을 위한 기존 활동을 유지시키면서 이를 위한 자원을 찾아내고,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집단간의 연락을 유지하라.			
레벨 1 업무담당자는 JNC범위내에 있는 다른 지도자에게 방향을 지시받고 책임을 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레벨 1 지도자는 자기 시간을 위에 나오는 범위의 책임을 지원한다	레벨 1 다른 직원의 책임은 부서 내의 시간제 근무 직원과 자원 봉사자의 동기 자극, 개발 및 훈련 지원에 제한된다. 지도자는 특정한 지역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및 정보 배포를 지원할 수 있다	레벨 1 부서 레벨(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위)에서 서비스 활동 개발을 지원한다.	레벨 1 위에 나오는 의무 범위에서 지원한다

책임성	청소년 및 지역사회의 업무	직원 및 다른 기관과의 업무	활동 프로그램 개발	행정 및 재정
레벨 2 업무담당자는 제한된 범주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그렇게 하여 자기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JNC 레벨 3 등급 지도자나 그 외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그들이 업무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레벨 2 (다른 지도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위에 설명한 범위의 책임을 수행한다.	레벨 2 3명 미만의 정규직 근무 직원, 시간제 근무 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정식 임명을 직접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보통, 직원들의 신규 모집, 임명, 설득, 동기화, 개발, 훈련, 배치, 교육 등도 의무에 포함된다. 이 지도자는 이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레벨 2 개발 기능을 책임진다	레벨 2 열거된 모든 책임이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재정적 문제에 대해 관리 위원회나 고용 단체에 조언한다
레벨 3 업무담당자는 최소 수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만 경영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레벨 3 레벨 3 직책에는 고위직 수준의 경영 개발, 훈련 역할이 포함된다. 레벨 3 등급의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은 레벨 2 등급의 직책보다 상당히 더 크다. 부하 직원이나 다른 기관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 활동개발 등이 이 레벨에 속하는 직책의 전체적인 의무와 책임의 주요 부분이 된다. 3명 이상의 정규직 상당 직원 임명권을 포함한 특정 라인 경영이나 팀 리더십에 대해 책임을 갖는 직책, 포괄적으로 같은 레벨의 독립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는 직책을 레벨 3으로 구분한다.			

부록 2

청소년사업에 대한 국가 직업 표준 상의 주요 측면과 항목 개요

청소년 사업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여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인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청소년들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변화하는 시기에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연구, 이해하고 행동을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관계를 구축하라.

항목	요소	
A1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대화를 유지하라	A.1.1	청소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A.1.2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기들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하라
	A.1.3	청소년들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그들의 발전 기회를 찾아내라
A2 청소년들이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라	A.2.1	정보를 찾아내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관해 두고, 이용이 가능하게 하라
	A.2.2	청소년들이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라.
A3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라	A.3.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우라
	A.3.2	청소년들이 자신의 견해와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과 상황을 중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
A4 청소년들이 문제에 대처하고 조치를 취할 때 지원하라	A.4.1	청소년들이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의 목표와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라
	A.4.2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기초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라
	A.4.3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새겨보고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라
A5 청소년들의 이익을 옹호하라	A.5.1	후원이 필요한 상황을 찾아내라
	A.5.2	청소년들의 견해와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라

B. 청소년들의 학습과 청소년들의 개인적·사회적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항목	요소	
*B1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라	B.1.1	청소년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탐구할 수 있게 하라
	B.1.2	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자부심을 세워 나갈 수 있게 하라
B2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라	B.2.1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라
	B.2.2	청소년들이 영적인 자아를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원하라
*B3 청소년들이 그룹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	B.3.1	그룹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창출하라
	B.3.2	청소년들이 그룹으로 일하는 것이 원활해지게 하라
	B.3.3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느낌에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라
*B4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의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	B.4.1	청소년들의 발전과 학습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라
	B.4.2	청소년들이 배운 것을 자기 생활의 다른 부분에 반영하도록 도우라

C. 청소년들이 활동, 이벤트, 프로젝트 등을 조직하고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라

항목	요소	
C1 세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C.1.1	청소년들과 함께 세션의 결과를 찾아내고 세션의 옵션들 중에서 선택하라
	C.1.2	설계 세션
	C.1.3	자원을 선택하고 설계하고 수정하라
C2 이벤트, 활동, 프로젝트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C.2.1	청소년들이 이벤트, 활동,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구분하고 찾아내고 구하도록 지원하라
	C.2.2	이벤트, 활동, 프로젝트 등의 예산과 자원 계획을 수립하라
	C.2.3	이벤트, 활동, 프로젝트의 예산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라
C3 청소년들과 함께 발전정도를 검토하고 기회를 평가하라	C.3.1	청소년 사업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법에 합의하라
	C.3.2	기회를 평가하고 성공한 점과 향상된 점을 찾아내라

D. 청소년 사업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게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항목	요소
*D1 효과적이고 사고력 있는 실무자로 일하라	D.1.1 자기 자신, 가치, 우선순위, 관심사, 능력, 성과 등을 꼼꼼이 검토하고 평가하라
	D.1.2 자신의 실천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성과 피드백을 사용하라
*D2 기회의 평등성, 참여, 책임감 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일하라	D.2.1 기회의 평등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시키라
	D.2.2 차별 대우, 불공정, 압제적인 행동에 저항하라
	D.2.3 청소년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라
*D3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창출하라	D.3.1 조직적인 전략, 정책, 절차에 따라 일하라
	D.3.2 동료와 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
	D.3.3 관리자와 의사결정자와의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D4 청소년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D.4.1 청소년 사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증진시키라
	D.4.2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라
	D.4.3 개개인들이 피로움을 겪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라

E. 청소년 사업을 계획, 관리, 개발하라

항목	요소
E1 청소년들의 필요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것을 조사하고 청소년 사업 기회를 증진시키라	E.1.1 청소년들의 필요와 관심사, 포부와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라
	E.1.2 청소년들의 필요와 관심사, 인생의 목표,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라
	E.1.3 새로운 청소년 사업 기회를 증진시키라
E2 다른 단체나 개인들과의 관계를 식별하라	E.2.1 청소년들의 학습과 발전, 그리고 그 소망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찾아내라
	E.2.2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주요 교육 집단이나 그 외의 개인들을 식별하라
E3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구축하고 유지하라	E.3.1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라
	E.3.2 청소년들의 필요, 관심사,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과 공동체 집단, 그리고 교육기관과 협력하라

* 는 모든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PAULO가 지정한 항목이다. 제출된 내용에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추가 항목/요소가 어느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QCA/ACCAC/CCEA/SQA 레벨 서술자 (직업 상의 자격 조건)

레벨 1

한 범위의 다양한 작업을 이행하는데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된 역량. 대부분이 일상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레벨 2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상당한 범위의 다양한 작업에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된 역량. 일부 활동은 복잡하거나 일상적이지 아니며 일부 활동은 개인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아마도 실무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 자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종종 요구 조건이다.

레벨 3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폭 넓은 범위의 다양한 작업에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된 역량. 대부분의 작업이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아닌 것이다. 상당한 책임과 자율성이 있으며 종종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벨 4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되며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인 책임과 자율성이 있는 넓은 범위의 복잡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작업에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된 역량. 종종 다른 사람의 작업과 자원 할당에 대한 책임이 있다.

레벨 5

넓고 종종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환경에서 기능과 상당한 범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된 역량. 매우 실질적인 개인적 자율성이 있고 종종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실질적인

자원 할당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분석과 진단, 설계, 계획, 실행,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도 있다.

레벨 4가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자격 부여 체계에서 undergraduate work to degree 레벨과 같은 수준이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집필진 ◆

김두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 연구협력기관 ◆

독일 바이에른 청소년연합

(BAYERISCHER JUGENDRING)

독일 청소년연구소

(Deutsches Jugend Institut)

공 백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연구보고서】

- 01-R0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길은배 · 임순희)
- 01-R02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3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이론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4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I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사례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5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위탁기준에 관한 연구 (김영한 · 임지연 · 권일남)
- 01-R06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희 · 이동연 · 김상우)
- 01-R07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 I (윤철경 · 정희욱)
- 01-R08 미국 · 일본 · 중국 · 홍콩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 II (윤철경 · 정희욱 · 조아미 · 박병식 · Anna Hui · Ju Qing)
- 01-R09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연구 (오영근 · 이춘화)
- 01-R10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 (이혜연 · 이태수 · 이서정)
- 01-R1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I (전경숙 · 박병식 · 권소정)
- 01-R12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연구 (박창남 · 김희진 · 김선업)
- 01-R13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맹영임 · 김진호 · 정철영)

- 01-R14 청소년 정보봉사단 운영방안 연구 (김정주 · 김혁진 · 전명기 · 정익재)
- 01-R15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 연구 (이종원 · 임성택 · 최원기 · 최중현 · 심진예)
- 01-R16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실태분석-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이종원)
- 01-R17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임성택)
- 01-R18 청소년 법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최원기)
- 01-R19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황진구 · 유지열 · 이종임)
- 01-R2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이칭찬)
- 01-R2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 (이기영)
- 01-R22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이장현 · 우룡)
- 01-R23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김민)
- 01-R24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영희)
- 01-R25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청소년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청송 · 현명호)
- 01-R26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방안 연구 (이수범)
- 01-R27 10대 여자 청소년 원조교제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연구 (신미식)
- 01-R28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상철)
- 01-R29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길은배 · 이종원 · 최원기)
- 01-R30 청소년 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경준 · 강명숙 · 서정아 · 정호연)
- 01-R31 미래를 움직이는 힘! 청소년 자원봉사(Video) (김정배 · 정익재)

- 01-R32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발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 01-R33 청소년 봉사활동 시범협력학교 운영 사업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 01-R3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 연수 (김정배 · 우정자)
- 01-R35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 개발 (김정배 · 우정자)
- 01-R36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이춘화 · 김성식 · 신순갑 · 정하배 · 류지영)
- 01-R37 중도 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박창남 · 임성택 · 전경숙 · 김성식)
- 01-R38 청소년 문제의 심리학적 접근 방안 연구 (임성택 · 이해연 · 김진호 · 김혜진)
- 01-R39 주5일근무(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정책방향과 대책 (함병수 · 김경준 · 김정주 · 김영지)
- 01-R40 세계청소년문화축제 발전방안 연구 (최원기 · 길은배 · 맹영임 · 이주연)
- 01-R4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이광호 · 전명기 · 이희수 · 맹영임 · 권진화)
- 01-R42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길은배 · 이용교 · 김영지)
- 01-R4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함병수 · 윤철경 · 김혁진 · 이해훈 · 이득영)
- 01-R44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김정배 · 우정자)
- 01-R45 정부간 청소년교류 초청프로그램 개발 (박영균 · 윤철경 · 박호남 · 조은정)
- 01-R46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 (조혜영)
- 01-R47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실태 및 정책 방안 모색 연구 (이광호 · 김희진 · 장원섭 · 이해정 · 정여옥)

- 01-R48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 연구 (이민희 · 윤옥경 · 임지연)
 01-R59 선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제도 · OECD 가입국가를 중심으로
 (황진구)

【수련 프로그램 개발】

- 01-R49 고미술 이해활동 (이춘화 · 박승예)
 01-R50 만화영화 제작활동 (김영지 · 임영규)
 01-R51 인터넷신문 제작활동 (황진구 · 박기봉)
 01-R52 자동차 이해 및 체험활동 (임성택 · 임기상)
 01-R53 장애인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김희진 · 장인권)
 01-R54 강건너기 체험활동 (김진호 · 연구철)
 01-R55 생태 · 자연지도 제작활동 (임지연 · 민성환)
 01-R56 장인정신 체험 (박창남 · 김미정)
 01-R57 세계문화 체험활동 (전경숙 · 노재봉)
 01-R58 외국인 관광안내활동 (이민희 · 박기홍)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 01-S01 지식 · 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육성 방향모색 (2001.5.17.
 토론회 자료집)
 01-S02 학생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 (2001.7.11 공청회자료집)
 01-S0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과 운영 개선 방향 (2001.9.7.워크샵자료집)
 01-S04 나는 일도 하고 싶다.-청소년 시간제 취업을 중심으로
 -(2001.12.14, 청소년 일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원을
 통한 토론회 자료집)
 01-S05 중도탈락 청소년 실태와 대책 (2001.10.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
 대책 공청회 자료집)

01-S06 2001년도 청소년 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 (2001.11.7~8, 청소년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집)

01-S07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2001.11. 세미나 자료집)

01-S08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교재 (2001. 12. 연수교재)

01-S09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직원직무 연수교재 (2001.10. 연수교재)

【학술논문집】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1호 통권 33호 (2001.6.)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2호 통권 34호 (2001.12.)

공 백

연구보고 01-R 07

유럽국가의 청소년정책

인 쇄 2001년 12월 15일
발 행 2001년 12월 20일
발행인 권 이 중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37-715
전화 02) 2188-8844, 8877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식회사
전화 02) 2268-4743~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정보학습센터) 2188-8844(총무부)

ISBN 89-7816-382-3(93330)

공 백

연구보고 01-R 07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연구 I

유럽국가의 청소년정책

연구책임자 : 윤철경(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희욱(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II. 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 정책	7
1. 교육과 훈련	10
2. 청소년과 노동시장	13
3. 행복, 건강, 가치	18
4. 조직적 정치적 참여	22
 III. 유럽의 청소년정책 동향	27
1. 청소년정책의 목적 및 방향	29
1) 청소년 정책의 개념	29
2) 청소년 정책의 목표	35
3) 청소년 정책의 주요 대상	40
2. 청소년관련 법제	42
1) 청소년관련 국가법률	42
2) 국제법	45
3) 청소년 인권 관련법률	46
3. 청소년 행정체계	47
1) 유럽국가의 청소년행정 유형	47
2) 청소년정책의 결정 및 조정	49

3) 의회 위원회의 역할	53
4. 청소년 정책의 주요 현안	54
1) 청소년의 정책참여	54
2) 교육정책	63
3) 젊은이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64
4)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정책	64
5) 건강을 위한 대책	65
6) 일탈청소년을 다루기 위한 정책	66
7)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	67
8) 청소년단체를 위한 정책	68
9) 강제 군복무와 군복무 이외의 강제 국가용역	69
10) 청소년 정책에서의 시장중심적 요인	70
5. 청소년정책 동향 및 평가	72
1) 청소년정책 동향	72
2) 좋은 실천사례	77
3) 청소년정책 평가	81
6. 유럽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	84
1) 청소년사업의 공식 용어 및 내재 개념	85
2) 청소년사업의 사안과 방법 및 환경	87
3) 교육과 훈련의 구조	95
4) 청소년사업의 체제	99
7. 유럽의 청소년정책모형	101
1) 보편형 모델	102
2) 보호형 모델	102
3) 지역공동체 모델	103
4) 중앙집중식 모델	104

IV. 유럽의 국가별 청소년정책 사례	105
1. 독일의 청소년정책	107
1) 청소년 정책의 목적 :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107
2) 주요 추진사업	120
3) 새로이 대두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	135
2. 영국의 청소년 정책	148
1) 유스 서비스(Youth Service)	148
2) 청소년 재정	159
3) 주요 추진사업	180
4) 청소년지도자	199
3.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201
1) 청소년의 일반상황과 청소년사업의 정책구조	201
2) 체육청소년부 예산	204
3) 주요추진사업	211
4) 청소년지도사	234
4. 핀란드 청소년정책	249
1) 청소년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들	249
2) 청소년정책의 개요	258
3) 청소년정책의 주요 특징적 사업	271
V. 요 약	279
참 고 문 헌	291
부 록	295

표 목 차

<표 III-1> 청소년사업의 체제	100
<표 IV-1> 핀란드의 경제적 동향	252
<표 V-1> 청소년정책의 유형	282
<표 V-2> 유럽 청소년 지도자 양성 개요	283

그림목차

<그림 IV-1> 핀란드의 학교 체계도	257
<그림 IV-2> 핀란드 청소년육성의 구조	259
<그림 IV-3> 핀란드 교육부의 행정 조직(2001)	264
<그림 IV-4> 헬싱키시의 행정조직과 청소년국	266
<그림 IV-5> 헬싱키시 청소년국의 하위 조직 구성	267
<그림 IV-6> 히빙케시 청소년담당 부서의 관할 업무와 관련 시설 ...	268
<그림 IV-7> 핀란드 청소년육성 예산의 지출 내용(2000년) ...	270
<그림 IV-8> 핀란드청소년연합 Allianssi 의 조직	272
<그림 IV-9> 스파크 프로젝트의 운용 체계	276